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편방안

주관연구기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해양수산부

최종보고서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편방안

2004. 2.

주관연구기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해양수산부

제 출 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편방안”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4 년 2 월

주관연구기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책임자 : 주 문 배

연구원 : 정 갑 용

이 충 선

안 재 현

강 중 호

이 승 진

목 차

요약	ix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8
제2장 수산물 유통의 이론적 배경	11
제1절 수산물 유통의 발전단계	13
제2절 수산물 유통구조의 이론적 준거	17
1. 상품 유통관리의 접근방법	17
2. 수산물 유통의 의의와 특성	24
3. 수산물 유통시스템과 구조	31
제3장 우리나라의 수산물 유통현황과 구조	43
제1절 우리나라의 수산물 유통현황	45
1.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급구조와 특징	45
2. 수산물 산지·소비지 유통실태	52
3. 우리나라의 수산물 소비구조	75
제2절 수산물 시장별 시설현황과 거래제도	78
1. 산지시장(위판장)의 시설현황	78
2. 소비지 도매시장의 시설현황	93

3. 수산물 거래시스템과 류별 유통경로	97
제4장 우리나라의 수산물 유통관련 법체계	109
제1절 농안법과 수산물 유통관련 법체계	111
1. 농안법의 연혁	111
2. 농안법의 주요내용	118
3. 수산 유통 관련법과 주요내용	123
제2절 현행 농안법과 수산물 유통현실과의 쟁점	134
1. 일반적 쟁점	134
2. 산지시장의 기능활성화	144
3. 거래제도와 유통관행과의 괴리	151
4. 수산물 유통법의 제정 논의	160
5. 기타 쟁점	164
제5장 주요국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제도	169
제1절 일본의 도매시장제도	171
1. 일본의 도매시장제도	171
2. 일본의 도매시장법 주요내용	172
3. 일본 도매시장제도의 특징	175
4. 기타 관련법(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	177
제2절 프랑스 도매시장제도	179
1. 프랑스의 도매시장제도	179
2. 프랑스의 도매시장 관련법 주요내용	181
3. 프랑스 도매시장제도의 특징	184
4. 프랑스 도매시장의 운영현황	185
제3절 미국의 도매시장제도	193

1. 미국의 도매시장제도	193
2. 미국의 도매시장 관련법 주요내용	207
3. 미국 도매시장제도의 특징	209
4. 미국 도매시장의 운영현황	212
제4절 주요국 도매시장의 제도적 특징 비교	217
1. 도매시장의 개설분야	217
2. 도매시장의 관리 및 운영분야	219
3. 도매시장의 물류분야	220
제6장 수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편방안	225
제1절 수산물 유통의 과제	227
제2절 수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편방안	234
1. 수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234
2. 수산물 유통법(안)의 개편방안	239
참고문헌	286
부 록	293
I. (가칭)수산물유통에관한법률(안)	
II. 수산물 유통 관련 통계 및 자료	

표 목 차

<표 2-1> 농수산물 유통발전단계 및 정책의 변화과정	15
<표 2-2> 수산물 유통과 농산물 유통의 차이	28
<표 3-1> 국내 수산물의 수급동향	46
<표 3-2> 어업부문별 수산물 생산량 추이	46
<표 3-3> 어종별 수산물 생산현황	48
<표 3-4> 연근해 어업 품목별 생산량	48
<표 3-5> 해면 양식어업 주요 어종별 생산량	49
<표 3-6> 우리나라의 수산물 품목별 수입 추이	50
<표 3-7> 우리나라의 상위 20개 품목 수입실적 현황(2002년 기준)	51
<표 3-8> 수산물 생산량 및 계통판매 현황	52
<표 3-9> 연도별 월별 수산물계통판매고 현황	54
<표 3-10> 연도별 지역별 계통판매 현황	55
<표 3-11> 연도별 조합별 계통판매고 현황	56
<표 3-12> 연도별 어종별 계통판매 현황	61
<표 3-13> 도매시장별 거래실적	68
<표 3-14> 연도별 공영도매시장 거래 추이	69
<표 3-15> 일반법정도매시장의 연도별 거래실적	70
<표 3-16> 도매시장내 반입형태별 거래비중(2002년 기준)	71
<표 3-17> 도매시장 출하자별 연도별 출하물량	72
<표 3-18> 도매시장 출하자별 지역별 출하물량	73
<표 3-19> 주요 품목별 연도별 도매시장 거래추이	74
<표 3-20> 1인당 1일 동물성 단백질 공급추이	75
<표 3-21> 1인 연간 수산물 소비량	76
<표 3-22> 도시가구 1인당 식품류별 소비지출 변화	77
<표 3-23> 한국 수산물 유통시설 현황	78

<표 3-24> 지역별 위(공)판장 현황(2002년 기준) 79

<표 3-25> 부류별 전국 위(공)판장 개설현황 80

<표 3-26> 지역별 위판장의 규모 및 거래량 81

<표 3-27> 전국 지정어항 분포 현황 91

<표 3-28> 전국 농수산물도매시장 현황(2002년 기준) 93

<표 3-29> 도매시장 종사자 현황 94

<표 3-30> 시장별 하역인력 및 하역비 현황 95

<표 3-31> 시장별 하역비 부담현황 96

<표 3-32> 시장별 파렛트 출하현황 97

<표 3-33> 수산물의 부류별 가격형성 방식 및 특징 108

<표 4-1> 농안법상 수산유통분야의 변화내용 117

<표 4-2> 수산물 유통관련법의 주요내용 132

<표 4-3> 유통 및 다양한 환경에 따른 시장 재분류 134

<표 4-4> 해양수산부의 유통관련 정보화 추진현황 141

<표 4-5> 산지도매시장의 필요성 146

<표 4-6> 산지 위판장의 도매시장화에 대한 장단점 147

<표 4-7> 도매시장·공판장·집하장의 개념 정립 148

<표 4-8> 지역별 위판장 규모 현황 149

<표 4-9> 시나리오별 도매시장 총거래추이 150

<표 4-10> 농안법상의 수산물유통거래제도에 대한 의견 154

<표 4-11> 농안법을 둘러싼 각 주체별 의견차이 155

<표 4-12> 시장도매인제에 대한 유통주체간의 입장 157

<표 4-13> 쟁점별 독립법 제정논리 161

<표 4-14> 독립법 제정에 대한 찬반의견 162

<표 5-1> 국가별 시장개설부문별 도매시장 비교 218

<표 5-2> 국가별 관리, 운영별 도매시장 비교 220

<표 5-3> 국가별 물류체계별 도매시장 비교 221

<표 6-1> 수산유통법의 구조 244

<표 6-2> 전자상거래와 전통적 거래방식의 비교 249

<표 6-3> 해외합작 국내반입수산물의 현황	258
<표 6-4> 산지위판장의 기능 활성화 방안	261
<표 6-5> 도매시장 운용주체들의 기능 비교	275
<표 6-6> 수산유통의 특성을 반영한 입법형태	282

그림 목 차

<그림 1-1> 연구의 추진체계 및 흐름 9

<그림 2-1> 고객지향적 접근 흐름도 18

<그림 2-2> Zero-Base 접근 흐름도 19

<그림 2-3> Systems Approach(시스템적 접근 흐름도) 21

<그림 2-4> Synergy Approach(시너지 접근 흐름도) 22

<그림 2-5> 수산물시장 유통을 규정하는 요인 25

<그림 2-6> 수산물 유통의 기본단계 26

<그림 2-7> 수산물 유통시스템을 둘러싼 환경 34

<그림 2-8> 상품의 일반적 유통경로 35

<그림 3-1> 월별 어종별 계통판매가격추이(2003년) 67

<그림 3-2> 선어류의 유통경로 101

<그림 3-3> 활어류의 유통경로 102

<그림 3-4> 패류의 유통경로 104

<그림 3-5> 건어류의 유통경로 105

<그림 3-6> 원양어류 및 수입어류의 유통경로 107

<그림 4-1> 수산물 유통법(농안법)의 변천 114

<그림 4-2> 수산유통 관련법체계 125

<그림 4-3> 수산종합정보시스템 143

<그림 5-1> 일본 도매시장법 개정 전후의 거래방법 비교 171

<그림 5-2> 일본 쓰키치 수산물 시장의 유통체계 175

<그림 5-3> 프랑스 도매시장의 유통체계 180

<그림 5-4> 프랑스 수산물의 유통체계 187

<그림 5-5> EU의 농산물 유통체계 190

<그림 5-6> 미국 도매시장의 유통체계 197

<그림 5-7> 비교연도별 도매시장내 신선과일(채소류)의 유통단계별 거래현황	200
<그림 6-1> 수산물 물류혁신의 방향	237
<그림 6-2> 수산물유통법구조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238
<그림 6-3> 수산물유통에관한법률의 제정원칙	239
<그림 6-4> 수산물 산지 및 소비지시장의 거래	272

요 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전 세계적으로 식품유통산업에 대한 고정관념에 변화가 일어나 가격, 제품, 입지, 마케팅 등 유통관련 분야에서 ‘대변혁’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유통시스템 측면에서도 생산자 지향의 유통시스템이 소비자 지향의 유통시스템으로 전환되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의 수산물 유통분야에도 예외 없이 일어나고 있음. 국내 연근해 생산량의 지속적인 감소와 수입수산물의 급격한 증가, 그리고 대형유통업체 및 직거래 유통의 점유율 증가는 “산지위판장에서 소비지 도매시장으로” 라는 기존의 수산물 유통질서를 뒤흔들고 있음. 특히, 수산물 유통에 있어서 대형유통업체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가격결정의 주도권도 소비지 도매시장에서 대형유통업체로 점차 전환되고 있음.
-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부정유통 및 불법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고비용, 저효율의 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수산물 유통현장에서는 아직도 많은 모순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임.
 - 이러한 모순들은 첫째, 제도적인 문제로 수산물 유통의 법적 근거가 되고 있는 현행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하 농안법 이라 함)이 농산물을 중심으로 제·개정되어, 제도적 장치와 다른 비합법적인 유통관행이 수산유통 현장에서 일상화되고 있다는 것이며,
 - 둘째, 운영상의 문제로는 기존의 법적 장치에 입각하여 적극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유통주체들의 노력의 결여와 일탈적인 행동에 대한 철저한 규제 노력의 결여가 지적되고 있음.

- 더욱이 **현행 농안법은 소비지 도매시장제도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수산물을 생산한 후, 1차 양육지인 산지위판단계부터 식탁에 이르는 **중간단계의 유통을 소극적으로 취급하고 있어**, 산지위판장에서의 소포장 및 분산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식탁까지의 유통 및 품질을 책임질 수 있는 수산물 유통장치가 현실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임.
- 이상과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수산물 유통시스템을 둘러싸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내·외부의 충격, 그리고 제도권 시장의 거래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농안법과 수산물 유통현실과의 조화롭지 못한 부분을 재검토하고, 아울러 선진국의 농수산물 유통시스템에 대한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 안전한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사회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수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 이에 대응하여 수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동력원으로서 **수산물 유통 관련법에 대한 개편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II. 수산물 유통의 이론적 배경

- 일반적으로 수산물 유통시스템은 개방시스템(open system)으로서 식품 유통시스템의 한 부분으로 다른 시스템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은 수산물 유통이 가지는 내부적인 요인과 세계 식품시장의 개방화, 교통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른 정보화, 식품에 대한 소비형태의 변화, 국내생산구조의 변화 등 외부적인 요인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변화를 강요당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수산물 유통시스템도 유사한 변화의 경험을 하고 있는데, 수산물 유통이 가지는 내부적인 요인보다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하여 변화를 강요당하고 있음. 특히, 우리나라의 수산물 유통은 농수산물 유통구조의 변화가 매우 다양하게 일어나는 유통구조팽창화단계(제2단계)

와 유통기술의 보편화 및 소비자의 소비형태 다양화가 유통시스템에 변화에 동력원으로 작용하는 유통구조고도화단계(제3단계)의 특징을 복합적으로 가지는 상황에 놓여 있음.

- 수산물 유통시장은 크게 산지시장과 소비지 도매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어업생산자가 생산한 수산물의 상품화 과정(가치실현과정)으로서의 수산물 시장은 의의를 가지며, 사회·경제적으로는 수산물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총체적인 의의를 지니고 있음.
 - 수산물 산지시장은 “어업생산지에서 어선이 접안할 수 있는 어항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어획물의 양륙과 양륙된 수산물의 1차적인 가격형성이 이루어지는 시장”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산지위판장이 이에 해당됨. 이 산지위판장은 어업인의 편의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1차 가격형성과 정보전달기능, 금융기능 등을 산지도매시장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수산물 소비지 도매시장의 존재가치는 사회적 유통경비의 절감과 사회적 효용의 최대화 즉, “소규모 분산적인 생산과 소비간의 질적·양적 모순을 조절하고, 대량거래에 의하여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사회적 효용을 최대화하는 것임. 이러한 도매시장의 목표달성을 위해 우리나라와 일본 등은 첫째, 수탁집하를 원칙으로 하며, 둘째, 출하된 위탁물품은 당일 상장판매를 원칙으로 하고, 셋째, 경매 또는 입찰에 의한 방법을 원칙으로 하며, 넷째, 대금결제는 당일 현금결제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다섯째, 정보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여섯째, 도매시장에서는 차별적 취급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 또한 수산물 유통에 대한 문제를 진단하고 합리적인 처방을 내리기 위해서는 농축산물 유통과는 다른 특징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해야 함.
 - 첫째, 수산물은 생산이 불확실하고 계절적으로 일시·다획되어, 가격등락이 심하며, 소량·다품종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해역별·양육지별 산지유통구조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 둘째, 수산물은 농산물에 비해 부패 변질성이 강하여 저장성이 약하

며 유통과정에서 감모·폐기가 많이 발생함. 따라서 농산물에 비해 시·공간적 차이에 따라 가치변동이 크므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특수 유통시설 및 유통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함. 따라서 산지에 인접해 있는 지역에 품질유지 및 위생관리시설을 갖춘 시장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임.

- 셋째, 냉동 또는 가공수산물 중심인 서구의 수산물 소비형태에 비해 우리나라의 수산물 소비는 활선어 중심의 소비형태로 서구와는 다른 유통시스템을 필요로 함.
- 수산물 유통시장을 구성하는 요인으로는 ①공급조건, ②유통조건(관련 법령도 포함), ③수요조건, ④상품조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이 네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위치에 유통시장이 건설되어야 한다는 것임. 현재, 수산물 시장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인 중 하나이며 하위시스템으로서 「농안법」이 있는데, 이는 수산물 시장의 기본원리를 조정·관리하는 기본법임.
- 수산물 유통행정의 이념은 ①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② '저비용과 고효율 구조를 확립'하고, ③ '유통과정 참여자(소비자, 생산자, 유통인)의 최대 편익 달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념을 능률적(efficiency)이고 효과적(effectiveness)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산물이 생산, 수집 및 분산되고, 몇 단계의 거래(산지에서의 거래, 소비지에서의 거래, 소매거래 등)를 거쳐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유통과정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전제로 되어야 할 것임.

III. 우리나라의 수산물 유통 현황과 구조

- 우리나라의 수산물 유통량(총공급량)은 1980년 252만 톤에서 1990년 390만 톤, 2003년 546만 톤으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그 변화의 특징을

살펴보면 연근해 어업생산량의 지속적인 감소와 수입수산물의 급격한 증가로 요약될 수 있음.

- 1986년을 정점으로 국내생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으로써 이에 따른 공급 부족분을 수입으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인데, 수입의 경우 2002년에 223만 톤으로 1990년에 비해 5.8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 총공급에서 차지하는 수입수산물의 비중도 1980년 1.6%에서 이후 계속 증가하여 1990년 약 10%, 2002년에는 41% 이상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음.
 - 이러한 변화는 그 동안 전체 취급량 중에서 대부분이 연근해산 수산물이었던 산지위판장의 위상 및 기능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며, 또한 산지위판장-소비자 도매시장이라는 우리나라 수산유통의 기본구조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연근해 생산량의 산지위판장 경유율(2002년 기준)은 약 7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수산물 강제상장제가 임의상장제로 전환된 1997년 63%를 바탕으로 그 이후 계속 상승하여 2001년에는 76%까지 상승하였으나, 2002년에는 71%로 다시 하락하였음. 그러나 물량이나 금액면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월별 수산물 산지위판량을 살펴보면 10월, 12월, 11월 순으로 많았으며, 3개월 동안의 위판량은 연간 위판량의 약 4할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산지위판장의 고매시장화에 주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지역별 산지위판량(2003년)은 경남, 부산, 전남 순으로 각각 373천 톤, 334천 톤, 276천 톤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지역의 위판량은 전체 위판량의 약 8할을 차지하여 지역별 편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위판장의 규모는 위판물량에 따라 5천 톤 미만의 위판장은 134개소, 5~10천 톤은 23개소, 10~30천 톤은 19개소, 그리고 30천 톤 이상의 위판장은 4개소로 전체 위판장 180개소를 구분할 수 있는데, 규모가 큰 위판장은 지역별로 경남(부산포함), 전남, 강원 등의 순으로 위판장 개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산지위판장에서 판매되는 품목 중 멸치, 고등어, 갈치 등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기존 냉동어류 중심에서 신선냉장 및 냉동, 그리고 건어류 중심으로 계통출하물량이 전환되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산지 및 소비지시장에서의 유통거래 기반을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소비지 도매시장의 수산물 거래량은(2002년 기준)은 연근해 생산량의 약 19% 정도(산지위판량의 27%)로 나타났으며, 1998년 313천 톤을 기점으로 공영도매시장의 수산물 거래량은 감소세를 지속하며, 246천 톤의 거래실적을 나타내었음.
 - 연평균 법정도매시장의 거래량은 28천 톤이나 중앙도매시장과 지방도매시장, 그리고 수도권과 지방과의 격차는 심화되고 있는데, 가락시장의 경우 거래물량이 127천 톤에 이르는데 비하여 익산시장의 경우, 연간 992톤의 거래량을 나타내 도매시장으로서의 제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함.
 - 도매시장으로 반입되는 수산물 중 약 90%가 상장거래를 실시한 가운데, 수탁판매가 주요 매매방법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비상장거래의 경우, 매수판매의 비중이 높음. 농산물의 거래와 비교하여 볼 때, 상장거래와 수탁판매 비중이 각각 3%와 1%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도매시장으로 출하되는 출하물량 중 생산자 개인의 출하물량이 전체의 약 63%를 차지하는 가운데, 서울과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의 거래물량 집중화는 90%에 달하고 있음. 이는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물량의 상당수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지 이루어지고 있고, 수도권 도매시장의 집중화로 인하여 지방도매시장이 사실상 제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음.
- 따라서 향후 수산물 유통구조는 산지-소비지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하여 산지시장의 계통출하물량을 소비지도매시장으로 거래를 유도하는

방향과 권역별 산지위판장의 도매시장화 또는 기존 도매시장이 집산과 분산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산지위판장 중 연중 수산물 거래가 가능하고, 계절별로 수산물 위판물량이 큰 편차가 없는 대형 산지위판장을 중심으로 배후지 소비시장과 관련한 시설을 최대한 이용하여 도매시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과 함께,
- 산지의 출하물량을 소비지도매시장으로 유입하고, 중앙과 지방도매시장간의 역할 재정립을 수행하는 동시에 편중화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

IV. 우리나라의 수산물 유통 관련법 체계와 쟁점 분석

- 수산물 유통을 규정하는 대표적인 법은 **농안법**이며,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관한 규정과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에 관한 규정**으로 크게 구분됨.
 - 농안법의 주요내용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생산 및 출하조정,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산물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 농안기금, 수산물유통기구의 정비와 벌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수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주요쟁점을 요약하면, 첫째, 수산물 공급구조의 변화에 상응하는 수산물 유통구조 및 관련 법제의 개선이 요구됨. 수산물 총공급량은 계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공급구조면에서 연근해 어업생산량의 지속적인 감소와 수입수산물의 급격한 증가로 나타남.
 - 따라서 연근해산 수산물을 취급하던 산지위판장의 위상과 **산지위판장-소비지 도매시장**이라는 유통의 기본구조에 대한 개선이 불가피해졌음.
- 둘째, 현행 농안법에서 **산지위판장의 역할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농산물과 달리 산지에서 1차 경매되어 출하되고 있는 수산물의 특성을 감안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산지위판장의 도매시장 기능이 인정되고 있지 않음.

- 또한 산지 위판장이 농안법을 근거로 한 제도권에 포함되지 않아 출하주인 산지중도매인에 대한 법적 보호 및 지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산지유통기능의 활성화에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함.
- 셋째, 농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매시장 거래제도는 수탁판매의 원칙, 경매원칙, 거래제한의 원칙, 수수료의 원칙** 등 네 가지이며, 거래 방법은 상장경매 또는 입찰방법으로 매매를 규정하고 있으나, 계절성과 소량 다품종을 생산하는 특성을 지닌 수산물의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상장경매를 원칙대로 적용하기 곤란함.
 - 이러한 수산물의 특성 등에 기인하여 불공정 담합(유통관행)으로 기록상장·형식경매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 현실적으로 도매법인은 수탁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않으며, 중도매인은 합법적인 수집활동보다는 관행적인 수집활동을 계속하는 상황이 발생함.
 - 이러한 관행은 시장별·품목별 거래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직된 거래제도 운용으로 당초의 제도 도입의 목적달성이 곤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넷째, 거래의 원칙인 **수산물에 대한 실질경매**는 선어와 활어의 경우, 30~40% 가량의 경매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농산물(과일 80%대, 채소 30%대)보다 **경매비율이 현저히 낮은 상태**임. 그리고 상장에 외품목의 확대는 원칙적으로 현 농안법상 거래제도의 개선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함
- 다섯째, **수산물 시장도매인제도**는 도매법인의 수집수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시장도매인의 영업을 허가함으로써 출하자의 시장 선택폭을 확대하여 자유경쟁하에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도입되었으나, 1물 1시장 2개 제도의 조화라는 과제를 안고 출발된 것임.
 - 그런데 현재 단 한곳도 시장도매인제도를 채택하지 않아 **유명무실화**

되고 있으며, 관련 종사자들의 참여한 의견대립과 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내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사장될 위기에 직면해 있음.

- 여섯째, **다양한 소비지의 환경에 따른** 수산물의 거래제도는 법정도매시장과 산지공판장 그리고 민영도매시장 등 **시장별 거래체계에 대한 새로운 재분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가락동, 구리, 노량진의 이른바 ‘빅 3’의 도매시장 점유율이 83.2%(85.2%, 금액기준)로 3개 중앙도매시장으로의 집중현상 심화는 **지방도매시장의 운영유지 및 개설기준에 대한 재검토를 필요케 하고 있음**
 - 현행 2가지 이상의 취급부류와 인구 및 지역기준에 의해 개설이 허가된 도매시장에 대하여 일정량 이하의 수산물 거래시장에 대한 지방도매시장에 대한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특·광역시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중앙도매시장의 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의 전환 내지 신설에 대한 의견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 특히, 법정도매시장의 연간 취급물량은 평균 28천 톤(최대 12만 8천 톤(가락동)~최저 992톤(익산))이며 13개의 법정도매시장 중에서 연간 1만 톤 이하의 시장이 9개에 달하고 있음. 따라서 다양한 소비지의 환경 변화에 상응하는 시장분류 및 거래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일곱째, 연근해 생산량중 산지 계통출하물량이 71% 가까이 되고 있으나, 1차 산지 출하후 **도매시장으로 반입되고 있는 물량은 약 27%(총 공급량 대비 약 15%)에 불과한 실정임.**
 - 도매시장으로 출하 물량의 감소원인은 생산지와 소비지와의 직거래 물량의 증가, 유사시장의 증가 등이 원인으로 이로 인하여 **도매시장의 기능을 위축되고 있으며, 소비지도매시장내의 도매법인이 수집수탁에 대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도 도매법인 반입량의 감소원인으로 판단됨.** 따라서 **도매시장의 역할 강화 또는 역할 전환을 위한 대책 수립이 요구되고 있음**

- 여덟째, 수산물은 산지위판장에서 1차적으로 가격이 결정된 후에 소비지 도매시장에서 재상장될 경우, 수수료의 이중부과 문제와 유통단계의 연장된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수산물의 특성상 산지와 소비지에서 이중으로 경매를 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과 이중경매로 인한 추가 비용의 상승이 반드시 최종 소비자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음.
 - 만약 완전한 도매상제도일 경우에도 2차 경매를 위한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정보수집비 등 사회적 거래비용은 발생하며, 위탁도매상 또는 중개도매상제도의 경우에는 2차 경매로 발생하는 수수료 항목이 그대로 발생하게 됨.
 - 따라서 **이중경매**가 단순히 산술적으로 비능률적이라는 지적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생산측면, 수산물의 특성 및 품질측면 등 **다양한 측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아홉째, 오랫동안 관행화되어 온 수산물 유통구조, 수산시장의 역할 및 유통단계별 비용 발생요인 등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 및 평가 시스템 부재로 변화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곤란한 실정이며, 수산유통에 대한 일회성의 실태조사 및 평가를 바탕으로 한 중장기적 수산물 유통구조 개혁이 단편적인 검토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 그 외에도 현행 농안법은 세계 수산물 시장의 개방화 및 정보화 등 수산물 유통을 둘러싼 급격하고 다양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으며, 식품안전 및 품질유지를 위한 장치 등이 미비한 상황임.

V. 외국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제도

- 일본, 프랑스, 그리고 미국의 도매시장의 제도 및 관련 법규의 검토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도매시장 거래제도와 비교한 결과, 일본은 우리나라

와 유사한 시장거래시스템을 가진 반면, 프랑스와 미국 등은 도매상 위주의 그리고 관련법을 장소보다는 개인에 초점을 맞추는 거래제도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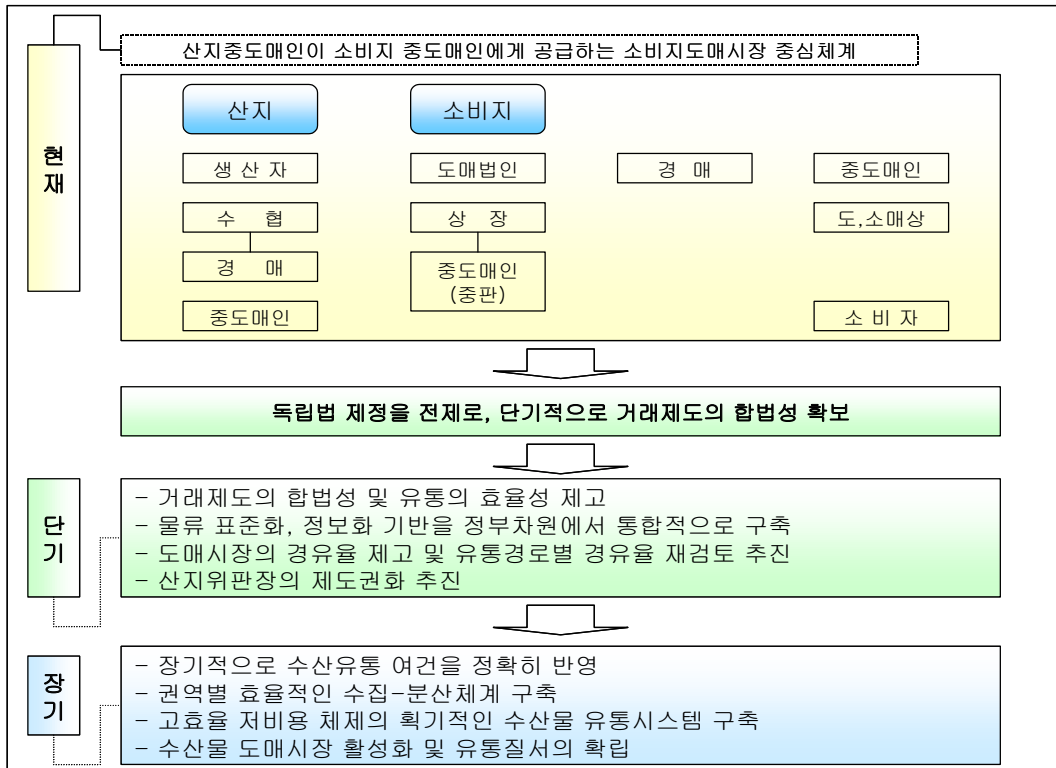
- 일본은 도매법인 체제하의 상장경매와 일부 시장에 도매상 제도를 적용하는 등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데,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한 다양한 제도 도입을 통하여 수산물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임.
- 외국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관리 및 운영측면의 특징을 요약하면 민간부문의 참여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임.
 - 일본과 우리나라가 중요 도매시장의 관리, 운영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이 일괄적으로 담당하는데 비하여, 프랑스와 미국은 민간부분에게 도매시장의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게 하고 정부의 역할은 지도관리만을 담당함으로써 시장경제의 원리를 통하여 도매시장의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음.
 - 도매시장내 거래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소비지 도매시장내 관행적인 소매행위를 인정하는데 반하여, 일본과 프랑스, 미국의 경우에는 소매행위를 철저히 금지하고 있으며, 허용하는 경우에도 유통주체의 사업영역이 철저히 분리되어 갈등요인이 사전에 제거된 상황임.
 - 또한, 거래방법에 있어서 일본과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도매상 또는 시장도매인 방법을 거래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아닌 도매시장을 이루고 있는 유통주체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도매시장이 아닌 곳에서 거래행위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유통주체에 대한 규제를 통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적발과 그에 상응하는 규제조치를 취하고 있음.

VI. 수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편방안

VI-1. 수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 수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기본방향은 단기적으로 거래제도의 합법성 확보 및 유통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물류표준화 및 정보화 기반을 통합적으로 구축하며, 산지위판장의 제도권화 및 대형 위판장의 산지도매시장화를 통하여 산지유통기능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안전한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사회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고효율·저비용 체제의 수산물 유통시스템 구축을 추진함. 이러한 목표의 달성 수단으로서 「(가칭)수산물유통에 관한법률」 제정을 추진함.

- 수산물유통구조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VI-2. 「(가칭)수산물유통에관한법률(안)」의 주요내용

1. 법률(안)의 제정원칙

- (가칭)수산물유통에관한법률(안)의 제정원칙은 기존 농안법이 가지는 농산물 위주의 법체계의 문제점에서 벗어나 수산물 유통이 가지는 특성을 고려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독립적인 수산물 유통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음.
- 또한 산지위판장에 대한 법 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수산물 유통시스템의 연계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 산지위판장, 어항, 소비지 입지, 지역별 수산물 소비형태 및 어종별 양육 비중 등을 고려하여 대형위판장을 산지도매시장화함으로써 도매시장의 경유율 제고 및 이중경매의 문제점을 단계적으로 해소하고자 하였으며,
-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는 전국의 수산물 유통시장을 권역별로 유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였음.
- IT시대에 부응한 전자상거래 등 유통정보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하였고, 위생안전의 확보를 통하여 소비자 지향의 수산물 유통체계 확립이라는 방향으로 개편하고자 하였음.

2. 법률(안)의 주요 신설조항

- 수산물유통발전계획의 수립(법안 제4조 ~ 제6조) :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변화를 수용하여 발전적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유통발전 기본정책방향과 연차계획 설정과 함께 수산유통발전위원회(법안 제7조)를 구성하여 사전적으로는 정책수립에 대한 구체적인 심의를, 사후적으로는 실태조사 및 평가를 통하여 수산물유통발전계획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였음.
- 산지위판장의 명문화(법안 제47조) 및 산지도매시장화(법안 제45조 ~

제50조) : 산지위판장에 대한 개념을 규정함으로써 법제도 틀안에서 제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일정규모 이상의 산지위판장을 산지도매시장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하여 산지에서 수산물의 도매 및 분산을 가능케 하고 이중경매를 단계적으로 해소하는 방안 및 산지 거점별 도매기능을 통하여 유통비용의 절감 및 유통단계의 단순화를 추구하였음.

- 수산물의 특성을 반영한 위생안전의 확보(법안 제12조) 및 **수산물의 수요개발**(법안 제13조) : 소비지도매시장 뿐만 아니라 또한 산지도매시장 및 공판장 등을 포함한 유통구조 전반에 대한 위생안전의 확보방안을 규정하여 **수산물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여 수산물의 소비촉진 및 홍보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수산물의 수요개발을 위한 소비촉진 및 홍보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
- **거래내역의 투명성 확보**(법안 제58조, 제69조 및 제72조)를 위해 도매시장법인은 경매, 일찰, 정가 또는 수의매매한 거래장부를 작성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매월 말까지 이를 보고하도록 하고,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이를 3년 간 보존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며, 거래장부의 보고 및 유지의무를 중도매인 및 시장도매인에도 준용하게 하였음.
- 그 외 빠르게 변화하는 유통정보화 환경에 대응하도록 전자상거래(법안 제10조 및 제56조)의 규정을 명문화하였음.

3. 법률(안)의 주요 개정조항

- 유통구조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의 정착(법안 제8조 및 제9조) : 기존 농안법의 소비지도매시장을 대상으로 한 조사 및 평가를 포함하여 **산지도매시장 및 민영도매시장 등 전반적인 유통실태**에 대해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조사(법안 제8조) 및 평가(법안 제9조)**를 규정함으로써,

중장기유통발전기본계획과 연차계획의 수립에 대한 기본자료로서 활용하게 하였음.

- **시장도매법인 영업범위 확대**(법안 제30조 및 제56조) : 도매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소극적인 도매시장의 영업범위에 대한 확대방안으로 도매시장법인의 겸영사업(법안 제56조)의 확대방안으로서 비축사업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게 하는 등의 적극적인 영업을 이루어지도록 하였음.
- **표준규격화 촉진**(법안 제10조, 제11조)을 통하여 **저비용 고효율 유통체계 구축을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기존 농안법에서 농업관측의 규정을 반영하여 어업관측을 명문화하였음. 그리고 비축사업(법안 제30조)의 경우에 수산전문 생산자단체 또는 유통단체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을 확대하였음.

VI-3. 「(가칭)수산물유통에관한법률(안)」의 추진방안

- **입법추진 형태**로 첫째, 농안법과는 **별도의 독립된 수산유통법을 제정**하는 방안, 둘째, 기존 농안법을 개정하면서 수산유통의 특성을 반영하는 방안, 셋째, 수산유통의 특성을 반영하는 해양수산부령으로 개정하는 방안의 세 가지를 제시하였음. **입법추진 방법**으로는 첫째, 입법을 위한 의견수렴 및 여론조성, 둘째, 농림부와의 협의 및 합의도출, 셋째, 기존법과의 중복성 및 충돌가능성에 대한 검토안을 제시하였음.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전 세계적으로 유통산업에 대한 고정관념이 무너지며 가격, 제품, 입지, 마케팅 등 모든 분야에서 ‘대파괴’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생산자 또는 공급자 중심의 유통산업이 소비자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새로운 유통을 향한 패러다임 전환의 소용돌이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수산물 유통에도 이러한 현상은 예외 없이 일어나고 있음. 특히, 1980년대부터 가속화된 경제분야에서의 규제완화, 시장원리 도입은 상품·자본시장의 국제화·무국경화와 함께 빠르게 진행되어 왔음. 부패성·신선유지의 어려움 등 특성상 원거리 시장 또는 광역시장에 불리한 수산물 유통분야에서도 시장의 광역화·국제화가 급격하게 진행되어 수산물의 유통·물류·소비형태의 변화를 촉진시키고 있음.
- 1996년 유통서비스의 개방화와 함께 우리나라 유통시장은 크게 변모하였음. 식품유통단계에서는 외국의 대형유통업체를 비롯한 국내의 대기업들이 체인방식으로 소매업계에 진입함으로써 소규모 전문소매점 등은 큰 위기를 맞게 되었고, 종래의 상점가는 거의 예외 없이 폐쇄의 길로 접어들고 있음.
 - 특히, 자가용 시대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구매단계에서 자가용차를 이용한 상품구매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여건의 변화에 따라 One-stop 쇼핑이 가능한 대형점이나 쇼핑센터 등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식품유통단계에 있어서 대형유통업체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가격결정의

주도권(initiative)도 그 동안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같은 소비지 도매시장에서 대형유통업체로 전환되고 있음.

- 우선 대형유통업체가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납품업자 또는 중도매업자에게 지침가격으로 발주하면 납품업자 또는 중도매업자는 그 가격으로 납품하는 새로운 관행이 정착되고 있음.
 - 이와 같이 도매시장의 가격결정 주도권에 대신하여 대형유통업체의 가격결정 주도권이 견고해지고 있어, 현행의 농안법이 밝히고 있는 도매시장의 공공성은 점차 희박해지는 경향임.
 - 뿐만 아니라 직거래에 의한 유통량이 늘어나고 소비지 도매시장에서는 도매법인과 중도매인간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등 수산물 유통시스템 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시급한 시점임.
- 유통시장의 개방화와 소비지 도매시장에서 대형유통업체로의 가격결정의 주도권 전환이라는 유통재편에 더불어 동물성 단백질의 주요 공급원인 국내 수산업의 쇠퇴가 문제시되고 있음. 최근의 상황과 같이 소비는 번창하고 생산은 쇠퇴하는 상황에서는 결과적으로 1차 공급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수산업을 등한시하게 될 가능성은 더욱 커짐.
- 연근해 수산자원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수산물 생산활동의 종착역이자 수산물 유통의 출발점으로서 산지위판장은 쇠퇴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
-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전자상거래의 증대 등 기존의 도매시장 중심의 획일적 유통시장에서 다양하고 새로운 환경으로 발전하고 있음.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수산물 유통분야는 타산업의 유통부문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것이 현실임. 어업인이 생산만 하던 시대는 지나갔으며, 현재 그리고 미래에는 생산보다 유통이 중요시되는 상업적 어업형태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
- 생산은 물론 유통이 중요시되는 생산-유통 복합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수산물 유통부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정책이 요구되었으나,

지금까지 생산과 소비를 원활하게 연계되는 합리적인 유통체계를 확립하지 못한 것도 사실임.

- 소비자의 욕구는 점차 증대되고 있지만 생산자나 중간 유통업자들은 이러한 소비자의 욕구수준에 훨씬 못 미치고 있음. 최근의 급격한 유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소비자의 기호에 맞도록 생산하고 관리하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함.
 - 소비자들의 수산물에 대한 선호도는 이제 양보다는 질 위주로 바뀌고 있어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물을 찾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음.
 - 수산물을 많이 생산하기만 하면 소득이 좋았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어떻게 하면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훨씬 중요하게 대두되었으며,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은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 변화에 있다고 할 수 있음.
- 수산물은 그 특성상 포장규격화가 어렵고 저장성이 약해 부패나 변질이 쉬우며, 이로 인해 상품성이 떨어져 생산에서부터 소비까지의 시간적으로 신속성이 우선적으로 요구됨. 또한 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피가 커서 수송 및 상하차 비용이 많이 들고, 생산자가 전국적으로 소규모로 분산되어 있어 산지에서 수집하여 소비지로 분산하는 과정에서 몇 단계의 중간유통인이 불가피하게 개입하게 됨.
 - 중간 유통인들은 생산자보다 훨씬 신속하고 정확한 유통정보를 가지고 있고 유통수단도 상대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어 수산물 가격형성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침. 즉, 우리나라의 수산물에 대한 가격결정권은 생산자보다 오히려 중간유통인이 가지고 있는 실정임.
- 이상과 같은 국내외 수산물 유통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처하고 국내 수산물 유통의 선진화를 도모하여 국민의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사회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수산물 유통 관련법을 개편하고자 하는 것인데, 현행 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사업의 법적 근

거가 되고 있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은 농산물 중심으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산물 및 수산물을 대상으로 하는 유통만이 가지는 고유한 성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내외부의 충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비용, 저효율의 수산물 유통구조뿐만 아니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부정유통 및 불법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은 과거 수 차례에 걸쳐 추진되어 왔으나, 수산물 유통현장에서는 아직도 많은 모순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법제도와 수산물 유통현실·관행과의 괴리). 수산물 유통을 둘러싸고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러한 모순들은 제도적 문제와 운영상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음.
 - 첫 번째 제도적 문제는 수산물 유통의 법적 근거가 되고 있는 현행 농안법이 농산물(농림부) 중심으로 제·개정되어 수산물 및 수산물을 대상으로 하는 유통만이 가지는 고유한 성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제도적 장치와는 다른 비합법적인 유통(※유통관행)이 일상화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¹⁾
 - 두 번째 운영상의 문제는 기존의 법적 장치에 입각하여 적극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노력 결여와 일탈적인 행동에 대한 철저한 규제 노력의 결여가 지적되고 있음. 다시 말하면, 수산유통 현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모순들은 기존제도의 한계라기보다는 제도의 운영주체들과 관리주체들이 합법적 또는 합리적인 행동을 다하지 않은데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지적됨. 우여곡절을 거쳐 제·개정된 제도적 장치는 법규에 따라 운영주체들과 관리주체가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시행(운영)하고자 하는 현실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 제도의 시행결과에서 나타나는 현실과의 모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시정조치를 통하여 제도 또는 현실의 개선노력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현실적 노력이 미

1) 농산물 유통과는 다른 수산물의 어업생산적 및 생화학적 특성과 수산물 유통주체별 유통능력(수집, 분산, 대금결제 능력, 유통관행 등을 포함)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로 제·개정되어 시행되고 있기 때문임.

흡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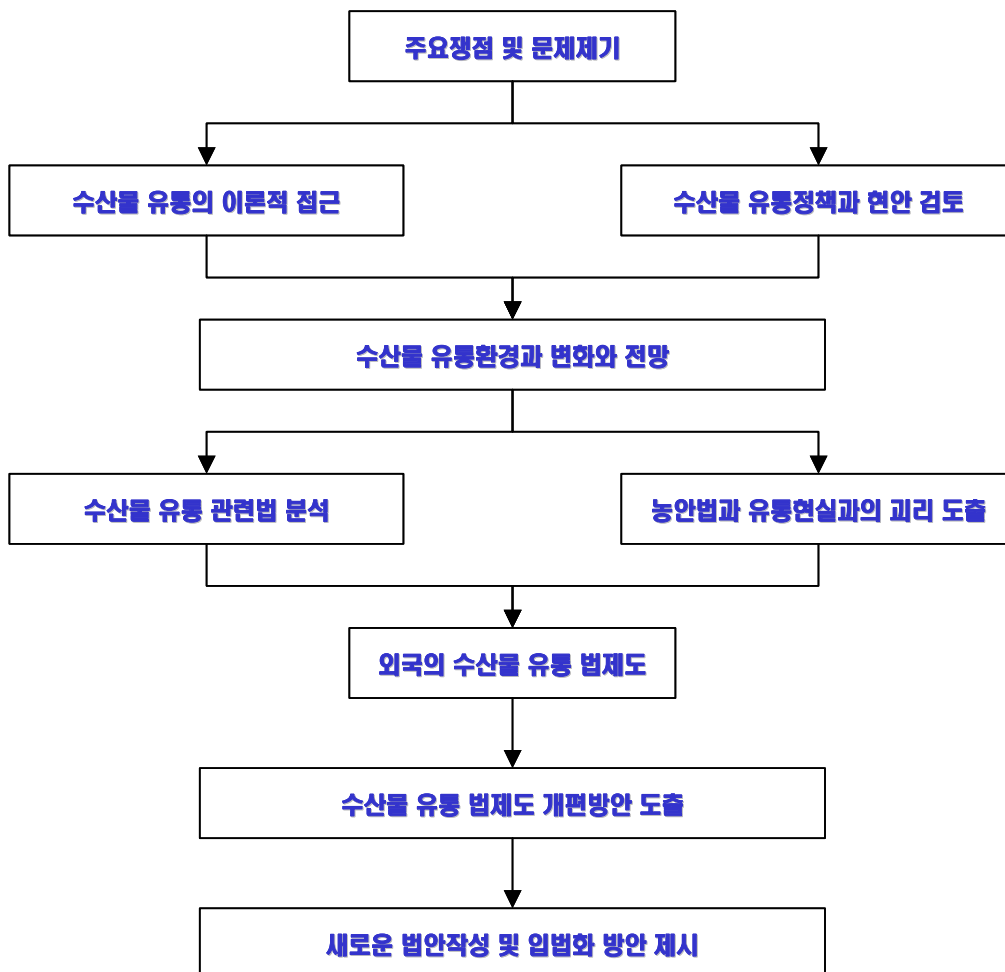
- 또한, 현행 농안법은 소비지 도매시장제도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수산물을 생산한 후 산지 위판단계부터 식탁에 이르는 중간단계의 유통을 소극적으로 취급하고 있어, 산지위판장에서의 소포장 및 분산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식탁까지의 유통 및 품질을 책임질 수 있는 일원화된 수산물 유통장치(수산물 유통행정)가 현실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못함.
- 현행 농안법의 또 하나의 축인 농안기금중에서 수산부문 사업기금을 해양수산부 소관업무로 이관하려고 할 경우, 법적 근거가 없어 새로운 법률의 제정 및 기존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임. 수산부문 가격안정기금은 해양수산부 발족 이후 농림부로부터 수산부문사업의 대부분을 이관하여 농안법 제44조에 의거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농안법에 있어서 농안기금의 운용주체는 농림부이고 해양수산부는 농수산물유통공사와 산림청과 같은 사업지원기관격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농안사업에서 해양수산부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확정하거나 탄력적으로 운용할 권한이 없고, 사업실시기관과 사업운영기관 사이에 존재하여 사업 확정전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는 기능에 그치고 있음.
- 이상과 같은 맥락에서 이 연구는 수산물 유통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내·외부의 충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국내 수산물 유통의 선진화를 도모하여 국제기준에 조화롭고 수산물 가격 및 수급안정을 도모하며, 수산물 위생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존의 수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동력원으로서 수산물 유통 관련법에 대한 개편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임.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이 연구는 수산물 유통의 기본법인 농안법과 동법에 의거 수행되고 있는 수산유통행위 및 수산유통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산지위판장에서 소비자의 식탁에 이르기까지의 관련되는 법제도, 도매시장 및 유통거래주체, 그리고 유통시설, 유통기구, 유통행동 등을 대상으로 함.
- 연구방법은 문헌조사법 및 현지 면접조사법을 활용하여 현행의 수산물 유통현황을 파악하고, 수산물 생산자 및 유통주체들의 의견을 광범하게 수렴하여 수산물 유통현실과 유통 관련법과의 괴리를 명확하게 도출하고, 다음으로 국내외 수산물 유통 관련법 체계 및 입법 사례분석과 비교론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또한 수산물 유통 관련법은 농안법 뿐만 아니라 유통산업발전법, 수산물품질관리법, 농수산물유통공사법 등 다양한 관련법이 존재하므로 양자간 또는 다자간의 상충관계(Trade-off) 또한 고려해야 할 것이며, 수산유통과 관련하여 여러 법과 상관관계를 가지므로 어느 하나의 법만을 개정 또는 신설하는 것은 합리적인 방법이 아님. 이에 이 연구는 보편성과 다양성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율적인 수산유통법의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하였음. 법률안에 대해서는 유통전문가 뿐만 아니라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수정·보완하고자 하였음.
- 수산유통과 관련된 쟁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1차적으로 문헌조사법에 의해 주요쟁점을 파악하였으며, 다음으로 현지 출장을 통하여 유통주체들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주요쟁점을 정리하였음. 주요쟁점 및 개정안 또는 신설규정에 대해서는 관련 당사자 및 전문가를 활용하여 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음. 주요국가(일본, 프랑스,

미국 등)의 농수산물 관련 유통 및 도매시장 관련법제도를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 수산물 유통에 적용 가능한 지를 검토하고자 하였음. 이상의 검토를 통하여 수산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개편방안(수산유통법(안) 포함)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이상의 연구 추진체계 및 흐름은 <그림 1-1>과 같음.

<그림 1-1> 연구의 추진체계 및 흐름



제2장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이론적 준거

제1절 농수산물 유통의 발전단계

제2절 수산물 유통의 이론적 준거

- 여기서는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이론적 검토를 위해, 우선 유통의 일반론으로서 농수산물 유통의 발전단계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상품 유통관리의 이론적 접근방법을 수산물 유통과 연계시켜 살펴 봄. 그리고 나서 수산물 유통의 의의, 수산물 유통이 가지는 특성과 수산물 유통의 핵심인 산지유통기능과 소비지 도매시장기능 등 수산물 유통의 기본이론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함.

제1절 수산물 유통의 발전단계

- 제1단계(곡물유통중심단계)는 유통정책의 비중이 낮으며 증산 일변도의 정책으로 공설소매시장을 건설하는 등 곡물유통정책에 중점을 두는 단계임. 또한, 경제발전정도가 가처분소득 500\$이하이고 소득중 소비비중이 높은 앵겔계수(60%이상)를 나타내는 생계노동이 중심이 되는 단계로 전통적인 농업사회에 해당됨. 이 단계는 저위 보전식품 위주로 유통이 되고 이들이 식품지출액의 70% 이상을 차지함. 식생활환경도 근대적 조리 및 저장시설이 거의 없으며, 주곡생산에 주력, 소모성 상품생산, 천후의존 농업으로 풍흉을 반복하였음. 유통방법은 협소한 유통권내의 부정가적 소량출하, 전통적 개인대개인간의 거래 중심, 대인 직접 현물거래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 유통구조도 곡물도매시장 위주로 한 농수산물 및 생필품의 유통구조로 도소매기능이 미분화되었으며 또한 신선식품 유통은 공설(소매)시장이 주도하여 행상 노점 및 소점포가 다수 존재하는 형태를 나타내었음.
- 제2단계(유통구조팽창화단계)는 중앙도매시장의 정비 및 시설이 확충되는 등 유통환경 및 기반이 조성되고 생산자협동 유통이 촉진되고 정부 역할이 증대되는 시기임. 이 단계는 고위 보전식품 위주로 유통되고 이

들이 식품지출액의 30~40%를 차지하며, 식생활 환경도 대중교통수단과 일부 마이카 및 가전제품 등의 보급으로 초기 외식문화가 보급되며, 생산구조도 주곡자급화, 신선식품 생산확대, 대규모상업적 농업생산 개시되고 생산기반이 확충되는 시기임. 또한 이 단계는 경제발전정도가 가처분소득 1,000\$ 내외, 중위 앵겔계수, 생활노임, 공업화 및 도시화가 전개되는 시기이며, 식단의 영양균형이 유지되는 단계임. 유통방법은 대량화, 원거리화, 가속화 통명거래의 보급개시, 신선식품의 거래단위 불통일, 표준화의 불일치, 비가식부분을 포함한 거래의 특성을 나타내며, 유통구조는 신선식품의 중앙도매시장 발달, 공설시장의 소매시장 점유율 저하, 주택가 점포의 비중 증대, 슈퍼체인 및 연쇄점 증가, 고소득 지역 슈퍼마켓 발생, 수평적 통합이 진전된 시기임.

- 제3단계(유통구조고도화단계)는 생산자 소비자의 대형화, 대형 소매상 육성, 수직적 통합촉진, 유통행정은 촉진조치 중심이 되는 단계이며, 이 단계는 경제발전정도가 가처분소득 2,000\$ 이상, 적정 앵겔계수, 최저임금보장, 고도도시화, 공업화의 대중소비단계임. 또한, 이 단계는 영양, 식품의 과잉 섭취로 부작용이 나타나며, 고위보전식품 위주로 유통되고 이들이 식품지출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식생활환경도 교통발달과 마이카의 보급이 보편화되고 근대적 조리 및 저장시설이 갖추어지고 기계화가 진행되는 시기임. 유통방법은 가식식품과 편리식품의 유통보편화, 전 유통단계 Cold Chain System화, 통명거래와 선물거래의 보편화가 특징으로 나타남. 유통구조는 중앙도매시장의 중요도가 감소하고 슈퍼마켓 및 연쇄점의 생산지 직결, 대규모 가공업자 출현 및 물류업태의 번성, 공설시장 기능 약화, 슈퍼마켓의 대형화 및 수직적 통합²⁾이 진전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음. 이상의 검토 내용을 요약하면 <표 2-1>과 같음.

2) 수직적 통합이란 유통기능을 제조업자, 도매상, 소매상으로 나누어 수행하던 전통적 경로구조(시스템)에서 기능상의 일부 또는 전부를 통합하여 수행하는 방식을 수직적 유통경로구조(시스템)라고 정의할 수 있음. 오세조·박진용, 시장지향적 유통관리, 박영사, 2003.

<표 2-1> 농수산물 유통발전단계 및 정책의 변화과정

구분	제 1 단계	제 2 단계	제 3 단계
경제 발전도	가처분소득 500\$이하, 고위 엔겔계수(60%이상), 생계노임, 전통적인 농업사회	가처분소득 1,000\$내외, 중위 엔겔계수(40~50%), 생활노임, 공업화 도시화의 전개	가처분소득 2,000\$이상, 적정 엔겔계수(25~30%), 최저임금보장, 고도 도시화 공업화의 대중소비단계, 선택적 소비시대로 진전
식생활 목표	기아로부터의 해방	식단의 영양균형 유지	영양식품의 과잉섭취 (부작용)
소비 구조	저위보전식품 위주 (식품지출액의 70%이상)	고위보전식품 지향 (식품지출액의 30~40%)	고위보전 및 가공조리식품 위주 (식품지출액의 50%이상)
식생활 환경	교통불편(극소수 마이카) 근대적 조리 및 저장시설 태무	대중교통수단과 일부 마이카 및 가전제품 보급 단계	교통발달과 마이카 보편화, 가전제품 보편화와 조리시설 기계화
생산 구조	주곡생산에 주력, 소규모 부정규 상품생산, 천후 의존 농수산업으로 풍흉반복	주곡자급화, 신선식품 생산 확대, 대규모 상업적 농수산업 생산 개시, 생산기반 확충	신선식품 및 가공식품에 생산집중, 농수산업 생산의 지역특화, 표준규격화 상품의 대량생산 및 유통, 농업의 기계화
유통 방법	협소한 유통권내의 부정규적 소량출하, 전통적 곡물 거래 중심, 대인직접현물 거래	대량화, 원거리화, 가속화 통명거래의 보급개시, 신선식품의 거래단위 불통일, 표준화의 불비, 비가식부분을 포함한 거래	가식 식품과 편리식품의 유통보편화, 전 유통단계 Cold Chain System화, 통명거래와 선물거래의 보편화
유통 구조	곡물도매시장의 발달, 도소매기능 미분화, 신선식품 유통은 공설(소매)시장이 주도, 행상 노점 및 소점포 다수	신선상품의 중앙도매시장 발달, 공설시장의 소매시장점유율 저하, 주택가 점포의 비중 증대, 슈퍼마켓 및 연쇄점 증가, 고소득 지역 슈퍼마켓 발생, 수평적 통합의 진전	대가공업자 출현 및 중앙공급보관 저장업 번성, 공영시장 기능약화, 슈퍼마켓의 대형화 및 수직적 통합의 진전, 중앙도매시장의 중요도 감소, 대형유통업체, 슈퍼마켓 및 연쇄점의 중요도 증대
유통 정책 동향	유통정책비중저위, 증산일변도 정책, 공설소매시장 건설, 곡물유통 정책 중심	중앙도매시장의 정비확충, 유통환경 및 기반조성, 생산자 공동출하촉진, 정부역할 증대	생산자 소비자의 대형화, 대형 소매상 육성, 수직적 통합촉진, 유통행정은 촉진조치 중심

주 : 1) 김성훈, 농산물유통의 길잡이(1983)에서 농산물 유통발전단계 및 정책의 변화과정을 참조하여 재작성한 것임.

2) 밑줄친 내용은 제3단계의 주요한 특징을 표시한 것임.

- <표 2-1>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제2단계부터는 경제발전의 영향에 따른 사회간접시설의 확충, 마이카시대의 도래, 슈퍼마켓의 증대 등으로 재래시장 및 공영시장에 대한 역할 전환이 서서히 제기됨. 제3단계로부터는 대중소비단계로 선택적 소비시대로 소비에 있어서 개성이 나타나는 시대로 진전되고, 양보다 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시라고 할 수 있음. 이 단계에서는 가식식품과 편리식품의 유통이 보편화되고, 전 식품유통 단계가 Cold Chain System으로 구축되며, 거래에 있어서도 인터넷을 이용한 선물거래 및 직거래가 보편화되는 시대임. 이러한 흐름을 주도 또는 병행하는 생산, 가공, 유통차원의 변화도 현저하게 변화함. 즉, 대가공업자 출현 및 중앙공급 보관저장업이 번성하게 되고, 전체의 공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식품유통 공급망 관리(Supply Chain Management)가 중요하게 됨. 또한 공영도매시장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슈퍼마켓의 대형화 및 수직적 통합이 진전되어 대형유통업체, 슈퍼마켓 및 연쇄점의 중요도가 크게 증대하게 됨. 따라서, 제2단계의 식품유통정책은 산지시장이건 소비지시장이건 공영시장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통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며, 제3단계에는 새로운 변화에 맞추어 고품질의 식품을 소비자의 다양한 소비형태에 조화로운 식품유통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여야 함.³⁾
- <표 2-1>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수산물 유통은 제2단계의 특징과 제3단계의 특징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특히 유통정책적인 면에서는 제2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3단계로의 진입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3) 우리나라의 개인당 가처분소득은 1980년에 1,000 달러 수준이었으며, 1987년부터는 2,000 달러 수준에 진입하였으며, 2001년에는 5,000 달러 대의 가처분소득을 기록하고 있음.

제2절 수산물 유통구조의 이론적 준거

1. 상품 유통관리의 접근 방법

- 유통활동이란, ①상품이나 서비스가 생산자나 서비스제공자로부터 최종 고객에게 이르는 과정에 개입되는 다양한 조직들 사이의 거래관계를 설계하고 운영하며, ②그것을 통해 협상, 주문, 촉진, 물적 흐름(수송, 보관), 금융, 대금결제 등과 같은 유통(혹은 마케팅) 기능의 흐름을 촉진시키는 활동을 의미함.⁴⁾
- 유통경로란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들의 총체를 의미하며, 이들 조직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보통 유통경로시스템(혹은 유통시스템) 또는 마케팅시스템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음. 기업 또는 생산자는 상품의 마케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당한 유통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에 부합되는 유통경로를 설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나가야 함. 또한 동시에 유통경로구성원의 동참을 유도하고, 그들과의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그 동안 우리나라의 유통(마케팅) 관리자들은 유통관리에 대하여 그다지 많은 노력을 기울이거나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하지 않은 것이 사실임. 그러나 1996년 유통시장의 개방과 함께 새로운 도·소매업태의 출현으로 인하여 유통관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이와 같이 다양하고 급격한 여건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품유통에 대한 과학적인 검토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접근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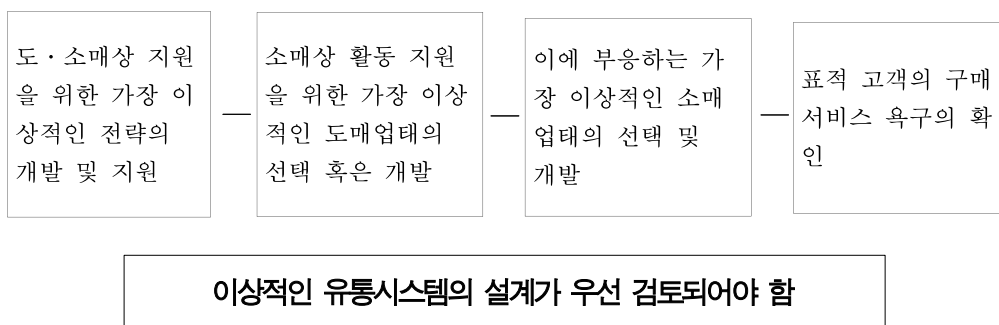
4) 자세한 내용은 오세조·박진용, 유통관리, 박영사, 2003을 참조할 것.

형된 형태이기는 하나 최종소비자 위주의 고객지향적인 접근이 시도되고 있는 상황임.

2) Zero-Base 접근방법(Zero-Base Approach)

- Zero-Base 접근은 고객지향적 접근 사고를 바탕으로 하면서 모든 전략 수립과 의사결정의 기초를 철저히 고객 가치의 극대화를 위한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접근하는 시각을 말함.⁶⁾ 예를 들어 어느 한 지역에 새로운 식료품 사업을 실시하여 한다면 기존 업태의 영업 및 분포현황을 우선 파악하고, 본인명의의 사업장을 신설할 것인지, 프랜차이즈 형태의 사업장을 신설할 것인지에 대한 고려와 함께 주변 경쟁상인의 판매 전략, 고객의 취향과 향후 소비자의 기호를 파악하여 이에 알맞는 메뉴의 개발 등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해야 할 것임. Zero-Base 접근의 근본취지는 고객의 새로운 욕구변화에 끊임없는 탐색과 그에 맞는 새로운 시각과 아이디어의 개발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임. 즉, 최종고객의 서비스 욕구를 확인하고, 유통경로에서 가장 알맞은 도·소매 업태의 선택 및 개발과 이를 위한 이상적인 전략개발 및 지원을 통하여 유통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을 의미함(<그림 2-2> 참조). 이는 다음의 시스템적 접근과 연결되어짐.

<그림 2-2> Zero-Base 접근 흐름도



6) 오세용, 박진용, 상계서, p.7.

- 수산물 유통에 있어 Zero-Base 접근 형태는 우선 대규모 할인점 또는 신업태의 등장으로 인하여 이러한 시각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 그동안 수산물 유통은 정부의 인위적인 정책 배려하에 인구가 밀집된 내륙지에 소비지 도매시장을 중심을 개설하였으며, 이러한 소비지 도매시장이 수산물 유통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음. 그러나 새로운 형태의 대규모 할인점 등의 신업태는 주변 시장의 조사와 고객의 취향과 기호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새로운 접근 시각을 가지게 되었음. 새로운 신업태의 등장에 기존 소비지 도매시장 또한 고객의 구매서비스 욕구에 대응하여 도매 및 소매활동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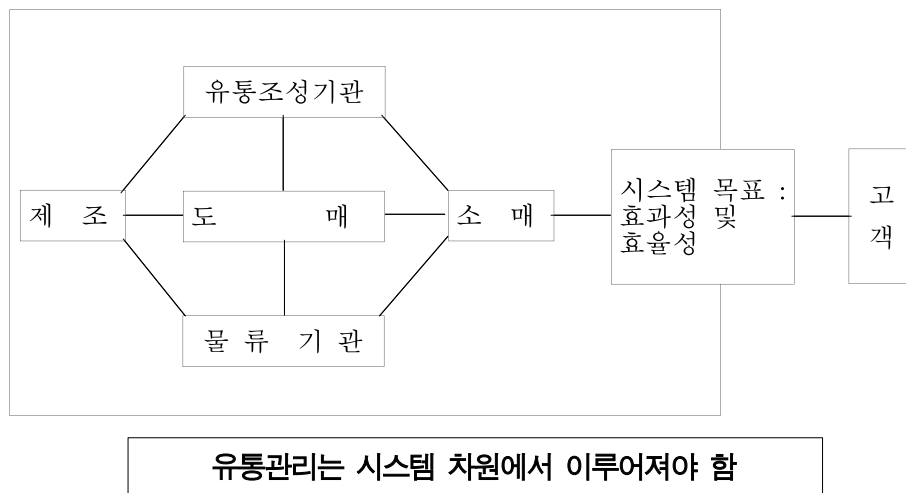
3) 상품유통 시스템적 접근방법(Systems Approach)

- 시스템적 접근은 고객의 가치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이에 부응하는 유통경로시스템의 가치를 극대화시켜야 하는 것을 의미함.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①유통경로구조(시스템)의 목표를 명확하게 정립하고 이를 위한 유통경로구성원들의 공동비전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②유통목표의 달성을 위한 시스템 전반의 유통계획 수립, 즉 유통경로구조의 설계와 경로구성원 조정체계의 설계가 우선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따른 실행 성과평가 방법도 미리 설정해 두어야 함. ③또한 유통경로리더를 중심으로 유통시스템 목표 달성을 위한 공유가치가 정립되어 규범화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며, ④경로구성원간의 역할 수행과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경로의사소통체계 및 유통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함(<그림 2-3> 참조).⁷⁾
- 이러한 시스템적 접근 방법 또한 수산물 유통에 있어 부족하였음. 즉, 유통경로에 있어 비전은 각 개별주체마다 달리 설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로구성원의 조정은 유통상인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의사결정 및 전달체계의 일부 단절 등의 현상으로 가격 및 유통정보가 차단되기도

7) 오세용, 박진용, 상계서, p.10.

하였음. 그러나 인터넷 및 정보화의 발전으로 인하여 원활한 의사소통과 가격 및 정보의 공유화가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최종소비자인 고객을 향한 시스템적 접근이 생산자 및 새로운 중간고객으로부터 시도되고 있는 상황임.

<그림 2-3> Systems Approach(시스템적 접근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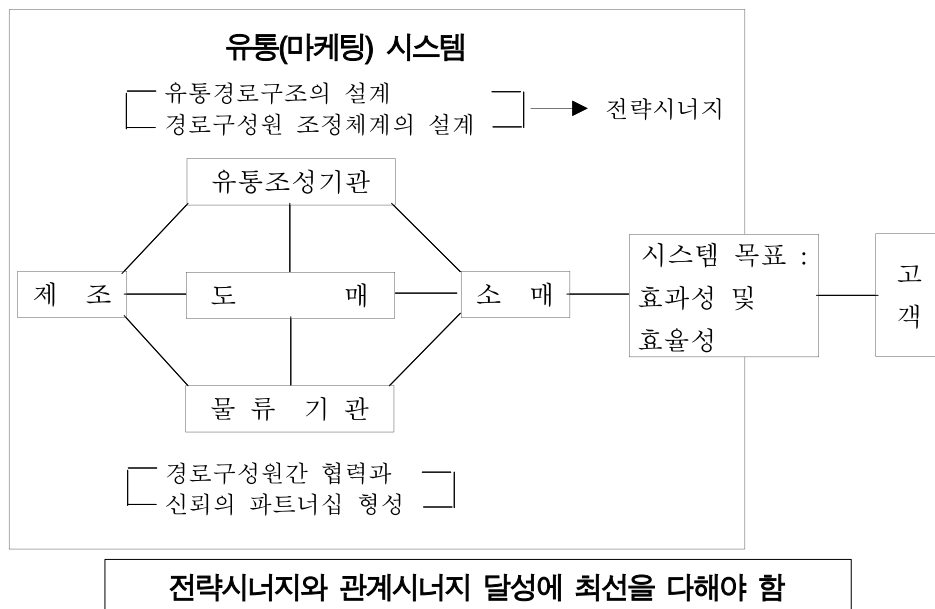
4) 시너지 중시 접근방법(Synergy Approach)

- 유통관리의 성패는 시스템차원의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으며, 시스템 경쟁력의 핵심요체는 유통전략 요소간의 결합상승효과(전략 시너지)와 경로구성원들간의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파트너십의 형성여부라 할 수 있음. 경로구성원들은 시스템 전체의 유통목표를 명확히 인식하고 이와 일관성 및 보완성이 있는 유통전략을 수립하여야 함.
- 유통전략은 유통경로구조의 설계와 경로구성원 조정체계의 설계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질 수 있음. 유통경로상 중요한 이슈 중 하나는 경로구성원간의 관계관리(relationship management)임. 유통경로는 한번 형성되면 변화시키기가 쉽지 않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특징을 가짐. 이에 경로 파트너의 선정이 유통관리에 있어 중요한 업무중의 하나가

되고 있는데, 한번 형성된 파트너와는 지속적인 협력과 신뢰관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그를 통해 불필요한 비용절감과 효과적인 전략수행의 이점을 얻어야 할 것임. 이러한 유통관리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유통시스템의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요소인 관계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음 (<그림 2-4> 참조).⁸⁾

- 시너지 접근 방법은 다른 부문의 유통과는 달리 대인대 대인의 관계가 보편적인 수산물 유통에 있어 접근 시각이 정착되기 쉬운 편이라 할 수 있음. 즉, 산지유통인과 도매시장의 유통상인간의 유대관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수산물 유통체계에 있어 그동안 수직적인 상하관계에서 수평적인 동등관계로 유통경로의 구성원 지위가 개선된다면, 시스템 전체의 유통목표를 공동으로 인식하고 일관성 및 보완성이 있는 유통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 효과적인 결과를 낼 것으로 기대됨.

<그림 2-4> Synergy Approach(시너지 접근 흐름도)



8) 오세용, 박진용, 상계서, pp.10~11.

5) 동태적 접근방법(Dynamic Approach)

- 동태적 접근은 고객의 변화욕구와 경쟁환경의 변화, 생산자 및 기업 내외의 모든 환경요소들의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적인 가치창출을 위하여 신중한 의사결정과 함께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함에 따라 이루어진 시각임.⁹⁾ 유통시스템의 경쟁력 우위는 경로구조상의 개선이든 경로조정상의 개선이든 간에 끊임없는 성과평가를 통하여 문제점을 개선시켜 나가야 하며,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향이 가격위주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든, 유통서비스의 개선에 두든 결과적으로는 고객만족의 증대를 위해서 궁극적으로 유통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동태적 접근은 고객의 욕구변화를 미리 감지하여 유통전략을 끊임없이 조정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시스템경쟁력의 확보에 필수 불가결한 것임.
- 수산물 유통에 있어서 그 동안의 접근시각은 정태적인 접근 시각이 우세하였음. 일반 유통부문에서 끊임없는 변화욕구와 외부의 경쟁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산자 및 기업 모두 가치창출과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유통경로의 개선을 추구하였으나, 수산부문에서는 수산물 유통이 가지는 특성으로 인하여 과거의 유통체계시스템을 고집하고, 수동적인 자세로 일관해왔음. 그러나 새로운 유통채널의 발견과 유통경로 주체간의 해묵은 갈등으로 문제점에 대한 개선의지가 강하고 고객지향적인 유통주체의 의식 변화 등으로 능동적인 입장에서 동태적 접근 시각에 대한 도입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6) 시장지향적 접근방법(Wheel of 5 Approach)

- 시장지향적 접근은 앞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접근사고 등이 항상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유통관리의 길잡이가 되어야 하는데, 이를 종합적으로 표현하면, 시장지향적 유통관리 사고 또는 이념이 됨.¹⁰⁾

9) 오세용, 박진용, 상계서, p.12.

- 수산물 유통에 있어서도 종합적인 시각으로 유통경로를 바라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 그 동안 일반 공산품 및 제조품의 유통보다 낙후된 수산물 유통경로를 새롭게 정비하고, 유통경로주체간의 공동 비전을 마련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수산물 유통의 선진화를 이루어야 할 것임. 고객지향적인 접근 시각을 시작으로 하여 유기적인 시스템의 구축과 변화하는 시대에 적극적인 자세를 통하여 최대한의 시너지를 창출함으로써 결국에는 수산물 유통의 발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익의 최대 수혜자가 유통경로를 구성하고 있는 각 주체임을 인식해야 할 것임.

2. 수산물 유통의 의의와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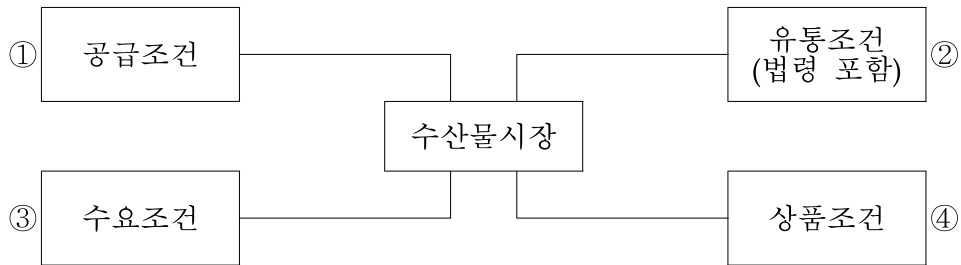
1) 수산물 유통의 기본적 시각

- 수산물 시장은 어업생산자가 생산한 수산물의 상품화 과정(가치실현과정)으로서의 의의를 가지면서 사회·경제적으로는 수산물이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총체적인 의의를 지니고 있음. 따라서, 수산물 시장을 규정하는 요인으로는 ①공급조건, ②유통조건(관련 법령 등도 포함), ③수요조건, ④상품조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볼 수 있음.
- 여기서 말하는 공급조건이란 국내수급구조에서 국내 수산물 생산과 수입 수산물을 포함하여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수산물을 공급하는 것을 말하며, 유통조건이란 생산지에서 출발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수산물이 인도될 때까지 전단계에 필요한 법제도 및 유통경로 등 제반적인 조건을 의미함. 수요조건은 유통단계에서부터 최종소비자에 이르기까지 각 유통단계의 주체들이 필요로 하는 수산물의 양과 질을 포함한 것을 말하며, 상품조건은 유통단계에서 적정한 가격 및 제품을 질을 유지한 채 상품성을 가질 수 있는 수산물을 말함.¹¹⁾

10) 오세용, 박진용, 상계서, p.13.

- 이상과 같은 수산물 시장을 규정하는 요인은 과거에 비해 현재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검토가 절실하다고 할 수 있음. 한편, 현재 수산물 시장에 있어서의 유통조건 중 대표적인 관련법규로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예관한법령(이하 농안법이라 함)」이 있음.
- 이는 <그림 2-5>에서 알 수 있듯이 수산물 시장을 규정하는 하나의 측면에 지나지 않으나, 이것이 서두에서 언급한 수산물 시장의 기본개념을 기본적으로 조정 관리하는 관련 법령임에는 틀림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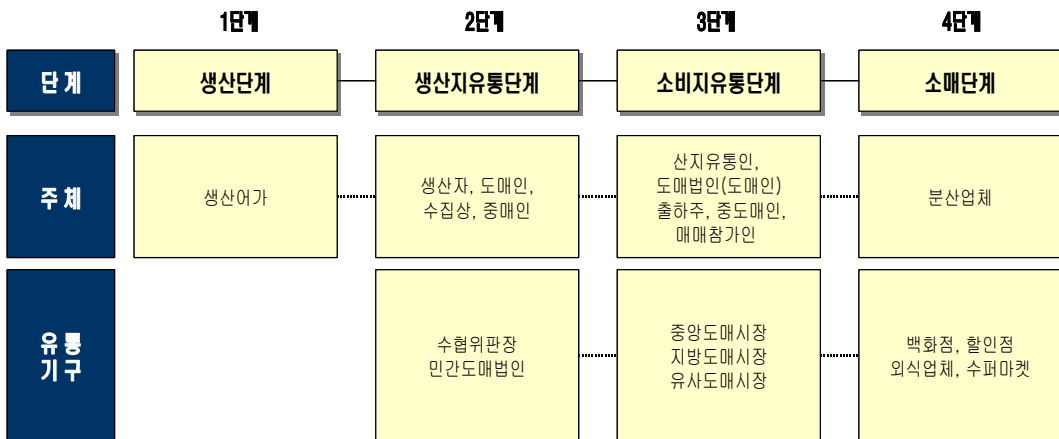
<그림 2-5> 수산물시장 유통을 규정하는 요인



- 따라서, 이러한 법규정 내용의 변화에 따라 수산물 시장은 엄청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임. 특히, 농안법은 농수산물 유통을 통합하는 법령으로 수산물 시장이라는 독립적인 영역을 농산물 유통의 하위개념 또는 일부분으로 다루어지고 있음. 이러한 수산물이 어장에서 생산되어 소비자의 식탁에 이르기까지는 어업별, 어류별(※어류, 패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해조류 등) 다양한 유통경로를 거치게 되는데, 이를 단순화 시켜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림 2-6>와 같음.

11) 자세한 내용은 장영수, 수산물유통론, 부경대학교 수산기업연구소, 1997을 참조할 것.

<그림 2-6> 수산물 유통의 기본단계



2) 수산물 유통의 의의

- 수산물 유통이란 수산물이 생산자인 어업인으로부터 최종 소비자의 손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경제 활동을 의미함. 그러므로, 수산물 유통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 첫째, 수산물이 어가에서 판매되었다고 수산물 유통활동이 끝나는 것은 아님. 어가는 소비자 또는 수요자가 원하는 수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생산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산물이 판매된 후에도 계속적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조직적인 경제 활동을 수행해야 함.
- 둘째, 수산물 유통은 어업인과 유통인과의 상호의존 관계에 있으며, 유통인들의 기능은 원칙적으로 어업인의 생산활동을 보완하여 주고 있음. 즉, 어업인은 유통인을 통하여 수산물을 판매함.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유통인은 소비자와 늘 접촉하므로 소비자의 기호를 잘 알게 되며, 이러한 소비자의 선호도 또는 소비형태를 어업인에게 전달하여 고품질의 수산물을 생산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함.
- 셋째, 수산물 유통은 서로 이해가 다른 모순되는 요구를 조화시켜 주어

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생산자는 보다 높은 가격을 받으려 하고, 소비자는 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매하려고 하며, 유통인은 보다 높은 이윤을 얻으려고 함. 이러한 서로 다른 이해를 조정하여 적절한 수준을 유지해 주는 기능이 수산물 유통이 담당한다고 할 수 있음. 즉, 생산자는 적절한 가격으로 생산비를 보장받고 소비자는 최대한의 편익을 얻는 조건하에서 구매할 수 있게 되며, 유통인도 적절한 이윤을 받도록 조절해 준다는 것임.

3) 수산물 유통의 특성

- 수산물 유통은 규격화되어 있고 저장성이 용이한 공산품 유통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신선식품의 원재료가 되는 농산물과도 다른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수산물 유통은 일반적으로 공산품이나 농산물(<표 2-2> 참조)과 다르게 다루어지고 있음.
- 그런데 유통기술의 발달과 냉장·냉동·가공기술의 발달로 원시적인 수산물 유통의 특성에는 약간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임. 우선 대형유통업체 및 소형의 복합적인 스토어 등의 전국적 네트워크 구축으로 신선수산물을 전국 어디서나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임. 다시 말하면 원어상태의 수산물을 좀더 넓은 의미로 수산식품이라는 개념으로 인식 전환이 있어야 할 시점이라는 것임. 수산물이 가지는 일반적인 특성을 몇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어업생산적 특성으로 수산물은 생산이 불확실하고 계절적으로 일시·다획되어, 가격 등락이 심하며, 소량·다품종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규격화·표준화가 어려움. 또한 해역별·양육지별 생산 품종 및 양육물량이 크게 달라 그들을 취급하는 유통구조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 대부분의 연안 어업인들은 생계형 소규모어업을 영위함으로써 이동성에 상당한 제약이 따름. 즉, 대형 소비지 직거래 유통이나 출하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약함. 따라서, 전국에 분포해 있는 크고 작은 산

지위판장은 산지 생산시설로서만 오래 동안 활용되어왔음. 그러나, 수산물 산지위판장은 어획 양륙된 수산물을 1차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일부 산지위판장은 취급물량, 취급금액, 상품종류 등에서 소비지 도매시장의 기능을 능가하고 있음. 이러한 위판장을 산지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으로의 역할 전환논의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음.

<표 2-2> 수산물 유통과 농산물 유통의 차이

구 분	수산물 유통	농산물 유통
생산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황여건에 따라 생산불확실, 계획 불가 ○ 생산국지성, 계절성, 주기성, 부패성이 강함 ○ 일시다확성, 미확특성이 병존함 ○ 생산은 무주물 포획, 채취와 양식으로 구분 ○ 소자본 최소인력으로 고부가가치 가능 (생산단계 투기심리가 생산동기 유발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기영향이 적고 파종면적에 따라 계획생산 ○ 농업기술발달로 생산이 주년화됨 ○ 생산량 증대에 한계가 있음. ○ 생산형태상 파종→수확으로 구분 ○ 한정된 부가가치 창출(계획 생산가능)
산지 유통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형태 다양으로 일괄 유통체제 곤란 ○ 공동 출하가 거의 없고 상인 개별 출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어: 수집상인 물량 수집 도매시장 출하 - 선어, 패류: 산지중·도매인, 객주 도매출하 - 원양냉동물: 선사, 1차업자 등이 도매출하 ○ 포장의 규격화, 표준화 부진 ○ 산지부터 품목별 특수유통시설이 요구됨 ○ 산지 1차 경매를 실시함 ○ 산지유통단계에서 상업자본이 철저히 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별유통 형태가 거의 유사함 ○ 대부분 물량 생산자 도매시장 직출하 ○ 일부 수집상 산지수집 도매시장출하 ○ 작목반 등 공동 출하가 진전됨. ○ 과일: 규격화 포장 상태 양호 ○ 채소: 규격화 포장 부진 ○ 일반적으로 상온 운반유통이 가능함 ○ 산지유통단계에서 상업자본의 개입이 거의 없음(일부 수집상 자본 개입)
도매 유통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자 출하가 거의 없음 ○ 대개 출하자가 상품만 도매시장에 출하 ○ 소수 주재화주만 도매시장 매매에 참여, 시장 교섭력 저하 ○ 고급활어를 제외한 전 품목이 경매실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자 직출하, 수집상출하 ○ 출하자가 직접 도매시장 매매 과정에 입회로 시장교섭력이 높음 ○ 과일경매는 정착된 상태, 일부 채소 거래만이 형식 경매됨, 기록상장 지적 초래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지시장은 수산업협동조합법이 적용되며, 도매시장은 농안법이 적용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안법 적용

- 둘째, 수산물의 생화학적 특성과 유통구조적 특성을 들 수 있음. 수산물은 농산물과는 달리 부패 변질성이 강하여 저장성이 약하며 유통과정에서 감모·폐기가 많이 발생하므로, 대량신속 거래가 요구되지만, 다수의 소량 생산자로부터 다수의 소량 소비자로 전달되는 수집과 분산과정이 품목별로 다양하고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농산물에 비해 시·공간적 차이에 따라 가치변동이 크므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특수 유통시설 및 유통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함.
 - 특히, 생산정보의 독점 및 정보공유의 미흡, 품목별 물량부족, 구색 갖추기 등을 위해 대규모 도매시장(가락동시장, 노량진시장 등)으로 1차 출하된 후, 다시 지방의 중소 도매시장으로 재배송되어 유통비용을 증대시키는 요인이 됨.
 - 또한, 품목별로 유통과정이 전문화되어 있고, 산지에서 소비지에 이르는 유통주체들간 물량·가격·자금 등의 연계가 오랜 관행으로 형성되어 있어 부정적 유통의 원인이 되고 있음.
- 셋째, 우리나라 수산물 소비자의 소비측면의 특성을 들 수 있음. 우리나라의 수산물 소비는 활선어 중심의 소비형태로 냉동수산물 또는 가공수산물 중심으로 소비하는 서구와는 다른 유통구조를 가짐. 뿐만 아니라 고급일식집의 전국 확산과 함께 대중 생선횃집의 증가로 활어 및 고급선어의 유통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유통구조에 대한 변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상과 같은 특성으로 말미암아 수산물 유통은 공산품 또는 농축산물 유통과는 몇 가지로 다르게 접근되어야 함.
 - 첫째, 법·제도적 측면에서 농축산물이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 유통단계에서 단일의 농안법을 적용받는 데 반하여, 수산물의 경우, 생산지인 산지위판장의 유통단계는 수산업협동조합법을 그리고 소비지도매시장에서는 농안법을 적용받는 1물 2법 체계의 이중구조로 지니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특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함. 즉, 현 농안법

에서와 같이 일률적인 법·제도적 접근은 산지에서의 소량거래위주 및 지역적 특성에 의한 일부 생산물만의 제한적인 유통의 특징과 다양한 품목이 다양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소비지 유통이 이루어지는 특성이 다른 수산물 유통에 있어서 유통의 단절현상을 부추기게 될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법·제도와 현실과의 괴리속에 불법행위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 둘째, 거래제도 측면에서 생산의 국지성과 계절성, 생산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계획생산이 불가능한 점, 그리고 부패성이 강한 수산물만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하여 유통과정에서 다수의 소량 품목의 유통과 일괄 유통을 하기에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음. 이러한 수산물의 고유한 특성과 수산물 유통만의 특성을 감안한 현실적인 법·제도적 정비 를 통하여 원활한 수산물 유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4) 수산물 유통행정의 이념

- 수산물 유통행정의 이념은 ①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② ‘저비용과 고효율 구조를 확립’하고, ③ ‘유통과정 참여자(소비자, 생산자, 유통인)의 최대 편익 달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념을 능률적(efficiency)이고 효과적(effectiveness)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산물이 생산, 수집 및 분산되고, 몇 단계의 거래(산지에서의 거래, 소비지에서의 거래, 소매거래 등)를 거쳐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유통과정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확립되어야 함.
- 이 시스템은 변화하지 않는 절대불변의 진리로서 수산물 유통시스템이 아니라, 시스템 안과 밖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변화를 수용하여 언제나 최적의 시스템으로 작동하고자 하는 유기체로서 수산물 유통 시스템을 전제로 하여야 함. 따라서 행정주체인 수산유통 행정 담당자는 수산물 유통시스템이 항상 최적의 시스템을 유지하고 작동할 수

있도록 주시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수산물 유통행정의 이념을 달성하고자 노력하여야 함.

- 그렇게 하기 위해 수산유통 행정 담당자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수산유통 현실을 감시하여 현실과 기존의 제도적 장치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순을 사전에 감지하고, 발생한 모순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최적대안을 준비하고 있어야 함
- 그런데 미래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님. 수산물 유통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많은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조사하고 분석하여 제도적 모순을 개선하고자 하고 있으나, 여전히 수산물 유통현장에서는 많은 모순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3. 수산물 유통시스템과 구조

1) 수산물 유통시스템과 환경적 요인

- 수산물 유통시스템이란 수산물 시장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에 영향을 미치면서 상호 작용하는 기관들의 집합을 의미함. 이는 설계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능률적이며 유익한 수단으로서의 통합 조정된 조직으로, 단편적인 유통 제도와 활동이 아닌 통합적 시스템임.
- 수산물 유통을 시스템적 접근방법으로 분석할 경우 수산물 유통시스템은 유통기구, 유통경로, 물적유통 시스템, 어항, 수산물유통정보시스템 등의 하위시스템으로 구성됨. 또한, 이들 하위시스템을 기능별로 구분하면 유통기구와 유통경로는 「상적유통기능」을, 물적유통 시스템은 「물적유통기능」을, 어항과 수산물 유통시스템은 「유통조성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하위시스템들은 상호의존적이며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서 어

는 한 부분이라도 그 기능을 상실할 때에는 수산물 유통시스템 전체의 기능이 마비되는 상황을 맞게 되기도 하는데, 수산물 유통의 각 특정부분에 참가하는 개별 참가자에게 있어서 최선의 결과가 수산물 유통의 전체의 효율적 운용측면에서는 사회 전체적으로 비효율을 얻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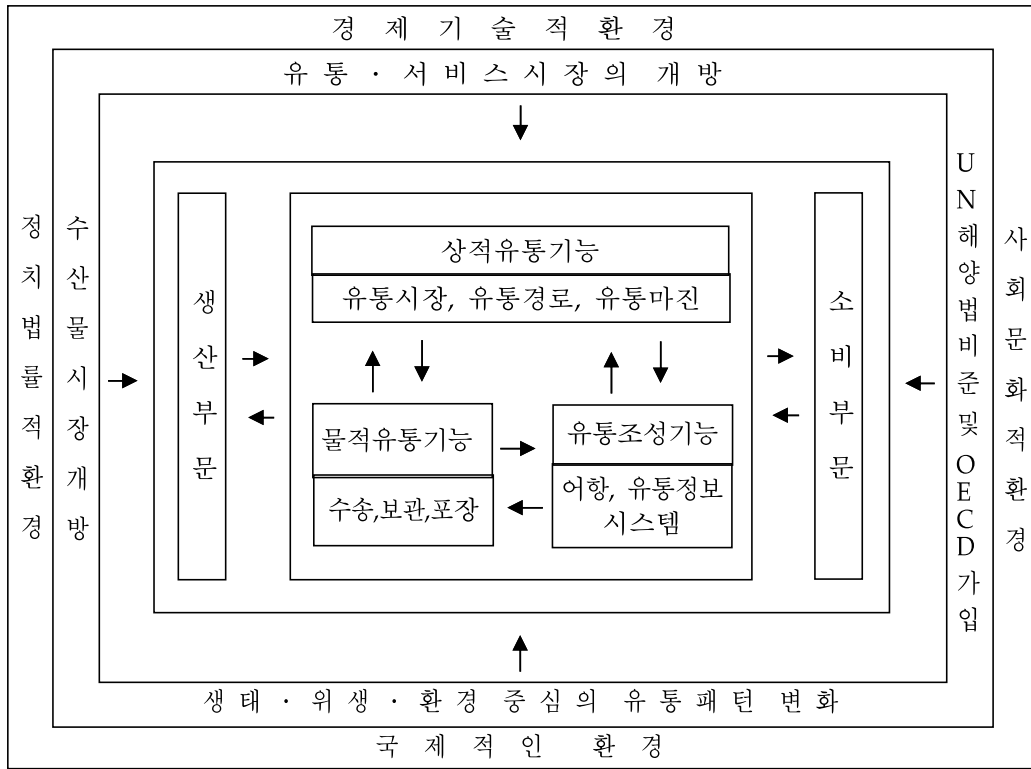
- 즉, 수산물 유통시스템의 전체적인 목표 지향성과 하위시스템을 구성하는 각 부분의 상호작용이 고려되지 않고서는 부분적인 개선에 머무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임. 또한, 유통 능률면에서는 모든 유통활동의 수행을 최소비용으로 하는 경우와 새로운 활동이 있는 경우에 그 활동으로 인해 얻는 편익이 비용보다 큰 경우에 채택 가능하게 됨.
- 한편, 모든 유통시스템에는 그 시스템의 행위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라는 또 다른 시스템이 존재하게 되는데, 유통환경이란 조직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만 조직으로부터는 상대적으로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일종의 영향요인(forces)이나 제도를 말함.
- 이러한 환경들은 조직의 유통 기회와 유통 활동에 대한 제약요인(constraints)을 규정지어 주는 것이므로 조직이 유통활동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항상 끊임없이 동태적으로 변화하는 유통환경의 움직임을 분석, 파악하고 이에 유통활동이 적응하도록 해야 함. 마찬가지로 수산물유통시스템도 외부환경적 제약요인 속에서 개발, 운영, 평가되는 것이며, 이 외부환경은 끊임없는 변화를 거듭하고 있음.
- 따라서, 수산물 유통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용여부는 이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환경의 검토를 통해 진단할 수 있게 됨. 구체적으로, 수산물유통시스템 운영의 성공여부는 ①외부환경 요소의 변화에 반응하며, ②환경변화의 방향과 강도를 예측하고, ③외부환경에 적응함에 있어 통제 가능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음.
- 수산물 유통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을 설정하면 거시적 환경요인으로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음. 첫째, 경제·기

술적 환경요인으로서 물가상승률, 경제성장, 소득수준, 민간 소비지출, 식료품, 소비지출형태, 수산물가공 및 포장기술수준, 냉동·냉장기술 발달정도, 수산양식 및 어업기술수준 등이 있고, 둘째, 사회·문화적 환경요인으로서 인구통계, 가구수, 소비패턴, 소비자의 주권의식강화, 교통의 발달, 식료품 구매실태 등이 있으며, 셋째, 정치·법률적 환경요인으로는 유통관련법규, 농수산 관련세법, 유통정책 및 유통조성 사업기구 확대, 수산물 수출과 관련한 각국의 위생규정 등을 들 수 있음. 넷째, 국제적인 환경요인으로서 WTO를 중심으로 한 무역자유화, 세계 각국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 선포 및 국제기구의 수산관련기능의 강화, 수산자원의 민족주의와 자국수산자원의 보호주의 강화 등이 포함됨.

- <그림 2-7>는 거시적 환경과 수산물 유통의 각 기능이 상호 작용하는 가운데 수산물 유통환경변화의 주요한 동인이 되는 요인을 3가지로 추출하여 나타낸 것으로 우리나라 수산물유통시스템과 환경요인에 대한 상호작용을 모델로 설정하고 있음.
- 여기서 수산물 유통시스템은 유통시장(유통기구, 유통경로 등 상적유통기능의 수행과 관련된 부문)과 물적유통기능, 유통조성기능(어항, 수산물유통정보시스템) 등으로 설정하였고, 이들은 상호간에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유통환경변화(여기서는 3가지 요인)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¹²⁾

12) 자세한 내용은, 황진욱, 환경적응적 수산물 유통시스템에 관한 연구(1998), pp. 24-3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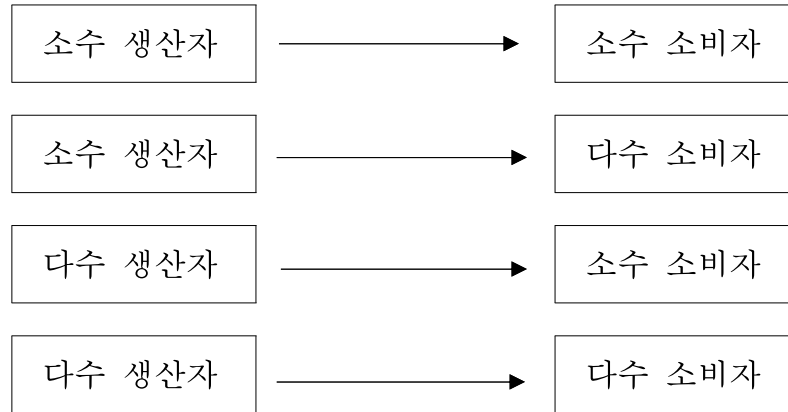
<그림 2-7> 수산물 유통시스템을 둘러싼 환경



2) 수산물의 일반적 유통경로

- 유통경로란 일반적으로 상품 또는 그 소유권을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이전시키기 위해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담당하는 제기관의 결합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음. 이와 같은 유통경로는 생산자의 생산행위로부터 최종소비자의 이용이라는 방향성을 가지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단계를 상징할 수 있다는 것임. 상품의 유통을 생산과 소비과정의 주체를 중심으로 파악할 때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첫째, 소수의 생산자로부터 소수의 소비자로 흐르는 유형, 둘째, 소수의 생산자로부터 다수의 소비자로 흐르는 유형, 셋째, 다수의 생산자로부터 소수의 소비자로 흐르는 유형, 넷째, 다수의 생산자로부터 다수의 소비자로 흐르는 유형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그림 2-8> 참조).

<그림 2-8> 상품의 일반적 유통경로



- 우리나라의 수산물 유통은 대부분의 경우 첫 번째 유형과 네 번째 유형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상품은 일반적으로 광범위하고 복잡한 수집, 반출, 분산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많은 유통경로를 통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그런데, 현실적으로 연근해 수산물과 원양 수산물, 수입수산물의 유통경로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또 연근해 수산물의 경우에 있어서도 도매시장을 통한 유통경로와 수협계통을 통한 유통경로가 서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 특히 1997년 9월 1일자로 시행된 수산물 자유판매제 도입에 따라 수산물 유통경로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음.
- 한편, 국내 수산물의 대부분이 유통되고 있는 유통기관을 살펴보면 산지에서 수집작용과 출하작용은 생산지 출하단체인 수협(산지중도매인 포함)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비지에 분산시키기 위한 중계역할은 중계시장(central markets)이 수행함. 현재 한국에서 중계시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형태로서는 도매시장, 수협공판장, 유사도매시장으로 나누어짐. 이러한 중계시장은 교통의 중심지에 위치하는 대규모 도시에 집중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재화의 물적 유통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가격형성이나 거래를 취재하는데 있어서도 중심이 되는 것임. 그리고, 중

계시장에서부터 분산하는 과정이 시작되며 수산물의 분할 출하를 보게 되는 것임.

- 따라서 산지 수협공판장에서 중계시장을 통하는 유통경로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산지수협의 판매사업의 방법에는 수협이 조합원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조합의 책임하에 판매하는 위탁판매와 조합원으로부터 구매하여 조합자체의 책임으로서 자유로이 판매하는 매상판매의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방법임. 그러나, 산지 수협에서는 주로 위탁판매를 위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가격결정은 중매인의 경쟁수단에 의존하고 있음. 산지수협의 경매에 참가하는 중매인은 수집상이나 유사도매시장의 도매상, 대형유통업체 등의 주문에 의하여 경매에 참가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의 책임하에 수산물을 주문하여 판매하기도 함.
- 산지의 중매인 또는 수집상이 구입한 수산물은 소비지 도매시장에 반입되어 중도매인에 판매위탁하는 경우와 유사도매시장의 도매상에 판매하는 경로 등이 있음. 산지의 중매인과 수집상인은 소비지의 도매상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개별적 판매형식에 의해 전매하며, 수집상과 도매상은 단일체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 이 유형은 매매방식도 사실상 매매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 판매와 다를 바 없음. 이와 같이 내륙지 도매시장이나 수협공판장을 거치지 않고 유사도매시장을 개입시켜 이용하는 이유는 매매가 신속하고 간편하기 때문임.
- 소비지의 수협공판장이라 함은 수협중앙회가 수산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개설,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산지 위판장과 소비지의 공판장을 직결시켜 유통경로를 계열화시킴으로써 어가 안정과 수급조절의 효과를 얻고자 하는 도매시장이라고 할 수 있음. 산지 수협공판장에서 경매방법에 의하여 중매인에게 판매된 수산물이 소비지 수협공판장에 상장되어 중매인에게 경매되고 경락된 수산물은 직매장, 슈퍼마켓, 소매상에게 판매됨. 그리고, 생산자가 내륙지 공판장에 직출하하는 경우도 있으며

산지수협이 수매하여 직매장에 공급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로도 있음.

- 그런데 수산물 유통경로는 이상과 같은 유통기관이라는 측면에서 본 수산물 유통경로 외에도, 어업별(연근해어업, 원양어업) 또는 품목(선어류, 활어, 패류 등)의 종류에 따라 유통경로는 서로 상이하게 나타남.¹³⁾

3) 수산물 산지시장의 기능

- 수산물 시장은 전술한 바와 같이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음. 여기서는 논의를 단순화하기 위해 생산자와 유통의 출발점인 산지시장(위판장)과 수산물 유통의 종국자인 소비자와 접점인 소비지 시장으로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여 살펴보기로 함.
- 수산물 산지시장은 “어업생산지에서 어선이 접안할 수 있는 어항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어획물의 양륙과 양륙된 수산물의 1차적인 가격형성이 이루어지는 시장”을 의미함. 이러한 산지시장은 농업에서는 볼 수 없는 특수시장이며, 연근해 특히 연안어업은 소규모 어업자들이 비교적 넓은 지역에서 소량다품종의 수산물을 생산함. 따라서 선도를 중요시하는 수산물의 경우, 신속한 수집과 출하를 통한 상품성의 유지, 물류비용의 절감, 1차적 가격형성을 통한 합리적 가격의 설정을 위해 산지시장이 존재함.
- 산지시장은 어업자(생산자), 수협, 중매인, 수집상, 가공업자, 물류업자의 6주체의 의해 구성되며, 위판장을 중심으로 유통되는 계통출하와 비계통출하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수협을 중심으로 하는 제도권시장 즉, 계통출하를 중심으로 산지시장을 보면 2가지 기본형태가 있음. ① 수협위판장과 ②산지시장과 소비지시장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부산공

13) 우리나라 수산물의 어업별 또는 류별 유통경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본 보고서 제3장에서 검토함.

동어시장과 같은 산지도매시장이 있음. 산지시장의 경우 수협이 개설하는 위판장(수협의 판매사업)이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생산자(또는 그들의 자발적 공동체)의 직거래와 생산자와 수집상을 연결하는 유통경로 등도 존재함.

- 따라서, 개념상으로는 반드시 수협이 중심이 되어야 할 이유는 없는데,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현실적으로 수협이 산지시장의 중심이 되고 있음. 첫째, 우리나라의 경우 생산자 직거래나 수집상은 영세성으로 인해 유통업자에 종속되기 쉽기 때문에 기존의 조직(수협)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둘째, 산지의 소규모, 영세한 수협의 위판장은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능력이 현저히 떨어지지만, 금융사업과 구매사업 등의 기타 수협의 사업이 생산(자)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산지시장의 기능은 수협의 판매사업기능과 도매시장기능을 동시에 가지는 특수한 성격의 시장이라고 할 수 있음. 수협 판매사업의 기능은 ①어획물의 적정가격의 실현, ②수급조절, ③유통비용의 절감, ④어획물 부가가치의 제고로 구분할 수 있으며, 도매시장의 기능은 ①가격형성기능(산지에서 1차적 가격형성), ②수급조절기능(넓은 범위, 다수 어종에 걸침), ③정보전달기능(가격 및 수급정보, 산지와 소매의 중계), ④금융기능(신속한 환금성이 중요시되는 어업생산에서는 특히 결재)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이처럼 위판장은 가격형성과 수급조절의 측면에서 도매시장과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음. 그러나 판매사업의 비용절감과 부가가치 제고 등은 시장기능과는 별도로 강조되어야 하는 점이며, 산지수협에서 생산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할 별도의 서비스 영역임. 수협의 판매사업은 도매시장 기능과는 구분되는 것으로, 영어자금 등과 같이 생산과 유통이 연계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업임. 이와 같이 위판장이 소규모이

기는 하지만 사실상 도매시장으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은 제약요인임과 동시에 장점이기도 함. 그러나, 위판장이 물량집적 능력이 취약해 도매시장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지 못하고, 소규모의 영세한 위판장이 많다는 점, 판매사업을 통한 공동출하의 잠정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이 발전을 위한 걸림돌임.

- 또한, 산지시장은 단순한 생산자에 대한 거래대행기능과 수집, 출하기능만으로 수산물의 유통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에는 효율적이지 못함. 따라서 생산자단체인 수협이 판매사업기능의 확대, 즉 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함과 동시에 도매시장으로서 물량집적을 통해 가격교섭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필요함.

4) 수산물 소비지시장의 기능

- 수산물 도매시장의 존재가치는 사회적 유통경비의 절감 즉, “소규모 분산적인 생산과 소비간의 질적·양적 모순을 조절하고, 대량거래에 의하여 유통비용을 절감하는 것임. 보통 거래총수 최소화의 원리나 대량준비의 원리가 이에 해당되는데, 현대적 의미의 도매시장의 존재가치를 단순한 유통경비의 절감만으로 평가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음. 적절한 가격의 실현, 기준가격의 제시, 정보의 제공, 수급조절, 가공, 배송과 같은 기타 서비스의 제공 등 도매시장에 요구되는 기능은 점점 다양해지고 있음. 따라서, 도매시장의 존재가치는 도매시장에 생선식료품의 사회적 수요와 공급을 집적하여, 그 회합에 의한 공정하고 안정적인 가격형성을 통해 원활한 상적, 물적 및 정보유통을 확보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임.
- 이러한 도매시장의 목표달성을 위한 필요 불가결한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음. 첫째, 수탁집하를 원칙으로 하고, 수탁거부를 금지하며, 둘째, 출하된 위탁물품은 당일 상장판매를 원칙으로 하고, 셋째, 판매는 경매 또는 입찰에 의한 방법을 원칙으로 하며, 넷째, 도매대금의 결제는 당

일 현금결제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다섯째, 정보공개를 원칙으로 함하며, 여섯째, 도매시장에서는 차별적 취급 금지를 원칙으로 함.

- 전국 각지의 산지에서 생산되어 상품화되는 수산물은 생산자 스스로 혹은 수협 위판장 등을 통해 도매시장에 출하되어,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거래가 일어남. 이와 같이 저장성, 규격성이 떨어지는 다종다양한 수산물을 취급하는 도매시장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구비할 필요가 있음.
 - 첫째, 도매시장은 생선식료품의 도매를 수행하는 장소임. 즉 일반 소비자가 아닌 소매점이나 음식점을 대상으로 도매를 하는 장(場)이며, 둘째, 다수의 출하자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도매법인과 다수의 매수자들 간에 공개적이고 통일된 운영원칙 하에서 거래가 이루어짐. 셋째, 경매장소, 주차장 기타 생선식료품의 거래 및 진열에 필요한 시설을 가짐. 도매시장이라는 것은 단순히 경매장 또는 창고가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물품의 반입, 분산, 반출 등 시장내의 물류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시설이 조정되어 있을 필요가 있으며, 넷째, 수산물의 상품특성 및 소비자의 구매습관 등에 근거하여 매일 계속해서 개장될 필요가 있음.
- 이와 같은 요건을 구비한 도매시장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함. 첫째, 효율적인 집산과 분산 기능으로 이 기능은 도매시장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기능임. 이는 다종다양한 상품을 집하하는 상품구색 기능과 이것을 소매업자 등의 구매자에게 공정한 가격으로 분산하는 기능임. 둘째, 공정하고 투명한 가격형성기능을 들 수 있음. 도매시장에서는 ①출하자와 도매법인간의 거래, ②도매법인과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자간의 거래, ③중도매인과 구매자간의 거래가 있음. 이 중 ②에서 형성되는 가격이 도매시장의 거래가격이며, 도매시장외의 타 거래에 있어 가격기준이 됨. 셋째, 투명한 대금결제기능을 들 수 있음. 당일 현금결제주의는 판매대금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지불함으로써 외상이나 전대금 때문에 돈을 떼일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출하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함.

또한 자금회전을 빠르게 해서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함으로써 중간 유통경비를 절감하는 기능을 함. 넷째, 정보수발신기능을 들 수 있음. 도매시장은 거래된 수산물의 수급 및 가격 등에 관한 정보를 처리·분석·제공함. 이를 통해 생산자와 구매자를 연결하고, 생산·유통·소비의 원활화 및 효율화를 위한 정보센터의 기능을 담당함.

- 수산물 도매시장은 이상과 같은 네 가지 중심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기능을 균형 있게 일체화하기 위해서는 누가 주체가 되는 지와 주체간의 역할 분담이 중요함.
 - 첫째, 도매법인은 거래의 중심적인 기능을 담당함. 도매법인은 ①수산물의 도매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지닐 것, ②수급예측에 근거해서 안정적인 집하 및 판매를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자본력과 신용을 가질 것, ③생산·출하자 및 구매자 쌍방이 납득할 수 있는 가격형성의 노하우를 지닐 것, ④효율적인 집하·배분이 가능하며 정보처리능력을 가질 것 등의 요건을 구비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중도매인은 물품의 평가, 조제·가공, 신용의 부여, 배송 등의 기능을 담당함. 도매시장의 중요한 기능인 가격의 정확한 평가와 효율적인 분산, 가공, 배송 등을 위해서 중도매인의 존재는 불가결함. 그래서 중도매인은 건전한 경영,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적정수를 정하여야 함. 이렇게 함으로써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형성이 적절히 수행되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셋째, 매매참가자는 중도매인과 함께 도매법인과의 거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업자이며, 일반소매업자, 대형소매업자, 음식업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들의 존재의의는 독선적인 운영에 빠지기 쉬운 도매법인과 중도매인에 대한 견제효과를 발휘하는 기능을 수행함.

제3장 우리나라의 수산물 유통현황과 구조

제1절 우리나라의 수산물 유통 현황

제2절 수산물 시장별 시설현황과 거래제도

제1절 우리나라의 수산물 유통현황

- 이 절에서는 수산물 유통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수산물 유통을 둘러싼 과거-현재-미래에 대한 변화를 분석하고자 함. 우선, 수산물 수급현황과 관련하여 수산물 수급구조, 생산구조, 수입구조, 소비구조, 가격구조 등과 품목별 유통경로 및 가격형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다음으로 산지 및 소비지 도매시장의 시설 현황 및 거래물량 등을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 수산물 유통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함.

1.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급구조와 특징

- 자원 감소로 인한 연근해 생산량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수산물 등 수입수산물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2002년 기준 우리나라의 수산물 총 공급량은 전년도에 비하여 7.3% 증가한 5,343천 톤으로 나타났다. 국내 생산은 1986년 3,660천 톤을 정점으로 지속적인 하락추세를 나타냈으나, 국내 소비량은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어 2002년에는 1980년에 비하여 약 2배 가까운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
- 2002년 기준, 국내생산량은 국내소비량의 80% 수준에 머물며, 국내 수급에 필요한 수산물을 수입수산물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생산과 소비구조에 따라 국내 수산물 유통에 있어서도 위관물량의 감소와 이로 인한 도매시장의 거래량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음.

<표 3-1> 국내 수산물의 수급동향

(단위 : 천 M/T, %)

구 분	연 도	1980	1990	1996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P)
	수 요	국내소비	1,746	2,583	3,202	2,394	2,746	2,668	3,260	3,433
수 출(A)		696	1,058	1,191	1,354	1,232	1,338	1,080	1,140	1,197
이 월		77	290	427	319	582	510	641	770	918
A/C(%)		27.6	26.9	24.7	33.3	27.0	29.6	21.6	21.3	21.9
계(C)		2,519	3,931	4,820	4,067	4,560	4,516	4,981	5,343	5,461
공 급	국내생산	2,410	3,275	3,244	2,834	2,909	2,514	2,665	2,476	2,675
	수 입(B)	41	380	1,205	753	1,332	1,420	1,806	2,226	2,016
	재 고	68	276	371	480	319	582	510	641	770
	B/C(%)	1.6	9.7	25.0	18.5	29.2	31.4	36.2	41.6	36.9

주 : 2003년도는 추정치임.

자료 : 해양수산부, 수산업 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각 년도., 수산행정기본자료, 2003.

-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어업부분별로 살펴보면(<표 3-2> 참조), 국내 총 생산량의 감소와 더불어 일반해면어업을 비롯하여 전반적인 어업생산량이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표 3-2> 어업부문별 수산물 생산량 추이

(단위 : 천M/T)

연도	총계		원양어업		일반해면		양식어업		내수면어업	
	생산량	생산액	생산량	생산액	생산량	생산액	생산량	생산액	생산량	생산액
1980	2,410	8,406	458	2,190	1,372	4,737	541	1,083	39	396
1990	3,274	28,270	925	8,204	1,524	14,959	773	4,199	34	908
1995	3,348	41,224	897	8,860	1,425	24,794	997	6,480	29	1,090
1996	3,244	44,215	715	9,178	1,624	27,351	875	6,433	30	1,253
1997	3,244	48,182	829	12,745	1,367	24,834	1,015	9,218	32	1,385
1999	2,910	44,439	791	12,178	1,336	22,800	765	8,319	18	1,141
2000	2,514	44,584	651	13,217	1,189	23,295	653	6,839	21	1,234
2001	2,665	45,118	739	12,231	1,252	24,683	656	7,171	18	1,033
2002	2,477	43,516	580	9,558	1,096	24,865	782	7,950	19	1,143

자료 : 해양수산부, 수산행정기본자료, 2003.

- 이중 일반해면어업의 생산비중은 1990년 총 생산량 중 46% 수준을 나타냈는데 비하여, 2002년에는 44% 수준을 나타내 해면어업의 비중이 다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양식어업은 1995년 1,015천 톤을 기점으로 생산량의 감소세는 지속되고 있으나,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1% 정도로 일정한 비중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어업별 생산구조에서도 국내 연안 수산물 생산량 감소가 수산물 유통의 근간이 되고 있는 산지위판장의 출하물량을 감소시켜, 전반적인 수산물 유통의 거래량을 감소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어종별 생산량 변화추세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표 3-3> 참조), 어류 생산량이 1980년대 중반까지 총생산의 약 6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그 비중이 점차 감소하여 2002년에는 약 48.5% 수준으로 하락하였음. 반면 해조류는 1997년을 정점으로 생산량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으나, 전체 수산물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2002년 기준)를 나타내고 있으며, 패류·연체동물의 경우도 23%대의 안정적인 생산구조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수산물 유통의 중심 품목인 어류의 생산감소 또한 수산물 유통량을 감소시키고 유통산업의 전반적인 침체를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연근해 생산물의 주요 품목별 생산추이를 살펴보면(<표 3-4> 참조), 1980년에는 생산량 순위가 쥐치, 멸치, 갈치, 명태, 고등어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이후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연근해 해양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2001년 주요 생산 품목은 오징어와 멸치 등으로 주요 생산 품목의 구성이 변화하게 되었음. 그동안 일반 서민이 주로 소비하던 대중선어의 연근해 생산감소는 러시아, 일본 등으로부터의 이들 수산물의 수입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표 3-3> 어종별 수산물 생산현황

(단위 : 천톤)

연도	계	어류	갑각류	패류·연체동물	해조류	기타
1980	2,410	1,498	53	524	317	18
1990	3,275	1,888	119	784	442	42
1995	3,348	1,695	120	827	671	35
1996	3,244	1,696	118	841	562	27
1997	3,244	1,550	112	877	671	34
1999	2,910	1,402	93	888	487	41
2000	2,514	1,280	83	728	388	35
2001	2,665	1,467	74	697	388	39
2002	2,476	1,202	73	666	508	27

자료 : 해양수산부, 수산행정기본자료, 2003.

<표 3-4> 연근해 어업 품목별 생산량

(단위 : 천톤, %)

연도	계	명태	갈치	조기	고등어	멸치	정어리	가자미	쥐치	오징어	기타
1980	1,440	96	120	49	63	170	38	19	229	48	608
1985	1,494	85	128	27	69	144	108	19	257	43	614
1990	1,542	27	104	43	97	168	133	13	230	75	652
1995	1,425	9	95	45	201	231	14	14	2	201	613
2000	1,189	1	81	27	146	201	2	15	3	226	487
2001	1,252	1	80	11	204	274	1	15	2	226	438
2002	1,096	1	60	14	142	236	1	14	1	227	400

자료 : 해양수산부, 수산행정기본자료, 2003.

- 해면 양식어업의 주요 어종별 생산량을 살펴보면(<표 3-5> 참조), 양식어류 중 넙치와 조피볼락이 전체 양식 어류 생산량의 88%(2002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어, 활어소비의 주요 품목이자 대표적인 활어 유통의

주요 품목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패류품목의 생산량은 굴(86%), 홍합(6.2%), 바지락(5%), 피조개(2.2%)의 나타나, 이들 품목이 수산물 유통시장에서 주요 거래품목임을 알 수 있고, 해조류 중 미역과 김의 생산이 각각 49%와 42%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나라 해조류의 대표적 생산품목이자 유통품목인 것으로 나타났음.

<표 3-5> 해면 양식어업 주요 어종별 생산량

(단위 : 천톤)

구 분	1990	1995	1998	1999	2000	2001	2002
합계	772,731	996,451	777,230	765,252	653,373	655,827	781,544
넙치	1,037	6,733	22,277	21,368	14,127	16,426	23,343
조피볼락	386	985	12,544	9,459	8,473	9,254	16,548
송어류	0	34	106	347	968	1,415	3,898
농어	391	193	940	797	605	873	2,006
참돔	228	25	146	176	412	641	960
대하	257	404	846	1,142	1,158	2,081	1,403
굴류	219,124	191,156	175,926	177,259	177,079	174,117	182,229
홍합	9,759	75,353	17,785	15,042	11,713	13,653	13,201
바지락	61,713	15,260	17,178	16,135	17,927	16,433	10,652
피조개	17,758	9,357	23,029	8,550	10,518	7,359	4,745
미역	269,333	386,819	239,742	213,706	212,429	175,490	242,135
김	97,637	192,960	191,578	205,706	130,488	167,909	209,995
다시마류	8,084	27,295	7,931	25,447	14,160	17,506	24,873
미더덕	11,523	3,675	5,650	11,292	13,889	15,084	5,266

자료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통계연보, 20003(<http://www.momaf.go.kr>), 통계청(<http://www.nso.go.kr>).

- 수산물 수입은 대중성 선어, 고급횃감용 활어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수입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이러한 수입수산물의 증가는 1997년 수산물 수입 전면 개방을 기점으로 하여, 이후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연근해 생산어종의 감소로 인한 이들 품목의 국내 수급을 대체하기 위해서임. 2002년 기준으로 볼 때 전년에 비하여 수입수산물은 59% 증가

한 1,186천 톤으로 나타났으며, 국내 수산물 총공급의 약 41%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표 3-6> 참조). 이러한 수입수산물의 증가는 기존의 수산물 유통과정과는 다른 형태를 가지는데, 수입업자에 의해 수입된 수산물은 기존 도매시장으로의 유통보다는 대형할인매장 등을 통한 직접 거래 또는 소매를 통한 거래의 형태를 지니고 있어, 향후 수입수산물의 증가가 국내 수산물 유통시장의 거래체계마저 변화시킬 가능성이 큼.

<표 3-6> 우리나라의 수산물 품목별 수입 추이

(단위 : 천톤, 백만달러, %)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2/2001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계	746	1,178	749	1,411	1,056	1,648	1,186	1,884	112.3	114.3
활어	25	73	35	119	43	132	50	152	115.4	115.4
신선·냉장	27	71	43	118	62	150	100	242	162.6	161.4
냉동	591	860	535	928	806	1,111	877	1,207	108.8	108.7
기타	103	175	136	246	145	255	159	283	109.5	110.8

자료 : 해양수산부, 수산물수출입통계연보, 각 년도.

- 우리나라 수산물의 주요 수입국으로는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베트남 등으로 이들 5개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전체 수산물 수입물량 중 76% 가량을 차지하는 가운데, 주요 수입품목으로는 조기, 명태, 갈치, 명란, 아귀 등 상위 5개 품목이 전체 수입품목 중 24%(물량 23%)를 차지하여 특정품목에 대한 수입비중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표 3-7> 참조).
- 이 중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주요 품목으로는 조기, 갈치, 꽃게, 낙지 등으로 이들 품목은 최근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자원의 감소로 인하여 어획량이 크게 줄고 있는 상황하에서 국내 수산물 공급을 대체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중국에서 수입하는 조기는 단일 품목으로 전체 수산물 수입금액 중 19%를 차지해 국내 조기시장이 중국산 수산물에 의해 매우 의존적인 구조를 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특정

국가의 특정품목에 대하여 해당 품목시장이 의존적이라는 문제는 안전적인 수급문제와 더불어 안전성 확보라는 중요한 문제도 연결될 수 있음.

<표 3-7> 우리나라의 상위 20개 품목 수입실적 현황(2002년 기준)

순위	품 목 명	중 량(kg)	금 액(us\$)
1	조기(냉동)	52,791,676	137,876,790
2	명태(냉동)	139,990,652	89,531,900
3	갈치(냉동)	46,383,813	81,070,378
4	명란(냉동/피레트,어육제외)	9,063,986	80,182,536
5	아귀(냉동)	24,687,576	69,986,086
6	기타연육(냉동)	62,418,854	64,817,897
7	꽃게(냉동)	20,464,991	61,925,219
8	기타새우와보리새우(냉동)	14,333,324	51,482,364
9	명태연육(냉동)	29,816,742	48,772,335
10	기타게(산것,신선,냉장)	12,128,586	41,772,071
11	낙지(냉동)	25,183,797	40,336,531
12	기타어류(신선,냉장)	16,759,378	39,118,291
13	고등어(냉동)	37,565,991	38,006,236
14	기타어류(냉동)	45,117,702	35,181,519
15	명태(신선,냉장)	17,253,724	33,832,415
16	새우살(새우와보리새우(냉동))	7,867,124	32,353,974
17	취치포(통조림외 조제품)	6,947,476	28,165,359
18	까나리(냉동)	126,107,075	28,048,224
19	뱀장어기타(앵귤라종(활어))	5,107,252	28,042,134
20	기타어류피레트(냉동)	8,994,110	27,993,085
상위 20개 품목의 수입량 및 수입금액(A)		708,983,829	1,058,495,344
전 수입품목에 대한 수입량 및 금액 평균(B)		1,186,400,312	1,884,416,834
(A/B)		59.8%	56.2%

주 : 해양수산부, 수산물수출입통계연보, 각 년도의 자료를 재구성.

2. 수산물의 산지·소비지 유통실태

- 전국의 234개 위판장 중 실질적인 위판기능을 가지고 있는 산지위판장의 계통 판매량을 살펴보면, 2002년 기준, 전국 위(공)판장을 통한 계통 판매는 1,338천 톤으로 어업생산량 1,892천 톤의 약 71%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연도별 계통판매비율을 살펴보면, 1990년 초반까지 연근해 어업생산량의 73.9% 계통판매비율은 1997년 강제상장제가 임의(자유)상장제로 전환된 후 62.5%로 그 비율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02년에는 70.8%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음(<표 3-8> 참조). 이러한 계통판매 출하비율이 변화된 이유는 임의상장제 도입 이후 생산자가 직접 중간상인과의 출하를 시도하는 비율이 증가하면서 산지위판장의 계통판매비율이 하락하였으나, 이후 어대금의 정산문제와 어업활동에 필요한 어업기자재의 외상구입의 어려움 등으로 기존의 수협 산지위판장을 이용하여 출하하는 비율이 높아졌음.

<표 3-8> 수산물 생산량 및 계통판매 현황

(단위 : M/T, 백만원, %)

연 도	물량			금액		
	어업생산량	위판량	비율	어업생산량	위판금액	비율
1990	2,314,744	1,711,438	73.9	1,915,812	1,318,196	68.8
1995	2,421,664	1,564,960	64.6	3,127,524	2,187,373	69.9
1996	2,498,632	1,711,736	68.5	3,378,401	2,404,055	71.1
1997	2,382,540	1,489,110	62.5	3,405,168	2,119,336	62.2
1998	2,084,967	1,370,341	65.7	3,239,139	2,023,295	62.5
1999	2,100,091	1,482,266	70.6	3,111,855	2,039,989	65.6
2000	1,873,422	1,368,394	73.0	3,028,149	2,077,640	68.6
2001	1,907,925	1,446,236	75.8	3,185,470	2,165,100	67.9
2002	1,892,318	1,338,966	70.8	3,395,835	2,396,749	70.6

주 : 어업생산량 부문은 연근해 및 양식생산입(원양제외).
 자료 : 해양수산부, 수산물 동향에 관한 연차 보고서, 2003.

- 이러한 계통판매현황을 연도별 월별로 살펴보면, 연근해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계통출하물량도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음. 다만, 계통출하비율은 2000년 이후 70%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계통판매비율을 유지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물량의 감소로 인하여 산지위판장의 기능이 점차 위축되어 가고 있음.
- 월별 계통판매현황을 살펴보면, 계통판매가 가장 높은 시기는 가을부터 12월 겨울철까지 약 3개월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음(10월, 12월, 11월 순으로 계통판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3개월 동안의 계통판매량은 전체계통판매의 약 38% 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를 겨울철인 1, 2월까지 확대한다면 전체 계통판매물량의 56%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겨울철이 어획생산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임과 동시에 수산물의 유통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기라는 것을 알 수 있음(<표 3-9> 참조).
- 지역별 산지위판장의 계통판매현황을 살펴보면, 2003년 기준, 경남, 부산, 전남 등 3개 지역이 전체 계통판매량 중 약 7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남해지역이 우리나라의 주요 연근해 생산기지이며, 산지위판기능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
- 각 지역의 계통판매량을 살펴보면 가장 계통판매활동이 높은 지역은 경남지역으로 총 373천 톤의 계통판매량을 나타내 전체 판매량 중 약 30% 가량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부산과 전남 지역이 각각 334천 톤, 276천 톤을 나타내었음. 경남, 부산, 전남 등 3개 지역의 계통판매비중은 1998년 7%보다 약 2% 정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반적인 연안환경오염과 자원감소의 영향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덜 미쳤고, 동해와 서해안의 어장축소와 자원감소의 영향으로 어업활동이 크게 위축한데 반하여, 남해지역에서는 어업강도를 높이는 등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어업활동이 활발하였기 때문임(<표 3-10> 참조).

<표 3-9> 연도별 월별 수산물계통판매고 현황¹⁴⁾

(단위 : 톤, 천원)

연도별 월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1	수량	115,568	150,115	137,463	120,615	143,717	126,459
	금액	146,368,427	183,688,362	186,015,522	159,248,768	209,462,555	179,638,459
2	수량	67,512	97,761	96,218	96,877	102,814	88,320
	금액	97,078,186	133,164,381	127,961,276	139,608,232	152,942,123	107,847,017
3	수량	89,289	124,398	121,989	136,214	138,363	105,410
	금액	128,456,994	148,883,694	146,603,291	166,244,241	170,062,428	135,472,850
4	수량	81,217	104,323	80,737	94,946	72,128	78,377
	금액	125,385,069	142,108,651	127,339,170	151,643,420	127,362,675	141,345,291
5	수량	79,392	81,487	62,379	69,403	57,835	51,413
	금액	127,212,940	137,127,954	137,776,827	150,278,123	128,498,217	139,698,190
6	수량	81,900	82,733	64,084	54,141	56,112	62,478
	금액	121,100,066	142,339,446	132,699,735	132,611,310	110,160,703	130,899,810
7	수량	126,890	99,864	67,407	85,253	68,181	73,147
	금액	154,440,249	127,861,985	119,806,769	155,463,610	140,247,713	126,450,811
8	수량	93,220	92,177	72,834	102,744	75,255	90,503
	금액	145,197,567	142,416,383	151,121,579	174,038,214	158,095,721	154,543,865
9	수량	143,332	105,068	90,196	131,822	106,844	90,858
	금액	221,550,470	175,994,512	179,771,248	234,407,340	228,630,605	188,000,886
10	수량	133,514	197,618	193,427	190,372	177,138	168,211
	금액	210,597,403	280,804,863	295,406,093	266,461,717	290,319,911	285,235,459
11	수량	157,252	152,429	161,930	161,849	175,352	145,753
	금액	273,579,642	244,598,775	275,102,854	257,594,619	279,684,999	249,719,742
12	수량	204,990	202,812	190,408	203,532	166,894	164,244
	금액	278,623,169	251,747,126	252,173,182	299,077,393	238,090,086	261,332,891
계	수량	1,374,077	1,490,785	1,339,072	1,447,769	1,340,633	1,245,172
	금액	2,029,590,182	2,110,736,131	2,131,777,546	2,286,676,988	2,233,557,735	2,100,185,272

자료 : 수산물유통정보(<http://www.infofishnet.co.kr>).

14) 해양수산부의 공식통계인 “2003 수산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계통판매: 1,338,966톤)와 “연도별 월별 수산물계통판매고 현황”(계통판매 : 1,340,633톤)에서 나타나는 통계상의 오차는(1,667톤)은 현장 집계상에서 나타나는 것임.

<표 3-10> 연도별 지역별 계통판매 현황

(단위 : 톤, 천원)

연도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지역별							
강원 지역	수량	54,302	52,116	46,318	49,956	37,243	40,842
	금액	126,926,762	147,085,693	136,727,972	142,310,661	140,632,694	160,017,904
경남 지역	수량	431,019	423,313	391,622	432,677	395,698	373,902
	금액	472,762,365	446,194,460	452,664,800	539,347,859	500,109,291	445,625,489
경북 지역	수량	93,002	125,240	116,102	105,193	95,253	107,204
	금액	180,116,106	234,888,313	214,708,511	205,582,925	193,048,578	230,631,748
경인 지역	수량	37,218	36,937	29,087	28,337	28,111	23,585
	금액	120,683,521	146,360,662	152,498,964	143,420,702	168,299,027	137,655,682
부산 지역	수량	415,589	451,811	391,086	442,199	372,414	334,380
	금액	498,057,565	458,808,047	425,303,429	432,300,118	435,965,922	418,557,166
전남 지역	수량	212,009	289,848	257,820	284,337	308,290	276,737
	금액	363,952,994	387,001,440	399,777,091	478,947,477	425,101,214	391,898,271
전북 지역	수량	40,564	44,056	32,194	32,994	31,794	16,554
	금액	73,440,990	71,006,215	67,914,309	65,858,612	64,945,922	38,959,163
제주 지역	수량	46,799	42,176	41,354	42,945	43,222	44,972
	금액	142,922,818	158,343,031	214,805,908	215,312,633	236,230,935	207,685,472
충청 지역	수량	43,574	25,287	33,491	29,132	28,608	26,997
	금액	50,727,061	61,048,271	67,376,562	63,596,000	69,224,153	69,154,376
계	수량	1,374,077	1,490,785	1,339,072	1,447,769	1,340,633	1,245,172
	금액	2,029,590,182	2,110,736,131	2,131,777,546	2,286,676,988	2,233,557,735	2,100,185,272

자료 : 수산물유통정보(<http://www.infofishnet.co.kr>).

- 연도별 조합별 계통판매현황을 살펴보면, 경인지역과 충청지역, 전북지역, 제주 지역의 계통판매량이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나타냈음. 또한 강원지역 역시 감소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속초시 수협만이 계통판매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전남지역과 경북지역은 계통판매량이 증가한 지역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완도군, 해남군, 진도군수협의

계통판매량이 2000년에 비하여 2003년에는 각각 310%, 297%, 119%가 증가하여 경북지역 전체의 계통판매증가율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음.

- 반면, 경남지역과 부산지역의 경우, 계통판매물량의 감소세가 뚜렷하였음. 마산시수협, 통영시수협, 남해군수협, 굴수하식수협 등의 계통판매량이 큰 폭으로 감소해 전반적인 계통판매감소추세를 이끌었으며, 부산지역은 제1, 2구 잠수기수협과 부산공동어시장수협의 계통판매량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표 3-11> 참조).

<표 3-11> 연도별 조합별 계통판매고 현황

(단위 : 톤, 천원)

연도별 조합별	2000		2001		2002		2003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경인지역	29,087	152,498,964	28,337	143,420,702	28,111	168,299,027	23,585	137,655,682
인천 공판장	9,716	24,921,268	9,007	19,781,022	7,241	17,038,400	9,468	17,075,939
경인북부수협	1,717	4,171,249	3,529	6,436,009	805	3,049,072	426	2,373,172
옹진군수협	10,921	66,977,442	8,276	57,726,410	10,626	67,044,994	5,951	54,202,783
영흥수협	0	0	0	0	0	0	183	320,969
영흥수협	0	0	0	0	0	0	1,359	4,331,602
인천시수협	6,733	56,429,005	7,525	59,477,262	9,439	81,166,561	5,867	57,003,547
경기남부수협	0	0	0	0	0	0	331	2,347,671
강원지역	46,318	136,727,972	49,956	142,310,661	37,243	140,632,694	40,842	160,017,904
고성군수협	6,165	28,328,246	9,352	28,142,536	6,915	32,094,543	5,748	30,065,368
동해시수협	10,834	24,017,096	10,520	26,530,795	6,909	23,060,392	6,002	21,092,146
삼척시수협	4,950	11,554,974	4,845	12,324,674	3,578	11,906,878	4,102	10,453,917
속초시수협	8,645	33,536,267	8,246	32,382,534	8,058	36,169,941	12,635	45,981,088
양양군수협	1,330	8,487,616	1,446	7,750,215	1,220	7,024,496	1,110	6,628,541
대포수협	0	0	0	0	0	0	740	3,700,079

<표 3-11> 계속

(단위 : 톤, 천원)

연도별 조합별	2000		2001		2002		2003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강릉시수협	11,445	24,536,545	13,636	29,058,773	9,087	24,358,443	7,322	26,948,384
원덕수협	2,948	6,267,228	1,910	6,121,135	1,476	6,018,001	1,568	5,494,939
죽왕수협	0	0	0	0	0	0	1,613	9,653,443
충청지역	33,491	67,376,562	29,132	63,596,000	28,608	69,224,153	26,997	69,154,376
보령수협	12,338	27,906,233	11,661	26,503,384	11,036	27,488,303	7,284	21,332,619
서산수협	16,943	25,276,729	0	0	9,449	22,482,227	11,023	25,931,405
서산군수협	0	0	11,857	20,323,111	0	0	0	0
서천군수협	4,211	14,193,601	5,613	16,769,505	4,771	9,525,198	3,640	4,272,978
서면군수협	0	0	0	0	3,352	9,728,424	2,611	9,971,662
신흥수협	0	0	0	0	0	0	1,127	1,009,116
태안남면수협	0	0	0	0	0	0	166	1,668,281
안면수협	0	0	0	0	0	0	1,146	4,968,316
전북지역	32,194	67,914,309	32,994	65,858,612	31,794	64,945,922	16,554	38,959,163
고창군수협	0	0	0	0	0	0	3	16,392
군산시수협	26,352	54,456,942	28,095	54,624,269	28,109	55,441,251	13,855	33,509,063
부안수협	5,842	13,457,367	4,898	11,234,343	3,685	9,504,671	2,697	5,433,708
전남지역	257,820	399,777,091	284,337	478,947,477	308,290	425,101,214	276,737	391,898,271
강진군수협	2,194	11,140,708	882	6,595,456	977	9,241,752	1,216	10,538,503
목포시수협	26,208	65,633,146	27,881	57,100,836	24,052	55,444,696	10,090	36,609,856
신안군수협	14,175	21,383,135	10,259	23,870,553	7,917	17,587,000	13,996	31,727,776
영광군수협	3,767	10,694,985	2,425	8,687,098	1,601	4,011,250	967	4,819,274
완도군수협	14,670	31,977,043	21,540	73,846,394	12,711	34,848,854	45,408	53,308,889
진도군수협	18,438	14,251,299	21,998	21,298,110	31,212	25,326,220	22,104	16,971,964
해남군수협	13,216	11,332,809	32,562	23,251,310	64,120	35,182,633	39,273	22,948,540
흑산도수협	1,141	13,456,805	1,346	11,756,331	1,878	12,768,152	2,690	23,927,673
거문도수협	2,598	8,696,952	2,819	13,555,704	1,877	7,729,942	2,414	13,384,683

<표 3-11> 계속

(단위 : 톤, 천원)

연도별 조합별	2000		2001		2002		2003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고흥군수협	26,017	38,397,070	25,116	47,260,910	26,852	47,771,433	15,427	46,445,212
광양군수협	230	958,813	152	564,168	54	289,034	68	412,046
나로도수협	4,714	10,596,153	812	7,200,398	664	5,363,660	858	6,111,388
보성군수협	0	0	0	0	0	0	0	0
여수시수협	85,191	109,318,884	92,373	126,831,207	90,789	120,102,036	78,663	83,122,603
장흥군수협	1,997	8,836,135	1,236	5,897,277	576	2,738,958	776	1,920,117
약산수협	3,393	3,148,085	4,412	4,283,160	3,764	2,010,847	18,987	4,756,351
금일수협	20,303	6,891,478	14,614	4,665,694	23,580	8,233,483	12,037	5,294,479
소안수협	11,740	7,993,190	15,544	11,266,821	10,862	7,785,152	8,428	7,000,016
울촌수협	700	1,003,253	869	1,436,470	474	1,052,148	296	646,534
제3.4구집수기수협	6,004	14,845,269	5,868	15,105,269	2,458	12,100,737	1,677	9,355,528
서남해수어류수협	1,124	9,221,877	1,628	14,474,311	1,872	15,513,226	1,363	12,596,841
경북지역	116,102	214,708,511	105,193	205,582,925	95,253	193,048,578	107,204	230,631,748
경주군수협	15,060	25,460,371	13,923	26,490,168	15,455	27,018,377	22,084	35,250,672
강구수협	10,943	17,402,551	10,413	15,862,671	7,246	13,237,935	6,526	17,396,478
영일군수협	21,297	43,485,063	27,126	52,045,396	18,411	42,308,730	33,766	65,548,110
울릉군수협	10,751	14,336,433	7,428	11,909,462	10,564	14,845,892	6,856	14,899,861
죽변수협	16,487	31,568,156	14,157	29,997,611	13,622	27,094,945	9,292	26,805,741
축산수협	16,792	26,274,993	11,925	18,735,571	11,843	17,815,062	7,185	16,520,034
포항수협	11,843	27,926,289	10,991	26,645,461	6,772	25,201,396	11,090	29,045,746
후포수협	12,929	28,254,654	9,229	23,896,585	11,340	25,526,242	10,404	25,165,106
경남지역	391,622	452,664,800	432,677	539,347,859	395,698	500,109,291	373,902	445,625,489
거제군수협	17,528	18,946,765	19,282	19,534,143	9,786	15,258,242	13,768	14,775,369
고성군수협	6,824	8,738,112	9,919	12,157,032	12,786	11,996,477	19,201	11,744,065

<표 3-11> 계속

(단위 : 톤, 천원)

연도별 조합별	2000		2001		2002		2003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부산동부수협	7,204	7,110,419	8,555	10,536,743	8,416	8,774,772	10,137	11,666,788
진동수협	0	0	0	0	0	0	5	40,800
진동수협	0	0	0	0	66	416,090	211	1,431,210
마산시수협	41,060	56,278,735	42,146	53,563,338	30,458	44,810,805	23,145	36,688,051
삼천포시수협	33,501	71,017,082	46,384	109,253,229	41,486	89,035,772	44,051	82,126,865
울산수협	18,873	29,081,643	16,987	27,170,059	15,571	27,263,485	18,014	37,908,462
의창군수협	6,202	12,409,390	7,802	12,604,736	7,905	13,530,756	8,053	13,071,891
진해시수협	880	5,543,194	852	6,490,709	761	6,212,812	1,262	9,180,042
통영수협	24,390	44,567,987	23,601	47,255,523	24,408	38,375,716	19,766	42,889,745
하동군 수협	1,565	8,312,021	3,957	12,612,401	4,812	18,641,201	3,678	13,320,111
남해군수협	15,227	24,813,383	12,956	23,596,606	11,248	19,143,565	10,664	22,655,090
육지수협	48	323,865	28	257,613	0	0	0	0
사천수협	830	902,381	1,456	1,459,514	740	985,551	1,151	2,468,914
사랑수협	0	0	0	0	17	147,667	0	0
제1,2구잠수기수협2	9,669	16,988,807	7,130	17,996,457	6,926	18,477,671	6,115	15,180,889
기선권현망수협	63,224	70,876,807	87,524	109,393,098	69,199	108,709,520	93,160	73,793,619
굴수하식수협	140,391	58,082,017	138,855	57,778,758	140,258	52,883,163	96,525	37,698,278
근해통발수협	601	3,791,128	650	4,514,425	666	4,442,338	905	5,833,845
명계수하식수협	2,172	2,091,000	0	0	8,035	9,478,943	2,613	4,972,024
우렁챙이양식수협	0	0	3,618	5,431,070	0	0	0	0
해수어류양식수협	1,432	12,790,064	977	7,742,404	2,152	11,524,745	1,476	8,179,431
제주지역	41,354	214,805,908	42,945	215,312,633	43,222	236,230,935	44,972	207,685,472
서귀포수협	7,290	42,458,705	7,480	48,682,393	7,127	53,671,468	7,156	42,575,352
성산포수협	9,110	61,257,931	8,893	64,457,037	10,670	75,642,235	13,092	72,142,743
제주시수협	8,308	21,535,899	8,804	21,295,849	6,769	19,987,979	4,299	20,491,322

<표 3-11> 계속

(단위 : 톤, 천원)

연도별 조합별	2000		2001		2002		2003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추자도수협	2,321	20,467,543	1,384	9,478,285	1,375	11,160,798	1,844	12,734,552
한림수협	12,268	55,390,206	12,953	55,286,473	14,410	59,656,529	12,595	48,693,734
모슬포수협	2,056	13,695,624	3,431	16,112,596	2,870	16,111,926	5,985	11,047,769
부산지역	391,086	425,303,429	442,199	432,300,118	372,414	435,965,922	334,380	418,557,166
부산시수협	91,601	95,501,463	127,789	114,752,076	101,956	120,682,989	108,346	127,632,759
제1,2구잠수기수협	14,895	18,037,407	13,011	15,313,414	10,010	13,952,631	8,889	12,711,642
부산공동어시장	284,590	311,764,559	301,399	302,234,628	260,448	301,330,302	217,146	278,212,764
총계	1,339,072	2,131,777,546	1,447,769	2,286,676,988	1,340,633	2,233,557,735	1,245,172	2,100,185,272

자료 : 수산물유통정보(<http://www.infofishnet.co.kr>).

- 산지수협의 계통판매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역별로 1만 톤 이상의 계통판매를 나타내는 산지조합은 경남지역이 10개, 부산지역과 제주지역이 각각 2개 등 총 26개 조합이 있었으며, 이중 5만 톤 이상의 계통판매를 보인 조합도 경남지역과 부산지역에 각각 2개 조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5천 톤 ~1만 톤 이하의 조합 동 전국에 걸쳐 6개 조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앞으로 거점 지역별로 대형산지 위판장을 중심으로 산지도매시장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경우, 대상후보에 계통판매량에 따른 조합의 위판장을 구분한 후,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배후 소비지의 인구와 소비 가능량 등을 조사하여, 산지도매시장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어종별 계통출하물량을 살펴보면, 2003년 기준, 어류가 623천 톤(금액기준 1,129,629백만 원)의 판매량을 나타내며, 전체 물량 중 46%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중 상위 3개의 판매품목인 멸치, 고등어, 갈치 등의 계통판매실적은 각각 246천 톤, 122천 톤, 62천 톤 등으로 나타났는데, 멸치와 고등어류의 위판물량이 증가한데 반하여 갈치의 생

산량은 다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갑각류는 2000년보다 약 3% 정도 계통판매물량이 감소한 가운데, 특히 꽃게와 기타 게, 꽃새우 등의 감소가 두드러졌음. 패류 또한 감소세를 나타냈는데 2000년에 비하여 계통판매물량은 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굴, 바지락, 키조개, 홍합 등의 판매량이 급격히 감소하였음. 연체동물은 어류 다음으로 계통출하물량이 많은 어종으로, 2000년에 비하여 약 3% 가량 계통판매물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중 낫지, 문어, 쭈꾸미와 오징어류 등이 판매 증가추세를 나타내었음. 해조류의 경우, 해조류의 경우, 2000년에 비하여 약 30% 정도의 계통판매물량이 증가하여 어종별 판매물량 중 가장 큰 증가세를 나타냈음.

<표 3-12> 연도별 어종별 계통판매 현황

(단위 : 톤, 천원)

연도별 어종별	2000		2001		2002		2003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어류 소계	713,124	1,293,694,686	818,558	1,419,978,060	673,333	1,321,101,848	623,368	1,129,629,326
가오리류	2,069	10,766,049	2,656	11,488,205	1,952	8,355,877	1,802	8,671,470
가자미류	13,667	59,512,284	12,811	55,443,604	12,241	56,384,876	10,940	57,834,504
갈치	76,502	200,860,462	79,520	242,784,284	59,948	201,867,347	62,801	199,914,851
강달이류	31,291	12,249,583	24,393	10,273,815	19,687	8,577,018	18,893	7,935,149
고등어류	143,002	147,818,091	203,011	182,122,784	141,707	170,630,617	122,056	157,816,568
꽁치	19,611	25,535,278	5,267	9,615,751	6,938	11,261,872	1,389	2,507,411
학공치	889	2,653,882	543	1,831,602	515	2,408,977	409	1,246,093
넙치류	1,970	22,494,195	4,258	48,544,047	2,864	30,267,001	2,437	28,378,951
노가리	0	0	0	0	0	0	0	0
농어	850	8,733,672	1,016	11,941,748	1,309	11,657,924	1,557	13,367,153
눈볼대	934	3,218,355	621	2,740,536	566	2,563,454	1,539	4,541,247
능성어	35	1,359,186	46	1,569,225	60	1,972,558	41	1,098,382

<표 3-12>계속

(단위 : 톤, 천원)

연도별 어종별	2000		2001		2002		2003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다랑어류	3,246	2,033,038	3,295	2,820,835	2,350	2,211,244	3,745	4,322,662
도루묵	1,544	8,172,963	1,235	5,073,187	3,206	11,148,388	1,919	8,235,463
대구류	1,689	6,997,276	2,422	9,278,574	1,956	8,563,996	1,845	9,231,047
감성돔	485	10,154,376	431	9,389,343	573	10,187,934	824	11,019,519
옥돔	1,671	18,895,392	1,061	12,783,152	1,351	17,828,571	1,318	13,788,711
자리돔	0	921	2	3,376	0	66	4	17,922
참돔	1,125	9,373,574	1,076	13,437,780	1,305	11,120,685	852	9,070,560
기타돔류	1,327	9,352,270	1,321	9,546,549	1,520	10,116,349	1,442	10,018,340
망둥어	252	123,547	24	12,400	18	30,975	96	130,050
매통어류	800	446,793	763	309,058	34	27,575	651	637,846
멸치류	193,049	193,052,662	265,864	290,431,430	222,598	283,638,173	245,309	180,472,399
명태	750	3,441,406	210	618,348	218	1,622,284	244	1,625,642
민어	1,739	11,338,589	2,063	13,466,911	1,123	9,277,887	1,277	9,032,067
방어	4,674	12,789,552	6,169	13,443,645	5,315	9,452,885	3,467	8,502,035
밴댕이	2,814	2,099,548	632	1,111,646	653	1,249,295	885	1,381,309
뱅어류	3,208	1,208,725	2,362	1,173,385	2,212	1,277,572	3,537	1,966,300
병어류	7,744	26,008,957	6,612	29,926,567	5,859	25,833,268	7,497	36,058,366
보구치	1,842	4,145,381	988	2,351,302	738	1,744,046	463	1,141,144
보리멸	81	95,345	15	33,318	11	16,267	12	21,464
복어류	2,972	21,126,989	3,739	20,129,566	3,122	18,776,704	2,492	15,960,324
조피볼락	5,095	44,774,499	5,474	42,449,773	7,865	46,681,227	8,808	59,639,723
기타볼락	1,991	13,485,744	1,951	14,319,454	1,456	10,920,648	1,439	11,179,269
노래미	0	0	0	0	0	0	883	5,054,726
부세	360	1,452,307	434	1,416,627	332	1,052,696	219	842,975
삼치류	25,271	43,136,727	25,373	47,953,453	25,758	42,969,807	22,312	36,767,081
상어류	283	1,633,015	415	1,946,936	260	1,089,020	239	889,723

<표 3-12>계속

(단위 : 톤, 천원)

연도별 어종별	2000		2001		2002		2003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서대류	932	4,294,403	842	4,018,368	532	2,852,052	435	2,306,387
성대류	82	114,353	143	154,113	266	186,758	231	258,305
송어류	0	0	0	0	0	0	0	0
솜팽이	104	513,388	165	1,159,790	103	667,263	113	636,409
송어류	3,771	14,724,910	4,209	15,772,004	4,729	14,285,148	3,832	12,455,152
아귀	4,891	20,365,242	5,630	20,704,490	9,302	22,188,930	9,560	22,537,036
까나리	11,040	5,588,644	4,665	4,618,011	2,854	3,802,611	1,881	577,523
양미리	0	0	220	178,880	7	7,771	1,041	2,273,622
양태	2,177	5,539,421	1,502	5,047,788	1,123	3,960,712	1,287	4,344,585
연어	29	70,417	18	50,517	34	122,434	45	134,049
임연수어	2,447	3,890,371	1,155	3,147,118	640	2,723,694	3,045	5,448,689
갯장어	1,262	6,052,459	509	2,187,564	449	1,543,429	458	1,705,448
떡장어	1	3,779	2	4,377	0	217	0	1,135
붕장어	5,203	27,946,347	4,730	30,338,960	3,652	22,021,427	3,608	21,934,870
전갱이류	19,448	16,316,148	15,455	16,540,337	24,294	24,021,591	19,519	15,556,280
전어	5,215	5,817,921	7,815	7,869,496	3,063	5,072,558	3,136	5,937,598
정어리	2,208	875,029	133	115,695	8	6,700	17	11,925
참조기	19,550	118,613,434	7,947	60,550,381	10,939	70,301,038	7,099	52,957,096
기타조기	7,060	19,132,033	2,929	8,628,224	3,178	9,914,212	2,290	8,575,406
준치	139	809,374	50	224,172	24	117,817	17	87,246
취치류	2,753	7,246,663	1,390	6,729,269	851	4,456,529	1,262	6,440,440
청어	8,122	7,484,329	5,118	5,847,309	1,955	3,297,187	3,392	2,917,588
홍어	260	3,089,582	209	2,932,179	231	3,240,235	230	4,450,859
기타어류	61,596	84,665,803	85,653	101,376,801	67,477	93,526,451	25,231	37,763,230
홍어	260	3,089,582	209	2,932,179	231	3,240,235	230	4,450,859
기타어류	61,596	84,665,803	85,653	101,376,801	67,477	93,526,451	25,231	37,763,230

<표 3-12>계속

(단위 : 톤, 천원)

연도별 어종별	2000		2001		2002		2003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갑각류 소계	42,297	206,897,130	40,845	208,451,145	34,129	215,862,372	41,294	218,683,373
꽃게	10,768	103,352,542	10,060	102,425,706	13,627	129,712,214	7,899	102,832,301
대게	624	7,904,959	947	9,243,909	848	10,963,931	1,417	16,075,679
붉은대게	704	1,478,384	476	1,770,903	231	1,112,483	7,406	22,946,601
기타게	6,019	20,967,702	5,901	24,258,032	3,994	17,865,715	3,730	16,526,894
꽃새우	5,187	11,481,649	3,066	13,706,805	3,366	11,173,220	2,480	8,553,606
닭새우	436	2,585,346	410	2,391,087	387	2,067,795	384	1,701,328
대하	645	11,114,074	172	3,379,245	67	1,645,653	69	1,773,043
보리새우	307	1,788,015	183	952,329	107	745,099	232	1,793,604
젓새우	8,420	17,468,641	9,929	21,909,494	5,113	13,415,651	9,693	24,466,579
중하	522	2,854,847	440	2,307,146	159	943,644	93	489,629
기타새우	8,029	23,874,729	5,439	23,607,837	5,713	24,340,142	6,428	19,099,687
기타갑각류	638	2,026,241	3,821	2,498,653	517	1,876,824	1,462	2,424,421
패류 소계	201,835	172,708,555	190,390	166,394,306	190,251	154,785,186	149,361	130,881,331
굴뱅이	412	1,891,762	623	2,510,086	934	3,268,410	951	3,137,918
굴류	158,989	69,427,582	159,024	70,632,287	163,978	66,486,052	125,060	50,362,579
소라고둥	4,974	18,868,583	4,832	18,442,445	5,393	20,712,880	6,093	20,430,273
오분자기	13	433,237	12	412,454	10	374,259	12	437,257
전복류	56	4,772,748	56	4,704,374	46	3,709,143	55	3,838,111
가리비	31	233,047	28	166,722	0	1,650	2	9,121
가무락	535	672,461	159	484,688	171	708,678	76	312,018
개량조개	4,066	14,258,286	3,285	13,753,254	3,177	14,173,761	519	2,068,300
고막류	668	973,892	839	988,117	620	732,953	346	590,498
동죽	456	208,691	117	64,210	493	311,769	72	40,446
맛류	54	57,990	29	65,125	32	99,491	3	12,608
바지락	15,115	18,645,961	6,750	11,485,009	3,773	7,780,249	3,838	8,082,289
백합류	572	1,128,031	239	420,717	195	370,300	1,503	2,398,783
새조개	312	613,514	1,104	3,995,700	720	2,807,272	186	1,237,628
코끼리조개	56	383,583	44	425,073	46	449,989	2	11,469

<표 3-12>계속

(단위 : 톤, 천원)

연도별 어종별	2000		2001		2002		2003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키조개	7,790	22,560,681	4,937	16,282,232	3,986	13,795,483	2,975	10,534,086
피조개	355	1,167,774	323	1,737,348	176	551,748	276	1,994,652
홍합	3,101	2,972,342	2,839	2,899,673	2,048	2,773,786	1,777	2,387,293
개조개	0	0	0	0	0	0	2,283	10,024,370
기타패류	4,280	13,438,389	5,149	16,924,795	4,454	15,677,311	3,332	12,971,631
연체동물소계	234,559	356,707,981	233,409	370,030,319	237,193	405,629,875	243,068	481,769,461
갑오징어류	1,154	3,463,013	1,279	4,398,944	1,746	4,756,022	786	3,979,897
팔투기	672	1,626,028	755	1,687,533	573	1,339,266	657	1,649,400
낙지	2,816	37,667,014	3,316	43,095,510	3,178	51,621,977	3,339	51,859,643
문어	3,836	28,531,611	3,886	31,694,098	3,834	34,895,729	4,292	39,012,701
쭈꾸미	1,616	7,812,846	1,646	8,244,909	1,698	10,806,929	2,311	13,729,845
오징어류	224,123	275,699,973	222,139	279,789,520	225,839	301,524,378	231,557	371,056,179
기타연체동물	341	1,907,497	387	1,119,805	325	685,574	127	481,796
기타수산동물소계	7,339	20,811,384	8,300	23,513,468	11,869	27,593,716	7,248	23,221,772
미더덕	2,114	1,346,660	1,977	1,179,317	1,098	1,327,877	1,690	1,607,558
성게	383	2,446,507	370	2,135,876	308	1,860,560	454	2,351,230
우렁챙이	3,467	4,535,517	4,488	7,162,279	8,982	11,565,074	3,782	7,393,000
해삼	927	7,251,053	602	6,013,600	680	6,303,330	796	7,335,606
기타수산동물	448	5,231,648	862	7,022,397	801	6,536,874	526	4,534,378
해조류 소계	139,919	80,957,811	156,268	98,309,689	193,857	108,584,739	180,833	116,000,009
김	74,854	60,345,703	103,315	79,862,574	132,435	83,566,555	110,556	73,681,608
꼬시래기	0	0	0	0	0	14	0	0
다시마류	12,734	6,165,336	9,269	4,077,416	19,256	6,353,535	14,327	6,955,838
도박류	0	0	5	2,213	0	36	0	0
말	26	41,730	8	22,450	0	0	0	0
미역	29,556	2,902,320	24,308	2,743,702	19,790	2,776,801	17,764	1,689,539
우무가사리	2,861	1,912,788	3,364	2,077,269	2,153	1,441,648	354	776,191
기타가사리	65	626,653	35	345,648	118	103,158	36	192,693
청각	165	44,251	185	65,979	141	103,290	53	22,553

<표 3-12>계속

(단위 : 톤,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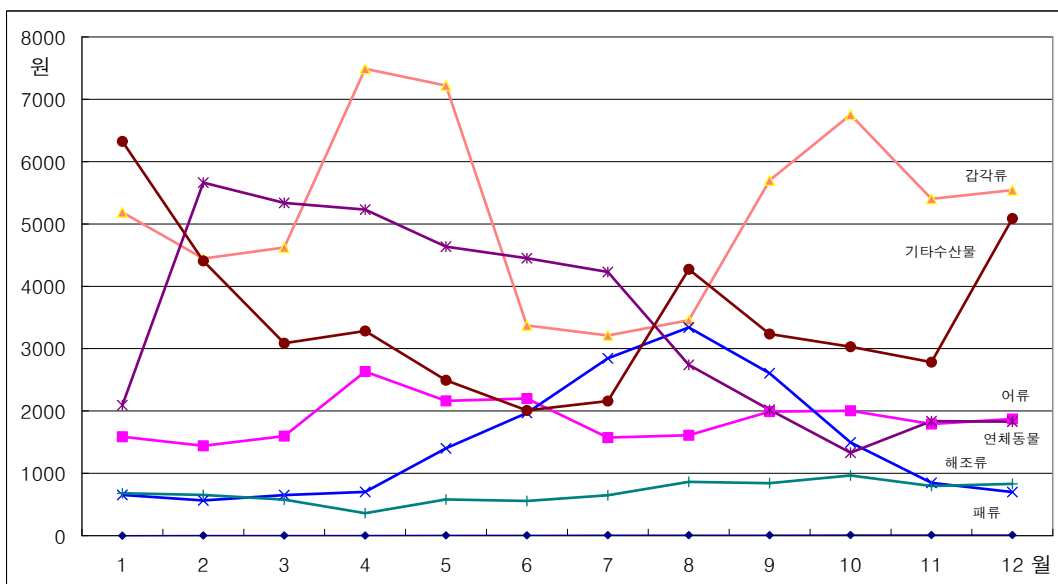
연도별 어종별	2000		2001		2002		2003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돔	17,021	7,331,437	13,410	7,651,354	15,553	12,258,431	36,019	31,119,776
파래	1,086	610,976	1,828	798,025	3,584	1,393,591	1,293	758,060
기타해조류	1,552	976,616	541	663,058	827	587,679	431	803,752
총계(total)	1,339,072	2,131,777,546	1,447,769	2,286,676,988	1,340,633	2,233,557,735	1,245,172	2,100,185,272

자료 : 수산물유통정보(<http://www.infofishnet.co.kr>).

- 이러한 산지조합의 계통판매현황을 종합하여 보면, 계통판매량이 줄어드는 가운데, 멸치와 고등어, 갈치, 꽁치류 등 일부 품목의 계통판매율의 증가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는 것임. 과거 대중선어 중 대표적인 품목으로 꼽히던 명태와 조기, 돔류의 계통판매가 급격히 감소하는데 비하여 이들 멸치와 고등어, 갈치, 등의 계통판매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수산물 유통거래도 냉동어류에서 신선냉장 또는 건어류 중심으로 거래되는 수산물의 양이 점점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따라서 수산물 유통시장의 환경도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유통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임.
- 이러한 가운데 월별 어종별 계통판매가격의 변화를 살펴보면(<그림 3-1> 참조), 계통판매가격의 변화가 가장 심한 어종은 갑각류로서 봄과 가을철에는 높은 가격을 형성하나, 여름과 겨울철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이유는 금어기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여름에는 판매량 및 소비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본격적인 생산시기인 가을에는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아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형성하기 때문임. 패류의 경우에는 생산량이 많은 시기인 겨울철에 상대적으로 계통판매가격이 낮아지나, 여름철의 가격은 생산은 가능하나 비브리오패혈증과 같은 안전성의 문제로 인하여 재고위주의 판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연체동물의

경우 생산시기에 따른 판매가격이 변화하여 생산량이 많은 여름과 가을까지는 낮은 가격을 형성하나, 생산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봄과 초여름에는 높은 가격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어류와 해조류의 경우 생산에서 계절성이 가지고 있으나, 갑각류나 패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격변동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3-1> 월별 어종별 계통판매가격추이 (2003년)



자료 : 수산물유통정보(<http://www.infofishnet.co.kr>).

- 산지시장에서 계통 판매된 수산물은 중간 수산물 유통업자를 통하여 소비지도매시장으로 출하되어 경매과정을 거치게 됨. 주요 소비지도매 시장은 공영도매시장과 일반법정도매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러한 소비지에 위치한 도매시장의 연도별 거래실적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3-13>과 같음.
- 2002년 기준, 전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상품거래중 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5.6% 정도로, 2001년보다 약 0.4%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수산물 비중의 감소는 도매시장내로 유입되는 수산물이 감소되는 것과 동시에 재래시장 및 유사시장 등으로 유통되는 수산물의

거래가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수산부류 중 공영도매시장의 비중은 2002년 기준, 약 68% 정도로, 전년에 비교하여 약 1% 정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수산물 거래에서 아직까지 공영도매시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음.

<표 3-13> 도매시장별 거래실적

(단위 : 톤, 억원)

구 분		2001			2002		
		물 량	금 액	비율(%)	물 량	금 액	비율(%)
도매시장합계		6,379,260	66,618	100.0	6,410,541	66,965	100.0
수산	수산부류소계	395,686	9,931	100.0	360,021	9,767	100.0
	공영도매시장	273,911	6,767	69.2	246,531	6,502	68.5
	일반법정도매시장	121,775	3,164	30.8	113,490	3,265	31.5

자료 :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http://market.affis.net>).

- 이러한 공영도매시장의 연도별 거래추이를 살펴보면 1991년 기준, 총 197천 톤의 거래량을 나타내는 가운데, 중앙도매시장이 전체 공영도매시장의 거래물량 중 93% 정도를 차지해 중앙도매시장의 집중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¹⁵⁾ 특히,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과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은 127천 톤과 64천 톤의 거래량을 나타내 전체 공영도매시장중 77%의 거래량을 나타내 중앙도매시장 집중화와 함께 수도권 시장으로 거래물량이 집중되어 지방도매시장의 거래위축은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15) 1991년의 공영도매시장은 5개소로 나타났으며, 이중 중앙도매시장은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대구북부농수산물도매시장, 대전오정동농수산물도매시장 등 3개소가 개설되었으며, 지방도매시장은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과 청주농수산물도매시장 등 2곳이 개설되었음. 이후 지방도매시장의 개설로 1998년 이후 현재와 같은 공영도매시장 개설현황을 나타나게 되었음.

<표 3-14> 연도별 공영도매시장 거래 추이

(단위 : 톤)

구 분		1991	1995	1998	2000	2001	2002
계		197,076	239,267	313,998	285,231	273,911	246,531
도매시장법인		161,733	189,131	216,592	190,520	173,208	156,995
공 판 장		35,343	50,136	96,775	85,778	77,249	65,744
비 상 장		-	-	631	8,933	23,454	23,792
서울가락 (85.6.19)	강동수산	103,112	113,306	98,481	85,556	79,441	70,110
	서울건해	34,821	38,611	27,528	26,013	25,072	23,662
	수협가락(공)	32,086	40,707	36,849	35,269	31,833	24,121
	비 상 장	-	-	631	1,653	9,686	9,151
	소 계	170,019	192,624	163,489	148,491	146,032	127,044
대구북부 (88.10.7)	대구수산	663	919	6,107	6,495	5,219	5,996
	대구종합수산	-	-	4,433	4,375	3,865	3,290
	소 계	663	919	10,540	10,870	9,084	9,286
대전오정 (87.11.2)	대전수산	13,426	13,144	11,087	6,923	6,190	5,394
	한밭건해산물	-	556	511	539	470	411
	소 계	13,426	13,700	11,598	7,462	6,660	5,805
울 산 (90.3.20)	울산중앙수산	6,395	8,083	6,599	5,574	4,079	3,522
	울산건해산물	716	482	1,031	920	752	833
	울산수협(공)	3,257	2,873	2,786	2,481	1,996	2,393
	소 계	10,368	11,438	10,416	8,975	6,827	6,748
수 원 (93.2.27)	수원수산	-	5,576	6,786	4,097	2,950	1,767
	남부수협수원(공)	-	4,882	5,544	4,483	4,097	3,314
	소 계	-	10,458	12,330	8,580	7,047	5,081
구 리 (97.6.9)	수협구리(공)	-	-	43,844	38,267	36,526	34,219
	강북수산	-	-	26,144	32,746	32,820	29,855
	소 계	-	-	69,988	71,013	69,346	64,074
안 양 (97.9.6)	동안수산	-	-	12,712	5,705	-	-
	비상장	-	-	-	7,280	13,724	14,609
	소계	-	-	12,712	12,985	13,724	14,609
안 산 (97.11.25)	남부수협안산(공)	-	-	3,458	1,604	-	-
	안산수산	-	-	5,156	3,083	4,047	3,812
	비상장	-	-	-	-	44	32
	소 계	-	-	8,614	4,687	4,091	3,844
청 주 (88.11.10)	청주수산	2,600	5,308	4,371	3,703	3,908	4,349
충 주 (95.11.15)	충주수산	-	1,179	1,694	1,347	1,467	1,104
전 주 (93.10.29)	전주수산	-	1,967	2,887	2,120	1,884	1,898
	수협전주(공)	-	1,674	4,294	3,674	2,797	1,697
	소 계	-	3,641	7,181	5,794	4,681	3,595
익 산 (98.1.7)	이리수산	-	-	1,065	1,324	1,044	992

주 : 법인(공) 20개(법인 15, 공판장 5)

자료 :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http://market.affis.net>).

- 거래규모별로 살펴보면, 연간 5만 톤 이상의 거래량을 나타내는 시장은 가락과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두 곳이며, 연간 1만 톤 이상의 거래실적을 나타내는 시장은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임. 다른 9개의 공영도매시장은 연간 1만 톤 이하의 거래실적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1만 톤 이상 계통판매를 기록하는 산지조합이 26개소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여 볼 때, 소비지도매시장의 사실상 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함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 판단할 수 있음. 더구나, 익산 도매시장의 경우, 연간 거래실적이 992톤으로 실질적인 소비지도매시장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향후 도매시장에 대한 평가와 역할을 재정립할 경우, 공영도매시장으로서 존재가치가 있는 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재검토해보아야 할 것임(<표 3-14> 참조).
- 소비지도매시장에서 공영도매시장과 함께 수산물의 거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일반법정도매시장의 거래현황을 살펴보면, 2002년 기준, 총 109천 톤의 거래실적을 나타내는 가운데, 노량진수산도매시장이 일반법정도매시장 거래의 98% 정도인 108천 톤을 나타내, 일반법정도매시장 역시 중앙 및 수도권 도매시장으로의 집중화와 편중화 구조가 심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음(<표 3-15> 참조).

<표 3-15> 일반법정도매시장의 연도별 거래실적

(단위 : 톤, 백만원)

구분	연도		2000		2001		2002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노량진수산도매시장	118,732	277,024	116,949	305,363	108,381	315,459		
포항시수산물도매시장	3,565	7,125	3,520	7,041	-	-		
경주시수산물도매시장	1,408	4,358	1,306	3,948	1,113	3,174		
소 계	123,705	288,507	121,775	316,352	109,494	318,633		

자료 :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http://market.affis.net>).

- 다음으로 공영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수산물의 반입형태별 거래규모를 살펴보면, 총 246천 톤 중 상장거래와 비상장거래의 비중은 9대 1 정도이며, 도매시장법인 및 공판장에서 이루어지는 상장거래 중 수탁판매량은 216천 톤으로 전체 상장거래 중 97% 가량을 나타내, 수탁판매가 상장거래의 주요 판매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비상장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에 의한 비상장거래 중 수탁판매의 비중은 약 13% 정도로 나타나, 비상장거래품목의 주요 거래방법은 매수판매인 것으로 나타났음(<표 3-16> 참조).
- 이를 농산물과 비교하여 보면, 농산물 거래 중 상장거래의 비중은 94% 정도로 수산물의 상장거래 비중은 90%보다 약 3%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장거래 중 수탁판매의 비중이 99%로 이 역시 수산물보다 약 1%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일반적으로 농산물이 수산물 보다 상장거래의 비중이 높고, 상장거래 중 수탁판매비율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농안법에서 규정한 거래방법을 더 잘 지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표 3-16> 도매시장내 반입형태별 거래비중(2002년 기준)

(단위 : 톤, 백만원)

구 분	상장거래(법인 및 공판장)			비상장거래(비상장취급 중도매인)				계	
	수탁판매	매수판매	소계	수탁판매	매수판매	중개	소계		
청과	물량	5,257,573	27,990	5,285,563	255,742	100,270	-	356,012	5,641,575
	금액	4,637,085	41,785	4,678,870	196,174	116,886	-	313,060	4,991,930
수산	물량	216,506	6,233	222,739	3,090	20,702	-	23,792	246,531
	금액	570,704	13,321	584,025	12,907	53,258	-	66,165	650,190

자료 : 농수산물유통정보(<http://www.kamis.co.kr>)

- 산지시장으로부터 소비지도매시장으로 출하되는 물량을 출하자별로 살펴보면, 공영도매시장과 일반법정도매시장으로 출하되는 물량 중 생산자 개인의 출하물량이 226천 톤으로 전체 출하되는 물량 중 약 63%

가량을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산지중도매인을 포함한 산지유통인 약 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산자공동출하와 수협계통출하비율은 각각 1%가 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여기서 출하물량 비중에서 생산자 개인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중도매인이 생산지에 차명으로 수집상을 두고 도매시장으로 출하하는 물량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물량이 대부분 생산자 개인의 출하물량으로 집계되기 때문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추측됨.

<표 3-17> 도매시장 출하자별 연도별 출하물량

(단위 : 톤)

구 분	계	생산자 개 인	생 산 자 공동출하	수협 계통출하	산지유통인	기 타
1997	447,245	127,988	-	5,056	180,399	133,802
1998	446,652	248,911	1,497	37,494	157,218	1,532
1999	406,411	253,940	1,697	2,352	139,949	8,473
2000	408,936	252,032	-	3,043	140,112	13,749
2001	395,686	248,649	-	2,867	142,775	1,395
2002	360,021	226,317	3,038	1,751	121,264	7,651

자료 : 농수산물유통정보(<http://www.kamis.co.kr>)

- 다음으로 지역별 산지시장에서 소비지도매시장으로 출하되는 물량을 살펴보면, 서울지역으로 출하되는 물량은 전체 물량 중 약 65% 정도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지역과 대구 지역 순으로 나타났음. 이중 서울과 경기권을 포함한 수도권으로 출하되는 비율을 살펴보면, 전제 도매시장 출하물량 중 약 90% 정도를 차지해 수도권으로의 출하물량 집중 및 편중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수도권으로의 출하 물량 중에서도 가락동농수산물시장과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 그리고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의 출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표 3-18> 참조).

<표 3-18> 도매시장 출하자별 지역별 출하물량

(단위 : 톤)

구 분	계	생산자 개 인	생 산 자 공동출하	수 협 계통출하	산지유통인	기 타
합 계	360,021	226,317	3,038	1,751	121,264	7,651
서 울	235,425	166,684	-	-	68,741	-
대 구	9,286	7,785	-	-	821	680
대 전	5,805	3,120	-	-	2,104	-
울 산	6,748	3,120	-	83	3,545	-
경 기	87,608	44,516	1,979	1,057	34,821	5,235
충 북	5,453	-	1,059	-	3,267	1,127
전 북	4,587	-	-	611	3,367	609
경 북	5,109	511	-	-	4,598	-

자료 : 농수산물유통정보(<http://www.kamis.co.kr>)

-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요 수산물의 거래현황을 살펴보면, 2002년 기준, 고등어가 30천 톤으로 도매시장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물오징어와 냉태 그리고 건멸치 등이 각각 22천 톤, 17천 톤, 14천 톤을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어를 포함한 상위 5개 품목의 거래량은 전체 도매시장 거래물량 중 약 42%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상위 품목에 대한 거래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건어물을 제외한 어류의 비중은 약 4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패류 및 연체동물은 14% 정도이고, 건어류는 8% 정도의 거래 비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19>참조).
- 연도별 도매시장 거래품목의 변화를 살펴보면, 1991년 주요 상위 5개 거래 품목으로는 물오징어, 고등어, 건멸치, 냉태, 꽃게 등으로 이들 품목의 거래비율은 36%로 나타났으나, 1996년의 경우, 주요 상위 5개 거래품목은 고등어, 물오징어, 고막, 건멸치, 냉태 등이 41%의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2002년에는 고등어, 물오징어, 냉태, 건멸치, 조기 등이 42%의 거래비율을 나타내 갈수록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품목의 집

중화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연도별 주요품목의 구성변화를 보면, 고등어, 물오징어, 냉태, 건멸치 등은 꾸준히 거래되고 있으나, 1991년에는 꽃게가, 1996년에는 고막이, 그리고 2002년에는 조기가 주요 상위 5개 품목으로 나타나, 패류와 갑각류의 생산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거래량도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표 3-19> 주요 품목별 연도별 도매시장 거래추이

(단위 : 톤)

순위	구분	1991	1995	1996	2000	2001	2002
1	고등어	13,679	23,933	30,959	32,134	32,519	30,982
2	물오징어	16,870	29,064	27,518	22,420	21,921	22,993
3	냉태	10,476	8,246	11,665	12,895	20,041	17,009
4	건멸치	14,340	16,486	13,705	12,726	13,133	14,325
5	조기	3,356	8,281	6,649	15,415	13,092	9,473
6	갈치	6,391	10,383	7,043	11,641	10,845	8,243
7	삼치	3,666	3,684	2,634	5,979	7,716	6,859
8	생태	2,056	8,309	6,308	5,860	4,675	5,651
9	꽁치	2,169	5,247	5,121	5,869	5,456	5,263
10	바지락	5,178	7,272	8,100	10,795	11,575	4,327
11	김	3,790	3,738	3,984	4,529	4,323	4,049
12	꽃게	8,958	8,203	7,031	3,463	4,408	3,977
13	임연수어	1,245	3,016	2,846	5,557	3,322	3,383
14	미역	6,208	2,997	2,361	4,488	5,723	3,245
15	고막	5,957	11,944	15,292	7,008	6,408	2,676
16	대구	958	2,813	3,131	2,631	2,555	2,370
17	건오징어	1,982	2,360	2,252	2,482	1,823	1,477
18	우렁챙이	6,227	4,548	5,742	1,564	1,351	1,154
19	코다리	3,864	9,047	7,078	3,170	790	767
20	기타	66,280	68,859	70,200	114,719	78,781	74,516

자료 : 농수산물유통정보(<http://www.kamis.co.kr>)

3. 우리나라의 수산물 소비구조와 특징

- 우리나라 식생활에 있어 수산물은 빠질 수 없는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지리적 특성상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연중으로 수산물이 생산되어 공급되는 구조를 지니면서, 주요 단백질 공급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표 3-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 1인당 1일 동물성 단백질 공급량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1997년에 전체 대비 38.9%를 차지하던 어패류의 비중이 점진적인 감소를 나타내어 2001년에는 32.4%를 보인 반면, 육류의 비중은 증가세를 나타내어 2001년 총 동물성 단백질 공급량 45.21g 가운데 30.54g으로 67.6%를 차지하였음. 그러나 여전히 수산물은 동물성 단백질의 중요한 공급원임을 나타내고 있음.

<표 3-20> 1인당 1일 동물성 단백질 공급추이

(단위 : g/1인당1일, %)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1/2000
계	40.26	37.38	40.76	41.19	45.21	109.7
축 산 물	24.60	23.85	25.49	26.27	30.54	104.8
어 패 류 (점 유 율)	15.66 (38.9)	13.54 (36.2)	15.27 (37.5)	14.92 (36.2)	17.67 (32.4)	-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 각 년도.

- 이렇듯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인 수산물에 대한 소비량을 살펴보면, <표 3-21> 같이 나타날 수 있음. 1980년 우리나라 국민은 1인당 27kg을 소비하였으나, 이후 꾸준하게 수산물 소비량이 증가하여 1995년에는 45.1kg으로 1980년 대비 약 67%의 높은 소비증가율을 나타내었음. 이후 소비세가 약간 주춤하였으나, 2001년에는 42.9kg으로 다시 증가세를 나타내고.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수산물 소비구조성향은 주로 어패류를 중심으로 소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1980

년 전체 수산물 소비 중 83% 정도를 어패류가 차지하였으나, 2001년에는 1% 정도 더 증가한 84%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어패류 중심의 소비구조가 보다 더 심화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반면, 해조류는 소비비율이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1980년에 비하여 약 50% 가까운 소비량의 증가를 나타내었음. 이러한 수산물 소비가 어패류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수산물 도매시장의 거래품목도 어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표 3-19>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매시장내 주요 거래품목의 비율은 건어물을 포함한 어패류가 2002년 기준, 약 62% 가량을 차지해 도매시장의 주요 거래도 소비구조에 맞게 수산물 유통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3-21> 1인 연간 수산물 소비량

(단위 : kg, 1인/년)

연 도	계	어패류	해조류
1980	27	22.5	4.5
1990	36.2	30.5	5.7
1996	43.7	34.4	9.3
1997	43.6	32	11.6
1998	34.7	27.2	7.5
1999	38.3	30.7	7.6
2000	36.8	30.7	6.1
2001	42.9	36.2	6.7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 각 년도.

- 수산물에 대한 소비가 증가한 것은 경제성장에 따른 국민 소득의 증가가 가장 큰 요인으로 판단됨. 이에 따라 수산물에 대한 소비지출구조도 변화를 가져왔는데, <표 3-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도시가구 1인당 소비지출 변화를 살펴보면, 1980년부터 2001년까지 수산물 소비지출액은 연평균 1.8%의 증가세를 나타내며 전체 식품에 대한 소비지

출 중 7.43%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수산물에 대한 소비지출이 증가한 원인은 수산물 소비의 증가와 수산물 가격의 상승으로 지출비중이 상승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음. 또한 수산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도 주요 원인으로 들 수 있으며, 등도 하나의 원인으로의 고급화 등의 가격상승도 주요한 원인으로 들 수 있지만, 국민들이 수산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건강식 또는 고급화된 음식이라는 인식변화로 외식위주의 수산물 소비가 증가한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판단됨.

<표 3-22> 도시가구 1인당 식품류별 소비지출 변화

(단위 : 천원/월, %)

구 분	1982	2000	연평균증가율
식료품	46.15(100.0)	105.58(100.0)	4.7
가정지출	42.10(91.2)	62.06(58.8)	2.2
곡류·식빵	14.01	11.17	-1.3
육류	4.08	11.00	5.7
낙농품	1.74	4.48	5.4
어패류	5.43	7.43	1.8
청과물	10.68	15.39	2.0
기타	6.16	12.59	4.1
외식	4.05(8.8)	43.52(41.2)	14.1

주 : 각 년도의 소비지출 지수는 1995년 불변가치를 기준으로 함.

자료 : 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 2001.

- 특히, 식생활 구조의 패턴에 있어서 간편화, 다양화 등으로 외식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가족구성의 수가 감소와, 독신생활자가 증가, 그리고 맞벌이가정의 증가 등은 외식위주의 소비형태가 크게 증가한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식품 유통업체 등도 소비기점형 유통체계로의 재편이 가속화되는 추세로, 이에 따라 외식업체 수의 증가 추세가 나타나고 있음.

제2절 수산물 시장별 시설현황과 거래제도

1. 산지시장(위판장)의 시설현황

- 수산물을 거래하는 시장은 크게 산지 산지시장과 소비지시장으로 나눌 수 있음. 산지시장은 산지위판장과 공판장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소비지시장은 농수산물도매시장, 공판장, 직판장, 그리고 물류센터 등을 들 수 있음. 수산물 취급을 위한 국내 유통시설은 2002년 기준, 총 336개소로 이중, 소비지도매시장이 15개소, 수협공판장이 7개소, 수협위판장이 234개소,¹⁶⁾ 직판장이 77개소 그리고 물류센터가 3개소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3-23> 한국 수산물 유통시설 현황

(단위 : 개소)

합 계	도매시장	수협공판장	수협위판장	직판장	물류센터
336	15	7	234	77	3

자료 : 해양수산부, 수산물 동향에 관한 연차 보고서, 2002.

- 수협의 유통시설 중 중앙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판장은 6개소(연안 1개, 내륙지 5개)이며, 단위조합 위판장은 228개소임. 이중 내륙지위판장 2개소와 물양장, 선착장, 가두리 등 판매시설을 갖추지 않은 위판시설 46개소를 제외하면, 실제 산지시장에서 위판업무를 담당하는 연안의 산지위판장은 180개소임(<표 3-24> 참조).

16) 산지위판장 현황은 해양수산부의 공식통계를 사용하였으나, 본 <표 3-28> 지역별 위(공)판장 현황 중 위판장 개소가 해양수산부의 통계와 차이가 있는 것은 물양장, 뗏목, 선상 등 단순시설만을 갖춘 위판시설에 대하여 수협통계에서는 위판시설에서 제외하기 때문임.

- 지역별 위판장 현황을 살펴보면, 전남과 경남지역이 각각 48개소와 41개소를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강원, 경북 등이 28개소와 19개소로 나타났다.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는 산지위판장은 연근해 생산에 필수적인 중요시설인 동시에 수산물 유통의 출발지로서 수산물이 주로 생산되는 남해지역과 동해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동해와 남해를 연안으로 접한 지역의 산지위판장은 전체 180개 위판장 중 7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4> 지역별 위(공)판장 현황(2002년 기준)

(단위 : 개소)

구 분	합계	연안			내륙지	2001년	증감
		소계	중앙회	조합			
합 계	186	179	1	178	7	200	-14
서 울	2	-	-	-	2	2	0
부 산	11	11	-	11	-	11	0
대 구	1	-	-	-	1	1	0
인 천	8	8	1	7	-	7	1
광 주	-	-	-	-	-	-	0
대 전	-	-	-	-	-	-	0
경 기	3	1	-	1	2	3	0
강 원	26	26	-	26	-	'	1
충 북	-	-	-	-	-	-	-
충 남	14	14	-	14	-	17	-3
전 북	10	9	-	9	1	10	0
전 남	43	43	-	43	-	52	-9
경 북	19	19	-	19	-	19	0
경 남	41	40	-	40	1	43	-2
제 주	8	8	-	8	-	10	-2

주 : 기타(물량장, 뗏목, 선상 등) 위판장은 포함 안됨.

자료 : 수협중앙회, 수산물 위(공)판장 현황, 2003.

- 주요 취급품목부류별로 산지위판장을 구분하면 다음의 <표 3-25>와 같음. 산지위판장이 주로 취급하는 수산물 부류는 활어, 선어, 패류, 젓갈, 해조류, 그리고 건어물 등 단위품목으로 구분할 수 있음. 그러나, 어업생산의 특성을 고려하면 하나의 부류를 중점적으로 취급하는 위판장과 두 가지 이상의 부류를 중점적으로 취급하는 위판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비율은 7대 3 정도로 하나의 부류를 중심으로 취급하는 산지위판장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다음으로 주요 취급품목별로 산지위판장을 구분하면, 선어취급, 활어취급, 활어·선어취급 산지위판장이 각각 23%, 20%, 18%의 비율로 나타나, 산지위판장의 상당수가 어류를 중점적으로 취급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패류와 해조류만을 취급하고 있는 위판장도 각각 17개, 14개소를 나타나, 특정품목 취급에 특화된 위판장도 상당수인 것을 확인할 수 있음. 또한 3가지 이상의 취급을 위판장도 전체의 약 10% 가까운 11개소로, 취급품목만을 고려한다면 위판장의 유통기능수행 측면에서 도매시장 성격에 가장 가까운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표 3-25> 참조).

<표 3-25> 부류별 전국 위(공)판장 개설현황

(단위 : 개소)

구분	계	활어	활어 선어	활어 패류	선어	선어 젓갈	선어 패류	패류	젓갈	해조	건어	전부류
합계	179	36	33	7	39	2	7	17	2	14	14	11
연안	172	36	33	7	36	2	3	17	2	14	14	8
내륙지	7				3		1					3
중앙 회	소계	6			3		1					2
	연안	1			1							
	내륙지	5			2		1					2
조 합	소계	173	36	33	7	36	2	3	17	2	14	9
	연안	171	36	33	7	35	2	3	17	2	14	8
	내륙지	2				1						1

주 : 전 부류는 3가지 이상의 부류를 취급하는 것을 의미함.

자료 : 수협중앙회, 2002수산물 위(공)판장 현황, 2003.

- 다음으로 산지위(공)판장의 규모 및 종사자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 3-26>과 같음. 산지위판장의 위판규모별로 살펴보면, 연간 위판량이 5천 톤 미만의 위판장은 134개소로 나타났으며, 5~10천 톤은 23개, 10~30천 톤은 19개, 그리고 30천 톤 이상은 4개소로 나타났음.
-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산지위판장이 가장 많은 전남지역의 경우, 총 위판물량은 205천 톤으로 이중, 5천 톤 미만을 취급하는 위판장 수는 35개소로 나타났으며, 5~10천 톤은 4개, 10~30천 톤은 2개, 그리고 30천 톤 이상의 취급하는 산지위판장도 2개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다음으로 경남지역의 경우, 총 위판물량은 187천 톤으로, 5천 톤 미만의 위판장 수는 32개, 5~10천 톤은 2개, 10~30천 톤은 6개, 그리고 30천 톤 이상의 위판물량을 취급하는 위판장은 1개소로 나타났음. 반면, 경인지역과 전북지역, 그리고 충청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위판물량과 위판수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3-26> 지역별 위판장의 규모 및 거래량

(단위 : 평, 톤, 백만원)

조합명	위판장명	위판장 규모				2002년 위판 실적	
		대지	총건평	경매장		물량	금액
				유개	무개		
[경인지역]							
합계	9	6,577	4,977	2,098	856	22,514	146,121
경인북부 (1개소)	소계	1,112	140	140	0	805	3,049
	내가	1,112	140	140		805	3,049
웅진 (4개소)	소계	2,420	1,075	602	856	8,580	53,321
	연안	1,305	722	346	400	5,573	43,959
	대부도	352	29	25	323	1,480	7,835
	월곶	630	191	136	100	955	955
	대청도	133	133	95	33	572	572

<표 3-26> 계속

조합명	위판장명	위판장 규모				2002년 위판 실적	
		대지	총건평	경매장		물량	금액
				유개	무개		
인천 (2개소)	소계	2,904	3,102	945	0	8,974	80,643
	연안	1,652	2,722	716		6,361	60,184
	소래	1,252	380	229		2,613	20,459
경가남부(내륙지) (1개소)	소계		580	331	0	3,727	6,539
	수원		580	331		3,727	6,539
영흥 (1개소)	소계	141	80	80	0	428	2,569
	신재	141	80	80		428	2,569
[강원지역]							
합계	26	15,059	5,004	5,566	4,290	63,470	162,926
고성 (3개소)	소계	1,833	1,098	1,098	735	17,325	44,459
	거진	938	553	553	385	9,263	25,589
	대진	506	222	222	284	5,785	13,325
	아야진	389	323	323	66	2,277	5,545
속초 (2개소)	소계	3,280	330	330	2,950	13,976	30,517
	본소	1,010	270	270	740	13,270	25,647
	동명동	2,270	60	60	2,210	706	4,870
대포 (1개소)	소계	390	50	50	340	1,273	5,651
	본소	390	50	50	340	1,273	5,651
양양 (3개소)	소계	877	334	334	0	1,727	7,526
	남애	531	202	202		1,036	4,498
	동산	213	35	35		225	972
	기사문	133	97	97		466	2,056
강릉 (2개소)	소계	1,170	1,170	905	265	10,593	27,511
	주문진	1,005	1,005	840	165	10,593	27,511
	사천	165	165	65	100		
동해 (2개소)	소계	2,640	1,280	1,280	0	8,692	23,534
	묵호	2,490	1,180	1,180		8,650	22,929
	금진	150	100	100		42	605
삼척 (3개소)	소계	827	0	827	0	6,154	11,926
	본소	200	0	200		4,616	8,942

<표 3-26> 계속

조합명	위판장명	위판장 규모				2002년 위판 실적	
		대지	총건평	경매장		물량	금액
				유개	무개		
삼척 (3개소)	장호	497	0	497		1,538	2,984
	덕산	130	0	130			
원덕 (2개소)	소계	3,659	359	359	0	2,154	6,032
	원덕1	3,260	208	208		1,298	5,069
	원덕2	399	151	151		856	963
죽왕 (8개소)	소계	383	383	383	0	1,576	5,770
	가진리1	50	50	50		1,576	5,770
	가진리2	50	50	50			
	가진리3	100	100	100			
	오호리1	50	50	50			
	오호리2	50	50	50			
	오호리3						
	공현진	33	33	33			
문암	50	50	50				
[충청지역]							
합계	14	3,656	2,195	2,085	60	21,862	64,723
보령 (4개소)	소계	938	327	312	0	7,635	25,296
	선어	643	132	132		3,110	7,154
	활어	60	53	53		302	2,589
	건어	89	55	55		1,672	8,120
	오천사업소	146	87	72		2,551	7,433
서천 (1개소)	소계	442	442	442	0	2,141	9,210
	장항	442	442	442		2,141	9,210
서산 (3개소)	소계	1,732	1,042	1,007	0	7,235	13,271
	선어	333	184	169		7,235	13,271
	건어	1,282	759	759			
서면 (2개소)	소계	205	205	205	0	3,372	10,205
	홍원	105	105	105		2,830	7,698
	마량	100	100	100		542	2,509

<표 3-26> 계속

조합명	위판장명	위판장 규모				2002년 위판 실적	
		대지	총건평	경매장		물량	금액
				유개	무개		
태안남면 (1개소)	소계	114	60	0	60	390	1,657
	몽대	114	60	0	60	390	1,657
안면 (2개소)	소계	145	69	69	0	457	3,391
	백사장	60	49	49		207	2,141
	영목	85	20	20		250	1,250
신흥	소계	80	50	50		632	1,693
[전북지역]							
합계	9	7,435	3,270	2,625	20	29,697	62,302
군산 (5개소)	소계	6,506	2,645	2,000	20	26,059	52,211
	해망동	5,151	1,880	1,598		15,642	32,065
	중동	416	458	270		2,840	13,229
	소룡동	510	187	87		1,746	2,755
	옥구	320	90	45		5,418	2,015
	비용도	109	30	0	20	413	2,147
고창 (2개소)	소계	150	100	100	0	29	225
	동호	100	70	70		7	89
	구시포	50	30	30		22	136
부안 (2개소)	소계	779	525	525	0	3,609	9,866
	곰소	279	145	145		181	943
	격포	500	380	380		3,428	8,923
[전남지역]							
합계	43	42,712	16,705	9,982	3,405	205,117	369,489
강진 (2개소)	소계	552	250	240	0	1,072	9,353
	마량	352	200	200		1,000	8,674
	신전	200	50	40		72	679
목포 (2개소)	소계	2,765	2,457	2,525	0	24,327	49,492
	본소	784	557	700		24,327	49,492
	서부	1,981	1,900	1,825			
신안 (4개소)	소계	1,750	296	286	80	9,886	24,893
	건어물	300	100	100		352	1,922

<표 3-26> 계속

조합명	위판장명	위판장 규모				2002년 위판실적	
		대지	총건평	경매장		물량	금액
				유개	무개		
신안 (4개소)	송도	150	58	58		2,305	6,504
	새우젓	500	108	108		6,369	15,269
	송공	800	30	20	80	860	1,198
완도 (4개소)	소계	1,527	1,238	1,238	100	5,546	31,936
	판매1	513	458	458		1,797	15,022
	판매2	800	710	710		1,588	15,733
	청산	80	70	70		924	535
	노화	134			100	1,237	646
영광 (3개소)	소계	964	291	161	0	1,612	5,098
	법성	180	150	100		1,400	3,468
	영광	240	41	41		30	918
	개마	544	100	20		182	712
익산 (1개소)	소계	145	80	80	0	1,933	2,010
	장용	145	80	80		1,933	2,010
금일 (2개소)	소계	955	340	150	465	4,902	7,596
	화목1	733	260	150	323	1,491	6,972
	화목2	222	80		142	3,411	624
소안 (1개소)	소계	378	50	50	0	8	251
	비자	378	50	50		8	251
진도 (4개소)	소계	1,721	1,227	1,227	0	21,482	19,658
	본소	1,321	995	995		4,616	5,377
	회동	20	20	20		9,033	5,496
	접도	268	100	100		7,365	5,828
	서망	112	112	112		468	2,957
해남군 (1개소)	소계	1,847	910	50	0	907	7,084
	삼산	1,847	910	50		907	7,084
거문도 (1개소)	소계	331	256	90	126	1,230	7,730
	거문도	331	256	90	126	1,230	7,730
고흥 (9개소)	소계	1,212	677	677	535	32,254	60,880
	녹동1	139	139	139		3,922	10,845

<표 3-26> 계속

조합명	위판장명	위판장 규모				2002년 위판 실적	
		대지	총건평	경매장		물량	금액
				유개	무개		
고흥 (9개소)	녹동2	298	298	298		2,683	35,989
	풍양	300	0	0	300	6,159	3,743
	여호	20	20	20		649	1,664
	송림	40	40	40		0	0
	취도	50	50	50		188	538
	신평	70	70	70		1,344	141
	구암	265	60	60	205	17,309	7,960
	내밭	30	0	0	30		
나로도 (1개소)	소계	166	166	166	0	863	5,591
	나로도	166	166	166		863	5,591
여수 (4개소)	소계	26,946	7,423	2,552	2,099	96,276	126,767
	본소	23,710	5,567	2,226	2,069	44,871	59,120
	남산	1,452	1,292	0	0	48,217	53,340
	군내	1,577	534	296	30	2,497	12,502
	남면	207	30	30		691	1,805
울촌 (1개소)	소계	120	30	0	0	365	1,052
	조화	120	30			365	1,052
제3,4구잠수기 (1개소)	소계	1,234	984	460	0	2,454	10,098
	국동	1,234	984	460		2,454	10,098
장흥 (2개소)	소계	99	30	30	0	0	0
	장환	59	20	20			
	회진	40	10	10			
[경북지역]							
합계	19	19,037	5,678	6,205	1,493	112,449	208,816
경주 (1개소)	소계	720	249	249	0	20,157	27,092
	감포	720	249	249		20,157	27,092
영일 (4개소)	소계	8,206	1,078	1,078	300	31,510	55,479
	영일1	1,470	802	802	0	5,371	8,934
	구룡포	5,129	200	200		18,443	35,493
	병포리	1,531			300	6,720	9,000

<표 3-26> 계속

조합명	위판장명	위판장 규모				2002년 위판 실적	
		대지	총건평	경매장		물량	금액
				유개	무개		
영일	장기	76	76	76		976	2,052
포항 (3개소)	소계	3,752	923	1,713	0	8,134	25,985
	죽도	1,234	149	1,085		7,639	21,216
	동빈활어	2,418	674	528		468	4,496
	북부활어	100	100	100		27	273
강구 (1개소)	소계	410	205	205	0	7,720	12,918
	강구	410	205	205		7,720	12,918
축산 (2개소)	소계	2,033	377	377	1,000	11,938	17,815
	대진	1,000			1,000	10	58
	축산	1,033	377	377		11,928	17,757
후포 (3개소)	소계	1,900	1,230	1,200	0	10,947	26,698
	후포	1,786	1,022	1,022		10,947	26,698
	구산	114	120	90		0	
	사동		88	88			
죽변 (2개소)	소계	1,154	754	714	0	12,921	27,183
	죽변	1,054	634	634		11,754	25,716
	원남	100	120	80		1,167	1,467
울릉 (3개소)	소계	862	862	669	193	9,122	15,646
	저동	669	669	669		8,411	14,166
	태하	98	98		98	612	1,277
	천부	95	95		95	99	203
[경남지역]							
합계	41	27,920	13,615	9,882	0	187,629	435,811
거제 (8개소)	소계	8,342	1,866	2,414	0	9,675	14,870
	장승포	4,373	270	270		6,283	6,533
	성포	938	276	276		257	1,881
	옥포	721	155	155		84	785
	구조라	330	102	102		96	937
	대포	1,147	599	1,147		96	1,173
	외포	398	236	236		2,816	2,955

<표 3-26> 계속

조합명	위판장명	위판장 규모				2002년 위판 실적	
		대지	총건평	경매장		물량	금액
				유개	무개		
거제 (8개소)	농포	370	209	209		32	538
	지세포	65	19	19		11	68
고성 (6개소)	소계	401	244	288	0	1,714	8,906
	하일	35	35	80		408	2,822
	삼산	116	36	36		28	291
	거류	75	33	32		32	180
	동해	81	60	60		0	0
	회화	60	46	46		48	352
	패류	34	34	34		1,198	5,261
마산 (2개소)	소계	4,077	2,544	1,665	0	33,763	43,804
	본소	3,727	2,366	1,514		31,112	32,907
	남성동	350	178	151		2,651	10,897
삼천포 (3개소)	소계	2,156	1,419	1,904	0	30,941	88,579
	선어	1,120	1,046	1,340		22,194	25,912
	건어	299	237	147		4,964	28,925
	활패류	737	136	417		3,783	33,742
울산(내륙지) (2개소)	소계	6,552	2,919	1,302	0	14,170	25,202
	방어진	6,342	2,656	1,039		11,778	19,551
	울산	210	263	263		2,392	5,651
의창 (1개소)	소계	482	105	105	0	12,702	13,095
	용원	482	105	105		12,702	13,095
진해 (2개소)	소계	1,105	236	133	0	747	6,213
	속천	1,043	179	90		526	3,968
	제덕	62	57	43		221	2,245
통영 (2개소)	소계	737	1,534	737	0	28,551	37,210
	본소	556	1,353	556		26,122	24,533
	도천동	181	181	181		2,429	12,677
하동 (3개소)	소계	534	641	222	0	2,696	12,715
	본소	74	493	74		2,337	10,821
	갈사	117	54	54		295	1,144

<표 3-26> 계속

조합명	위판장명	위판장 규모				2002년 위판실적	
		대지	총건평	경매장		물량	금액
				유개	무개		
하동	하동	343	94	94		64	750
남해 (5개소)	소계	982	398	398	0	10,350	17,781
	선어	206	204	204		8,390	7,443
	활어	385	100	100		690	4,558
	이동	144	27	27		70	757
	남면	67	17	17		189	1,853
	설천	180	50	50		1,011	3,170
육지 (1개소)	소계	122	70	40	0	0	0
	육지	122	70	40			
사천 (1개소)	소계	80	80	80	0	211	1,000
	활어	80	80	80		211	1,000
굴수하 (1개소)	소계	192	261	188	0	19,793	53,326
	본소	192	261	188		19,793	53,326
기선권현망 (2개소)	소계	1,908	1,183	291	0	21,941	111,623
	본소	1,308	598	186		12,348	65,961
	지소	600	585	105		9,593	45,662
진동 (2개소)	소계	250	115	115	0	375	1,487
	고현	120	50	50		130	562
	광암	130	65	65		245	925
[부산지역]							
합계	11	3,680	1,774	1,598	1,442	110,942	161,011
부산시 (5개소)	소계	2,820	1,103	1,232	1,362	87,349	122,212
	다대	700	638	638	62	12,738	15,659
	자갈치	487	49	438		59,848	70,569
	남포동	130	98	0		5,348	30,231
	낙동	1,300			1,300	9,202	4,726
	민락	203	318	156		213	1,027
부산동부 (1개소)	소계	100	50	20	80	6,630	6,373
	대면	100	50	20	80	6,630	6,373
제1, 2지구잡수기	소계	760	621	346	0	16,963	32,426

<표 3-26> 계속

조합명	위판장명	위판장 규모				2002년 위판실적	
		대지	총건평	경매장		물량	금액
				유개	무개		
제, 2지구잡수기 (5개소)	본소	125	111	80		10,011	13,953
	마산	248	262	97		4,725	7,832
	통영	151	120	71		892	3,080
	남해	62	28	16		700	4,747
	거제	174	100	82		635	2,814
[제주지역]							
합계	11	6,235	3,404	2,988	0	36,838	260,485
서귀포 (2개소)	소계	1,183	447	447	0	7,205	60,588
	본소	1,083	417	417		6,915	58,803
	태흥리	100	30	30		290	1,785
모슬포 (1개소)	소계	937	672	256	0	2,494	46,026
	본소	937	672	256		2,494	46,026
성산포 (2개소)	소계	2,655	896	896	0	9,994	75,692
	본소	2,606	847	847		9,910	74,819
	표선	49	49	49		84	873
제주시 (1개소)	소계	270	716	716	0	3,226	14,580
	본소	270	716	716		3,226	14,580
추자도 (1개소)	소계	300	200	200	0	1,098	11,161
	추자1	300	200	200		1,098	11,161
한림 (1개소)	소계	890	473	473	0	12,821	52,438
	한림	890	473	473		12,821	52,438

자료 : 수협중앙회, 수산물 위(공)판장 현황, 2003.

- 산지시장에서 산지위판장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생산기반이자 사회간접자본(SOC)인 어항은 자연재해로부터 어선과 어업인을 재산 및 인명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생산요소의 공급기지이자 생산된 수산물의 유통·가공기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특히 수산물 유통 및 가공기지 기능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증대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는 산지(양륙지)에서 가공처리하여 소비지로 직접 출하함으로써 유통비용의 절감과

선도 높은 가공원료의 안정적인 확보를 통하여 양질의 가공수산물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임.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전국 지정어항의 현황을 살펴보면, <표 3-27>과 같은데, 424개의 어항 중 국가 어항은 105개, 지방어항이 319개로 나타났음.¹⁷⁾ 지역별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전남 지역이 126개소로 가장 많은 어항이 분포하고 있으며, 산지위판장의 수도 가장 많이 나타나는 지역임. 다음으로 인천과 경북이 각각 38개소가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산지위판장의 분포와는 조금 다른 분포도를 가지고 있음.

<표 3-27> 전국 지정어항 분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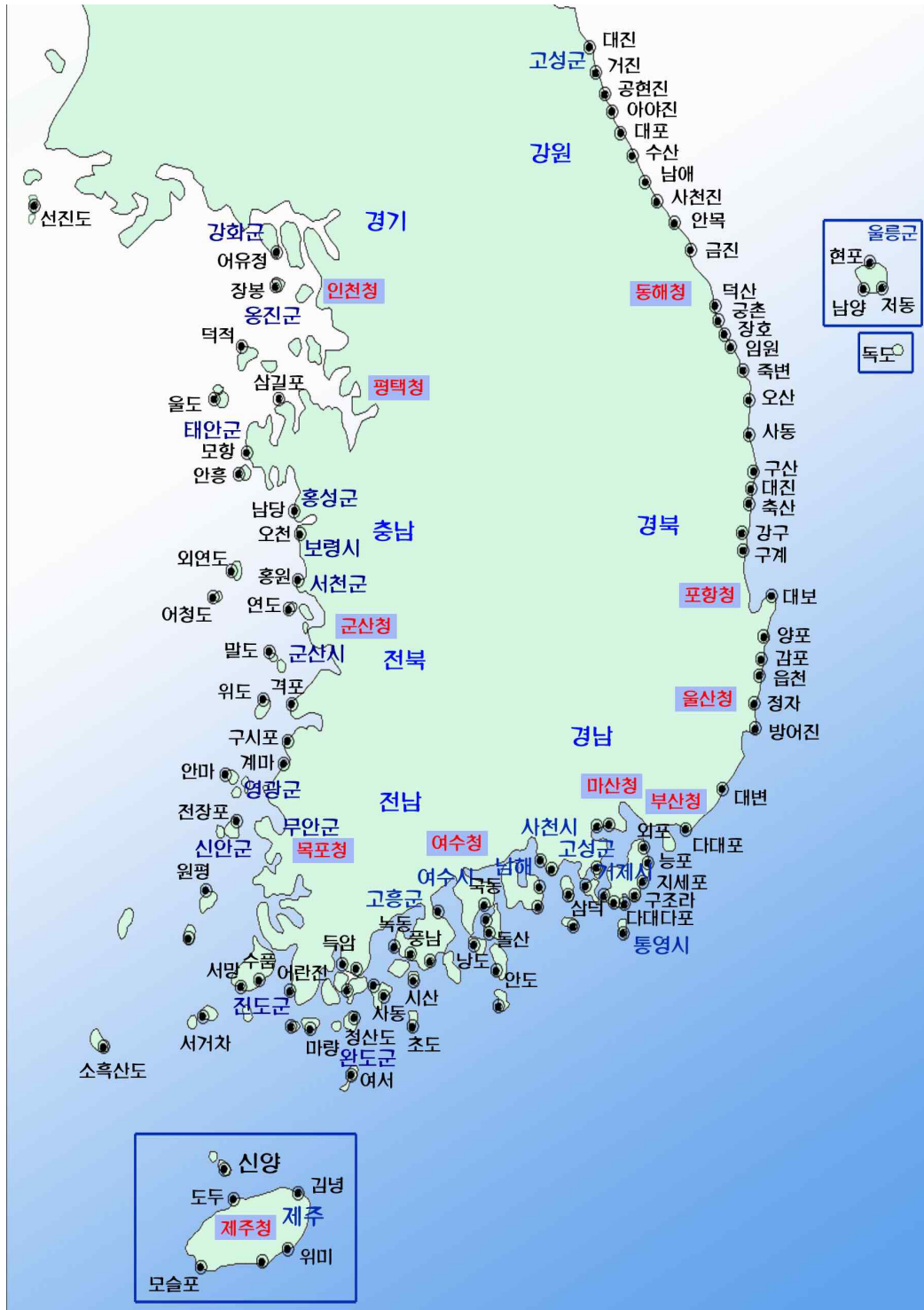
(단위 : 개소)

시·도	합 계	지정어항			
		국가어항			지방어항
		국가어항	육지	도서	
계	424	105	69	36	319
부산	16	2	2	-	14
인천	38	5	-	5	33
울산	8	2	2	-	6
경기	8	-	-	-	8
강원	28	14	14	-	14
충남	36	7	6	1	29
전북	21	6	2	4	15
전남	126	30	13	17	96
경북	38	15	12	3	23
경남	81	18	13	5	63
제주	24	6	5	1	18

자료 : 해양수산부, 2003 어항편람, 2003.

17) 어항법 제6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새로운 지정기준별로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국가어항은 (구 지정기준 1, 3종 어항) 이용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도서벽지에 소재하며 어장의 개발,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어항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개발하며, 지방어항(구 2종 어항)은 이용범위가 지역적인 어항에 한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하여 개발함. 그리고 어촌정주어항은 어촌의 생활근거지가 되는 소규모어항으로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지정하여 개발하고 있으나, 아직 한곳도 지정되지 못한 상황임.

<참고> 전국어항현황



2. 소비지 도매시장의 시설현황

- 내륙의 주요 소비중심도시에 개설된 농수산물 유통시장은 개설지역에 따라 중앙도매시장과 지방도매시장으로, 개설기준 및 개설자에 따라 공영도매시장, 일반법정시장, 그리고 민영도매시장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중앙도매시장은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개설된 시장으로서 서울과 대구, 대전, 울산 등 4개 도시에 5개의 시장이 개설되어 있으며, 지방도매시장은 경기, 충북, 전북, 경북 등 4개 지역에 9개소의 지방도매시장이 개설되어 있음(<표 3-28> 참조).

<표 3-28> 전국 농수산물도매시장 현황(2002년 기준)

(단위 : 개소, m²)

구 분	공 영 도매시장		일반법정도 매시장(수산)		소재지	개 장 일	규 모	
	개수	법인수	개수	법인수			부 지	건 물
계	12	20	3	3	-	-	-	-
서울	서울가락	1	3(1)		송과구 가락동 600	1986	542,920	261,787
	노량진			1	1	동작구 노량진	1983	18,836
대구	대구북부	1	2		북구 매천동 527-3	1988	151,654	96,338
대전	대전오정	1	2		대덕구 오정동 705	1987	74,022	26,018
울산	울산	1	3(1)		남구 삼산동 904-10	1990	41,011	25,108
경기	수원	4	2(1)		권선구 권선동 1229	1993	56,926	21,221
	구리		2(1)		인창동 127	1997	186,575	74,357
	안양		-		동안구 평촌동 934-1	1997	84,939	65,392
	안산		1		이동 528	1997	42,499	27,447
충북	청주	2	1		홍덕구 봉명동 2210	1988	34,380	20,066
	충주		1		목행동 426-4	1995	45,756	13,776
전북	전주	2	2(1)		덕진구 송천동 492-36	1993	59,578	26,754
	익산		1		목천동 916-4	1998	105,782	22,638
경북	포항			1		1968	2,205	1,865
	경주		2	1		1963	1,578	1,896

주 : 1) 2003년 6월 기준 공영시장의 경우, 서울 강서, 광주 제2 도매시장은 건설중임.

2) ()는 도매시장공판장 개수임.

자료 :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http://market.affis.net>).

- 도매시장의 종사자 현황을 살펴보면(<표 3-29>), 2002년 기준, 15개 법정도매시장의 전체 종사자수는 총 4,400명이며, 이중 산지유통인이 가장 많은 2,481명, 중도매인 1,201명, 도매시장법인 직원 489명, 경매사 125명, 그리고 매매참가인이 104명 등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을 비롯한 중앙도매시장 위주로 도매시장 종사자가 사무를 처리하고 있어, 지방도매시장의 경우, 부류당 3~4명의 중도매인이 분산업무를 담당해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공영도매시장과 일반법정도매시장의 종사자 비율은 70:30으로 나타나 전체 도매시장 중 공영도매시장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음.

<표 3-29> 도매시장 종사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전체임직원	경매사 ¹⁾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산지유통인
계	489	125	1,201	104	2,481
공 영 도 매 시 장	336	94	988	77	1,581
일반법정 도매시장	153	31	213	27	900
민 영 도 매 시 장	-	-	-	-	-

주 : 경매사는 도매시장법인 소속직원 중 자격증 보유자 수를 말함.

자료 : 농림부, 2002년도 농수산물도매시장통계연보, 2003.

- 공영도매시장의 하역인력 및 하역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수산물의 하역작업을 담당하는 인력은 총 373명으로, 수산물 하역비용은 연간 4,586백 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음(<표 3-30> 참조). 하역인원이 가장 많은 곳은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전체 하역인력 중 69%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 하역인력이 63명으로 나타났음. 도매시장의 하역인력 또한 도매시장의 종사자와 마찬가지로 중앙도매시장 및 수도권 시장을 중심으로 인력이 분포되어 있어, 지방도매시장의 경우, 그 기능이 매우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임. 여기서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의 하역인력이 없는 것은 해당시장의 법인이 파산함에 따라 수산물거래를 실시하고 있으나, 중도매인

에 의한 자율적인 하역업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임.

<표 3-30> 시장별 하역인력 및 하역비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시 장	계		노동조합		용역		법인직원		자체하역반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서울가락	256	3,311	256	3,311	-	-	-	-	-	-
대구북부	3	16	-	-	-	-	-	-	3	16
대전오정	11	42	9	32	-	-	1	-	1	10
울 산	8	78	-	-	-	-	4	12	4	66
수 원	13	92	8	58	-	-	-	-	5	34
구 리	63	859	-	-	45	465	18	394	-	-
안 양	-	-	-	-	-	-	-	-	-	-
안 산	5	31	-	-	-	-	-	-	5	31
청 주	4	69	-	-	-	-	4	69	-	-
충 주	3	12	-	-	-	-	3	12	-	-
전 주	5	50	-	-	-	-	3	30	2	20
익 산	2	26	-	-	-	-	2	26	-	-
계	373	4,586	273	3,401	45	465	35	543	20	177

자료 : 농림부, 2002년도 농수산물도매시장통계연보, 2003.

- 하역비에 대한 부담현황을 살펴보면, 도매시장별로 약간씩 다르나, 전반적으로 하역비 부담은 출하자가 도매법인에 비하여 4배정도 많이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우, 전부 출하자가 부담하는 데 반하여 충주와 익산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우, 도매법인이 하역비를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우도 하역비 부담에서 도매법인이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표 3-31> 참조).

<표 3-31> 시장별 하역비 부담현황

(단위 : 백만원)

시 장	2001			2002		
	출하자	법인	계	출하자	법인	계
서울가락	3,480	-	3,480	3,311	-	3,311
대구북부	19	-	19	16	-	16
대전오정	48	-	48	42	-	42
울 산	50	35	85	58	20	78
수 원	194	-	194	92	-	92
구 리	18	901	919	-	859	859
안 양	-	-	-	-	-	-
안 산	25	7	32	28	3	31
청 주	44	13	57	49	20	69
충 주	-	13	13	-	12	12
전 주	60	-	60	50	-	50
익 산	-	23	23	-	26	26
계	3,938	992	4,930	3,646	940	4,586

주 : 공영도매시장의 수치임.

자료 : 농림부, 2002년도 농수산물도매시장통계연보, 2003.

- 도매시장내 반입물량의 규격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파렛트화 정도를 살펴보면, 2002년 기준 도매시장내 파렛트화 출하를 실시한 도매시장은 구리, 충주, 전주 등 3개 시장에 물량은 총 6,616톤인 것으로 나타나, 공영도매시장내 총 거래량의 약 3% 가량을 차지해 매우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음(<표 3-32> 참조). 또한, 파렛트 출하물량 중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 물량이 전체의 85% 가량을 차지해 충주와 전주의 파렛트 출하물량 비중 역시 대체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3-32> 시장별 파렛트 출하현황

(단위 : 톤, 백만원)

시 장	파렛트 출하실적				파렛트당 하역비(원)	
	국내산		수입산		국내산	수입산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서울가락	-	-	-	-	-	-
대구북부	-	-	-	-	-	-
대전오정	-	-	-	-	-	-
울 산	-	-	-	-	-	-
수 원	-	-	-	-	-	-
구 리	5,611	8,839	5,544	11,575	7,600	7,100
안 양	-	-	-	-	-	-
안 산	-	-	-	-	-	-
청 주	-	-	-	-	-	-
충 주	42	79	474	756	-	-
전 주	963	16	635	14	-	-
익 산	-	-	-	-	-	-
계	6,616	8,934	6,653	12,345	-	-

자료 : 농림부, 2002년도 농수산물도매시장통계연보, 2003.

3. 수산물 거래시스템과 류별 유통경로

1) 우리나라의 수산물 거래시스템

- 수산물 유통의 구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짐. 첫째, 생산지의 경우, 생산자에 의해 생산된 상품을 양륙시킴과 동시에 산지위판장에서 1차 경매를 통하여 출하되며, 둘째, 소비지도매시장에서는 산지위판장에서 출하된 상품을 집하하여 소비지도매시장에서 가격 결정 후 소매상 또는 소비자에게 분산되는 형태를 가짐.
- 산지위판장은 우리나라 연근해 어획 수산물의 약 70% 정도가 거래되고 있는 중요한 생산시설이자 유통시설임. 생산된 어획물은 산지 수협의

위판장에 위탁하여 1차 가격이 형성되어짐. 가격결정은 대부분 경매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어획물의 선도에 따른 품질수준과 해당 상품의 수급상황에 따라 가격형성에 큰 영향을 미침.

- 경매의 진행순서는 어선이 입항하여 입항신고를 마친 후 어획물을 경매시간에 맞게 양륙하여 진열함. 진열된 어획물에 대하여는 수탁증이 발부되며 이때부터 어획물에 대한 책임은 산지 수협이 지게 됨. 경매시작을 알리는 신호에 따라 경매사는 중도매인을 모아 경매를 실시하는데, 경매사는 중도매인 제시한 가격 중 최고가격을 제시하는 중도매인에게 경락을 결정하게 됨. 경락이 결정되면 기록원은 매매기록장에 경락단가, 금액, 경락자 등을 기록하며, 수협은 위탁되어 경락되어진 어획물에 대한 판매대금을 생산자에게 결제하며, 하주별 판매총액, 공제금액, 정산액 등을 집계하여 위탁매매대장을 작성함.
- 수산물이 산지위판장을 경유하는 이유는 위판장이 어장이 인접한 연안에 위치하고 있어 성어기에 어장과 어항을 신속하게 이동함으로써 왕복횟수와 어획량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유통비용 등 가변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산과정에 있어서도 빠른 대금결제와 산지수협의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결제시스템을 갖추었기 때문임.
- 이러한 산지위판장으로 대변되는 산지시장의 기능으로는 첫째, 어업활동의 촉진을 들 수 있음. 어획의 생산 장려와 상품화 과정에서 산지수협을 통한 대리업무 처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처리과정에서 자연스러운 분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둘째, 유통조성기능을 들 수 있음. 즉, 어획물에 대한 선도유지를 가능하게 하며, 선별과 포장, 그리고 규격화 등을 통하여 제품의 가격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 셋째, 물적유통기능으로서 상품이 저장, 가공, 운송 등의 처리기능을 가지며, 넷째, 상품화 기능으로서 어황여건과 양륙사정에 따라 국지적인 경매를 실시함으로써 제품의 질적 저하의 방지

와 적절한 시기에 판매하여 가격하락을 방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

- 수산물 소비지도매시장은 전국에서 대량으로 집하된 수산물에 대하여 가격의 적정여부를 결정하는 기능을 수행함. 즉, 시장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경매를 실시하여 기준가격을 제시함으로써, 도매시장간 가격차와 공급량을 조절하며, 경매가격을 즉시 공개하여 도소매단계의 지나친 이윤의 억제 및 소비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함.
- 소비지도매시장내 도매법인은 거래량·거래금액·거래가격을 공개하고 이를 정확하게 보고함으로써 탈세방지 및 공정거래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있으며, 필요한 물량의 구매조건을 구비하고 소비지에 다양한 상품을 집하·공급함으로써 유통시간을 단축시키고 상품의 신선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비용을 절감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공영도매시장은 수탁의 주체와 분산의 주체를 분리시켜 상장경매제도를 기본 거래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음. 유사시장의 경우, 위탁도매상이 수탁 → 가격결정 → 분산 등 모든 유통과정에 관여함으로써 가격결정의 주도권을 행사하게 되어 생산자가 불리한 구조를 지니게 됨.
 - 이에 공영도매시장은 수탁주체와 분산주체를 별도로 분리하여 각자 역할과 기능을 수행토록 하고 있으며, 이때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주로부터 수탁받은 수산물의 판매를 대행하여 상장경매를 통해 가장 높은 가격으로 판매해 주는 수탁기능을 담당하며, 중도매인은 소매상의 구매를 대행하여 경매를 참가하여 낮은 값에 매수하여 분산시키는 기능을 담당함.
- 도매시장의 거래제도인 상장경매제도는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대금정산을 보장하고 있음. 또한 소비지의 거래동향과 수급 등에 대한 정보를 생산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출하량을 조절할 수 있게 하며, 유사도매시장과 같은 불공정거래를 방지함과 동시에 제품의 상품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전일에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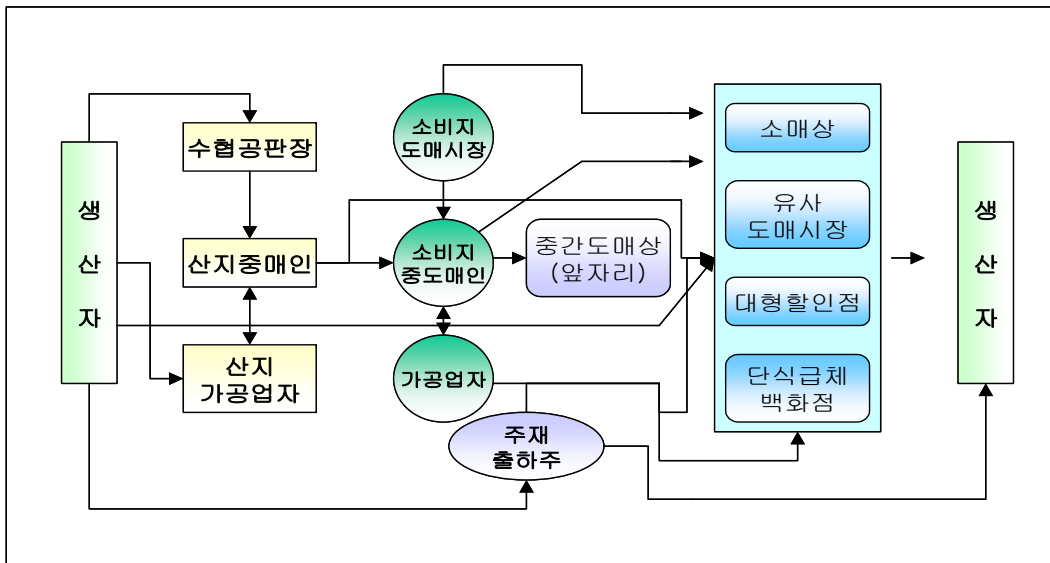
된 경매가격을 참고로 하여 소매상 또는 매매참가인에게 적정한 가격 산정에 도움을 줌으로써 유통마진의 절감효과를 나타나게 하고 있음.

2) 선어류의 유통경로

- 선어류의 가장 일반적인 유통형태는 생산자가 산지위판장에 위판하면 산지중도매인이 경락을 받아 소비지도매시장 등에 출하하는 형태로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음. 전체 수산물 부류중 선어류는 산지위판율이 가장 높고, 도매시장에서도 경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품목으로 나타나고 있음.
- 선어류의 출하형태는 어상자에 담아 산지 위판장에 1차 상장을 한 후, 이를 유사도매시장, 대형할인점을 포함한 신업태 등으로 유통시키거나 재입상하여 도매시장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으며, 선어류 품목 중 고등어의 경우, 일부가 도매시장에 상장되기 전에 자반형태로 가공되어 상장하고 있음.
 - 선어류가 주로 산지위판장을 경유하여 도매시장으로 유통되는 비율이 높고, 수집상을 통하여 출하되는 비율이 낮은 이유는 어선어업의 어획물로서 주로 산지위판장에서 양륙되어 1차 경매를 통하기 때문에 주재 출하주나 수집상 출하보다는 산지중매인으로부터 출하가 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임.
- 생산지별 출하형태를 살펴보면, 국내산 선어류는 대부분 산지에서 위판되고 있으며, 이중 상당수가 도매시장에 상장되어 유통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수입산 선어류의 경우 대부분 수입업자를 통하여 바로 소매형태로 판매되거나 대형할인점, 유사도매시장 등으로 판매되며, 일부가 도매시장에서 유통되고 있음(<그림 3-2> 참조).
- 도매시장에 상장된 선어류는 두 가지 경로를 통해 분산되고 있음. 첫째, 도매법인상장의 경우, 출하된 품목에 대하여 경매를 통하여 중도매

인에게 낙찰된 후 구매자에게 분산되는 형태와 더불어 도매시장내 반입된 상장예외품목에 대하여 정가·수의매매를 실시한 후 중도매인의 의해 분산되어 소매점 등에 의하여 판매되는 형태임. 둘째, 불법적인 거래형태로서 도매시장에 반입되기는 하나, 기록상에 남기지 않는 경우로서 일부의 거래에 한하며, 중도매인의 수탁 또는 주재출하주에 의하여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

<그림 3-2> 선어류의 유통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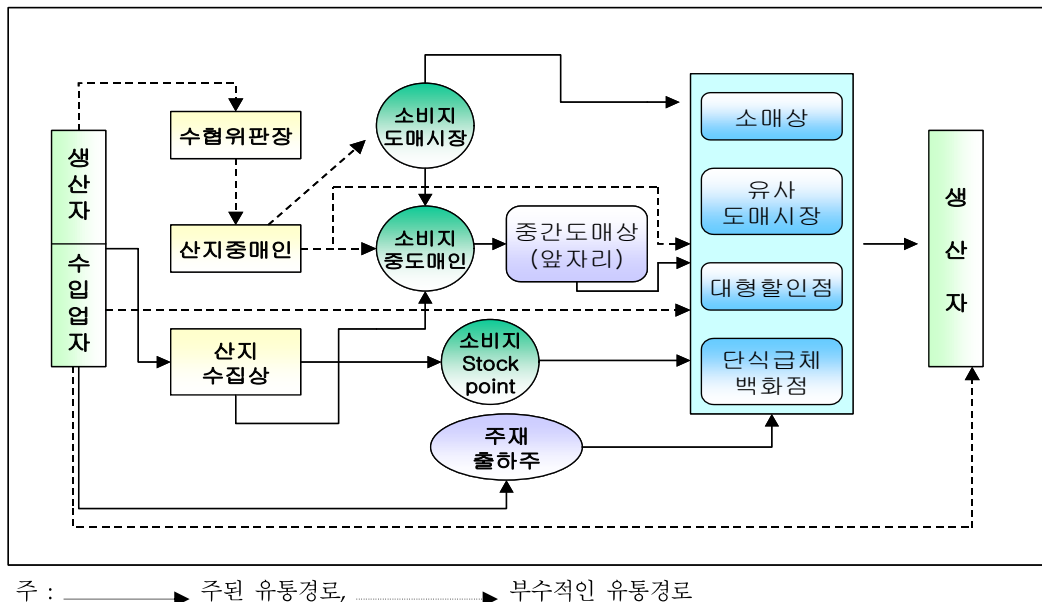
- 도매시장 법인 출하품의 경우, 경매에 따른 법정수수료를 지불하면 되지만 중도매인 출하의 경우는 상장수수료, 물류비용, 중도매인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하므로 산지중매인 수취가격의 약 11%정도의 비용을 산지중도매인이 부담하게 됨.
- 선어는 유통경로가 명확하여 투명한 거래형태를 보이는 장점을 가지나, 반면, 유통경로가 비교적 긴 것이 단점으로 나타나고 있음. 예를 들면, 산지에서 수산물이 양륙될 때 고봉입상의 문제와 기준에 맞지 않는 어류를 같이 담은 속박이 문제 그리고 출하처마다 포장단위가 다른 점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유통경로의 단순화를 위

해서는 어상장(파레트)의 규격화를 통하여, 어종의 생산단계에서부터 도매시장에서 경매되는 순간까지의 해체와 재포장하는 단계를 축소함으로써 비용 절감과 유통시간의 단축을 도모할 수 있음.

2) 활어류의 유통경로

- 활어류는 생산자가 산지위판장에 위판하는 비율이 낮고, 시장의 유통이 일반적인 형태임. 또한 소비지도매시장에 상장을 하기는 하나, 선어에 비해 출하율이 낮고 수집상 등의 일반유통업자가 횡집에 판매하는 형태가 일반적임(<그림 3-3> 참조) .
- 출하형태는 활어를 활어차로 수송하며, 이를 그대로 유통하는 경우가 많은데, 별도의 가공과정을 거쳐 상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도매시장으로 출하된 활어는 활어차 단위 또는 도매시장내 설치된 수조에 옮겨져 경매를 실시하거나 정가·수의매매되는 비율이 높음. 활어의 유통은 살아있는 상태로 수송하므로 손실률(감모율)이 크다는 특징이 가짐.

<그림 3-3> 활어류의 유통경로



- 생산지별로 보면, 국내산의 대부분이 시장의 유통이며, 수입산은 일부

도매시장 유통이기는 하나, 국내산 활어와 마찬가지로 하남활어시장 등의 시장의 유통이 일반적이며, 가격결정은 산지의 위판가격과 소비지의 경매가격이 기준이 되기는 하지만, 도매시장의 유통이 많아 가격결정이 시장의 유통업자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가격형성과정이 불분명 함.

- 활어류는 산지위판장을 경유하는 경우, 어선어업의 어획물인 경우가 많고, 대부분 산지에서 소비되고 나머지가 소비지도매시장을 출하되는데, 산지중매인이 출하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재 출하주 혹은 수집상이 수집하여 출하하는 경우도 상당수임.
 - 도매시장내로 출하된 활어는 선어와 마찬가지로 도매시장의 법인을 통해 상장되거나 소비지중도매인에게 바로 출하되는 일부 있으나, 비교적 도매시장법인을 거쳐 상장되어 분산되는 비중이 높은 편임.
 - 활어의 거래형태는 산지시장에서 위판되는 어선어업 활어의 경우, 경매를 통한 1차 가격형성이 이루어지나, 가격은 생산지에 따라 그리고 수송, 양식어업 활어와 수입활어는 정가·수의매매되고 있음. 소비지도매시장의 경우, 경매가 이루어지므로 주된 가격형성방식은 상장경매라 할 수 있지만, 정가·수의매매도 성행하고 있음.
- 연근해 어업으로 어획되는 활어의 경우, 제품의 규격화가 어렵고 계절별로 생산량이 다르므로 일정한 가격형성이 어렵고, 거래물량을 확보하기 힘든 것이 사실임. 따라서, 도매법인의 수집권한을 현재보다 강화시킴으로써 산지에 지부(주재 출하주)를 두어, 도매시장의 거래물량을 확보하는 방안과 양식활어의 경우, 일정한 생산이 가능하므로 해면어획물과 마찬가지로 생산물량에 대한 선계약(협의가격) 등을 통해 도매시장 거래물량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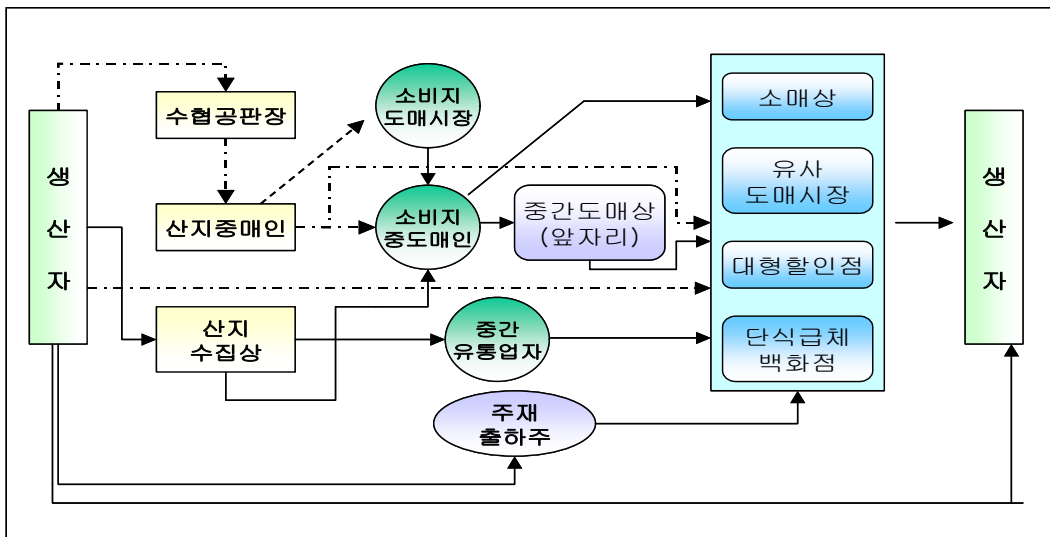
3) 패류의 유통경로

- 패류는 생산자가 산지위판장에 위판하거나 입찰에 의해 판매하는 비율

이 활어에 비해 높고, 시장의 유통과 시장유통이 6:4의 비율을 보임. 또한 소비지도매시장에 상장을 하기는 하나, 선어에 비해 출하율이 낮으며, 수집상 등의 일반유통업자가 판매하는 형태도 많음.

- 부류별 수산물 중에서 산지위판율이 선어보다 낮고, 도매시장에서도 경매비율은 비교적 낮은 품목임. 그러나 최근 정부의 경매강화정책으로 경매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 출하형태는 생산자가 망 등에 담아 산지에서 출하하며, 수집상이나 산지위판장의 중매인이 도매시장에 출하할 때 물봉지 등에 작게 나누어 담거나, 조개류, 미더덕 등은 껍질을 까는 등의 1차 가공 후 출하하는 등 일련의 포장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대부분임(<그림 3-4> 참조).

<그림 3-4> 패류의 유통경로



주 : —————> 주된 유통경로, - - - - -> 부수적인 유통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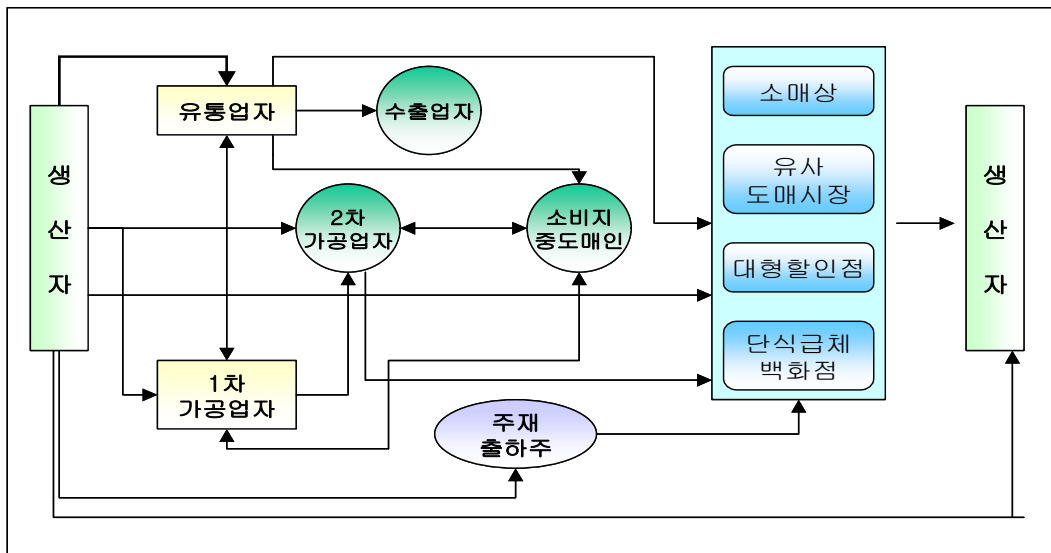
- 생산지별로 보면 국내산은 경매율이 높아지기는 했으나, 시장의 유통이 여전히 많은 편으로 최근 패류경매의 실현으로 산지의 공동출하와 가격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가격결정은 산지의 위판가격과 소비지의 경매가격이 기준이 되기는 하지만, 비상장품목이나 시장의 유통의 경우, 거래상대자 간에 미리 가격을 협약하는 협의가격 또는 상대매매 형태로

이루어짐. 이는 경매의 경우 가격형성이 불안정하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 신뢰도가 높으며, 가격을 협약하는 경우는 결정된 가격이 경매가격보다 낮을 수 있으나,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하기 때문에 협의가격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4) 건어류의 유통경로

- 건어류는 생산자가 산지위판장을 위판하는 비율이 낮으며, 가공업자가 일부 산지위판장에 위판하고, 소비지도매시장에 상장을 하거나 시장의 유통을 하는 경우가 많음. 선어에 비해 출하율이 낮음.
- 출하형태는 생산자가 가공업자에게 원어를 출하하며, 가공업자가 이를 가공하여 시장에 출하하는 형태임. 이는 선어나 활어에 비해 가공과정을 한 단계 더 거치는 형태로 산지에서의 가공업자의 역할이 다른 부류보다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음(<그림 3-5> 참조).

<그림 3-5> 건어류의 유통경로



- 생산지별로 보면 국내산은 특히, 해조류와 멸치, 오징어 등은 일부 경매를 하기는 하지만, 시장의 유통이 압도적으로 많고, 수입산은 원료 형태가 많음. 가격결정은 원초나 원어의 경우, 산지의 위판가격과 소비

지의 경매가격이 기준이 되고 있으나, 가공을 한 이후에는 원가산정이 가능하므로 거래상대자 간에 미리 가격을 협약하여 출하하는 형태가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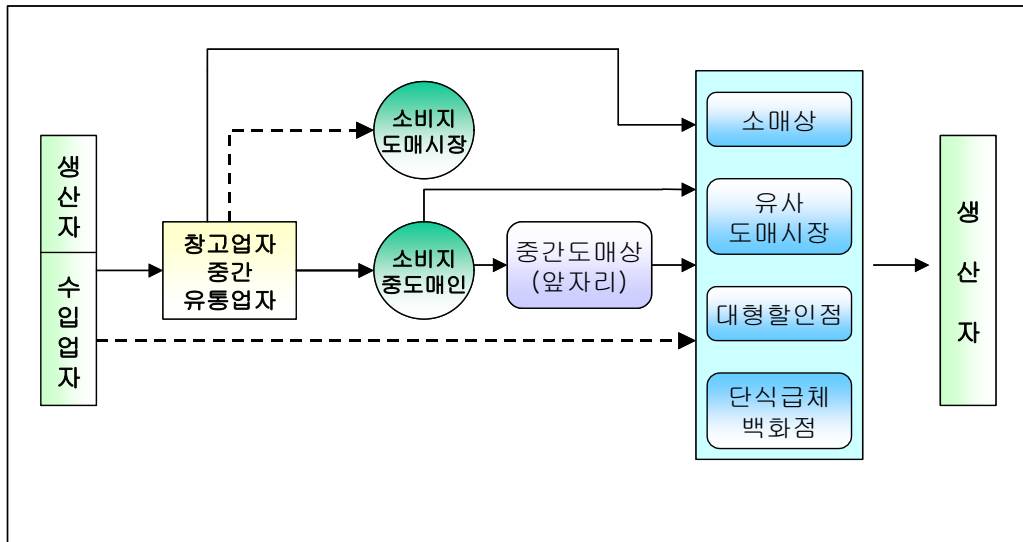
- 건어류의 경우, 유통경로가 선어나 패류에 비해 짧으며, 가공과정을 거치면서 저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안정적인 거래물량의 확보가 가능함. 그러나, 저장비용이 많이 들며, 유통단계에서 가공과정을 거치므로 추가비용이 드는 것이 단점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도매법인에 대한 창고업, 가공업 등 겸업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도매시장내 가공공장 및 창고시설의 설치를 가능케 함으로써, 안정적인 물량의 확보와 저장비용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임.

5) 원양어류 및 수입어류 경로

- 원양어류나 수입어류는 과거부터 시장의 유통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특히, 냉동물이 많아 창고업자의 역할도 중요하였음. 생산자가 산지위판장에 위판하는 비율은 거의 없고, 일부 공동어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우가 있음. 도매시장 출하율은 상당히 낮은 편이며, 시장의 유통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출하형태는 원양어획물의 경우, 생산자가 시장에 출하하거나 직접 판매하는 경우는 드물고 중간유통업자(창고업자 포함)가 대부분의 물량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임. 수입산의 경우도 수입업자가 직접 유통시키는 경우는 드물고 역시 중간유통업자가 유통을 담당하고 있음(<그림 3-6> 참조).
- 생산지별로 보면, 국내산 원양어류 및 수입산 모두 시장의 유통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가격결정은 산지의 위판과 소비지의 경매가 거의 없어 기준이 되기는 힘들고, 수입의 경우는 원가산정이 가능하므로 거래당사자간에 미리 가격을 협약하여 출하하는 경우가 많음. 원양어류 및 수입어류의 경우, 생산자가 수입통관과정을 거친 후 대부분 창고업자나 유통업자에 의하여 1차 유통된 후 도매시장내로 반입되거나 신업체, 유사

시장 등으로 분산되고 있음.

<그림 3-6> 원양어류 및 수입어류의 유통경로



6) 시장 거래실태 및 가격결정방식

-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어류별 다른 특성으로 인하여 거래방법과 가격형성과정이 조금씩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음. 선어류는 원가가 불분명하고, 생산량과 가격변동이 심하며, 수급조절과 저장성이 없기 때문에 경쟁적인 가격결정방법이 유리하며, 패류는 선어류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나, 출하시기 조절은 다소 가능한 거래형태를 가지고 있음.
- 양식활어는 생산원가가 분명하며 수급조절이 앞에서 가능하나, 자연산 활어와 경쟁적이므로 경매와 수의매매 두 가지 거래형태가 모두 나타나고 있음. 건어류의 경우는 원료구입비용이 명확하고, 가공비용이 산정 가능하므로 원가가 명확하고 저장성도 높지만 원료의 생산량 변동에 영향을 크게 받고 있어, 경매보다는 정가·수의매매형태로 거래되고 있음.
- 원양어류는 원가산정이 어선어업과 같이 불분명하고, 생산량의 변동도 심하나, 기본적으로 냉동어류의 특성을 가져 저장성이 높은 편임. 따라

서 수급조절이 가능하며, 매매방법은 수의매매 형태로 거래되고 있음. 수입산 어류 또한 원양산 어류와 마찬가지로 원가가 분명하고, 냉동어류 상태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상장되어 수의매매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임.

- 가격형성과정에서 결론적으로 저장성이 없으며, 원가가 불분명하고 생산량의 변동 혹은 수급조절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품 중 산지에서 1차 경매 가격이 형성되는 수산물은 소비시장에서 경매방식이 많이 사용되며, 원가가 분명하고 수급조절이 어느 정도 가능한 수산물 중 산지위판장에서 1차 경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수의매매형태로 가격이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음(<표 3-33> 참조).

<표 3-33> 수산물의 부류별 가격형성 방식 및 특징¹⁸⁾

구 분		선어류	양식활어류	패류	건어류	원양 및 수입어류
원가 명확성		×	○	×	◎	◎(원양), ○(수입)
원가근거		어선어업 원가불명확	치어가격변동, 양식비용산정 가능	중매인인 및 수집상 구매 후 소분, 포장출하	원초(원어)가 격변동, 가공 비용산정가능	원양어업원가불명확, 수입원가명확
생산량 변동		◎	△	○	○	◎(원양), ×(수입)
가격변동		◎	△	○	△	○(원양), △(수입)
수급조절		×	○	○	○	○(원양), ◎(수입)
저장성		×	○	◎	◎	◎(원양), ◎(수입)
가격 결정	1차	경매	◎	×	△	×
		수의매매	×	◎	○	◎
	2차	경매	◎	○	○	×
		수의매매	×	○	○	◎

주 : ◎: 아주 높음, ○: 높음, △: 낮음, ×: 아주 낮음을 의미.

18) 자세한 내용은 강중호, 수산물 유통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p.58,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2를 참조할 것.

제4장 우리나라의 수산물 유통관련 법체계

제1절 농안법과 수산물 유통관련 법체계

제2절 현행 농안법과 수산물 유통현실과의 쟁점

제1절 농안법과 수산물 유통관련 법체계

1. 농안법의 연혁

- 현재, 수산물 유통의 대표적인 법은 농안법임. 현행의 농안법은 1951년 6월 22일 『중앙도매시장법』(전문 16개 조문, 부칙 3개 조문)으로 제정되었으며, 당시에는 이 법을 상공부에서 관장하였음. 1973년에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관한 업무를 상공부에서 농림부로 이관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법』(전문 37개 조문)을 제정하였음.¹⁹⁾
- 1976년에는 농수산물도매시장법과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법을 통합하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전문 68개 조문, 부칙 3개 조문)을 제정하였는데, 법률이 제정된 이후 2002년 말까지 총 16회(전문 개정 1회 포함)에 걸쳐 개정되었음.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시행령은 1977년 7월 22일 제정된 이후 전문개정 2회를 포함하여 16회에 걸쳐 개정되었고, 시행규칙은 1977년 8월 12일 제정된 이후 전문개정 2회를 포함하여 9회에 걸쳐 개정되었음. 그리고 1996년에는 해양수산부가 발족되어 수산물 유통분야의 업무는 해양수산부가 관장하게 되었음. 현행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하 농안법)은 현재 총 9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률은 91개 조문, 시행령은 38개 조문, 시행규칙은 58개 조문으로 되어 있음.
- 현행 농안법의 제·개정 내용중에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그림 4-1> 참조). 1976년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의 제정은 전술한 바와 같이 농수산물도매시장법과 농수산물 가격안정기

19) 1914년 조선총독부가 시장규칙 제정하여, 부산중앙도매시장이 개설되었음(193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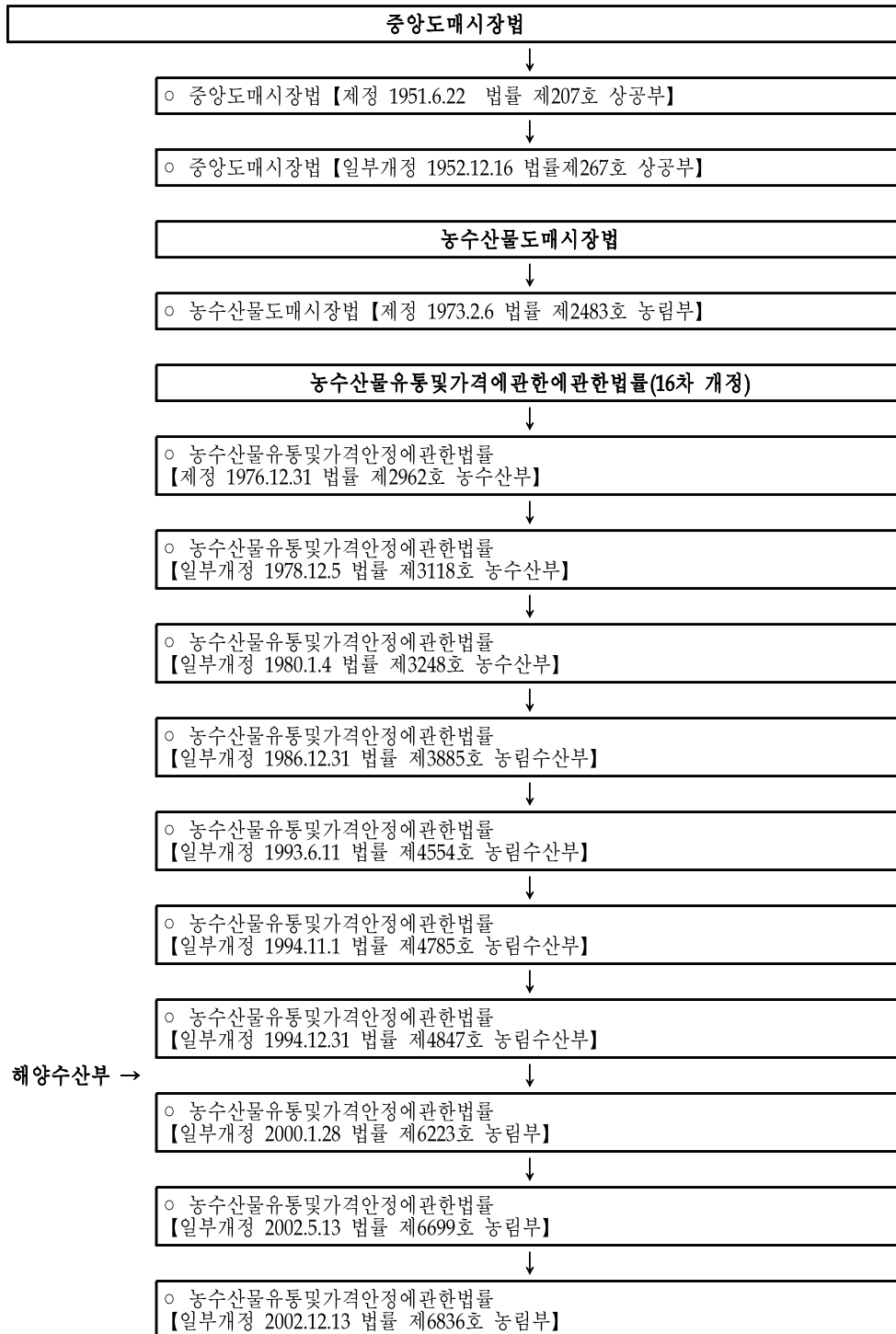
금법 통합으로 특징지을 수 있음. 또한, 1도시 1시장체제를 폐지하였으며, 공익법인의 도매대행권을 지정업체로 이전하였으며, 농수산물의 가격 및 공급안정을 위해 농수산물의 생산, 판매, 비축, 그리고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을 확충 운영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음.

- 1978년 제1차 개정은 농수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해 수매·비축사업을 확대하고자 하였으며,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을 기동성 있게 활용하도록 운용관리체제를 개선하였음. 그리고 농수산부장관은 비축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자와 재배계약 또는 양식계약을 체결하거나 생산자단체와 선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채소류 등 비저장성 농산물을 수매하여 판매 또는 수출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1986년 제2차 개정은 새로운 공영도매시장에 맞도록 도매시장의 운영·관리제도를 보완, 개설자의 도매시장관리기능을 보장하였으며, 종전에는 종합도매시장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부류마다 개설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1986년부터는 각 부류별로 개설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종합하여 하나의 개설허가를 받으면 되고, 도매시장에는 그 시설규모·거래액 등을 고려 부류별로 적정수의 지정도매인을 두도록 하였음. 또한, 개설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도매시장관리공사로 하여금 시설관리·거래질서유지 기타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설자는 도매시장에 부수되는 시설에 대한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제3차 개정은 자금관리특별회계를 재정투융자특별회계로 확대·개편하여 정부출자 및 출연기능을 추가, 현재의 융자기능을 보장하여 재정투융자자금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도록 규정하였음. 제4차 개정(1990년 법률 제4228호)에서는 수입개방 등 국제경제여건의 변화로 농수산업 경영의 적정규모화 등 구조개선과 농수산업의 생산성 향상, 농

어촌공업의 육성 등의 방법으로 농어촌 소득원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과 영세농 등 취업희망 농어민의 취업기회 증대, 농어촌의 생활환경 개선하기 위해 중장기농어촌발전계획을 수립 및 시행, 그리고 필요재원을 위해 농어촌발전기금 설치하였음. 제5차 개정에서는 기금운용의 연계성, 공공성, 효율성을 위해 기금관련 기본원칙과 기준사항을 정하였음.

- 1993년 6월 11일, 법률 제4554호로 공포된 제6차 개정 농안법에서는 농수산물의 유통마진의 과다방지, 반사회적 거래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시장제도에 대해 대폭 수정 개정하였음.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중앙도매시장과 지방도매시장으로 구분, 중앙도매시장중심의 종합유통 개선을 추진, 국가의 지도·감독을 강화하였으며, 지정도매법인·중매인등 각종 유통참여자의 기능과 거래행위를 명확히 정하였음. 그리고, 일정수 이상의 경매사를 확보, 경매사 지정제도를 개선, 공정한 경매가 공개적으로 실시되도록 하였으며, 대량입하품목·규격포장품목의 우선판매제도, 도매시장 등의 관리·운영에 대한 평가제도, 과징금 제도 등을 도입하였고, 소비자단체·소매상·협동조합·소비지지정도매법인이 산지공판장의 경매에 참가, 직접 구입할 수 있게 하는 등 유통체계의 다원화를 제도화하였음.
- 1993년 제7차 개정(1993년 6월 11일, 법률 제4554호)은 제1차 농안법 파동의 직접적 계기가 된 개정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중앙과 지방으로 구분하였으며, 중앙도매시장 중심의 종합유통 개선을 추진하고 국가의 지도·감독을 강화하였고, 지정도매법인·중매인등 각종 유통참여자의 기능과 거래행위를 명확히 규정하였음. 즉, 중도매인의 도매행위 금지조항으로 '94년 5월 농안법 파동 발생 원인을 제공하였음. 또한, 일정수 이상의 경매사를 확보하게 하여 공명정대한 경매가 공개적으로 실시되도록 규정하였고, 소비자단체·소매상·협동조합·소비지지정도매법인이 산지공판장의 경매에 참가, 직접 구입할 수 있게 하는 등 유통체계의 다원화를 제도화하고자 하였음.

<그림 4-1> 수산물 유통법(농안법)의 변천



○ 제8차 개정(1994년 11월 1일, 법률 제4785호)에서는 중매인의 명칭을

중도매인으로 변경하고, 그 기능은 도매거래를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중개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이는 농안법 파동으로 인한 중도매업의 업무범위를 재조정된 것임.

- 산지유통의 공정거래를 실현하기 위하여 산지 수집상의 등록제를 도입하고, 지정도매법인의 명칭을 도매시장법인으로 변경하였으며 지정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도매시장의 집하·판매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외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엄격한 조건하에 도매시장법인의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외의 자에 대한 판매를 인정하고, 중도매인에게도 예외적으로 직접 집하를 허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음.
 -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최저가격제시제와 출하손실보전제를 도입하였으며, 생산자단체가 농수산물 종합처리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개설자는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품목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제9차 개정에서는 WTO협정에 따라 시장접근물량으로 수입되는 농산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양허세율로 농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부장관의 추천을 받도록 하였고, 농산물을 수입시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하여 이를 수산물가격안정기금에 납입하도록 하였으며, 농산물의 수입시 정한 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처벌하도록 규정하였음. 1997년 제12차 개정에서는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의한 부처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법조문, 기관명칭 등의 행정구역 및 명칭의 변경으로 인한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음.
- 2000년 제14차 개정에서는 가격의 등락폭이 큰 주요 농산물에 대하여 농업관측을 실시토록 하였으며, 농수산물의 자율적인 수급조절을 위한 유통협약제와 유통조절명령제를 도입하였음. 또한 도매시장에서 시장도매인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규격출하품의 표준하역비는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이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출하자의 하역비 부담절감 및 하역

업무의 효율화를 유도하고자 하였음. 또 민간인이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개정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농산물 제값 받기를 위한 수급안정 프로그램 강화는 가격 등락의 폭이 큰 주요 농산물에 대하여 매년 기상정보·생산면적·작황·재고물량·소비동향·해외시장 정보 등을 조사·분석하는 농업관측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농안법 제5조), 생산자단체 또는 농수산물수요자와 생산자간에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를 하도록 장려하고, 계약금 지원할 수 있도록 했음(법 제6조).
- 둘째,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개선으로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였는데, 시장도매인제는 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을 하는 법인으로 우리나라의 시장도매인제도는 자격기준, 정산방법, 영업활동범위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과거의 위탁상과는 다르며, 선진국의 도매상보다도 제도적 제한을 받고 있음.
- 시장도매인제 도입에 따른 제도적·정책적 보완장치를 규정하였으며, 시장도매인의 가격결정에 있어 객관성 및 투명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도매시장을 중심으로 전자경매 도입, 실시간 경락가격 제공 등 유통정보 분산체제를 강화함으로써 도매시장의 상인에 대한 출하주의 가격교섭력을 제고하도록 하였으며, 대금결제의 안정성과 즉시성 확보를 위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정산제도의 도입과 이를 위하여 대금정산의 원칙을 법률로 정하고,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정산창구를 사용할 것을 의무화하였음(법 제41조).
- 시장별 도입시기는 지방도매시장에는 시행일인 2000. 6. 1부터 도입 가능하며, 중앙도매시장에는 중앙도매시장의 거래체계 및 시설의 정비상황과 지방도매시장의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2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도입 가능하도록 하였음.

○ 이와 같이 농안법이 제16차 개정법에 이르는 동안에 수산유통분야의

변화내용을 보면(<표 4-1> 참조),

- 비축사업 및 가격안정기금은 제정법에서 이미 제도화되었으며, 제1차 개정에서는 수산물 비축사업을 확대하고 기금의 운용관리체제를 개선하였으며, 제4차에서는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수산업의 구조개선 및 중장기어촌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농어촌발전기금을 설치하였음.

<표 4-1> 농안법상 수산유통분야의 변화내용

개정	주요내용
제정	-수산물의 가격 및 공급안정을 위한 비축 및 가격안정기금 설치
제1차	-수산물 수매비축사업의 확대, 가격안정기금의 운용관리체제의 개선
제4차	-수입개방 등 국제여건의 변화로 수산업의 구조개선 및 중장기어촌발전계획수립,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제6차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중앙도매시장과 지방도매시장으로 구분, 국가의 지도·감독을 강화
제7차	-중매인의 도매행위 금지(제1차 농안법 파동의 계기)
제8차	-어업 경쟁력 제고, 생산자조직의 기능활성화(농수산물류센터 설립근거마련), 도매시장의 공익성 강화
제13차	-한일 및 한중어업협정으로 인한 어업인에 대한 지원대책 강구(어업인지원특별법 제정)
제14차	-시장도매인제도,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제도 도입

- 제6차 개정법에서부터 농안법상 거래제도에 대한 모순 및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는데, 도매시장을 중앙과 지방으로 분리하고 중앙도매시장 중심의 유통정책으로 전환하였음.
- 제7차 개정법에서는 중매인의 도매행위를 명문으로 금지함으로써 제1차 농안법 파동이 발생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하여 유통구조개혁위원회가 설치되어 유통개혁대책을 수립하여 제8차 개정법에 반영하였음(어업의 경쟁력 제고, 농수산물류센터 설립근거마련, 도매시장의 공익성 강화).
- 제13차 개정법에서는 한일 및 한중어업협정으로 인한 어업인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어업인지원특별법을 제정함에 따라, 이에 대한 근거를 농안법에 마련하였음.

- 제14차 개정법에서는 시장도매인제도,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제도를 도입하여 도매시장질서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음.

2. 현행 농안법의 주요내용

1) 농수산물의 수급안정

- 농수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생산 및 출하를 조절하기 위하여 주요 농산물의 생산지역이나 생산수면을 지정하고(법 제4조), 그 생산지역이나 생산수면에서 주요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자에 대하여 생산자금의 융자, 기술지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 생산자단체 또는 농수산물수요자와 생산자간에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를 하도록 장려하고, 계약금을 지원하고, 생산자단체가 판로확대, 수급조절,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경우 농안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음(법 제7조).
-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가격진폭이 큰 주요 농산물에 대하여 매년 기상정보·생산면적·작황·재고물량·소매동향·해외시장정보 등을 조사·분석하는 농업관측을 실시함(법 제5조).
-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수산유통분야에 적용한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 및 모순이 발생할 수 있음.
 - 수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한 생산수면의 지정은 일부 양식어업(육상 및 해상가두리어업)에 한정되는 반면, 일반 어획어업을 대상으로 할 때 생산자금의 융자, 기술지도에 막대한 자금지원이 필요하므로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 농산물만을 대상으로 한 관측제도를 확장하여, 수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한 생산, 재고, 시장동향, 해외정보 등을 조사·분석하는 이른바 ‘어업관측’의 필요성이 요구됨.

- 또한, 수산물은 생산주기가 계절성을 나타내고, 보존상태에 따라 부패하기 쉽고 가격차이가 크다는 점에서 농산물과 달리, 유통협약 등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실정임.

2) 도매시장의 공익성 강화

- 중앙도매시장을 특별시·광역시로 개설했던 도매시장 중 도매의 중심이 되는 시장으로 정의하고 시행규칙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수산물 유통에 있어서 권역별 도매거래의 중심시장으로서의 성격을 부각하였음. 종전의 중앙도매시장은 국고 지원으로 개설한 도매시장 중에서 특별시, 광역시, 도청소재지에 소재한 것과 2개 이상의 시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개설한 시장을 뜻하였으나 국고지원이라는 조건과 소재지에 따른 구분이 아니라 도매의 중심이라는 역할을 부각시킴으로써 기능별 분류를 함.²⁰⁾
- 수산물의 경우, 일부 중앙도매시장을 제외하고는 출하품목의 제한, 법인의 수집기능의 약화, 중도매인수의 제한 및 영세성 등으로 인하여 도매시장으로서의 집출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20) 시행규칙 3조에 의하여 중앙도매시장은 다음과 같으며, 지방도매시장이란 중앙도매시장 이외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말함.

1. 서울특별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2. 부산광역시 엄궁동 농수산물도매시장
 3. 대구광역시 북부 농수산물도매시장
 4. 인천광역시 구월동 농수산물도매시장
 5. 광주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6. 대전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7.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8. 서울특별시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
 9. 제1호 내지 제8호외에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개설한 수산물도매시장
- 특별시 또는 광역시는 자체적으로 지방도매시장을 직접 개설할 수 있으며, 중앙도매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3)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개선

- 현 농안법에서는 기존 경매제도외에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였는데,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을 하는 법인을 말하며, 자격기준, 정산방법, 영업활동범위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기존의 위탁상과는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도매시장내 자유로운 거래활동을 하는 유럽 및 미국의 도매상보다는 제한적인 형태임.
- 시장도매인의 도입 시기는 지방도매시장에는 시행일인 2000. 6. 1부터 도입 가능하도록 명문화하였으며, 중앙도매시장에는 중앙도매시장의 거래체계 및 시설의 정비상황과 지방도매시장의 운영실적 등을 고려, 2004년 1월 1일부터 2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도입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음.
- 시장도매인제는 농산물유통이나 수산물유통에서 거의 유사한 문제점이 발견되는 있는 가운데 대금결제의 안정성과 즉시성 확보, 객관적이고 투명한 정산제 도입 등 가격결정의 객관성 및 투명성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제도적·정책적 보완장치 내지 동 제도의 존폐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4) 출하자 등록제

- 출하자등록제(농안법 제30조)란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당해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등을 등록하게 할 수 있는 제도로써 등록된 출하자가 출하예약을 하고 출하하는 경우, 위탁수수료 인하, 경매 우선실시 등 우대조치가 가능함. 이는 산지유통인 등록제에 부가하여 출하자(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경우에도 등록제를 신설하여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농수산물의 수급 및 품질의 안정적인 관리체제를 확립하는 것임.

- 수산물의 경우, 활어 등 일부품목을 제외하고는 예약출하가 현실적으로 곤란하고 예약출하시에도 적절한 인센티브가 미흡하다는 난점이 있어, 사실상 예약출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임.

5) 상장예외품목의 관리강화

- 비상장거래(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법 제31조제3항)하고 접대금 결제 대신 정산창구 사용 의무화(2002년부터 실시), 수탁거부금지, 표준하역비 부담, 즉시대금결제, 수수료징수제한, 영업장소제한 등 관리를 강화하였음. 또한,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 이외는 원칙적으로 취급할 수 없도록 하였는데 즉, 도매시장법인이 수탁·매수하여 상장한 농수산물만 취급하고 비상장거래 취급허가를 받지 아니한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 외에 이미 낙찰된 농산물 등은 취급할 수 없도록 하였음.
-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극히 제한적으로 상장된 물품이외에도 취급이 가능토록 예외를 인정하되, 남용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농림부령이 정하는 품목에 한정하고 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개설자의 허가를 받도록 함. 중도매인이 예외적으로 비상장거래를 할 경우에는, 영업제한(법 제35조제1항), 수탁의 거부금지 등(법 제38조), 매매 농수산물의 인수 등(법 제39조), 하역업무(표준하역비)(법 제40조제2항, 제3항), 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법 제41조), 수수료 등의 징수제한(사용료, 위탁수수료)(법 제42조제1항제1호·제3호), 명령(법 제81조)에 있어서는 도매시장법인으로 간주함.
- 대부분의 지방도매시장의 경우에 수산물의 거래는 반입물량이 아주 소량인 경우, 품목의 특성으로 인하여 당해 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이 소수인 경우, 기타 상장거래에 의하여 중도매인이 해당 수산물을 매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으므로, 농산물보

다도 특히 상장예외품목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6) 표준하역비

- 표준하역비는 도매시장안에서 규격출하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하역비(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를 말하는데, 표준하역비제도(법 제40조) 도입으로 출하자 부담을 경감토록 하기 위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정하는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를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출하자의 부담을 줄이도록 하였음(2002년 이후부터 시행).
- 이는 농산물이나 수산물에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점으로, 도입취지는 하역비 부담이 불특정다수(출하자)에게 전가되어 하역비 절감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주체가 없었는데, 표준하역비 도입으로 하역기계화를 촉진하고, 하역비를 점진적으로 도매시장법인 등 시장운영주체가 부담하게 하여 하역체계 개선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음.

7) 시장평가제도

- 평가대상은 공영도매시장 개설자 및 도매시장법인(공판장),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이며, 평가방법은 상장경매율, 거래목표 달성도 등 계량지표와 출하자에 대한 서비스 노력 등 비계량지표로 구분하여 평가함.
- 도매시장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를 강화하여(법 제77조), 평가결과에 따라 시설사용면적의 조정·차등지원 등 조치하고, 평가내용을 유통개혁 방향에 맞게 개선하여 하역기계화 촉진, 규격출하품 우대, 구조조정 노력, 전자경매 추진 등을 반영토록 하고 있음. 향후 도매시장의 운영개선, 공정거래 정착과 도매시장의 발전을 위하여 평가과정에서 얻어진 정보를 도매시장 운영개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평가기준 및 방법의 개발이 필요함.

8) 규격화 및 정보화

- 규격화의 촉진을 위하여(법 제71조) 농림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나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에 대하여 표준송품장의 사용 등 규격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명령할 수 있으며, 유통정보화 지원규정을 신설(법 제72조)하며 농수산물유통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지원토록 하고 정보기반 정비, 정보화 교육 및 홍보사업을 직접 수행 또는 지원 가능토록 하고 있음.
- 표준송품장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며, 송품장, 판매원표 등 농산물 거래서식을 표준화하여 유통정보화 기반구축 및 표준규격 출하유도로 물류비를 절감하고 규격화 촉진의 핵심인 표준송품장 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농산물 거래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농수산물의 규격화의 촉진을 위하여 표준송품장의 사용여부 및 적정성여부 등을 점검하게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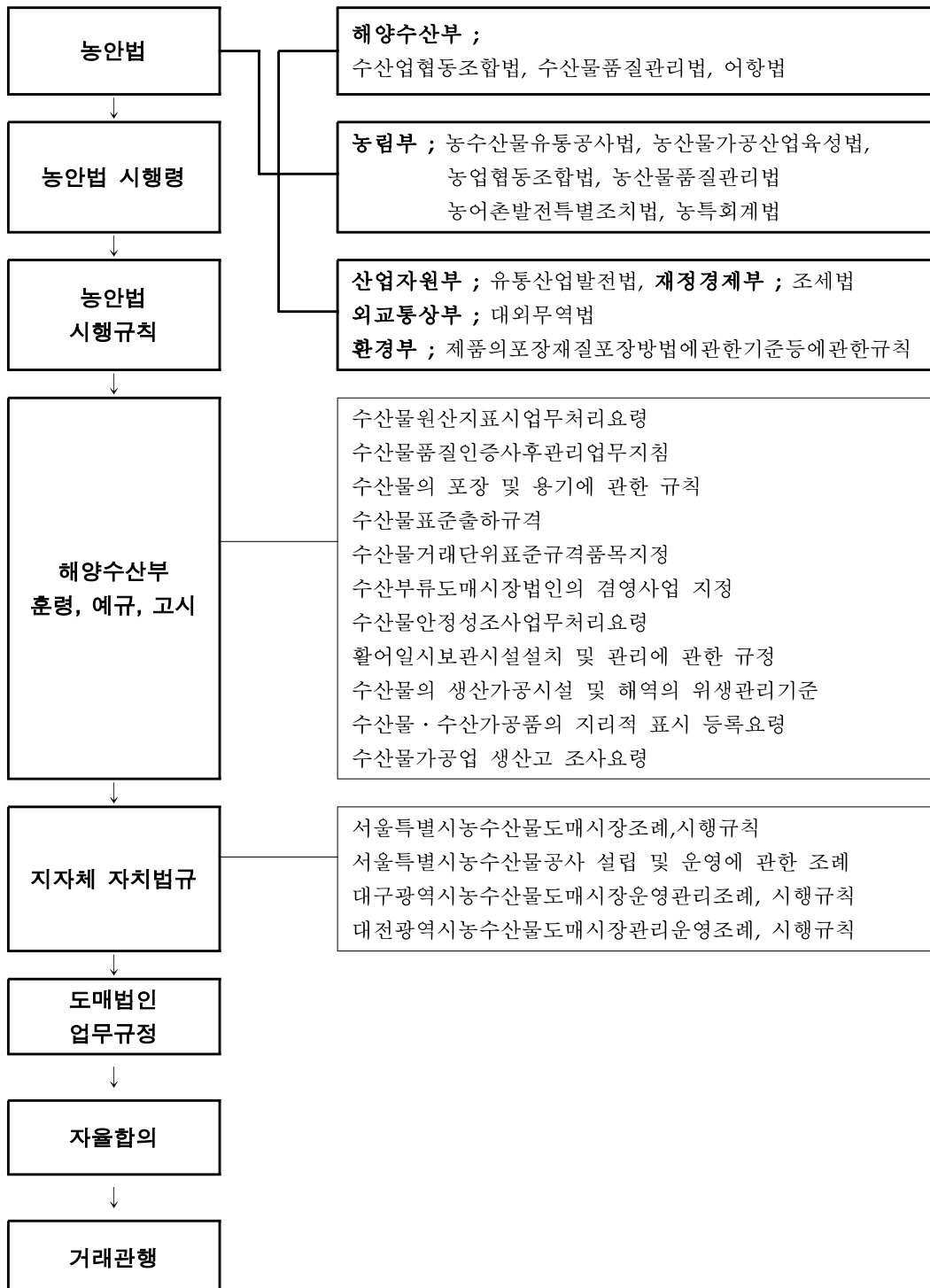
3. 수산 유통 관련법과 주요내용

- 농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이해관계에 있는 부처로는 크게 해양수산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외교통상부 및 환경부 등이 있음.
 - 해양수산부 관할 법률로서는 우선 수산물품질관리법과 어항법 그리고 수산업협동조합법등이 농안법과 관련을 가지는 법임.
 - 농안법의 주무 담당기관인 농림부의 경우, 농안법과 관련된 법은 농수산물유통공사법,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농업협동조합법,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특회계법, 농업농촌기본법 등을 들 수 있음.
 - 다음으로 국무총리실 관할법은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 있으며, 산업자원부 관할은 유통산업발전법 및 대외무역법, 재정경제부 관할은 조세법 및 관세법, 환경부 관할은

제품의포장방법및포장재의재질등의기준에관한규칙, 보건복지부 관할은 식품위생법 등이 관련되어 있음.

- 해양수산부 하위 법으로는 수산물원산지표시업무처리요령, 수산물품질 인증사후관리업무지침,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에 관한 규칙, 수산물표준출하규격, 수산물거래단위표준규격품목지정, 수산부류도매시장법인의 겸영사업 지정, 수산물안정성조사업무처리요령, 활어일시보관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 및 해역의 위생관리기준, 수산물·수산가공품의 지리적 표시 등록요령, 수산물가공업 생산고 조사요령 등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 법규로는 법정도매시장이 설치되어 있는 해당 시군구 자치단체의 시장조례 및 시행규칙 등이 있으며,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대구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등으로 구성되고 있음(<그림 3-2> 참조).
- 또한, 상위법의 위임 범위하에서 도매법인 업무규정에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경우가 있고, 그 자체가 법규범은 아니나 유통주체간의 자율합의나 협약 등과 전통적으로 지켜지는 거래관행 등이 넓은 의미에서 수산유통 관련 최하위규범으로 존재하고 있음.

<그림 4-2> 수산유통 관련법체계



- 이와 같은 수산유통 관련법체계를 요약·정리하면,
 - 최상위의 기본법으로서 농안법이 위치하고 해양수산부의 수협법·수산물품질관리법·어항법, 농림부의 농수산물유통공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등이 이를 보완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음.
 - 법률의 하위규범으로 농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해양수산부의 훈령·예규·고시로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에 관한 규칙, 수산부류도매시장법인의 경영사업의 지정에 관한 고시 등이 있으며,
 - 서울특별시 등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개설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도매시장조례 및 시행규칙, 도매시장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등이 상위법의 위임범위하에서 위치하고 있음.
 - 또한, 민간차원의 자율적인 합의나 일반적으로 지켜져 온 거래관행이 최하위규범으로 위치하고 있음

2) 수산유통 관련법의 주요내용

- 농안법은 농수산물의 생산 및 출하조정에 관한 내용과 농수산물도매시장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농수산물공판장 및 민영농수산물 도매시장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내용도 규정되어 있음. 또한, 도매시장 관련 조항뿐만 아니라 농안법의 두 축을 이루는 기금사업 내용인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그리고 농수산물유통기구의 정비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
- 유통산업발전법은 전체 8장 6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 법에서 사용하는 "유통산업"이라 함은 농·림·축·수산물 및 공산품의 도매·소매·보관·포장 및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으로 규정하나, 농안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

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 수산유통 관련법과 관련되는 법규범 및 그 관련성은 다음과 같음.
 - 우리나라에서 수산물 위생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은 전체 식품을 포괄하여 위생관리를 하기 위한 식품위생법과 수산식품위생과 관계 있는 법률과 하위법령으로 크게 나누어질 수 있음. 식품위생법은 우리나라 식품관련 법령 중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등에 대한 안전과 위생에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식품위생관리의 근간이 되는 법이라고 할 수 있음. 그리고, 직접적으로 수산물의 안전성에 관계를 맺고 있는 법률로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 내수면어업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의 법률과 각종 고시, 요령, 지침 등이 있음.
 - 수산물은 현행 법률에서 식품위생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모두 관련이 있으나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품 가운데 권한이 위탁되어 있는 식품은 수입 수산물 중 원어와 단순 절단·가열·숙성·건조 또는 염장한 수산 동식물일 경우만 해양수산부로 권한이 위임되어 있고, 나머지는 보건복지부의 소관으로 관리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어 새로운 제정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관련법과의 조정이 필요함.
 - 수산물의 규격화는 해양수산부에서 자원의 보존 및 관리라는 측면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며 정보화는 전 국가적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제이므로, 수산유통분야의 규격화 및 정보화는 이러한 선행시책들과 조화를 이루도록 관련되는 쟁점 및 문제점을 검토해야 할 것임.
- 수산관련법이나 농안법 등에서는 전자상거래에 관한 직접규정은 없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2002. 3. 30, 법률 제6688호)”은 통신판매의 일종으로 전자상거래의 경우에 농축산물 등 1차 식품은 법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2002. 3. 30,

법률 제6687호)은 생산업자에게 거래내역의 유지, 정보제공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으므로 영세어업인들에게 부담이 되어 수산물의 전자상거래 발달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음.

- 그 외에도 수산물의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농수산물유통공사법, 수산물 유통지원자금 조성·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수산업협동조합법, 국내산 농림수산물의 가공지원, 국내산 농림수산물의 판로확대, 기술 및 경영지도를 규정하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구법)등이 있음.

3) 수산물 유통관련 하위법규

- 수산가공식품표준화에 관한 운영요강(1998.9.5, 해수부고시 제1998-5호)은 가공식품 표준화업무의 합리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산업표준심의회, 규격 제정안의 작성, 규격의 확인, 심의 및 고시 등 산업표준의 제정, 잠정표준의 제정, 인증기관의 지정심사, 규격표시의 인증, 정기심사 및 시판품조사, 단체표준의 제정신고,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수산가공식품표준화 인증기관으로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을 지정하고 있음(1998. 9 28, 해수부고시 제1998-63호).
- 수산물·수산가공품의 지리적 표시등록 요령(2001. 10. 29, 해수부고시 제2001-92호)은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과 심사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수산물·수산특산물 및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대상품목과 품질인증에 관한 세부기준고시(2002. 11. 11, 해수부고시 제2002-91호)는 품질인증의 대상품목, 품질인증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음.
- 수산물 거래단위표준규격 품목지정(1994. 7. 30, 수산청고시 제91-4호)규정은 수산자원보호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수산물 거래단위 표준규격 품목을 지정하고 있는데 현재, 대상품목인 30개에 대한 거래량,

거래단위 및 표준규격을 정하며,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처리요령(2001. 12. 4, 해수부고시 제2001-97호)은 안정성 조사의 주기관 선정과, 조사 기준, 시료채취 및 입회, 시료의 채취방법, 시료의 분석, 시료의 보관 및 폐기, 부적합 수산물의 처리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수산물 원산지표시업무처리요령(2002. 1. 10, 해수부고시 제2002-2호)은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의 선정 및 국산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방법, 국내 수산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포상금 지급기준, 포상금 지급방법, 그리고 원산지표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원산지표시대상품목(별표 1)으로 국산수산물 6개종(어류, 갑각류, 패류, 연체동물류, 해조류 및 수생동물류)와 수산가공품 5개종(조미품, 훈제품, 어육제품, 통·병조림, 젓갈류)와 대외무역법 제23조제1항에 의해 산업자원부장관이 공고한 품목으로 정하고 있음.
-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검사 등에 관한 고시(1998. 6. 13, 해수부고시 제1998-37호)는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검사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세부규격 및 검사결과표시 등을 규정하고 있음. 포장 및 용기검사의 적용범위는 어상자, 굴, 홍합, 우렁쉥이의 용기 및 바지락의 포장으로서 국내에서 유통되는 것에 적용함.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별 검사규격은 <별표>에서 정하며, 검사기관은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에 관한 규정에 의한 지도, 감독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자, 부정한 수단으로 포장 및 용기를 유통시킨 사실이 있는 자, 검사기관에서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의 유통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포장용기에 검사증인을 눌러 찍거나 검사증표를 붙여야 함.
- 수산물 표준출하규격(1994. 7. 30, 수산청고시 제1994-12호)는 10개 품목(북어, 굴비, 마른 문어, 생굴, 바지락, 고막, 새우젓, 멸치젓, 냉동오징어, 간미역)에 대하여 등급규격(특, 상, 보통), 포장규격(단량 및 포장재)을 정하고 있음.

- 수산부류도매시장법인의 경영사업지정(2000. 6. 29, 해수부고시 제 2000-32호)는 농안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산부류 도매시장법인의 경영사업이란 “수산부류 도매시장법인이 자회사를 설립하여 행하는 수산물의 수출입 업무”를 말함. 그리고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수산가공품에 대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2000. 6. 29, 해수부고시 제2000-32호)은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생산·가공 등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고 있음.
- 표준규격품의 표시방법 위반자에 대한 시정명령절차에 관한 요령(2002. 1. 10, 해수부고시 제2002-4호)으로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시정명령의 세부적인 절차, 방법, 시정기한의 설정 및 시정명령의 이행여부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활어 일시보관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2001. 11. 28, 해수부고시 제249호)은 어항법 제2조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활어 일시보관시설을 어항 또는 항만구역안에 설치하여 활어류의 수집, 보관장소를 확보함으로써 국민식생활 향상에 따른 활어의 수요와 공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적정어가를 유지하기 위하여 활어생산 어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규정되고 있으며, 수협이나 어촌계가 직접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활어를 수매하는 지정중매인에게 이용하는 경우, 수협 또는 어촌계의 총회결정에 의해 당해 조합원 또는 어촌계원이 직접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음.

4) 수산물 유통관련 지자체 법규(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2003. 9. 25, 조례 제4139호)는 도매시장의 운영 관리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개설하는 도매시장의 명칭, 위치, 면적 및 거래품목, 정기휴업일 및 영업시간, 사용료 및 수수료, 중도매업의 허가, 중도매인의 최저 거래금액, 경매사의 관리 및 매매참가인의 신고, 관계인의 영업제한, 시설의 용도 지정, 시설의 전대금지 및 반환, 관리 책임 및 처분제한, 시설사용의 규제, 대금결제, 부정거래에 대한 조치, 신고의무, 영업보고 및 감독, 권한의 위탁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시행규칙(2003. 10. 15, 규칙 제3358호)에는 거래 품목지정,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시장도매인의 상한 수 지정, 지정 조건, 지정신청, 임원의 자격, 자본금의 규모, 보증금의 납부, 보증금의 반환, 운전자금의 확보, 장부비치의무, 법인의 관리, 겸영업무, 휴·폐업 신고 등에 대한 내용과 함께,
 - 경매의 관리, 매매참가인의 관리, 산지유통인 및 출하자의 등록, 매매 방법 및 대금결제방법, 경매 및 입찰의 방법, 경매절차, 품목별 경매시각 및 장소, 판매원표의 관리, 정산창구의 운영방법 및 관리, 표준정산서 및 표준송품장의 양식 및 관리, 경영정보의 공개, 사용료 등의 징수, 시장관리운영위원회,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농수산물공사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03. 5. 15, 조례 제4093호)에서는 농수산물 유통의 원활한 유통을 기하고 적정가격을 유지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고 농수산물공사의 설립,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관리공사의 법인격, 사무소, 자본금, 정관의 기재사항, 설립등기, 임원과 직원, 이사회 및 자문위원회, 사업의 범위 및 대행사업, 사업연도 및 예산 등 재무회계, 감독, 보고 및 검사 등을 규정하고 있음.

<표 4-2> 수산물 유통관련법의 주요내용

구분	법령명	주요내용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생산 및 출하조정,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및 민영농수산물 도매시장 등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농수산물유통기구의 정비 등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계획, 상거래질서 확립, 인력양성 -유통정보화의 촉진, 유통기능의 효율화 -공동집배송단지, 구조개선, 유통산업의 국제화
	수산물 품질관리법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의 지정(시행령 제17조) -국립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방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품질인증업체, 품질인증품 조사, 교육 (법 제6조, 영 제10조, 제11조) -수산특산물,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품질인증 기준 (법 제6조, 영 제10조, 제11조)
	농수산물유통공사법	-수산물의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사업
	농수산물 가공산업육성법	-농수산물의 경쟁력제고 -안전하고 품질좋은 농수산물 생산·공급 -지리적 표시제도 도입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조사제도 강화 -농수산물에 대한 품질인증(법 제5조) -생산자단체를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법 제7조) -잔류허용기준을 초과 농수산물 폐기명령 (법 제12조 내지 제14조)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법 제16조) -생산자단체의 검사업무 대행(법 제19조, 제26조) -농수산물의 검정신청(법 제27조) -소비자단체를 농수산물명예감시원으로 임명, 원산지의 표시위반자를 고발시 포상금 지급 (법 제29조 및 제30조).
	수산업 협동조합법	-수산물 유통지원자금 조성·운용(법 제65조의3)
	대외무역법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조사 -무역위원회의 전문성 및 공정성 강화 -불공정행위의 조사신청시 30일 이내에 조사개시 여부 결정(법 제5조 및 제9조) -불공정무역행위 잠정조치(법 제7조 및 제8조). -과징금은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법 제11조) -세이프가드조치 발동요건강화(법 제17조, 제19조) -무역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강화(법 제29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구법)	-국내산 농림수산물의 가공지원 -국내산 농림수산물의 판로확대 -기술 및 경영지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구법)	-농어촌 특별세 전입금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수산물, 농산물 및 축산물의 판매는 적용제외(시행령 제5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거래기록의 보존(제6조), 정보제공(제13조)
	식품위생법	-위해식품의 판매금지(제4조), 기준과 규격(제7조), 허위표시의 금지((제11조)
	농산물품질관리법	-표준규격화(제4조), 품질인증(제5조), 지리적 표시(제8조), 허위표시의 금지(제9조)
	농업농촌기본법	-영농법인의 육성, 농산물의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지방공기업법	-지사체가 설치, 운영하는 기업의 운영사항	

<표 4-2 계속>

구 분	법 령 명	주 요 내 용
자치법규 (해수부)	수산물, 수산특산물 및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과 품질인증에 관한 세부기준	-품질인증의 대상품목(제2조) -품질인증의 세부기준(제3조) -품목별 품질기준(별표 2 및 3) -공장심사기준(별표 4)
	수산물원산지표시업무처리요령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의 지정(제2조) -국립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방법(제3조)
	수산물품질인증사후관리업무지침	-품질인증업체 및 품질인증품의 조사, 교육(제2조) -산지, 품명, 생산년도 등 기재 적정성 조사(제3조)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제4조)
	수산물품질인증세부실시요령	-산지, 품명, 생산년도 등 기재(제10조)
	수산물가공업 생산고 조사요령	-조사대상, 조사시점, 조사항목, 보고요령 -조사방법, 제품의 분류
	수산가공식품표준화에 관한 운영요강	-산업표준심의회, 규격제정, 확인, 심의 및 고시 등 -인증기관으로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을 지정
	수산물·수산가공품의 지리적 표시등록 요령	-지리적표시 등록신청, 심사기준
	수산물 거래단위표준규격 품목지정	-30개 품목의 거래단량, 거래단위 및 표준규격
	수산물 안정성조사업무처리요령	-조사기관, 조사기준, 시료채취 및 입회, 채취방법 등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검사 등에 관한 고시	-어상자, 굴, 홍합, 우렁쉥이의 용기 및 바지락의 포장 기준
	수산물 표준출하규격	-10개 품목의 등급규격, 포장규격
	수산부류도매시장법인의 경영사업 지정에 관한 고시	-수산부류도매시장법인이 자회사를 설립하여 행하는 수출입업무
	표준규격품의 표시방법 위반자에 대한 시정명령절차 요령	-시정명령 절차, 방법, 시정기한의 설정 등
	활어 일시보관시설처리 및 관리 규정	-활어 일시보관시설의 설치
지자체 법규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도매시장의 명칭, 위치, 면적, 거래품목, 정기휴업일 및 영업시간, 사용료 및 수수료, 중도매업의 허가, 영업제한, 시설용도지정, 시설 전대금지, 관리책임, 대금결제, 부정거래, 신고, 보고, 감독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시행규칙	-거래품목,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시장도매인의 상한 수, 지정조건, 지정신청, 임원의 자격, 자본금, 보증금, 운전자금, 장부비치의무, 법인의 관리, 경영업무, 휴폐업, 경매의 관리, 산지유통인 및 출하자의 등록, 매매 및 결제방법, 경매절차, 판매원표의 관리, 정산창구의 운영, 표준정산서 및 표준송품장 양식 및 관리, 경영정보의 공개, 사용료의 징수, 시장관리
	농수산물공사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관리공사의 법인격, 사무소, 자본금, 정관의 기재사항, 설립등기, 임원과 직원, 이사회 및 자문위원회, 사업의 범위 및 대행사업, 사업연도 및 예산, 감독, 보고 및 검사

제2절 현행 농안법과 수산물 유통현실과의 쟁점

1. 일반적 쟁점

1) 도매시장의 법적 성격 및 기준 재검토

- 그동안 수산물 유통의 중심적인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여온 소비지도매 시장은 정부의 정책적 배려하에 내륙지 위주의 소비도시를 중심으로 개설되어 왔음(<표 4-3> 참조). 그러나 수산물만을 취급하는 수산물도매시장이 아닌, 농산물 주요 생산지이며 농산물의 소비가 원활하고 도로 및 철도 등 내륙교통시설이 우수한 지역을 중심으로 도매시장이 개설됨으로 인하여 산지와 소비지가 다른 수산물 유통에 있어서 원활한 흐름을 기대하기에는 처음부터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었음.

<표 4-3> 유통 및 다양한 환경에 따른 시장 재분류

거래제도에 따른 도매시장의 재분류			국고지원여부에 따른 분류	
중앙도매시장	지방도매시장	공판장	공영도매시장	민영도매시장
○ 특별시와 광역시 소재 및 중앙정부가 특별지정하는 시장 ☞ 가락, 구리, 대구, 대전, 울산(외발산, 부산, 광주)	○ 중앙도매시장 이외의 여타 도매시장 ☞ 수원, 안산, 안양, 청주, 충주, 전주, 익산	○ 생산자단체와 그 자회사 및 공익법인이 개설·운영하는 시장 ☞ 수협공판장	○ 국고로 지원된 도매시장 ☞ 공영도매시장 12개소	○ 민간자본으로 건설한 도매시장과 기존 일반 법정도매시장 ☞ 노량진, 포항, 경주, 광주

- 초기 수산물 유통이 발달하지 않은 시기에는 소비지도매시장은 내륙의 소비도시에 대한 수산물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데 일정한 기

여를 수행한 것은 사실임. 즉, 교통의 미발달과 정보의 부족 등으로 중소 영세 상인의 개별 영업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인위적인 농수산물 유통정책의 수립은 일정한 가격형성 및 안정적인 물량을 공급함으로써, 기존 육류 및 야채류 위주의 국민 식생활 개선에 큰 역할을 담당하였음.

- 그러나 환경오염과 지구 온난화로 인한 연근해 해수온도의 상승 등 환경적인 요인의 변화로 연근해 자원의 감소되었고, 이로 인해 산지시장 및 소비지도매시장의 역할과 기능을 축소되는 상황임. 또한 다양한 유통채널의 발달과 대형할인점 및 신업체의 발달 역시 그동안 수산물 유통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던 도매시장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러한 도매시장의 위축은 향후 지속적인 현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국내 연근해 총 생산량 중 법정도매시장 경유율은 점점 하락하여 2002년 현재, 19%대²¹⁾에 머물고 있는 상황임.
 - 또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중앙도매시장의 거래물량집중화가 심화되어 가락동, 구리, 노량진의 이른바 '빅 3'의 도매시장 점유율이 전체의 83.2%(85.2%, 금액기준)를 차지하는 있는 상황임. 이러한 현상은 중앙도매시장과 지방도매시장의 괴리를 심화시키고 있음.²²⁾
- 현행 도매시장의 개설기준은 부류별로 또는 2가지 이상의 부류를 종합하여 중앙도매시장은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개설하고 지방도매시장의 특별시·광역시 도는 시가 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농안법 제17조). 이러한 가운데, 중앙도매시장의 경우, 상품의 집중화로 인한 규모의 경

21) 2002년 기준, 연근해 생산량중 산지위판장을 통한 계통출하비율은 70%를 기록하고 있어 여전히 산지의 기능은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소비지는 2000년 이후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22) 일본의 경우, 수산물의 도매시장은 1999년 기준, 중앙도매시장 87개소, 지방도매시장 1,447개소로 나타났으며, 수산물의 도매시장 경유율은 1997년 기준 71.0%로 우리나라의 경유율보다 절대적·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 <http://www.maff.go.jp/>(일본농림수산성조사과).

제를 실현하고, 관련 업계 및 종사자가 경영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 타 유통산업과의 경쟁에서 일정한 유지가 가능하나, 지방도매시장의 경우, 거래량 감소, 유사시장의 개설 및 신업체 등의 등장으로 갈수록 위축되어 가는 있는 상황이므로 지방도매시장에서 취급 가능한 품목을 농축산물, 수산물 그리고 약재 등에 한정하지 말고 다양한 품목을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대형할인점과 신업체 등 인근상권 내지 시장에 비교하여 경쟁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지방도매시장의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게 하는 지방도매시장의 역할 및 위상에 대한 제고가 필요함.

- 도매시장내 거래가 중앙으로 집중화되는 현상과 다양한 유통채널의 발달 등 대내외적인 상황 악화로 인하여 지방도매시장의 연간 취급물량이 평균 4,796톤²³⁾으로 매우 낮은 상황이며, 심지어 익산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우 연 994톤의 취급물량을 기록하여 소비지도매시장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도매시장의 운영 및 개설기준에 대한 완화방안으로서²⁴⁾ 우선 연 취급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지방도매시장의 경우, 수산물 유통의 고유한 업무뿐만 아니라 가공 및 수급을 조절할 수 있는 창고업으로의 겸영사업의 확대와 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으로 전환을 하게 된다면, 도매시장내 소매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을 도매시장으로 유인할 수 있는 동기의 마련과 수산물 외 다른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종합쇼핑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 시장활성화 및 유통 중심지로의 역할을 겸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23) 지방도매시장 8곳(구리, 수원, 안양, 안산, 전주, 익산, 청주, 충주) 시장중 취급물량이 많은 구리시장은 제외하고 7개의 지방도매시장만을 대상으로 함.

24) 일본 중앙도매시장의 개설기준은 인구 20만 명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농림수산성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중앙도매시장의 도매법인 설립은 장관의 허가, 중도매인은 개설자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음. 그리고 도매시장은 자치단체, 주식회사, 농협, 어협 등이 개설자가 될 수 있으며, 시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함. 또한 도매법인은 장관의 허가, 중도매인은 개설자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우리나라의 확실적인 허가기준보다 운용의 폭이 상대적으로 넓음. 일본도매시장법.

2) 수산유통중장기계획의 부재

- 수산물 유통에 대한 정부 정책은 장기계획보다는 단기간에 걸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정책위주로 추진되어온 것이 사실임. 이러한 이유는 첫째, 수산물 유통과 관련한 법률인 농안법이 주로 농산물을 대상으로 법 구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농안법에 의해 수산물 유통정책이 계획·추진됨으로 인하여 수산물만의 독자적인 유통정책을 추진하기가 사실상 어려웠음. 둘째, 하나의 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산물과 수산물에 대하여 규정하는 농안법은 1법 2물 체계를 지닐 뿐만 아니라, 법 구성에 있어서도 주로 거래제도 및 기금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관련 행정당국의 수산물 유통정책은 대부분 도매시장내 거래방법 및 유통주체의 행위위주의 정책으로 되었던 것이 사실임. 셋째, 해양수산부가 농림수산부에서 독자적인 행정기관으로 독립하였으나, 행정추진에 있어서의 미숙함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의하여 정책방향이 흔들림으로써 장기적인 계획의 수립과 실천보다는 단기적인 위기관리의 정책이 수행되어온 것이 사실임.
- 그러나 수산물 유통과 관련한 급속한 주변환경의 변화와 다양한 유통채널의 탄생은 기존 도매시장의 거래제도만을 대상으로 한 유통정책의 기조의 변화를 필연적으로 요구받게 되었음. 따라서 장기적인 유통발전 개혁방안을 수립하여 연차별로 구체적 실천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 수산물 유통시스템을 선진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
 - 단기과제로 수산물 유통법에 대한 개정 또는 새로운 입법안을 구성하여 산지시장 및 소비지시장을 위한 활성화방안의 토대를 마련하고, 중장기 과제로 산지위판장의 기능과 역할에 따른 분류를 통한 산지도매시장 및 산지위판장의 구조조정의 실시 및 수산물 규격화 및 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생산지와 소비지의 유기적인 유통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수산물과 유통특성을 반영한 산지 및 소비지도매시장내의 자율적

인 관리와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임. 시장시설의 자율 관리·운영을 위한 관리사무소(공사), 법인, 중도매인 등으로 구성되는 「도매시장운영관리협회」의 기능을 보완 및 강화하여, 기존 농안법에서 도매시장을 둘러싼 갈등구조와 분쟁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며 수산물 유통과 관련된 중요사항의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고 활성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3) 위생안전관리제도의 부실

-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우 농산물에 대하여 1998년부터 잔류농약속성검사를 실시, 집파리 신경효소 및 바이러스 세균 등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는데 2003년 말 현재 1일 평균 405건, 연간 12만 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GC, HPLC 등을 이용한 잔류농약정밀분석법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는 잔류농약속성검사 효소를 사용한 검사법을 시행하고 있음.
- 이외에도 1998년 2월부터 불량농산물 출하근절과 고품질 출하를 유도하기 위하여 가락시장의 경우에 과일류 상장경매 전품목과 채소류 24개 품목에 대하여 포장박스에 표시된 중량과 실중량이 일치하는지, 상장된 품목의 포장된 겉과 속이 일치하는지, 정상 제품에 부패 또는 변질품 등이 섞여 있는지, 포장재의 중량이 적절한지 등의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음.²⁵⁾
- 현재의 안전성 검사는, 1년 간 2회 이상 적발시에는 고발조치하고 해당 품목의 출하를 금지하고 있으며, 품질검사의 불합격 품목에 대하여는 반송, 후순위 경매, 재경매, 경락참가 불허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임.
- 식품위생법(2003.9.29 법률 제06986호)에 의하여, 썩었거나 상하였거나

25) 2003년 7월부터 농산물 품목 중 깻잎과 열무가 추가되었음.

설익은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 염려가 있는 것, 병원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그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의 혼입 또는 첨가, 기타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제조·가공한 것, 안전성 평가의 대상에 해당하는 농·축·수산물 등으로서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성 평가결과 식용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등의 위해식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음.

- 또한, 식품위생법은 식품에 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유통중인 당해 식품을 회수하여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한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식품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식품위생상의 위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압류, 폐기, 허가취소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이상에서, 수산물 유통의 안전에 관한 것은 식품위생법이 기본법이고 그 하위법으로 지자체의 도매시장조례 및 도매시장관리공사의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규율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매일 다량으로 거래되는 품목에 대한 위생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됨.
- 따라서, 수산물 유통에 있어서 위생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수산물 유통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위생안전점검제도·위생안전점검기관의 지정·위생관리사 등의 제도를 두어야 할 뿐만 아니라, 도매시장 등의 시설기준에 있어서도 위생관리사무실의 면적을 필수시설에 포함시키는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할 것임.

4) 전자상거래제도의 미흡

- 최근, 전자상거래 및 온라인거래 확산으로 산지에서 최소 4-5단계의 중간상인의 손을 거치던 기존의 거래방식을 전환하여 농림부의 경우에 한국농림수산물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e고향(egohyang.com), 농수산TV 홈쇼핑 등을 운영하고, 민간차원에서 경매사이트 옥션(auction.co.kr), 인터넷판매인 nepfish.net, ryujin.pe.kr, 학사농장(62farm.co.kr), 에덴양봉원(honeyfarm.net), 선한농부마을(im2u.co.kr), 와이팜(yfarm.co.kr), 무화과 상호농협(samhonh.com) 등이 운영되고 있음
- 농림부의 경우에 2007년까지 농산물 전자상거래의 규모를 3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5년 간 334억 원을 투입하여 농업인 홈페이지 경연대회, 농산물 통합쇼핑몰(a-peace.com)의 구축, 농산물 분류코드 및 전자문서의 표준화, 전자상거래 시범사업의 실시 등을 계획하고 있음.²⁶⁾
- 수산분야 정보화 추진전략을 해양수산부도 수립하여 시행중인데, 해양수산부 정보화전략계획(2001.5.)을 수립, 농림수산물정보화 추진현황 및 개선방안(1994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제언, 해양강국실현을 위한 기본구상(1999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수립, 해양개발기본계획(Ocean Korea 21), 2001 시행계획(2001년 해양수산부) 등의 추진일정을 거쳐서 수산통계정보,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는 수산물검사정보, 수협중앙회에서는 수산물유통정보를 제공하고 있음(<표 4-4> 참조).
- 어업자원종합관리의 하나로 어선조업정보 및 EEZ어업관리를 보완 확대 발전시킴과 동시에 연근해 조업어선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수집·관리하여 종합적인 어업자원 기초DB를 구축하기 위하여 어업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계기관간 정보공동활용을 지원하

26) 농수축산신문, 2003년 2월 26일자 기사를 참조할 것.

는 불법어업관리시스템, 연근해 고래자원에 대한 정확한 자료 확보를 위한 고래자원관리시스템, 어업생산통계, 어선등록통계, 어업인허가통계 등 어업기초통계정보 서비스를 위한 어업기초통계정보 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관련기관과 정보연계 및 공동활용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며, 이러한 정보를 대 어업인에게 인터넷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어업정보포털사이트 구축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표 4-4> 해양수산부의 유통관련 정보화 추진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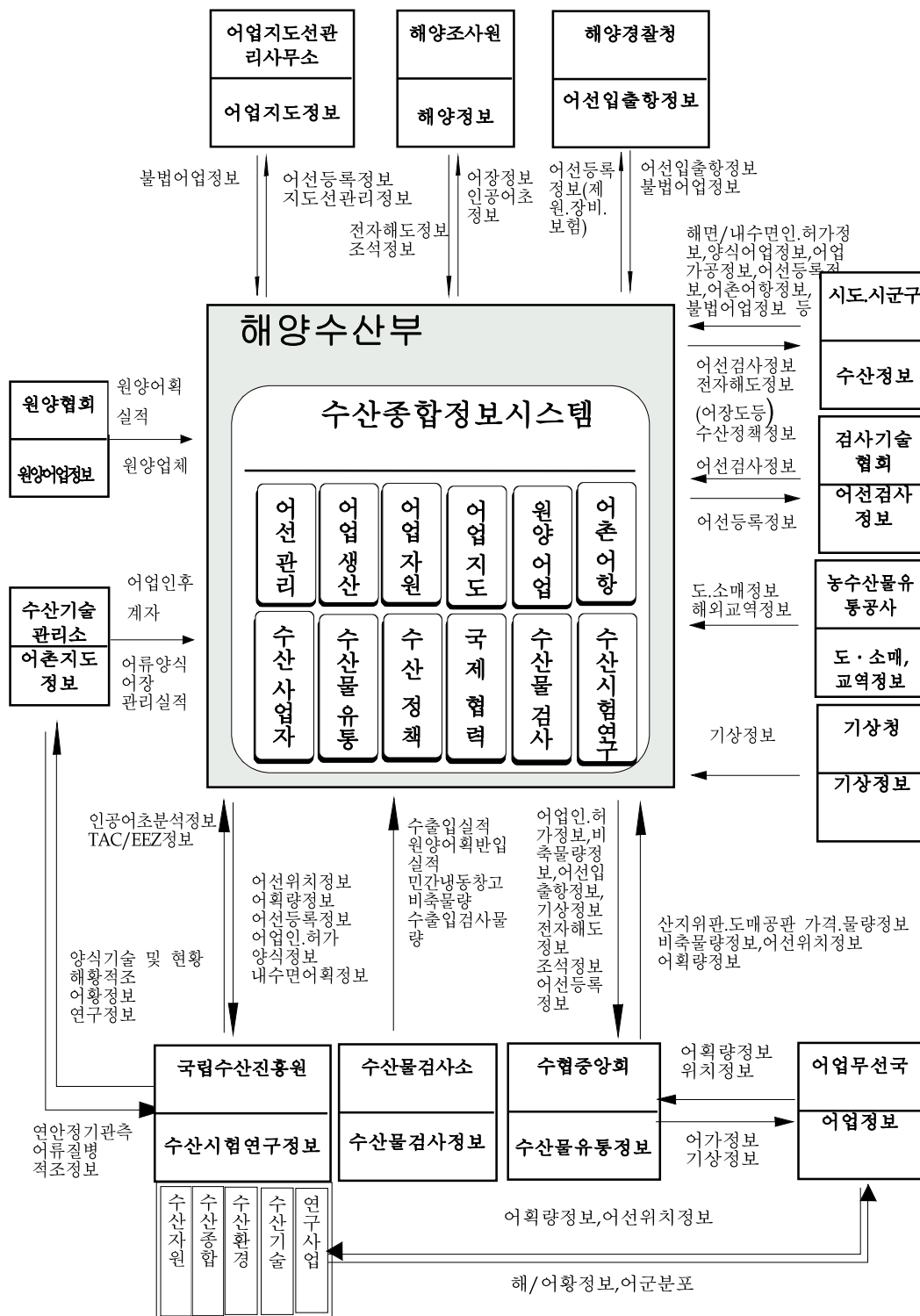
업 무 명	내 용
원양어업생산통계	○ 조사일,구분1(생산,판매),조사번호,업체,어선,해역,해구,어업,구분2(부어,저어),어종,생산량,판매량·단가·판매액(내수,수출)
수산물수출입통계	○ 조사년월,구분1(수출,수입),국가,품목,수량,중량,금액,누계수량,누계중량,누계금액등
수산물가공통계	○ 조사년월,시도,구분(연근해,원양),제품,품종,실적량,원료량,금액
원양어업정보	○ 원양어업허가, 생산, 수출, 자금, 반입, 선사현황 등
어업자원종합관리	○ 불법어업현황,고래자원,어업기초통계 등
수산물유통정보	○ 산지위판물량·가격,직거래알선정보,상품정보,도매시장DB,전자경매,수산물유통통계 등
수산물검사정보	○ 수출입검사,원산지표시단속,냉동선어류,품질인증, 분석장비 등
양식장 위생조사	○ 양식장위생조사결과,가공공장별 용수실험결과,가공공장별제품실험 결과,기상조사 정리
연근해/원양어업자원	○ 연근해,원양어업의 어종과 어획량,어종상자당 중량 등
인터넷제공정보	○ 수산동식물,어황,연안어업,양식기술,수산생물유전,양식생물,해양환경,적조,수산물이용가공,가공업체,어구어법,수산기술지,연구결과활용,사업보고서,특허,용어,규정,연구인력,도서,연구보고서 정보

- 수산물유통정보 사업의 내용은 수산물의 유통단계를 축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존 5~6단계의 유통과정을 2~3단계로 축소함으로써 직거래 강화와 수산물 가격 안정 및 수급조절을 위한 정책수립 체제를 지

원하고 수산물 유통업무 주체간의 원활한 정보교환체제를 구축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물류표준화 및 정보화 추진으로 산지·소비지간의 직거래 체제를 확립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수산물유통정보 인프라 구축이 관건임.

- 수산물검사정보 사업의 내용으로는 국내외로 수출입되는 수산물에 대한 질병, 품질 등 수산물안전성 검사와 국내에 반입되는 수입수산물과 국내 수산물의 구분표시에 따른 단속 및 통제, 수산관련 제품들에 대한 품질인증 등 국내외 상황변화에 따른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수출·입 수산물검사, 원산지표시단속, 냉동선어류조사, 품질인증 등을 정보화하여 운영 중에 있음.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진흥원 및 수협중앙회 등 수산관련 기관에서는 각자 독자적으로 수산정보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수요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나, 각 기관 및 단체에서 독자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정보의 불일치성과 중복투자의 문제점도 발견되고 있음. 따라서, 정보수집 및 분산을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게 추진하고, 진정한 정보화가 이루기 위해서는 정보수집 및 분석과정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수산관련 각 기관이 정보화 사업에서 적절한 역할 분담을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현재 여러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 기관별 수산정보화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통합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범정부차원에서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을 2002년 3월에 제정하여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분쟁발생시 생산업자에 책임부담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존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통신판매의 일종으로 농축산물 등 1차 식품에 대한 전자상거래를 법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에 비하여, 전자상거래법은 영세농업인들과 기업형 전자상거래업체에게 동일한 법적 의무 부과하여 영세농업인들의 사무처리 능력부족으로 전자상거래의 위축이 예상되고 있음.

<그림 4-3> 수산종합정보시스템



자료 : 해양수산부 정보화담당관실, 수산분야 정보화 추진 전략, 2003.

2. 산지시장의 기능활성화

1) 산지위판시설의 제도권화

- 현행 농안법에서는 산지위판장(집하장, 공판장)의 역할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농산물과 달리 산지에서 1차 경매되어 출하되고 있는 수산물의 특성을 감안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수산물 유통인의 다수의 의견임. 이들 산지위판장과 현행 농안법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음.
- 첫째, 수산물유통이란 생산이 시작되는 시점에서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산지시장인 위(공)판장이 필수 불가결한 시설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농안법 체계는 소비지도매시장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수산물 산지시장의 법제도적인 배려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 현행 농안법에서는 산지위판장에 대한 명확한 규정없이 수산물 유통에서 산지위판장 역할을 수행하는 농산물 산지집하장(법 제50조 및)에 대한 규정만이 존재하여, 이와는 성격이 다른 산지위판장을 이에 준용하여 제도권화 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과 함께,
- 둘째, 농안법에는 수산물 산지위판장 용어는 존재하지 않으나, 이는 현행 농안법을 소극적으로 해석한 결과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농안법 제49조와 제50조, 제51조에 대한 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농수산물산지집하장의 설치 및 운영, 공판장의 운영에 대한 조항을 확대 해석할 수도 있으며, 농안법 조문 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산지위판장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거나 추가한다면 산지위판장에 대한 도매시장화할 수 있는 법제도적인 뒷받침이 가능하다는 것임.

2) 산지위판장의 도매시장화

- 전국 주요 수산물 생산지역 연안에 분포하고 있는 전체 산지위판장은 180개소로 연간 1만 톤 이상의 거래량을 가진 산지위판장 수도 전체의 17% 정도인 31개소로 나타나고 있음(제3장의 <표 3-29> 참조). 이는 소비지도매시장의 연간 평균취급물량이 약 2만 톤이며, 취급물량의 분

포가 최대 12만 8천 톤인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과 최저 수준인 익산농수산물도매시장의 취급물량이 연간 992톤인 것을 감안하면, 산지위판장의 취급물량은 상당히 높은 수준임(제3장의 <표 3-16>을 참조). 이러한 가운데, 생산기능과 유통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산지위판장을 일정 기준의 취급량과 산지위판장의 입지 등을 고려하여 산지도매시장으로 전환함으로써 효율성 증대와 유통 활성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²⁷⁾되고 있음.

- 산지위판장의 도매시장화가 필요한 이유로는 첫째, 수협이 산지위판장을 공판장 또는 산지도매시장으로 전환시킬 경우, 소비지도매시장과 재래시장 및 신업태, 대형물류센터 등에 직접 공급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가능하다는 점에 있음. 이로 인하여 유통 주도권이 그동안 가격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던 중간상인 등 유통업자에서 생산자 및 산지시장에서 결정되어 적정한 가격의 산정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둘째, 산지위판장에 대한 도매시장화는 전체 도매시장의 경유율을 확대하여 종합적이며, 장기적인 수산물 유통정책의 수립 및 실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기존 19% 수준의 경유율에 머물고 소비지도매시장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수산물 유통정책은 소비지도매시장내 유통주체만을 위한 정책으로 오해받기 쉬우며, 또한 전체 수산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음. 따라서 산지도매시장화가 도매시장 경유율이 일정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면, 수산물 유통정책에 합리성과 당위성을 부과할 수 있으며, 유통정책의 효과면에서도 기존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한 유통정책과 비교하여 볼 때, 보다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셋째, 현재 소비지도매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품목의 경우, 산지위판장에서 1차 경매 후, 다시 소비지 도매시장에서 2차 경매되어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유통시스템을 가지고 있음. 이러한 과정속에 하나의 제품을 대상으로

27) 강중호 외(2000)의 연구에 의하면, 산지시장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설문조사를 산지시장관계자 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일정 기준 이상의 위판장에 대한 공판장화 또는 도매시장화 찬성의견이 73%에 달하였음.

이중으로 경매를 실시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물류비용의 증가와 제품의 질 저하, 그리고 최종소비자에 대한 비용의 전가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산지 도매시장화를 추진할 수 있음(<표 4-5> 참조).

<표 4-5> 산지도매시장의 필요성

공판장화(산지도매시장화) 필요성

- 국내공급(생산) 감소 → 수협 집하력 감소 → 수협 합병 및 합리화 → 지역어민 가격 교섭력 상실 → 어촌지역 사회·경제문제로 비화
- 국내수요의 증가에 따라 부족분은 수입산으로 충당 불가피
 - 수입증가는 신업태의 가격파괴와 맞물려 국내산 수산물가격의 하향안정화를 초래하고 산지조달이 쉽지 않을 때는 국내산 구매보다는 저렴한 수입산 구매를 확대 → 어업인 경영수지 악화와 손실 초래
 - 신업태 활성화에 따른 경쟁의 심화는 가격파괴를 위하여 산지출하자에게 가격인하와 수요에 부응하는 규격화·소포장화 등 요구
- ※업태별 성장전망에 따른 변화 추구 필요 : 신업태 및 무점포 판매 점유율 급신장
- 지금까지 소비지에 대량분산기능을 수행하던 재래시장과 법정도매시장의 기능은 장기적으로는 저하되어 갈 것으로 전망
- 이와 같은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산지 거점수협을 「생산자단체」에서 「유통주체」로 변신하고 기구개편·시설확대가 필요
 - 따라서 산지수협 위관장의 시설·장비를 보강하고, 유통 관련법 내의 도매시장으로 흡수하여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신업태 등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며, 민간부문(신업태·도매법인 등)참여와 진입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음
 - 산지도매시장으로 전환하고 종합처리시설을 구비하여, 산지에서 가공·소포장·규격화가 이루어짐으로써, 위생·선도·환경문제 등을 개선하고, 유통단계 단축하고 물류비를 감소시키며, 부가가치를 어촌지역으로 전환시킴
 - 장기적으로는 유통관련 법 및 자금에 의거 시설·장비투자 등 현대화

- 산지도매시장을 법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산지도매시장에서 1차 경매된 수산물에 대해서는 소비지도매시장에서 경매를 통한 거래대신 정가·수의매매의 거래방법 또는 단순 판매 등의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

면, 기존의 거래보다 비용의 감소와 물류 체계의 단순화를 가져올 수 있음. 또한, 산지도매시장법인에 대하여 매취상장 허용 등을 통해 산지도매시장의 물량 증가 및 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수산물 유통주체의 경영 개선 및 소비지도매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산지도매시장화 방안은 도매시장내 유통거래주체의 자연스러운 법제도 편입을 유도함으로써 불법적인 상거래 행위에 대한 단속권의 강화 및 시장거래질서의 정립을 가져올 수 있으며, 산지에서 식탁으로까지의 유기적인 유통구조시스템을 정립할 수 있을 것임(<표 4-6> 참조).
- 반면, 산지위판장의 도매시장 전환에 부정적인 시각도 제기되고 있음. 첫째, 대규모 물량이 취급되는 위판장을 산지도매시장화할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취급물량을 가진 소규모 위판장의 종사자 또는 거래관계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생길 수 있으며, 둘째, 산지위판장을 도매시장화하는 기준을 제대로 설정하지 못할 때에는 도매시장 난립화 가능성 및 이에 따른 투자비용의 과대성·중복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표 4-6> 산지 위판장의 도매시장화에 대한 장단점

장 점	단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간 15천 톤 이상의 거래량을 나타내고 있는 17개 대형 위판장을 공판장화 또는 산지도매시장화할 경우, 규모의 경제실현 및 이중 경매 완화, 직거래 기반 강화 등 유통능력 제고 가능 ○산지위판장을 공판장화 또는 도매시장화할 경우, 수산물 유통에 대한 전반적인 유통시스템 구축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규모 위판장 소재의 어민의 경우, 상대적 박탈감 우려 ○농안법상 규정에 맞는 시설을 설치시 추가비용의 발생과 투자비 과다투자에 대한 비난우려 ※위판장의 공판장화에는 농안법에 의한 규제 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음

3) 산지위판장의 개념정립 및 제도권화

- 산지위판장의 개념을 정립하는 문제는 앞서 살펴본 산지도매시장화에 반대하는 시각과 같이 취급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소형 위판장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불러올 수 있음. 따라서 산지도매시장화 방안은 산지위판장에 대한 법제도적 개념을 정리하는 방안과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임. 위판장에 대한 개념은 기존 농안법에서 산지집하장과 비슷한 개념으로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함(<표 4-7> 참조). 물론 농산물과 수산물 상품 및 유통의 특성은 많이 다를 수 있으나, 산지에서 생산시설로서의 역할과 유통거래의 출발점이라는 공통된 특성은 매매방법에서 찾을 수 있는데, 기존 농안법이 규정한 산지집하장(농안법 시행규칙 제 28조)의 매매방법의 규정과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으므로 이에 준용하여 산지위판장에 대한 법적 개념을 제도화해야 함. 또한, 산지위판장을 단순히 생산시설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유통 및 문화여가 시설로 확대함으로써 어업인들을 고려와 함께 대형산지위판장이 도매시장화하는데 비하여 상대적으로 위판물량이 적은 소형위판장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제도권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표 4-7> 도매시장 · 공판장 · 집하장의 개념 정립

구 분	도매시장	공 판 장	집 하 장	물류센터
판매 방법	수탁+경매 (매취+수의)	수탁+경매 도매	단순집하 가공기능	예약·주문· 수의·경매
운영 주체	법인(수협)	수 협	수 협	수협, 민간
개 설 자	지방자치단체장	수 협	수 협	수협, 민간
기 능	대도시공급	지방도시공급	지역권공급	저장·직거래
대 상	대형 위판장	중규모 위판장	소형 위판장	내륙지공판장

- 그러나, 이러한 논의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과제는 산지도매시장화와 산지위판장의 법적 지위 부여 문제는 해당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지구별 수협 또는 중앙회와의 논의와 협력이 우선되어야만 함. 현재 산지위판장의 관리와 운영을 하고 있는 수협은 산지위판장 시설을 생산시설로 규정하고 있어, 산지도매시장으로의 전환은 수협의 동의하에 추진해야 할 사항임. 따라서 법적 지위의 검토와 함께 수협중앙회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의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것임.

4) 산지도매시장으로 전환 방법

- 전국의 위판장 현황을 규모별로 보면(<표 4-8>), 위판량 10,000M/T 이상의 규모는 23개로, 경남이 가장 많은 7개, 경북, 전남이 각각 5, 4개 등이며, 나머지 지역은 3개 이하임. 위판량 5,000~10,000M/T 미만은 전체 23개로 전남 4개, 강원, 부산 등이 각각 3개로 나타났고, 위판량 5,000M/T미만은 전남 35개, 경남 32개로 나타났음.

<표 4-8> 지역별 위판장 규모 현황

(단위 : M/T, 개소)

지역	수협	계	위판장 규모			위판량	평균위판량	
			10,000 M/T이상	5,000~10,000 M/T이상	5,000M/T 미만		수협별	위판장별
강원	9	26	2	3	21	63,470	7,052	2,441
경남	15	41	7	2	32	187,629	12,509	4,576
경북	8	19	5	5	9	112,449	14,056	5,918
경인	5	9	0	2	7	22,514	4,503	2,502
전남	17	43	4	4	35	205,117	12,066	4,770
전북	3	9	1	1	7	29,697	9,899	3,300
제주	6	8	1	2	5	36,838	6,140	4,605
부산	3	11	3	3	5	110,942	36,981	10,086
충청	7	14	0	1	13	21,862	3,123	1,562
계	73	180	23	23	134	790,518	10,829	4,392

주 : 부산의 경우 공동어시장 제외

자료 : 수협중앙회 유통사업부, 2003 수산물 위(판)판장 현황, 2003.

- 이는 2000년과 비교해 볼 때 10,000M/T 이상의 위판장은 4개, 5,000~10,000M/T는 8개, 5,000M/T는 4개가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중대형의 위판장 수가 소형위판장의 감소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전체 위판물량은 2000년보다 약 34%가 감소한 790천 톤으로 나타났으며, 수협조합별 위판량은 35%, 위판장별 30% 정도가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자원감소로 인한 위판량의 전체적인 감소세를 뚜렷함을 보이고 있음.²⁸⁾
- 이를 바탕으로, 전국 수산물 산지위판장을 도매시장으로 전환할 때 세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해 볼 수 있음. 첫 번째 시나리오는 연간 위판물량이 1만 톤 이상인 위판장을 대상으로 하여 도매시장화하는 방안, 두 번째 시나리오는 연간 위판물량 2만 톤 이상인 위판장을 대상으로 하여 도매시장화하는 방안, 세 번째는 연간 위판물량이 3만 톤 이상인 위판장을 대상으로 하여 도매시장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상정할 수 있음 (<표 4-9> 참조).

<표 4-9> 시나리오별 도매시장 총거래추이

(단위 : 톤, 백만원)

구 분	도매시장전환 가능한 위판장수	총위판 물량	총위판 금액	도매시장총거래량		도매시장거래비중*	
				예상거래 물량	예상거래 금액	거래물량 비중	거래금액 비중
시나리오1	23개소	478,925	775,795	838,946	1,752,495	44.3%	51.6%
시나리오2	8개소	276,848	342,965	636,869	1,319,665	33.7%	38.9%
시나리오3	4개소	184,048	215,936	544,069	1,192,636	28.8%	35.1%

주 : 도매시장거래비중이란 시나리오별로 산지위판장을 산지도매시장으로 전환할 경우, 소비지도매시장과 산지도매시장의 거래량 총합계를 국내 연근해 생산량으로 나누어 계산한 것임.

28) 2000년의 위판장은 전국에 걸쳐 191개소로 나타났으며, 규모별로는 10,000M/T 이상의 위판장이 27개소, 5,000~10,000M/T 미만 위판장이 31개소, 5,000M/T 미만이 139개소로 나타났음. 또한 수협조합별 평균위판량은 17,195톤, 위판장별 위판량은 6,301톤으로 나타났음.

- 시나리오 1을 상정하였을 경우, 산지도매시장으로 전환 가능한 산지위판장 수는 총 23개소이며, 위판물량은 478천 톤을 기록하여 도매시장 총거래량(산지도매시장+소비지도매시장)은 838천 톤이 됨. 이러한 경우, 도매시장거래비중은 국내 연근해 생산량 대비 물량으로는 44.3%, 금액으로는 51.6%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시나리오 2의 경우에는 산지도매시장으로 전환 가능한 위판장수는 8개소, 전환 위판물량은 276천 톤으로 나타나, 도매시장 총거래량은 636천 톤이 되어, 도매시장 거래비중은 33.7%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시나리오 3의 경우에는, 전환 가능한 위판장 수는 4개소, 전환 위판물량은 184천 톤이 되어 도매시장 총거래량은 544천 톤으로 거래비중은 28.8% 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상과 같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할 때 산지도매시장을 포함한 도매시장의 총 거래비중은 최소 28.8%에서 최대 44.3%로 높아지게 됨. 이로 인하여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유통정책 수립이 가능하게 될뿐만 아니라 대형 산지위판장을 산지도매시장으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와 근거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임.

3. 거래제도와 유통관행과의 괴리

1)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 농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매시장의 거래제도는 수탁판매의 원칙, 경매원칙, 거래제한의 원칙, 수수료의 원칙 등 네 가지이며, 거래방법은 상장경매 또는 입찰 방법으로 매매를 규정하고 있으나, 계절성과 소량다품종을 생산하는 특성을 지닌 수산물의 경우, 상장경매를 원칙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또한,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설립된 법정도매시장에서도 불공정 담합과 기록상장·형식경매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도매법인의 경우,

경영능력의 부족, 기존 유통관행의 답습 등으로 인하여 도매시장내 거래에 소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실질적인 수집수탁의 기능을 상실하였으며, 일부 중도매인은 산지 위판장의 중매인 또는 유통상인과 불법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면서 현행 농안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일부 수집 영업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가운데, 도매시장의 개설자 및 운영관리자인 행정당국과 관리공사는 관행적인 중도매인의 수집수탁 활동에 대한 지도·감독의 부족으로 도매시장 유통주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최근, 도매시장 관련 유통주체와 담당공무원이 구속 및 불구속되는 일련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였음.
 - 중도매인의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서 시장별 그리고 품목별 거래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직적 거래제도의 운영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당초 상장경매제도의 도입 목적에 이르지 못한 채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도매시장을 관리하고 있는 행정당국 및 관리공사 등은 전문성의 부족과 도매시장내 유통주체의 분쟁에 대한 소극적인 대처로 도매시장 유통주체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도매시장의 관리감독에 대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구체적으로는 첫째, 도매시장을 관리하는 관리사무소가 도매시장법인의 소극적인 입장에 대하여 방관하고 있다는 중도매인의 주장과 도매시장내에서 관행적인 행위로 인해 불법을 자행하는 중도매인에 대하여 관리감독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 도매시장거래질서를 해친다는 도매시장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적극적인 중재노력의 부족 등 소극적 대처로 일관, 유통주체간의 갈등 해소를 위한 중재노력 및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둘째, 변화하는 환경에 맞는 시장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채 법률적 기준만을 가지고 도매시장의 거

래제도 및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행사함으로써 수산물 유통의 특성을 감안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비난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의 개설 및 운영을 담당하는 행정당국에 대한 동정론도 제기되고 있는데, 유통주체의 불법행위로 인한 범법자 문제는 단순히 유통주체별에 한정하지 않고 이를 관리 감독하는 행정당국의 책임으로 연계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 대책도 시급하다는 주장과 함께, 열악한 근무환경과 과도한 업무, 그리고 근무인력의 부족 등으로 도매시장에서 근무하기를 기피하는 현상이 팽배해 있으므로,
 - 도매시장 근무자에 대한 승진상의 가산점 부여 및 도매시장별 평가를 통하여 우수한 실적을 기록한 도매시장의 경우, 지도감독을 하는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인센티브의 지급 등을 통하여 도매시장 근무에 대한 유인책 개발과 함께, 개인적인 부정 또는 사업상의 중대한 책임이 없는 한 직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소한 행정착오에 대하여 엄격한 책임 추궁을 지양하는 등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동기부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됨.
- 제도적 측면에서 도매시장내 거래방법인 수산물에 대한 실질상장경매는 선어와 활어의 경우 30~40% 가량 경매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농산물보다 경매비율이 현저히 낮은 상태임. 이는 수산물의 특성상 부패변질이 쉬워 저장성이 없고, 계절별, 지역별 생산물의 종류와 생산량이 큰 편차를 보이는 것 등 수산물의 고유한 특성이 경매율이 낮은 원인중 하나의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가운데 도매시장내 반입 수산물에 대한 상장을 원칙으로 하나, 소규모 다품종에 대하여 상장의 어려움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상장예외품목의 확대는 기본적으로 농안법의 기본 거래원칙인 상장경매의 거래방법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로 비추어질 수 있음.
 - 따라서, 현행 농안법의 거래제도를 제대로 적용해 보고, 적용 후 문제

가 있다면 개선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음(전국수산물도매법인연합회). 또한, 현 농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제도에 대한 법률상 거래제도의 규정 원칙을 적용하면서, 일부 품목에 대한 탄력적인 제도 보완 등을 통해 현실성 있는 법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표 4-10> 참조).

<표 4-10> 농안법상의 수산물유통거래제도에 대한 의견²⁹⁾

찬 성	반 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상장경매외에 상장예외품목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현 거래체제의 보완만하고 상장예외품목에 대한 관리강화 등으로 수산물유통거래제도의 개선이 가능 ○ 도매법인의 수집수탁기능에 대한 제도상의 규정을 명백히 함으로써 가격결정에 대한 투명성 제고할 수 있음 ○ 시장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매매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농안법내에서 개선 가능 ○ 현 도매법인체계의 부정은 유사시장의 난립 등의 시장질서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장경매외에 상장예외품목을 둔다는 것은 현 농안법 체제가 불안정하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음 ○ 소비지도매시장의 경매제도는 이중경매의 문제를 낳고 있으므로 비용증가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음. 따라서 소비지도매시장의 경매제도는 폐지되어야 함

- <표 4-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 수산물도매시장의 둘러싼 각 유통주체별 의견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문제로 인한 갈등구조가 기존의 체계를 고수하거나 다른 제도의 도입으로 유통주체간의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예측하기 곤란함. 따라서 현 시장거래제도를 유지하는 가운데, 도매시장내 거래제도의 탄력적 운

29) 농안법상의 수산물유통거래제도에 대한 의견은 대체적으로 도매시장법인의 의견이 많은 반면, 이에 반대하는 의견은 중도매인의 의견이 많음. 도매시장법인의 의견은 전국수산물도매법인협회와의 간담회 결과(2003년9월29일)와 내륙지수산중도매인연합회의 간담회 결과(2003년9월29일) 및 전국수산물유통인모임간담회(2003년12월8일)의 의견을 모아 정리한 것임.

영과 유통주체의 영업범위에 대한 점진적인 확대, 그리고 도매시장을 둘러싼 기반정비를 통하여, 전반적인 수산물 유통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을 이끌어내아가야 될 것임.

<표 4-11> 농안법을 둘러싼 각 주체별 의견차이

구 분	개편법 체계	거래제도	중도매인의 수집능력허용여부	수매비축 사업	정가·수의매매	상장예외 품목인정 여부	직거래 상장
도매법인	농안법 개정	상장경매	시장질서 교란으로 반대	도매법인에 계도 허용	찬성	반대	반대
중도매인	제3의 법 마련	도매상제	경매활성화를 위한 수집인정	운영자금 수혜대상에 중도매인 포함	반대	찬성	찬성
관리 사무소	제3의 법 마련	상장경매	중도매인의 수집능력인정	-	-	반대	-

주 : 수산전문지의 기사 결과를 요약함과 동시에 각 유통주체별 의견을 종합하여 정리한 것임.

자료 : 한국수산신보, 어민일보(2003. 5 ~ 2003. 10).

- 유통거래제도 개선에 대한 장기적인 입장에서 고려해야 할 것은 도매 시장내 거래방법이 어떤 형태를 취하든 도매시장의 거래행위가 활성화 되어 저렴한 가격의 고품질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거래제도의 정착임. 현재 일부 도입되고 있는 시장도매인은 기존의 도매시장 거래 제도인 경매제를 완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인 도매상 체제를 도입하여 기존의 도매시장법인과의 경쟁체계를 구축한다는 의미가 강함. 이를 통하여 다양한 품목의 거래, 보다 저렴한 가격의 질 높은 수산물로 소비자의 요구를 만족할 수 있다면, 제도 도입으로 인한 긍정적인 측면이 보다 부각될 것임. 그러나, 시장도매인제의 도입으로 시중유통 주체들의 무한경쟁 또는 출혈경쟁을 부추겨 자본력이 강한 소수의 시장도매인만 생존하고 자본력이 약한 여타의 시장도매인들은 도태되어 결과를 낳아, 독과점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된다면, 제도도입의 근본취지가 무너지게 될 것임. 따라서 도매상 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 및 시스템을 보다 심도 있게 연구하여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수용할 것인지 여부, 구체적인 도입시기 및 운영방법 등을 검토해야 할 것임.

2) 시장도매인 제도

- 시장도매인³⁰⁾이란 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을 하는 법인을 말하며, 기존 도매법인의 수집수탁 기능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도매시장 경유율의 제고와 중도매인 또한 도매시장법인의 기능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시장활성화를 꾀하기 위하여 2002년 농안법 개정안에 시장도매인제에 규정을 추가하였음.
 - 시장도매인제의 도입목적은 유통 거래제도의 다양화에 대응하고, 기존 도매법인과 더불어 중도매인의 법인설립을 통하여 경쟁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출하자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점점 위축되어 가는 중앙 및 지방도매시장의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도입되었음.
 - 시장도매인제의 도입여부 결정의 기본 원칙은 유통구조의 변화는 기본적으로 소비자기향의 유통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하였음.
 - 그러나 현재 단 한곳도 시장도매인을 채택하는 도매시장이 없어 제도에 대한 회의론이 일고 있으며, 시장도매인제도에 대한 관련 종사자들의 참여한 의견대립과 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내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사장될 위기에 직면해 있음.
- 도매시장 운영의 주축인 도매법인과 중도매인의 시장도매인제 시행에 대한 근본적인 갈등원인은 도매시장의 위축과 영업업무에 대한 상호간 불신이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시장개설자는 시장도매인의 설립 기준요건을 중도매인의 경영능력 이상으로 하여 자본력이 부족한 중도

30) 시장도매인제(농안법 제36조)는 내륙지전국수산중도매인협회 및 전국수산물유통인모임 등 중도매인이 중도매인의 수집·수탁의 기능을 인정과 실질적인 도매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여, 2000년 농안법 개정을 통해 관련 조문을 추가하였음.

매인이 법인 설립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으며, 이에 중도매인은 설립기
 준요건의 완화를 주장하고 있음. 또한 수산물 유통량의 감소로 인한 전
 반적인 도매시장의 침체 역시 시장도매인제도를 도입하는데 장애물로
 대두되고 있음. 중도매인의 입장 또한 제도도입은 주장하였으나, 현재
 의 도매시장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경영상의 부담이 되는 위험
 을 무릅쓰고 적극적인 법인 설립을 주저하고 있어, 시장도매인제도의
 정착에 대하여 유통주체들의 입장은 회의적인 상황임(<표 4-12> 참
 조).

<표 4-12> 시장도매인제에 대한 유통주체간의 입장³¹⁾

찬 성	반 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장경매의 고수는 도매법인의 소극적 입장만을 고려한 것임 ○ 도매상체제는 산지의 물량수집 경쟁으로 출하선택권의 보장과 시장활성화가 기대 ○ 산지와 도매시장, 소매시장간의 유기적 결합으로 유통비용 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매상은 공정성, 투명성, 대금정산의 안정성 등에 대한 문제점 상존 ○ 도매상법인의 난립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를 달성치 못해 비용상승 효과초래 ○ 대량물량의 처리가 불가능해 생산자단체의 공동출하 위축 ○ 1법 2체계 공존으로 인한 시장의 파행적 운영과 혼란을 초래

- 시장도매인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도매시장 규제가 필요하나 장기적으로는 효율적 경쟁의 틀만 제시하고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시장도매인제는 기존의 도매시장법인보다 분산과 집하에 있어 더 많은 자본력과 전문 능력, 그리고 통합적 관리 능력의 필요함. 즉, 수산물 유통시스템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능력의 구비가 우선되어야 할 것임.

31) 시장도매인제에 대한 각 유통주체의 의견은 중도매인의 경우, 시행에 대한 찬성입장을 가지고 있으나, 시장도매인을 설립하는 기준이 현행 중도매인의 경영능력이 따라주지 못해 소극적인 자세를 임하고 있으며, 도매시장법인은 기존거래체계를 부정하는 제도라는 전반적인 반대 의견속에, 시장도매인의 설립기준과 영업에 있어 일정한 기준 조건하에 일부 찬성의견도 제시되고 있음.

- 새로운 시장도매인제도의 도입시 기존 제도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신설 지방도매시장을 중심으로 우선 도입하며, 이를 통하여 시장도매인제의 검증과 개선방안 등을 검토한 후 다른 시장의 도입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³²⁾
- 이러한 시장도매인의 도입여건 및 도입 여부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임. 첫째, 기존 경매제도의 성과 정도, 둘째, 신유통업태와의 경쟁 등 향후 도매시장의 발전방향, 셋째, 시장 관계자들의 신규 도매인제에 대한 요구 정도와 공감대, 넷째, 신규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할 수 있는 인프라의 구비여부, 다섯째, 시장의 개장 연도 등임.

3) 이중경매

- 농산물의 경우에는 산지에 위치해 있는 산지집하장에서 수집한 물량을 인근 소비지도매시장에 출하되어 경매를 실시한 후 중도매인에 의하여 분산하는 유통시스템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수산물의 경우에는 산지시장과 소비지 시장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어, 산지위판장에서 1차 경매과정 후 중간유통 단계를 거쳐 소비지도매시장에서 다시 경매되는 이른바 ‘이중경매’의 문제가 발생하는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음.³³⁾ 이러한 수산물의 유통시스템은 유통단계가 길어지고, 이로 인하여 유통비용이 증가된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
- 그 동안, 산지위판장에서 자유상장제가 실시된 이후, 산지위판장을 통한 경매비용은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수협위판의 장점인 대금정산과 어업 기자재의 외상구입 등 외부 수산물 유통상인과의 거래를 통한 불편으로 수협 출하율이 증가하면서, 산지수협조합을 통한 수산물을 계통출하 비율이 다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제3장의 <표 3-9>를 참

32) 오세조·박진용(2003), 전게서, p. 145.

33) 내륙지전국수산물중도매인협회는 농안법 제30조 제1항의 수탁판매의 원칙 이외에 제33조 제1항의 경매 또는 입찰방법에 대한 문제점을 들고 있음. 즉, 농산물 유통과 달리 수산물은 산지시장에서 1차 경매가 이루어지므로 가격이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지도매시장에서 2차, 3차 경매를 실시함으로써 인하여 유통비용의 증가로 최종소비자가격이 높아진다는 것임.

고할 것).

- 이중경매의 문제가 반드시 부정적인 의미로만 해석되는 것은 아님. 농산물과 다른 유통구조하에 산지에서 1차 경매후 소비지도매시장으로 유통되는 과정 중 기존 출하단위의 해체와 재포장 등 소비지도매시장에 출하하기 위해서는 재입상 과정을 거치므로 소비지도매시장에서 2차 경매과정은 필수적이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 또한 소비지도매시장에서 단일로 이루어지는 가격형성과정보다 2차례에 걸친 경매가 가격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
 - 소비지도매시장에서 거래로 인한 유통비용의 발생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음. 따라서 도매시장의 거래제도를 상장경매에서 도매상으로 전환한다고 해서 유통비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님. 도매상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시장제도가 정착되지 않거나 거대도매상의 출현으로 인한 시장의 독점 내지 과점체제로 도매시장이 운영될 때는 기존의 경매제도로 인한 투명성 가격 보장이 어려워 기존 거래제도보다 더 많은 유통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음.
 -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유통단계가 길어져 수산물의 선도 및 질의 저하 및 유통비용의 추가되는 등의 부정적인 측면이 더 강하게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 보편적인 시각으로 인식되고 있음.
- 이중경매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산지시장에 대한 법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이러한 과정 속에 산지도매시장의 설립을 유통하여, 산지도매시장에서 1차 경매를 실시한 품목에 한하여 소비지도매시장에서 정가·수의매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통하여 이중 경매로 인한 비용 상승을 일정하게 상쇄시키고 중도매인의 수수료부담³⁴⁾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이는 궁극적으로는 최종소비자의 수산물 구입단가를 낮출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34) 산지위판장의 수수료율은 부류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략 0%~5%정도이며, 소비지도매시장의 수수료율은 강동수산의 경우 수수료율은 3.0~4.0%로 이중 출하장려금 0.45%, 시장사용료 0.5%, 법인수입 3.15%임).

4. 수산물 유통법의 제정 논의

- 수산물 유통에 대한 독립법 제정에 대한 논의는 해양수산부 출범과 함께 그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처음으로 공식화된 것은 1997년의 “수산물유통구조개선기획단”임. 수산물 유통인들은 독립법 제정에 대부분 찬성하고 있으며, 제정되는 수산물 유통법은 산지에서 소비지 및 소비자의 식탁에 이르는 수산물 유통을 둘러싼 모든 분야를 망라할 수 있는 법이어야 하고, 농안법 체제와는 다른 수산물유통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새로운 법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함. 그러나 도매시장과 관련한 농림부나 농산물 유통전문가들은 수산물유통의 특성만의 이유로 별도의 법안을 만드는 것에 소극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음.

1) 독립법 제정 찬성 의견

- 수산물유통에 관한 독립법을 제정하여 농안법과 분리하자는 논의가 처음으로 공식화된 것은 “수산물유통구조개선기획단”으로 기존 농안법은 산지시장에 대한 법제도 규정의 부재, 수산물의 거래관계에 있어 이중경매가 다수 발생하는 거래제도상의 문제를 줄이고 수산물 고유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농안법을 대신하여 수산물 유통 특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의 제정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였음.
- 최근에는 자원감소로 인한 수산물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이로 인하여 산지시장 및 소비지시장이 위축되어 가는 상황이므로 산지시장의 제도권화 및 소비지도매시장과의 유기적인 흐름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 또한 수입개방 이후 수입 수산물이 국내 수산물총공급의 40%가 넘는 구조를 감안하여, 독자적인 법을 제정하여 수산물유통특성을 감안하여 국내 수산물의 유통구조뿐만 아니라 수입수산물의 유통구조 또한 새로운 법에서 수용하도록 하며, 농안기금에서 수산부문의 기금을 분리, 수산물 유통정책의 효율적 운용 및 안정적인 재원마련을 위한 기반

을 수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해양수산부의 독자적인 법률이 필요함(<표 4-13> 참조).

<표 4-13> 쟁점별 독립법 제정논리

쟁 점	독립법 제정의 논리
○ 수산물산지시장(위판장)의 불포함	○ 농안법은 소비지도매시장법
○ 수산물의 유통특성반영 미흡	○ 농산물 중심의 법체계 ○ 농산물과 수산물은 유통특성이 다름
○ 농안법은 산업법	○ 수산물의 생산, 자원관리 등 개념 희박 ○ 농산물의 생산만 고려
○ 법과 현실의 괴리	○ 농안법으로 수산물유통 현실반영이 어려움 ○ 상장경매보다 수의매매, 기록상장이 많음
○ 농산물 위주의 농안법 개정	○ 농안법이 12차례 개정시 수산물시장에 대한 개선은 없었음 ○ 수산물유통은 주체가 되지 못함
○ 수산물유통의 독립성	○ 부처가 분리되었으므로 법도 분리필요

2) 독립법 제정 반대 의견

- 수산물 유통만을 대상으로 한 독립법 제정의 반대 의견으로는 농산물과 수산물의 핵심이 되고 있는 유통상의 거래제도가 상당부분 유사한 구조를 띠고 있으며, 몇몇 제도적인 보완을 통하면 수산물 유통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으므로 독립법 제정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더군다나 하나의 시장에서 2개의 법이 존재하는 1물 2체계는 도매시장의 거래질서를 혼란시킬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도매시장내 농산물과 수산물의 유통주체의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표 4-14> 참조).
- 즉, 수산물과 농산물의 유통상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산지시장문제와 거래문제는 기존의 농안법의 개정만으로 충분히 개선 가능하며, 농안법이 가지는 현실과의 괴리문제는 수산물의 유통특성을 법에 반영하지 못했다기보다는 농안법을 현실에 제대로 적용해 본적이 없는 운영에서

의 문제로서, 유통주체의 관행상의 거래에 대한 일정한 묵인하고, 이를 인정된 상태에서 도매시장내의 경매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한 적이 한번도 없었다는 주장이 일정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음.

<표 4-14> 독립법 제정에 대한 찬반의견

찬 성	반 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상품이 생산에서 최종소비단계까지 하나의 법률 체계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함 ○ 농산물과 다른 수산물의 상품적 특성을 감안하여 분리제정 필요 ○ 생산형태가 다르고 유통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냉동창고 등 특수유통시설 필요 ○ 산지시장은 수산업법, 도매시장은 농안법 적용으로 혼란초래 ○ 해양수산부의 수산물유통관련 관리조정 업무의 일원화 ○ 위판장과 소비지도매시장의 구조조정을 위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장예외 활용시 농안법으로 충분 ○ 수익매매 도입시 위탁상 체제로 전환되어 유통의 퇴보 초래 ○ 독자법 제정시 거래질서 혼란 등 위험소지가 있어 농안법내에서 현실에 맞게 개정 ○ 모든 위판장을 산지도매시장 개념으로 보는 것은 무리 ○ 대도시의 소비지도매시장 발전위주로 유통구조 개선

3) 수산물 유통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정논의

- 기존 농안법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산물 위주의 법체계로 구성되어 있어, 같은 1차 산업의 상품을 취급·거래하는 법제도라 하더라도 상품의 특성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는 농산물과 수산물의 유통상 특징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 할 수 있음. 또한 도매시장 거래제도의 내용이외에 큰 축을 이루는 농안기금의 관리·운영에 있어서도 주 사업대상이 농산물로 이루어짐으로 수산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임. 또한 산지시장에 대한 법규정이 없어, 수산물 유통상 출발점인 산지시장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이로 인해 법체계를 새로이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또 다른 의견으로 대두되고 있음.

- (가칭)수산물유통에관한법률을 하나의 독립법으로 추진하는 방안에는 독립 신설에 필요한 명확한 근거와 당위성이 뒷받침되어야 함. 즉, 소비지도매시장의 문제는 현재, 하나의 도매시장안에서 수산물과 농산물을 취급하는 시스템을 별도로 구분하여 법적용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기존 도매시장의 경계분리가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또한 검토를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임.
 - 이러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독립법 제정의 반대의 입장에서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대안으로 농안법에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의 공동부령 또는 공동시행규칙과 같은 방법으로 수산물 유통의 특성을 반영하고자 하는 주장임.
- 그러나, 농안법의 전면적인 개정문제도 독립법을 신설, 제정하는 것만큼 어려운 점이 존재하고 있음. 첫째, 농안법의 개정에는 주무 기관인 농림부와 협의 및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나 합의도출에 대한 예상은 다소 회의적인 측면이 적지 않음. 왜냐하면 수산물 유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거래상의 문제가 덜 나타나고 있는 농산물 유통이 도매시장의 주요 거래품목이며, 하나의 법에 2개의 상품을 대상으로 하여 법 체계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도매시장 전체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의 수립 및 실행에 있어 부정적인 측면이 나타날 수 있어, 관련 기관인 농림부의 협의 및 합의 의지가 약해 현재로는 전면적인 개정이 불투명하다는데 있음. 둘째, 농안기금중 수산부분의 기금분리도 지금까지의 농림부가 분리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어 수산부분을 단독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에도 회의적인 전망이 많음.
- 따라서 수산물 유통에 관한 독립법의 제정이나 개정이 불가능하다는 전제하에 기존 농안법의 조문의 일부 개정과 함께 농림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을 형식으로 농안법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을 개정, 해양수산부의 단독부령 형태로 입법을 추진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해양수산부 단독 부령은 독립법 제정 또는 농안법의 법

조문의 개정에 비하여 수산유통의 고유성 및 독자성, 그리고 특징을 정확히 반영하기 어려우며, 이 또한 관계부처인 농림부와 협의 및 합의가 필요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음.

- 반면, 농안법을 농림부와 해양수산부 공동부령으로 하는 방안은 현행 농안법이 농산물의 거래에 초점이 맞추어 있는데 비하여 제한적인 범위라도 수산유통의 고유성, 독자성 및 수산유통의 특징을 반영할 수 있으며, 부령의 제정에 있어서의 논리준비 및 계발에 있어서 독립법의 제정 또는 전면적인 농안법의 개정보다는 현실적으로 용이하다는 장점과 새로운 독립법의 제정과정인 국회의 입법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어, 독립법의 제정보다는 비교적 간편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5. 기타 쟁점

1) 유통주체의 경영포기로 인한 시장 위축

- 산지에서 1차 경매된 수산물의 분산 및 출하기능을 담당하는 산지중도매인과 소비지 도매시장의 중도매인은 거래물량의 감소와 자본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경영 위축이 심화되고 있음. 산지의 경우, 산지위(공)판장이 농안법 제도권에 포함되지 않아 출하주인 산지중도매인에 대한 법적 보호 및 지위에 대한 규정이 농안법에 없고, 소비지의 경우, 도매시장의 경쟁상대로 유사시장 및 대형마트 등의 출현, 기존 유통거래량의 분산으로 거래량의 감소하는 등 기본 도매시장의 거래여건이 불리해지는 가운데 산지 및 소비지시장의 유통주체들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도매시장을 위축시키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또한, 산지시장과 소비지 시장의 유통주체간의 불법거래와 상하관계 역시 도매시장 및 수산물 유통을 위축 및 유통주체의 경영악화를 불러오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산지에서 출하된 수산물에 대하여 그

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중도매인의 위탁거래를 위해 소비지도매시장의 중도매인이 대금결제 또는 외상거래 등을 이용하여 산지의 중도매인을 예속적인 관계로 묶음으로써, 산지의 중도매인은 소비지도매시장의 소규모 매매인 신분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음.

- 이러한 관계에서 산지중도매인의 경영악화는 소비지도매시장의 유통주체 경영악화로 이어져 경영상황의 악화속에 연쇄도산이라는 도미노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음. 따라서 정산제도를 보다 철저하게 산지 및 소비지도매시장의 유통주체에게 적용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급선무임. 그러나 이에 앞서 유통주체간의 법을 준수하게 하는 의식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도매시장의 위축과 이로 인한 유통주체의 경영상태는 더욱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2) 경매사 제도의 공정성 문제 야기

- 전국 13개 법정도매시장내 자격증을 보유한 경매사는 2002년 기준, 총 125명으로 공영도매시장에서 종사자는 94명, 일반법정도매시장 31명임. 또한 산지 위판장의 경매사는 총 268명으로 이중 자격증 보유자 115명, 미보유자 163명으로 나타났음(제3장의 <표 3-31>을 참조). 산지위판장 및 소비지도매시장에서의 경매사의 역할은 경매우선순위의 결정, 수산물에 대한 가격평가, 경매의 경락자의 결정 등 수집수탁된 물량에 대하여 공정한 가격 결정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경매사의 공정성 문제는 소속문제로 귀결될 수 있는데, 현재의 경매사 신분은 시장도매법인에 소속되어 있어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으로 부터 가격형성과정에 시장도매법인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를 위해 경매사의 신분 및 소속을 시장개설자 또는 관리공사 소속하에 두고, 공정한 가격형성자의 입장을 취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음.
- 경매사의 공정성과 신분 문제는 향후 산지위판장의 산지도매시장으로의 전환과도 연관되고 있는데, 현재 산지위판장의 경우, 경매사 자격

중 미보유자가 전체 경매사의 절반이 넘는 상황임. 따라서 향후 산지도매시장을 개설할 경우, 소비지도매시장의 기준과 같이 경매사 자격을 엄격히 준용한다면 산지도매시장의 거래가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산지위판장의 경매사 자격증 보유자에 대한 점진적인 확대와 일정한 기간동안 산지위판장에서 경매업무에 수행하였던 경매사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자격증을 수여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 산지도매시장이 정상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야 할 것임.

3) 도매시장내 일부 소매행위에 대한 규제

- 현행, 소비지도매시장의 영업행위는 상장된 수산물을 경매 또는 정가·수의매매방식으로 가격결정을 한 후 중도매인에 의하여 분산되는 도매행위만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가락시장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도매시장에서 직판 및 소매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임.
- 도매시장내 소매행위에 대한 영업이 불가피할 경우,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도매시장내 거래과정 중 발생하는 잔품의 경우, 중도매인이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내륙지수산중도매인협회), 도매시장에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시장내에서 거래된 품목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시설(예를 들면 회센터 등)에 대한 허가 등을 통하여 도매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청주수산물도매법인의 의견).

4) 농안기금의 수발기금으로의 전환

- 도매시장의 거래제도와 더불어 현행 농안법을 구성하는 또 다른 큰 축인 농안기금의 사용은 대부분 농산물을 대상으로 비축사업과 구매사업, 그리고 생산자에 대한 지원 등이 이루어져 왔음. 그러나 수산물을 대상으로 한 사업의 실적이 극히 미미하고 또한 사업의 주체에 있어 해양수산부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실시하지 못하는 등 농안기금 중 수산부문에 대한 관련부처인 해양수산부로의 이관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

어 왔음.

- 이에 새로운 수산물 유통에 관한 독립법 제정 및 농안법에서 수산물 유통에 관한 공동부령 내지 공동시행규칙 논의와 더불어 농안기금 중 수산부문에 대한 독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농안기금 중 수산부문에 대한 독립형태는 새로운 기금은 운용보다는 기존 어업인특별지원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운영되어 지는 수발기금에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는 정부가 기금사업의 중복성을 없애고 효율적인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기금의 통폐합 정책에 부합하며, 담당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의 기금운영에 있어서도 효율적인 집행으로 이어질 것임.

제5장 주요국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제도

제1절 일본의 도매시장제도

제2절 프랑스의 도매시장제도

제3절 미국의 도매시장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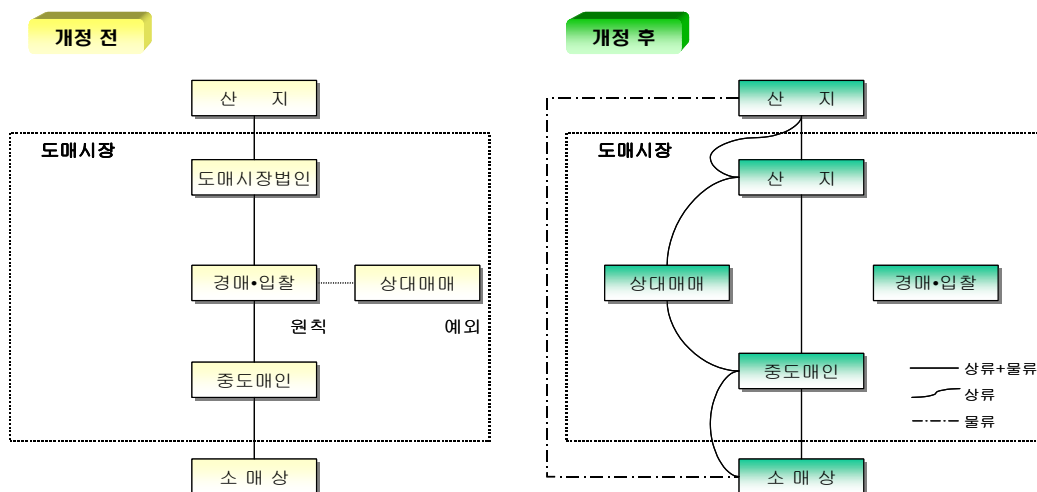
제4절 주요국 도매시장제도의 비교

제1절 일본의 도매시장제도

1. 일본의 도매시장제도

- 일본의 수산물 도매시장 및 거래제도를 규정하는 일본의 도매시장법은 총 7개의 장과 부칙, 그리고 8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음. 각 장의 주요 내용은 제1장 총칙, 제2장 도매시장정비기본방침 등, 제3장 중앙도매시장, 제4장 지방도매시장, 제5장 광역자치단체(都道府縣)도매시장심의회, 제6장 잡칙, 제7장 벌칙, 부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중앙도매시장과 지방도매시장에 관한 조항이 별도의 장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그에 관한 개설 기준을 명시하고 있음. 그리고 식품유통심의회 및 도도부현 도매시장심의회에 대한 설치조항과 도매시장에 대한 정비 구성에 대한 내용 또한 정의되어 있음(<그림 5-1> 참조).³⁵⁾

<그림 5-1> 일본 도매시장법 개정 전후의 거래방법 비교



35) 자세한 내용은 왕성우 외, 농산물 도매시장 관련법 및 제도개선방안연구, 한국시장유통연구원, 2003을 참조하길 바람.

2. 일본의 도매시장 관련법 주요내용

1) 도매시장제도의 개요

- 일본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중앙도매시장, 지방도매시장, 중앙 및 지방도매시장 이외의 도매시장으로 구분하고 있음. 중앙도매시장이란 농수산물의 유통과 소비를 함에 있어 특히 주요도시 및 그 주변지역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농수산물 도매의 중추적인 거점과 인근지역의 유통 개선에도 기여하는 시장으로써 농림수산성 장관인가를 받아 개설된 도매시장으로 규정하고 있음(일본 도매시장법 제2조 제2항).
- 지방도매시장이란 중앙도매시장 이외의 도매시장으로서 수산물도매시장의 면적은 200㎡ 이상(산지시장은 330㎡이상) 이상인 도매시장을 말하며, 지방도매시장의 개설에는 도도부현지사의 허가가 필요함(일본 도매시장법 제2조 제3항).
- 중앙도매시장 및 지방도매시장 이외의 도매시장은 도매시장법에 구체적인 규제 등에 대해 규정하고 않고 있으며, 지방공공단체가 도매시장의 개설 또는 도매시장의 업무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역의 실정에 맞는 세부시책과 통합대형화를 추진하고 있음.

2) 중앙도매시장의 개설 및 거래제도

-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로는 ①도도부현, ②인구 20만명 이상의 시, ③도도부현 또는 인구 20만명 이상의 시가 가입한 일부 사무조합 또는 광역연합임.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농림수산성장관의 인가를 받아 중앙도매시장을 개설할 수 있음(일본 도매시장법 제8조).
- 중앙도매시장의 유통주체로는 도매업자·중도매업자·매매참가자·관련사업자 등의 유통종사자가 있는데,

- 도매업자란 전국적 규모로 대량의 농수산물을 지속적이고 계획적으로 집하하여 이를 중도매업자 및 매매참가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업무로 하고 있음. 수산물 거래에 있어서 도매업자는 원칙적으로 위탁방법에 의해 집하하고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판매하며, 예외적으로 공급이 안정적인 특정물품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매취집하 및 상대매매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중도매업자는 중앙도매시장 내에서 점포를 가지며, 도매업자로부터 매수한 물품을 분산, 조제하여 매출인(소매상·외식업자 등)에게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시장의 가격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일본 도매시장법에서는 중도매업자를 원칙적으로 두게 되어 있지만(일본 도매시장법 제33조), 개설자가 시장의 취급규모, 취급품목의 특성,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중도매업자를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품목별 중도매업자를 2명 이상 주지 않을 수도 있게 되어 있음(일본 도매시장법 제4항).
- 매매참가자는 개설자의 승인을 받아(일본 도매시장법 제36조) 도매업자가 행하는 도매에 직접 참가하여 물품을 매수할 수 있는 소매상 또는 대형수요자를 말하며, 중도매업자와 함께 가격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음.

3) 지방도매시장의 개설 및 거래

- 지방도매시장은 농수산물 지역유통의 거점으로서 중요성에 비추어 개설 및 도매업무를 도도부현지사의 허가제로 하고 있음(일본도매시장법 제55조 제1항 및 제58조). 지방도매시장에서의 공정한 매매거래 및 안정적인 가격형성의 확보를 위해 첫째, 출하자·매수인 등에 대한 부당한 차별 거래의 금지(일본 도매시장법 제61조)하고 있으며, 둘째, 경매 또는 입찰의 원칙(일본 도매시장법 제62조)을 두었으며, 셋째, 입하수량 등 공표(일본 도매시장법 제63조)등의 규정하고 있음.

4) 식품유통심의회 및 도도부현 도매시장심의회 설치

- 도매시장제도의 적정한 운용을 위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5명 이내로 조직한 식품유통심의회가 설치되고 있으며, 도매시장심의회는 농림수산성장관 또는 도도부현지사를 자문하며, 도매시장정비 기본방침 및 중앙도매시장 정비계획의 책정 등 도매시장법의 시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조사·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5) 도매시장의 계획적 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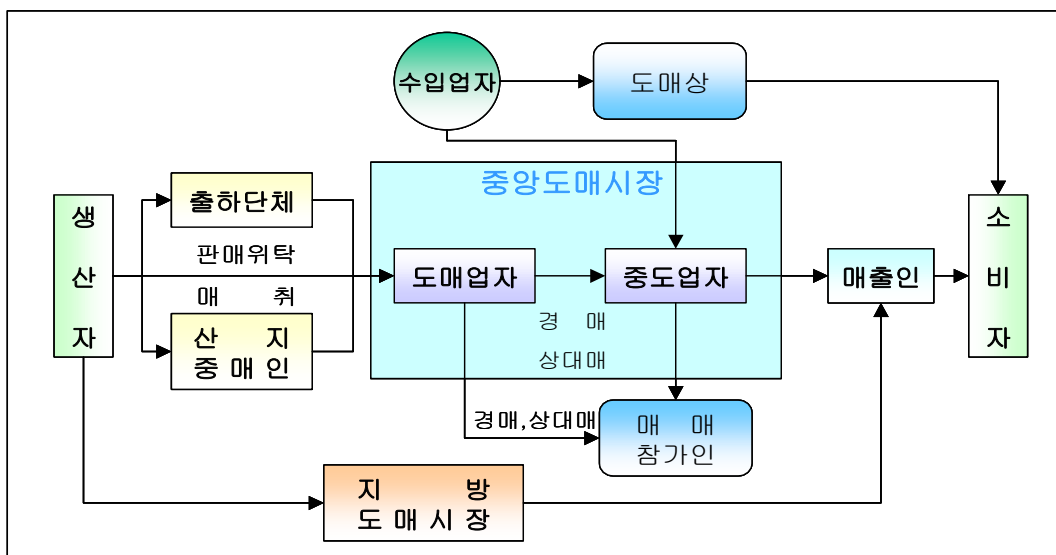
- 도매시장의 정비에 관하여 농림수산성장관은 도매시장법 제4조에 근거하여, 매 5년마다 목표연도를 설정하고 도매시장의 적정한 배치의 목표와 근대적인 도매시장의 입지, 시설의 구조 등에 관한 기본적 지표 및 도매시장의 거래 및 물적유통의 합리화에 관한 기본사항, 그리고 도매업자의 경영 근대화의 목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매시장정비 기본방침을 작성·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 중앙도매시장 정비는 법 제5조에 근거, 유통 소비상 주요도시에 중앙도매시장 개선이 필요할 때, 도시의 명칭, 취급 품목 및 시설을 개선할 시장 명칭 등을 내용으로 한 중앙도매시장 정비계획을 정하여 이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1996년을 도매시장 정비의 최초 연도로 설정한 후 2005년도를 목표연도로 한 중앙도매시장 정비계획은 제6차 중앙도매시장 정비계획이 공표되어 있음.
 - 지방도매시장의 정비는 법 제6조에 근거, 지역의 유통사업에 따른 시장의 적정한 배치 방침, 도매시장의 입지, 시설의 구조 등에 관한 지표를 내용으로 한 도도부현 도매시장 정비계획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005년도를 목표로 하는 제6차 도도부현 도매시장 정비계획이 작성·공표되어 있음.
- 도매시장정비기본방침 및 정비계획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달성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계획으로는 첫째, 중앙도매시장에 대해서는 국가가 그

중요한 시설의 개량, 조성, 취득에 대해서 그 비용의 4/10 이내를 보조할 수 있으며(일본 도매시장법 제72조 제1항), 둘째, 국가 또는 도도부현은 이들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언, 지도, 자금의 융자알선, 기타 지원을 행하도록 하고 있음.

3. 일본 도매시장제도의 특징

- 중앙도매시장의 거래시스템은 집하 → 판매 → 대금결제 등으로 이루어짐. 도매업자는 출하자로부터 출하를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위탁의 방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일본 도매시장법 제38조), 수탁을 거부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일본 도매시장법 제36조 제2항).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일정 조건하에서 매취에 의한 집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림 5-2> 일본 쓰키치 수산물 시장의 유통체계



자료 :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세계의 농수산물 도매시장 현장을 가다, 1999.

- 도매업자의 도매거래는 경매방법에 의하여 거래되는데, 도매시장에 등
을 한 경매사(일본 도매시장법 제43조)에 의하여 경매를 통한 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일본 도매시장법 제34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특정물품 이외 적정한 가격형성에 지장이 없고 도매가격의 안정, 거래의 효
율화 등이 확보된 경우에는 일정조건 하에 상대매매에 의해 판매할 수 있
도록 되어 있음(법제34조 단서).
- 도매업자의 거래구역은 원칙적으로 시장내로 한정하고 있음(일본 도매시
장법 제39조). 다만, 효율적인 유통을 위하여 상품특성의 변화, 대량
거래의 진전 등에 대응하여 농림수산성장관이 지정한 개설구역의 주
변지역의 일정한 장소에 있는 물품에 대해서도 도매를 가능케 하고
있음(일본 도매시장법 제39조 단서).
- 도매업자는 집하된 농수산물을 중도매업자나 매매참가자 이외에게는
판매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일본 도매시장법 제37조), 각 시장 상황과
품목 또는 품질상의 특수성으로 인한 잔품의 경우, 중도매업자나 매매
참가자 이외의 자에게 도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일본 도매시장법
제37조 단서).
- 중도매업자는 분산·조제 등을 행하고 도매업자 이외의 자로부터 매입은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으나(일본 도매시장법 제44조), 도매업자
로부터 매입하는 것이 곤란한 물품에 대해서는 시장전체의 집·분산
기능을 향상하는 관점에서 직접 집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도매시장에서의 판매대금결제(정산)는 현금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
며, 도매업자는 위탁자에 대하여 도매한 날의 익일까지 도매대금을 송금
하도록 각 시장의 업무규정에 의무화되어 있으나, 도매대금의 송금에 대
해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지불유예가 인정되고 있음. 매수인은 도매업
자로부터 매수한 물품의 인수와 동시에 매수대금을 지불하여야 하며,
단, 매수대금의 지불에 있어 개설자의 승인을 받은 특약이 있는 경우
에는 지불유예가 인정되고 있음.

4. 기타 관련법(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

- 일본의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은 1991년에 제정, 공포된 법으로 총 5개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 법은 식품 유통부문 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에 의해 식품과 관련 유통기구의 합리화와 유통기능의 고도화를 도모하고, 아울러 일반소비자의 이익증진과 농림어업의 진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동법 제1조).
- 이 법의 취지는 다양화되고 고도화된 소비자수요의 변화와 농수산물 수입의 증가 등에 따른 생산여건의 변화와 인력부족, 배송비의 상승 등에 따른 유통비용의 증가 등 식품유통을 둘러싼 급격한 변화에 대처하고 식품유통구조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농림수산성장관이 정한 방침하에 금융, 세제, 기타 지원 등을 통하여 식품유통기구의 합리화와 유통기능의 고도화를 추구하고, 일반소비자의 이익증진 및 농림어업의 진흥에 기여함에 있음. 이 법에서 식품이란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음식을 가리키지만, 화훼에 대해서는 도매시장의 취급품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이유는 생산, 유통구조가 식품과 유사하기 때문임. 식품판매업자란 식품소매업자 및 식품도매업자의 일반식품업자도 포함되고 있음.
-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의 주요내용으로는 식품생산판매제휴사업, 도매시장기능고도화사업, 식품판매업근대화사업, 식품상업집하저장시설정비사업 등 식품유통구조개선에 대한 4개 사업으로, 각 사업의 내용과 사업계획의 작성 및 실시주체를 정하고 있음.
 - 식품생산판매제휴사업은 생산자와 제휴한 안정적인 거래관계의 확립, 식품의 품질보존시설의 정비 등 생산에서 소매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식품유통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계획 작성 및 사업실시주체는 식품판매업자 또는 식품판매업자가 조직한

법인 및 농림어업자 또는 농림어업자가 조직한 법인으로 하고 있음.

- 도매시장기능고도화사업은 식품의 품질보존시설, 물류시설의 정비, 유통기능의 향상, 도매시장사업자의 자질 향상 등 도매시장의 기능 고도화를 도모하는 사업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실시주체는 도매시장의 개설자, 도매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들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업무를 행하는 자로 지정하고 있음.
- 식품판매근대화사업은 공동매입, 공동배송의 실시, 식품의 품질보존시설 정비, 판매업무시설의 정비, 식품판매사업자의 경영개선 등에 의한 식품판매업의 근대화를 꾀하는 사업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실시주체는 식품판매업자 또는 식품판매업자가 조직한 법인임.
- 식품상업집하저장시설 정비사업은 식품정보의 제공 등 소비자의 편의의 증진을 꾀하는 시설을 병설한 식품판매업자의 점포 집하저장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주체는 식품판매업자 등의 출자 또는 거출에 관계하는 법인임.

제2절 프랑스 도매시장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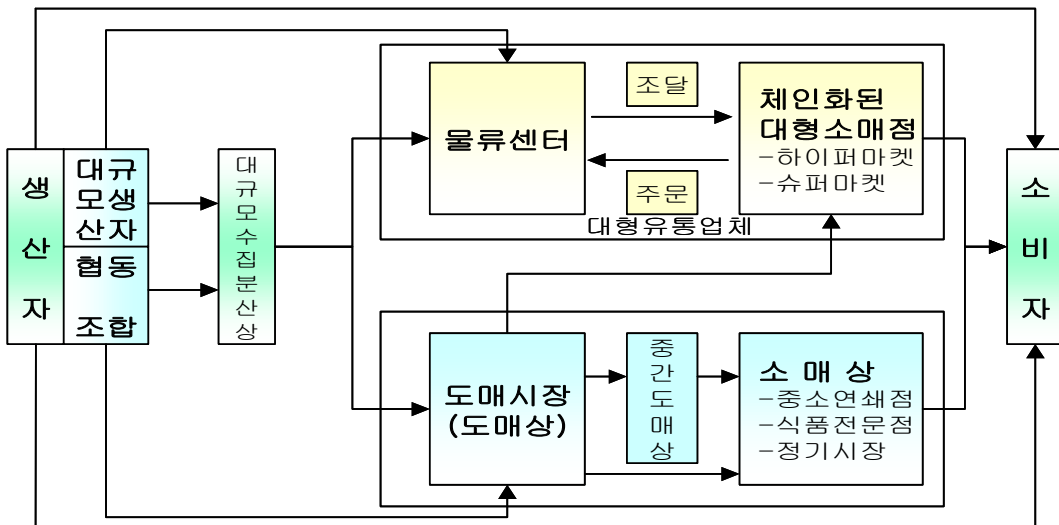
1. 프랑스의 도매시장제도

- 프랑스 정부는 1953년 9월 도매시장법 “국가공익을 위한 도매시장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하여”를 제정하여 23개 도매시장을 국가공익시장(MIN)으로 지정하고 시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였음. 국가공익시장의 개설자는 각 지방정부이지만, 파리 란지스시장의 경우 파리지 정부임. 도매시장의 관리 및 운영은 개설자로부터 위임받은 도매시장관리공사가 대행하고 있으며, 관리공사는 개설자의 보호감독하에 도매시장의 건물, 시설 등 재산을 유지하고 경영활동을 조성, 촉진, 통제하는 일체의 기능을 수행하며, 대내외적으로 이해집단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있음.
- 프랑스 파리 란지스도매시장의 경우, 시장관리는 파리도매시장정비 관리공사(SEMMARIS)가 개설자인 파리지 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시장운영 활성화 지원, 시장건설 유지관리, 시장관련 이해집단의 분쟁 조정역할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SEMMARIS는 중앙정부 57%, 파리지 정부 17%, 상인기타 26%의 소유지분을 가지고 있어 국가공영시장 및 경영혼합경제회사의 성격을 띠고 있음. 프랑스 공영도매시장의 운영 관리에 대한 주요정책은 중앙정부관계부처(농림수산부, 상공부, 재경부, 내무부 등)장관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음.
- 도매시장의 유통주체는 지정도매상이 있으며, 이들은 출하자(농민)가 판매 위탁한 농산물을 판매하거나 자기 계산하에 산지 또는 중계지 시장에서 직접 구매하며 판매하고 있으며, 수집과정은 지정도매상, 반출입상,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에 의하여 상품이 조달되고, 분산과정은 도매상이

중개상 또는 소비지 소매상, 대규모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음.

- 도매시장의 거래방법은 반입상 또는 농민이 공영도매시장의 지정도매상에게 판매위탁을 하거나 도매상 자신이 자기계산하에 산지나 중계지 시장에서 상품을 구매하며(국가관리시장의일반조직에관한법 제26조), 도매시장의 분산과정은 도매상이 중개상 또는 여러 형태의 소매상에게 판매하는 형태를 가짐. 도매시장에서의 거래방법은 전통적으로 상대거래가 지배적이며,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가 시장내에서 직접 판매하는 제도도 병행하고 있음.

<그림 5-3> 프랑스 도매시장의 유통체계



자료 :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세계의 농수산물 도매시장 현장을 가다, 1999.

- 파리 란지스도매시장의 경우 지정도매상의 거래는 상대거래로서, 매취 판매(80%)와 위탁판매(20%)를 하고 있음. 매취판매는 주로 대량거래시 발생하며 매수한 물품에 통상 8~15%의 이윤을 붙여 소매상에게 판매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위탁판매는 소량거래품목으로 산지에서 판매를 의뢰하는 경우로서 이때 대략 4~5% 위탁 수수료를 받고 거래를 하고 있음.

- 도매시장내 거래에 있어 영업활동을 하는 모든 회사 및 개인사업자는 사전에 SEMMARIS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시장규약준수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농산물취급자는 행정기관에의 요구하는 일정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취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도매시장의 대금결제는 지정도매상과 산지출하자와의 대금결제는 36시간 이내 거래내역을 통보하고, 30일 이내 은행을 통하여 대금을 송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출하자와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결제기간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지정도매상과 구매자와의 대금결제는 주거래은행을 통하여 지급 또는 수수료로 결제하며, 지정도매상은 도매, 위탁, 중개 거래시 거래관련 증빙서류를 3년 간 보관해야 함(국가관리시장의일반조직에관한법 제 26조).

2. 프랑스의 도매시장 관련법 주요내용³⁶⁾

- 프랑스의 「국가관리시장의일반조직에관한법」은 시장의 일반조직(일반 규정, 시장의 경영, 감독지위기능), 국가공익시장의 이용자, 시장의 장소점유에 대한 허가, 공동의무 등 총 4부 3장 42조로 구성되어 있음. 일반규정으로 국가관리시장의 정의, 판매에 대한 원칙, 그리고 시장점포에 대한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음.
- 국가관리시장이란 법령에서 정한 상품에 대하여 소매이외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장소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 국가관리시장 내에서는 모든 후속거래(재판매)를 금지하고 있음.
- 도매시장의 관리를 목적으로 공익적 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이때 시장의 책임자는 정부에 의해서만 임명될 수 있음. 국가공익시장 관리의

36) 자세한 내용은 왕성우 외, 상계서, pp. 105~111을 참조하길 바람.

주체는 도, 기초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연합회 등이며, 도매시장의 관리방법은 독립채산제 형식으로 국영기업체에 관한 법령의 규정이 적용하고 있음. 이때 경영이사회를 대표하는 감독관 중 과반수는 관련지역의 자치단체에 의해 지명되며, 나머지 과반수는 관할지역 도지사에 의해 각각 지명되는 형태를 가짐.

- 도매시장의 감독권한은 재경부, 농업부, 내무부 또는 그 대리인으로서 국가공익시장 감독위원회에 의해 행사됨. 감독위원회는 도매시장 재무상태가 악화되거나 또는 예상되는 경우, 경영자에게 경영수지개선에 대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음. 도매시장의 회계는 일반회계원칙에 기초하고 경제재정부의 동의를 얻은 특별회계원칙에 부합되게 작성되어야 함.
- 도매시장의 유통주체는 판매인, 구매인 및 내부규칙이 정한 범위 내에서 지정도매상과, 생산자와 시장에 속한 서비스, 설비 및 시설의 이용자 등 기타 이용자를 말함.
 - 판매자 또는 지정도매상은 프랑스와 유럽공동체 회원국 또는 프랑스와 협약에 의해 프랑스인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한 국가의 국적자이어야 하며, 유통업 혁신에 관한 법률(1947.8.30) 및 시장의 내부규칙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시장 내에서 영업할 수 있음.
- 도매시장내 거래내역의 기록은 엄격하게 지켜지도록 하고 있음. 위탁상은 타인의 회계출납을 위해서만 판매하여야 하며, 도매위탁상은 자신이 소유주인 상품의 거래와 타인의 회계출납을 위해 판매하는 상품거래의 구좌를 명백히 구분하여 유지하여야 함. 또한 모든 사용문서에 자신이 이중적인 자격을 명시하여야 하고, 자신에게 판매가 위임된 상품에 대해 구매자가 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국가관리시장의일반조직에관한법 제26조).
 - 판매자와 중개인은 3년 간 영수증이나 판매전표의 사본을 보관하고 행정기관이나 시장관리조직원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함. 이때 영수증이나 판매전표는 판매시점에서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위탁상과 위탁도매상은 판매 서류의 요약 사본을 3년 간 보존하여 권한 있는 관계자의 요구가 있을 시 제출하여야 함(국가관리시장의일반조직에관한법 제27조).

- 도매시장의 시설 사용은 시장의 점유에 대한 허가시설구역의 배타적 점유, 대지의 배타적 점유, 시설물내 장소의 비배타적 점유 등에 의해 시설을 사용해야 하며, 배타적 점유를 원하는 사용자는 경영자에게 점유허가를 받은 후 경영이사회 또는 지사로부터 승인을 얻은 감독관에게 일정한 입주비를 지불해야 함(국가관리시장의일반조직에관한법 제28조).
- 도매시장내 유통주체에 대한 공동의무로서 점유권 명의의 의무와 기타 시장사용자의 의무, 규정위반자의 처벌 등에 대한 내용이 있음. 점유권의 명의인은 시장내부규칙의 제규정에 합치되어야 하며, 경영이사회 또는 지사의 동의를 받아 경영이사회를 대신하는 위원회 또는 시장사용자의 부담금 징수목적으로 체결한 계약한 경영자에게 모든 시장시설에 대한 일정한 사용료를 지불해야 함. 이 때 내부규칙에서 정한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함.
 - 기타 시장사용자의 의무로는 시장내부규칙의 제규정 또는 계약에 의해 정해진 규정을 따라야 하며, 본 명령 또는 내부규칙에 의해 규정된 문서를 작성하여 상품의 반입시나 반출시에 첨부하여야 함(국가관리시장의일반조직에관한법 제37조).
- 도매시장내 불법거래 등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내용으로는 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경고, 50프랑 내지 250프랑의 벌과금을 부과하는 경고, 500프랑 내지 2,000프랑의 벌과금을 부과하는 견책,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업정지 등이 있으며, 이 때 허가의 취소를 포함한 제명, 경고와 견책은 시장의 관리자가 결정하고, 견책은 사전에 규율위원

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영업정지와 제명은 규율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지사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국가관리시장의일반조직에관한법 제 39조).

- 규율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상업국장, 가격국장, 농어국장과 내부규칙에서 정한 사용자측의 대표 2인을 포함해야 하나, 파리지역에서는 규율위원회의 정부대표자는 감독부처가 공동으로 지명함(국가관리시장의일반조직에관한법 제40조).

3. 프랑스 도매시장제도의 특징

1) 프랑스의 도매시장 개설자에 관한 사항

- 프랑스 도매시장 개설자는 일반적으로 각 지방정부임. 파리란지스시장을 포함한 23개 도매시장은 국가공익시장(MIN)으로 지정되어 관리받고 있으며, 도매시장의 관리 및 운영은 개설자로부터 위임받은 도매시장관리공사가 대행하고 있음.
 - 도매시장의 관리 및 운영을 위임받은 관리공사는 개설자의 보호감독하에 도매시장의 건물, 시설 등 재산을 유지하고 경영활동을 조성, 촉진, 통제하는 일체의 기능을 수행하며 시장 내의 이해 집단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프랑스의 국가공익시장의 운영 관리에 대한 주요정책은 농림부, 상공부, 재정부, 내무부 등 중앙정부 관련부처의 장관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음.

2) 거래방법 및 운영

- 도매시장의 거래방법은 전통적으로 상대매매가 지배적이며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가 시장 내에서 직접 판매하는 제도도 병행하고 있음.
 - 상대매매로는 매취판매와 위탁판매 등 두 가지 형태로 거래를 실시하고 있는데, 대량거래를 할 때는 주로 매취판매를 이용하고 있으며, 소

량으로 이루어지는 거래에서는 위탁판매 거래방법을 실시하고 있음. 상대매매의 거래방법에 대한 이윤은 대체적으로 매취판매가 약 2~3 배정도 더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음.

- 도매시장의 관리 및 운영은 “국가관리시장의 일반조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거래방법, 점포의 양도, 시장의 경영방법, 공익적 회사의 설립, 시장의 관리, 도매시장의 감독, 감독관의 지위와 기능, 도매시장 경영수지 개선에 대한 조치, 도매시장회계의 원칙과 작성방법, 시장경영자를 위한 시장경영실무자위원회의 설치, 국가공익시장의 이용자, 판매자 또는 지정도매상의 영업조건, 위탁상의 판매방법, 판매자의 판매전표 관리, 시장점유에 대한 허가, 그리고 시장점유권 명의인의 의무, 기타 시장사용자의 의무, 규정위반자에 대한 처벌, 규율위원회의 설치 등이 법률로 명시되어 있음.
- 프랑스 도매시장은 시정부가 개설하고, 시설을 투자하며 개설자로부터 위임받은 정부기관인 관리공사가 관리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공익적인 서비스 기능이 강하다고 볼 수 있음.

4. 프랑스 도매시장의 운영현황

1) 프랑스 란지스(Rungis) 도매시장

- 란지스(Rungis)도매시장의 일반현황³⁷⁾
 - 란지스도매시장은 1850년대부터 파리시내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파리 중앙도매시장으로서 교통, 환경 등 도시문제의 해결을 위해 외곽으로 이전을 추진하여, 1960~1970년대 초반을 거치면서 현대식 국제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건립되었으며, 주요 개설부문으로는 청과, 수산, 화훼, 낙농, 축산 시장이 개장되어 운영되고 있음.

37)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세계의 농수산물 도매시장 현장을 가다, 1999을 참조 하길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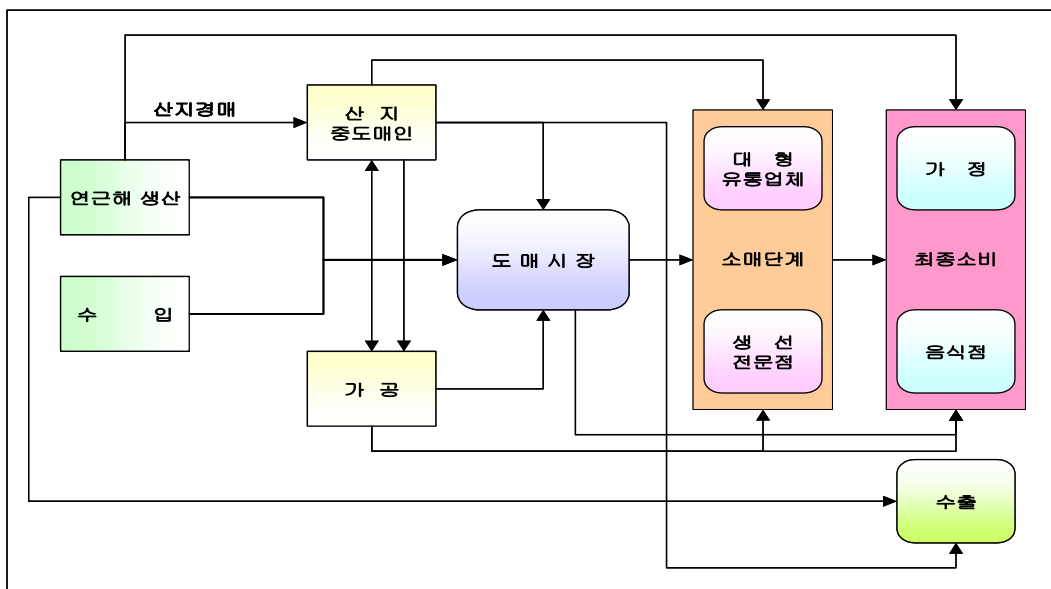
- 란지스도매시장은 파리시 중심가에서 남쪽으로 13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에 공학과 고속도로, 철도, 세느강을 통한 수로 등 국내외 수송이 원활한 교통의 요충지에 입지하고 있음. 또한 배후지에는 거대한 소비시장이 존재하고 있는데, 유럽의 1,800만 명의 소비자에게 농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도매시장으로부터 약 250km까지 정기적으로 배달을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음.
- 철도를 이용한 화물의 반입 등을 위해 구내로 진입하는 철도노선이 6개가 있으며, 도매시장내로 출입할 수 있는 차량은 일정한 사용료를 지불하는 차량 소지자에 한하여 카드를 발급하여 입·출입을 통제하고 있음.
- 도매시장내 지하에는 저온 저장고가 설치되어 있으며, 각 점포 외부에는 상품 하역용 Deck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각 출입구의 양방향은 대형의 지게차 및 차량 입·출입이 자유롭게 가능하도록 경사면으로 처리하고 있음.
- 란지스농수산물도매시장의 주 개장시간은 청과 및 화훼시장의 경우 6~12시, 축산시장의 경우 5~10시, 수산시장은 4~8시까지 개장하고 있음. 주요 취급물량 및 거래규모는 1999년 기준, 식품류는 200만 톤, 화훼류는 절화류 3,590만 묶음, 분화 2,000만 분이며, 거래금액은 대략 406억 8천 프랑 정도로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음.
- 도매시장종사자 현황으로는 시장도매인이 562개, 생산자 판매회사 327개, 기타 서비스 586개 등 총 1,475개의 입주회사가 영업 중에 있으며, 종사인원은 상종인원 11,400명, 등록 도매상 21,500명 등이 있음.
- 란지스(Rungis)도매시장의 거래방식 및 실태
 - 란지스도매시장의 가격 결정방법은 자유시장경제를 원칙으로 하는 시장도매인에 의한 매취형태의 거래방식을 행하고 있음. 시장도매인은 매취(80%)와 위탁(20%)을 함께 취급하고 있으나, 위탁의 경우 출하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계유지 설정으로 인하여 일부 취급하고 있는 상황임.

- 매수매취 판매는 대량거래 또는 거래가 빈번하여 통상 원만한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실시하고 있으며, 이때 출하회사에 판매 전문가가 있어 이들이 시장도매인과 거래협상을 통하여 가격과 함께 운송비도 결정하고 있음. 반면, 수탁판매는 소량 또는 거래가 드문 물품으로 산지에서 판매를 의뢰하는 경우 실시하는데, 이때 위탁한 매수수료는 4~5% 정도로 매수매취의 수수료율보다 낮아 시장도매인이 거래를 꺼리는 하나의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음.

- 란지스(Rungis)도매시장을 포함한 프랑스내 일반적인 수산물 유통거래 형태는 다음의 <그림 5-4>와 같이 연근해 생산 또는 수입수산물을 도매시장에서 상대매매를 통하여 거래된 이후, 소매단계를 거치고 최종소비자에게 구매되는 유통체계를 나타내고 있음. 이는 일반적인 농산물 유통체계와 거의 유사한 구조를 지니고 있음.

<그림 5-4> 프랑스 수산물의 유통체계



자료 : <http://www.ofimer.fr>(프랑스 수산진흥청).

- 시장도매인별 정산창구는 시장도매인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란지스 시장의 경우, 오래 전부터 각 시장도매인들이 개별 정산창구를 가지고 있었음. 이러한 이유는 정산창구를 통합할 경우, 소비자들이 서로 가격을 비교한 후 정정을 요구하거나, 구매처를 바꿀 우려 등의 이유로 개별 정산창구를 가지고 있으나, 향후 정산창구의 통합을 통하여 거래금액의 안전한 관리, 중복인원의 감소, 정확한 통계 등을 바탕으로 생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
 - 산지에 대한 대금결제는 36시간 이내 거래를 통보하고, 출하자와 시장도매인간에는 30일 이내에 주거래은행을 통하여 대금을 송금하고 있으나, 사업자의 환경을 고려하여 탄력적인 대금결제를 실시하기도 함.
- 란지스(Rungis)도매시장의 반입물량 및 유통경로
- 농수산물 유통의 주체는 일반적으로 산지의 경우, 대체로 생산자, 협동조합, 대규모 수집·포장·분배 기능을 갖춘 산지유통센터 등이며, 도매단계의 경우 대규모 민간유통업체의 물류센터 및 시장도매인이 되고 있음.
 - 협동조합은 일반적으로 조합원의 농산물을 수집하여 조합 보유의 산지유통시설을 통해 포장, 규격화하여 파렛트에 적재한 상태로 유통업체의 중앙 구매소나 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 또는 대규모 하이퍼마켓으로 직접 출하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음.
 - 대규모 생산·수집상의 경우, 직접 등급화와 규격화를 실시하여 민간유통업체나 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에게 출하하는 형태를 가지나, 일반 농사의 경우, 농가가 직접 선별포장, 보관시설을 보유하거나 산지의 공동시설장비를 활용하여 상품화하는 경우가 전체의 70~80% 정도임.
- 란지스(Rungis)도매시장의 거래관련 제도
- 도매시장으로 출하되는 농산물은 포장을 통하여 규격화를 실시하고 있

- 는데, 포장은 상품의 품질 및 크기를 규격화하고, 내용물의 안전성과 신선도의 보장 및 운반에 있어 용이성이 있도록 규격화하고 있음.
- 포장상자의 형태는 개방형, 반개방형 골판지상장, 밀폐형 상자, 목상장, 그물망, 대형 골판지상자, 대형 목상자 등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음.
 - 중저가 품목에 대하여 대형 유통업체이 주로 취급하는데 반하여, 고품질의 농산물의 대부분은 란지스도매시장을 통하여 거래되고 있음.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고품질 이미지의 홍보와 소비자 신뢰를 획득하기 위하여 농산물에 안정성 및 원산지 표시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임.
-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품목에 대한 포장규격은 품질규격과 함께 규범으로 정해져 있으며, 품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등급화와 규격화는 EU 기준에 의하여 대부분 산지유통시설에서 이루어지며,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도매시장내로 반입되고 있으며, 일반 반입과정은 대체로 산지유통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대규모 생산자, 협동조합, 산지유통센터들에 의해 이루어짐.
- 농산물의 원산지 및 등급표시 검사 등을 돕기 위하여 라벨을 표시하고 있으며, 표시사항들은 내용물의 특성과 일치하여야 하며, 세부적으로는 읽기 쉽고 지워지지 않도록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품질등급의 표기 방법은 등급에 따라 라벨의 색상을 구분하여 식별하기 쉽게 하도록 하고 있는데, 특 등급은 붉은 색(RED), I 등급은 초록색(BLUE), II 등급은 노란색(YELLOW)으로 표기하고 있음.
- 운송 및 하역은 주로 전문 운송회사가 담당하고 있으며, 운송비는 생산자와 시장도매인간 협상을 통하여 결정하고 있음. 예를 들어, 수입 농산물의 경우, 운송비와 하역비는 대개 수입상이 부담하고 있으며, 국내 생산물은 출하주가 부담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
- 시장출하를 위해 운송하는 트럭은 대부분 유개 대형트럭으로 보온·냉장 및 저온시설을 갖추었으며, 트럭을 시장건물 DECK에 바로 대어지게차 또는 소형전동차를 이용, 트럭 내부를 자유로이 출입하면서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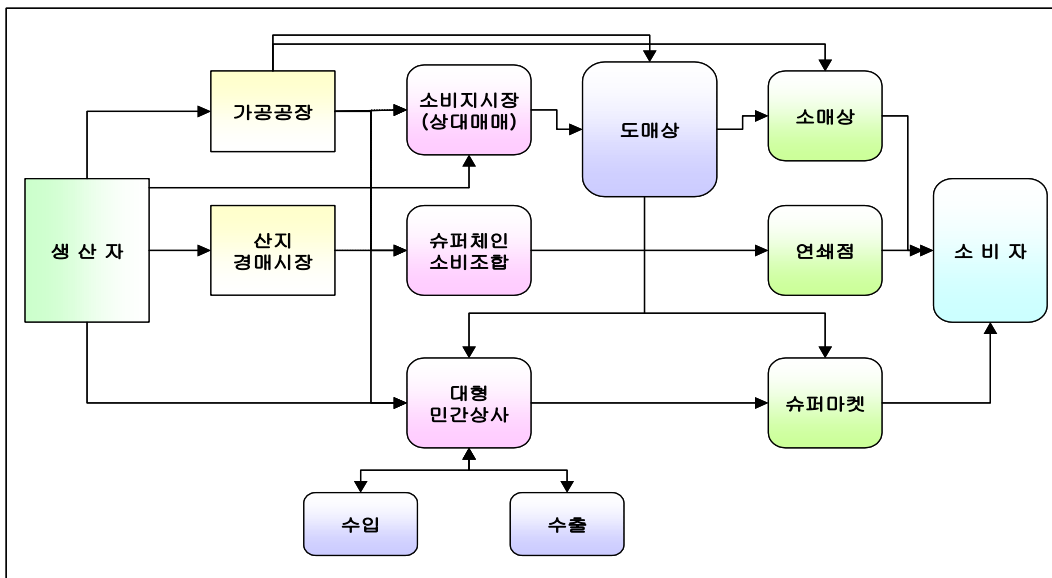
역하고 있음. 도매시장 DECK는 콘크리트로 되어 있으며, 운송차량과 접차하는 부분에 고무보호대가 설치되어 있어 DECK 및 운송트럭 적재함의 충격을 방지하고 있음.

2) EU(유럽연합)의 유통구조

■ EU의 농산물 유통구조

- EU 농산물 유통경로의 특징은 산지에서 대형 도매상 또는 소매상에 의하여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임. 청과물의 유통경로는 <그림 5-5>와 같이 대부분의 청과물이 산지 경매시장을 거쳐, 슈퍼체인·소비조합·연쇄점 등 대형 소매기구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유통체계를 가지고 있음.

<그림 5-5> EU의 농산물 유통체계



자료 : <http://www.farm.ionbuk.kr>.

- 산지시장의 경우, 경매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소비지 도매시장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 산지시장은 품목별로 형성되는데 예를 들면, 네덜란드에는 60여 개의 청과시장과 15개의 화훼시장

이 있고, 덴마크에는 20개의 청과시장, 벨기에는 12개의 청과시장이 운영되고 있음. 또한, 산지시장은 생산자가 경매 협동조합을 결성하여 시장을 소유·운영하고 있음. 대형생산자는 가공업체 및 대형 소매업체와 계약생산으로 직거래를 실시하고 있음.

- EU의 농산물 도매시장의 경우, 지방정부가 직접 투자하여 개설하거나 또는 정부와 민간의 합작투자로 도매시장이 개설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 예를 들어, 로마 피라미크 도매시장은 지방정부가 개설하였으며, 코펜하겐의 청과도매시장은 생산자 및 도매상 조합이, 그리고 런던 코벤트 도매시장은 지방정부의 시장공사가 개설하여 운영되고 있음.
- 농산물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의 운영
 - EU의 도매시장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개설자가 시설관리는 직접 담당하나, 매장과 점포는 도매상에 임대하여 운영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음. 도매시장으로 출하된 농산물은 도매상이 산지도합이나 농가로부터 직접 구입한 물품, 생산자로부터 수탁받은 물품, 도시근교 생산자가 직접 출하한 물품, 역외로부터 수입한 물품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거래는 경매방법보다는 도매상 또는 생산자가 직접 자기 점포에서 고객을 상대로 판매하는 상대매매가 주요 거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 거래가격은 도매상이 정한 가격이나 기본적으로 농산물의 수급량에 의하여 결정되며, 이때 산지 경매시장 가격이 기준이 되고 있음.
 - 도매시장내 운영주체로는 커미션 머천트(Commission Merchant, 위탁상), 딜러(Dealer, 도매상), 브로커(Broker, 중개인), 쉬퍼(Shipper, 산지수집상) 등을 두고 있으며, 운영주체는 모두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고 있음.
 - 농산물의 소매시장은 대형 슈퍼마켓, 체인스토어가 발달하고, 산지 직거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직거래 방법은 생산자가 직접 출하

하거나 생산조합과의 계약생산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우리나라의 5일장과 같은 재래식 소비지 정기 시장도 상존하고 있음. 이때 거래시기와 장소는 시장건물이 없이 일정 장소에서 주당 2회 정도 노천시장이 열리고 있으며, 슈퍼마켓보다 가격은 저렴하나 포장하지 않은 상품을 주로 취급되고 있음.

- 또한, EU는 어디에서나 소비자 협동조합이 발달하여 소비자 협동조합에서 슈퍼마켓이나 소매점을 운영하면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교육·홍보 활동을 전개하여 소비자 보호에 기여하고 있음.
- 프랑스 소비자 협동조합연맹(FNCC)의 경우, 조합원수가 200만 가구를 넘는 대규모이며, 전국에 200개의 소비조합이 결성되어, 8,000개 이상의 품목을 취급하고 있으며, 50개의 집배소, 6,000여 개의 소매점포, 13개의 직영공장에서 30만여 톤의 가공식품을 생산하고 있음.

제3절 미국의 도매시장제도

1. 미국의 도매시장제도

1) 미국 식품유통의 현황

- 식품유통은 미국의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2000년 기준, 식품과 섬유시장은 GDP의 약 7.7%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용에 있어서도 12%를 차지하고 있음.³⁸⁾ 이중 식품과 섬유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도매시장과 소매시장의 부가가치는 3337억불로, GDP의 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식품과 섬유시장의 27% 가량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어 도매시장과 소매시장은 식품 취급에 있어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음.
- 식품유통에 있어서 효율성도 증가하고 있어 생산자, 농산물가공업자, 판매업자를 포함한 노동자 1인당 실질부가가치는 1996년 28,019달러에서 2000년 30,413달러로 약 8.5%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미국내 소득증가율은 식품소비지출을 앞지르며, 소득 중 식품에 대한 소비자지출비중을 낮추었는데, 1960년 18% 정도인 식품에 대한 지출비중이 2000년에는 10% 정도로 약 8%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가운데, 2000년대에 들어와 미국의 식품유통시장에 중요한 변화를 나타내고 있음. 첫째, 인수&합병으로 인한 집중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과 둘째, 식품유통단계에서도 이러한 집중화 현상으로 수직화 또는 수평화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셋째, 식품공급체인에 의해 구매자-판매자의 관계가 점점 더 의존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38) 자세한 내용은 ERS, USDA(2000), <http://www.ers.usda.gov>를 참조할 것.

점을 들 수 있음. 즉, 생산자가 보다 적극적인 유통에 관여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식품도매상의 역할은 감소하고 있다는 것임. 넷째, 식품유통 시스템에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는 것과 다섯째, 식품유통시스템의 발달로 농업부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저성장을 나타내고 있는 미국내 식품유통에 있어서 국제적인 교역의 증가와 외국인직접투자가 대안으로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식품의 유통경로는 생산자 → 도매시장 → 소매상 → 소비자 등의 단계를 지니고 있으며, 최근 식품유통단계에서 식품도매상의 역할은 전통적인 도매행위의 비중을 낮추고 소매상의 역할을 대신하는 등 식품도매상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 식품유통에서 전반적인 인수합병은 흐름은 식품도매상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집중도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식품도매상은 가공업자와 손잡고 소매상에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식품서비스 회사를 설립하기도 하며, 기존의 슈퍼마켓 체인을 인수함으로써 고객을 확보함과 동시에 소매상을 인수함으로써 집중화를 심화시키고 있음.
- 이러한 식품도매상의 종류로는 세 종류³⁹⁾가 있음. 첫째, 도매상(Merchant wholesalers)⁴⁰⁾으로써 생산자 또는 타 도매상으로부터 채소 및 관련품목을 매수하여 타 도매상, 집단급식소 및 기타의 자에게 재판매하는 법인을 말하며, 둘째, 중개상 및 대리상(Brokers and agents)으로, 중개수수료를 취득하고 타인을 대리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도매인을 말하며, 생산자(Manufactures) 및 가공업자(processors)의 대리인으로 역할을 하지만 해당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은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음. 셋째, 생산자 판매소(Manufactures' sales branches and

39) Steve W, Martinez, Food Wholesaling, U.S. Food Marketing System, 2002/AER-811, USDA.

40) 1997년 도매상별 총 판매액 비중은, 총 5890억 달러중 도매상이 56%, 중개상 및 대리상이 19%, 그리고 생산자가 직접 또는 지점을 두고 판매하는 비중이 25%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Steve W. Martinez, 상계서, p.12.

offices)로서, 농산물의 생산자나 가공업자가 직접 그 자신을 물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장에서의 도매행위를 말하며, 직접 판매를 위한 것은 아님.

- 식품도매상의 일반 분류로서 위의 세 가지 종류의 도매상이 있으나, 취급별 도매상의 분류도 나타나고 있음. 첫째, 일반품목 도매상(General line wholesalers)은 일반 식료품, 부패성 식품, 그리고 비식용 상품의 도매와 관련되는 도매상을 말하며, 특정품목 도매상(Specialty wholesalers)은 원칙적으로 냉동식품, 식빵, 유제품, 가금류, 생선, 고기, 신선 과일 및 야채 등과 같은 제품의 도매와 관련되는 도매상을 말함. 그리고 잡화 도매상(Miscellaneous food wholesalers)은 통조림, 커피, 차 등과 같이 한정된 품목의 도매와 관련되는 도매상으로 이와 같은 취급품목별로 도매상을 분류하고 있음.

2) 도매시장의 개설 및 유형

- 미국 농산물 도매시장은 1920년 이후부터 발달하였음. 대규모 기업형의 출현하였고, 일반 개인농가 또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자 농산물의 개인당 재배면적을 늘리면서 생산량을 확대하였으며, 산지 수집상들은 생산된 농산물은 집산하고 소매상들에게 분산 또는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도매시장을 이용하였음. 이후, 1930년대에 본격적으로 발달된 슈퍼마켓과 1940년대의 수직적 통합 과정을 거쳐 도매시장 기능은 우리나라와 같이 장소적 개념으로서의 도매시장은 역할은 줄어들게 되었음.
- 미국의 도매시장이 발달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은 교통, 통신 등 사회 간접 자본과 상품에 대한 표준 등급화가 발달하여 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되어 지고 있기 때문임. 또한, 산지에서 모든 생산물의 선별, 포장, 예냉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먼 거리 수송에 적합하도록 수송의 규격화와 저온 유통 체계(Cold Chain System)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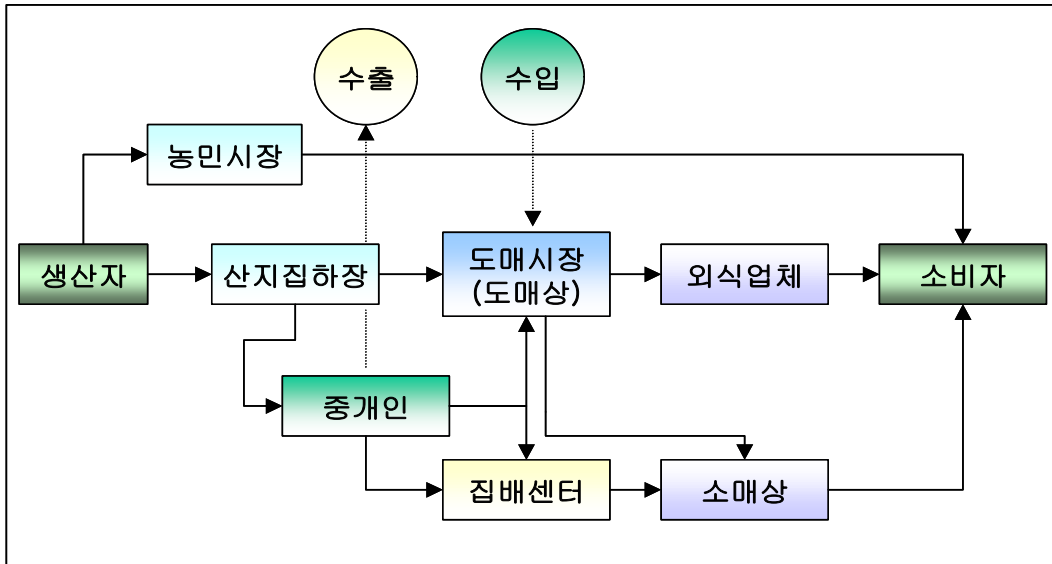
완벽하게 확립되어 있어, 수송과 상품 보관이 잘 이루어지도록 유통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

- 제품에 대한 표준 등급화 기준은 검사와 이용가능한 가이드라인 및 원산지정보 등에 의한 요인에 의하여 평가되어짐.⁴¹⁾
- 농산물 유통은 주산지가 몇 개의 주에 집중해서 형성된 대규모의 기업적 농장으로부터 대량의 물품이 출하되어 미국 전역 또는 해외로 수출하는 구조와 이를 바탕으로 한 인근지역에 대규모의 도매시장이 위치하여 농산물을 거래하는 유통 시스템을 이루고 있으며,
 - 특히, 청과물의 대형산지의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워싱턴, 미시간, 뉴욕주 등의 출하량이 미국내 전역에서 생산되는 청과류의 약 7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으며, 이러한 지역에 인접한 대규모의 도시에 도매시장⁴²⁾이 위치해 있음.
- 미국의 도매시장은 도매기능만을 수행하는 터미널시장, 도매와 소매를 동시에 수행하는 지역시장 그리고 도매, 출하, 소매를 동시에 수행하는 농민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음. 터미널시장과 지역시장은 민간과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형태가 절반정도 되고, 농민시장은 주로 주정부에서 개설하고 농민조합이 운영하는 형태가 다소 있음. 도매시장의 건설에 필요한 자본의 조달은 민간, 주정부, 연방정부, 시정부, 군정부 등이 여러 가지 합작형태로 되어 있음(PACA SEC.1.2. 표제 및 정의).

41) United States Office of Personal Magement, Agricultural Marketing Series GS-1146, 1964.

42) 예를 들면, 미국의 NewYork Hunts Point Terminal Market, 캘리포니아의 The City Market, LA Central Market 등이 있음.

<그림 5-6> 미국 도매시장의 유통체계



자료 :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세계의 농수산물 도매시장 현장을 가다, 1999.

3) 도매시장의 관리 및 운영

- 도매시장의 관리는 대부분 소유자가 스스로 극히 소수의 인원으로 시설만을 관리하거나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관리하며, 도매상들에게 위임하여 관리하는 경우도 있음. 미국 뉴욕시에 위치한 뉴욕 헌츠포인트 도매시장의 경우 시에서 직접 관리해오다 1986년부터 도매상 대표로 구성된 도매상조합(Hunts Point Terminal Produce Cooperation Association Inc. : Coop)에 관리권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 도매상조합은 다시 시설물관리를 위해 시설관리회사인 ABS Management Co.에 대행시키고 있음. 도매시장의 주된 활동주체는 독립 도매상(Wholesalers)으로서 대개 유한책임회사의 형태가 많고, 시설주로부터 점포 등 시설을 장기 임대계약에 의해 임대하여 영업하며, 점포사용권은 매매가 가능하여 도매상은 영업규모에 따라 사용점포면적의 차이가 큼.
- 시장내에 미농무성 직원이 상주하며 가격조사, 감시업무, 클레임 발생시 현장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시장내 도매상과 소매상과의 거래안정을 위해 소매상이 도매상 조합

에 월 거래금액의 1/4 정도의 금액을 예치할 경우 외상거래도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포장 등급에 대하여 시장의 도매상들이 자율적인 판단하에 실시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미농무성은 관여하지 않음으로서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부의 개입이 줄어들어 소비자 요구에 따른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 도매시장내의 유통운영주체중 하나인 산지수집상은 농산물 반입은 대부분을 산지에서 수집하여 시장내로 반입하고 있음.
- 도매시장내 주 운영주체는 도매상(Wholesaler)으로서 모두 법인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규모는 영업능력에 따라 다양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음.

4) 유통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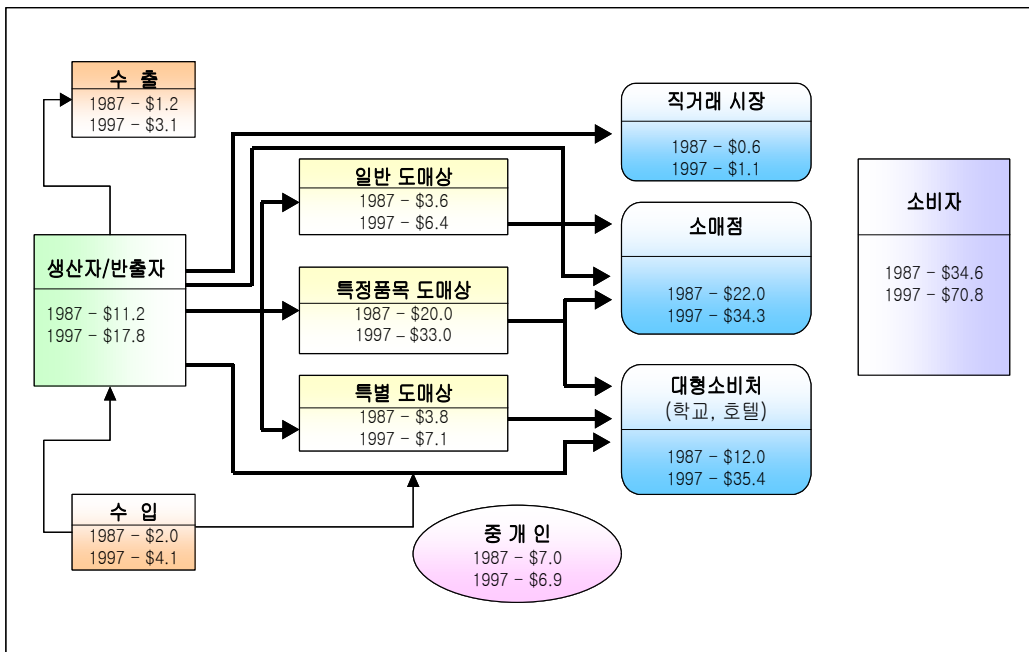
- 미국 농산물 유통구조의 특징은 대형 슈퍼마켓·체인점 등 대형소매기구가 발달하면서 도매시장의 유통기능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점 들 수 있음. 일반적인 농산물의 유통경로는 농가 → 도·소매상 → 슈퍼마켓 등 대형소매기구가 주를 이루고 있음. 예를 들어, 채소의 유통 경로를 보면 채소 주산지에서 상품화 및 신선도 유지를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선별 집하장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대규모 전문농가가 대량 수요처와 계약생산 및 직거래를 확대하고 있고 협동조합을 통한 판매 가공량의 비중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농산물의 유통마진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특히 청과물의 유통마진이 축산물의 유통 마진율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유통마진율이 70% 이상인 것에는 과일·채소·가공과일·곡물 및 빵 등이 있고, 50% 이상인 것에는 육류·낙농제품 등이 있으며, 30% 이상인 것에는 가금류·달걀 등이 있음.
- 미국의 산지에서는 우리나라의 발매기 거래와 유사한 계약재배가 이루어

어지기도 하나, 대부분 기업규모의 대규모 생산농가에 의해 농산물이 생산된 출하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음. 생산자는 대체로 포장시설(Packing House)을 갖추고 있으며, 이때 산지, 제품의 등급, 무게, 수량을 표기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도매상과 직접 접촉하여 출하하거나, 운송회사(Trucking Co.)를 통하여 농산물을 운송하고 있음.

- 운송의 형태는 보통 커다란 컨테이너 차량에 냉동처리시설이 설치된 차량으로 장거리 수송을 담당하고 있으며, 고급농산물의 선도를 위해서 항공기로 운송을 하는 경우도 존재하고 있음.
- 도매시장에서 거래된 상품은 도매상들에 의하여 외식업체나 소매상(Retailer) 등에게 분산되거나, 수출되고 있는 상황임. 소매상들은 도매상으로부터 상품을 분산받아 전국적인 유통채널을 통하여 소매행위를 담당함으로써 개인소비자 또는 음식점 등 최종소비자에게로 상품이 귀착되는 형태를 가지는데,
 - 이러한 농산물의 도매 및 소매의 거래에 있어서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유통단계는 불완전하게 이루어졌음. 예를 들어, 신선과일 및 채소류의 유통은 생산자 또는 산지반출인과 도매상간의 거래는 불완전한 시장의 가격과 질에 근거하여 매매매일 거래되었으나, 1990년대 후반 이후부터는 산지반출의 역할을 동시에 담당하는 생산자와 거대 슈퍼마켓 소매상과 협의 거래하거나, 산지의 생산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대량거래시 할인정도, 다른 제품의 가격과 질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서면계약을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 신선과일 및 채소류의 유통단계에 있어 연도별 거래비중을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과 같음. 우선 산지에서 생산자 또는 산지수집상에 의해 출하된 신선과일 또는 채소류는 1987년 112억 달러에서 1997년에는 63% 가량 증가한 178억 달러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매시장에서 도매상에 의하여 거래되는 거래량 또한 274억 달러에서 465억 달러로 증가하였음(<그림 5-7> 참조).⁴³⁾

- 이는 도매시장내 도매상의 인수&합병으로 인한 도매상이 거대화됨과 동시에 도매상이 직접 가공 또는 대형 소비처를 운영함으로써 인하여 물량이 거래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직거래에 대한 비중이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임.

<그림 5-7> 비교연도별 도매시장내 신선과일(채소류)의 유통단계별 거래현황



주 : 단위는 10억 달러임.

자료 : McLaughlin et al., Census of Wholesale Trade Census Retail Trade, Blue Book, USDA, 1998. 재인용.

5) 유통주체

- 도매시장의 유통주체로 수집상(Assembler, Local Buyer, Packer), 중개상 (Broker), 반출상(Shipper), 도매상(merchant Wholesaler), 구매업자(Buyer) 등이 있음. 도매상은 위탁 또는 공동판매의 목적으로 물품을 수취하여 판매하는 자이며 시장구역외의 지역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되어 있음. 다만, 잔품을 처리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도매상이나 공동

43) Carolyn Dimitri et al., U.S. Fresh Produce Markets-Marketing Channels, Trade Practices, and Retail Pricing Behavior, p.7., USDA, 2003.; <http://www.ers.usda.gov>.

계산동업자가 부당하게 지체하지 아니하고 구매하는 경우는, 구매량 및 구매가격을 회계장부에 기장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산지로부터 물품을 직접 집하하는 수집상과 반출상인을 제1차 도매업자라 하고, 이들 1차 도매업자로부터 물품을 매입하여 다른 업자에게 전매하는 중매업자, 도매서비스상, 식자제조달업자를 제2차 도매업자로 구별하고 있음.
 - 중개인은 신의 성실하게 협상을 하여 당사자간에 유효하고 구속적인 계약을 체결하는 의무를 지며, 유효하고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중개인으로서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한 경우 외에는 중개수수료를 수취할 권리를 갖지 않음.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개인은 당사자들의 의무이행을 보증하지 않으며 유효하고 구속력 있는 계약이 체결되면 중개수수료를 즉시 수취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
- 생산자는 산지에서 대규모 기업농업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대규모 생산물은 산지수집상(Packer)에 의하여 산지집하장(Packing house)을 통하여 집하되고 있음. 산지에서 산지집하장으로 거래에서 생산자가 운송시설을 겸비하여 운송하거나 수집상 또는 반출상을 통하여 산지집하장까지 집하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이때 운송장비를 갖춘 생산자는 농산물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주도적 또는 대등적인 입장에서 농산물 거래를 실시할 수 있음.
- 산지수집상은 생산, 수확, 수집, 포장, 가공, 저장 및 판매를 하는 규모화된 산지 민간 유통조직⁴⁴⁾으로서 하나의 브랜드를 사용하여 인지도를 높이고 있음. 과거 생산자들은 생산 후 산지집하장에 운반하여 선별 포장함에 따른 상품 훼손 및 비용을 줄이고자 수확과 동시에 포장하는 체제로 전환하게 되었음. 개별 농사로서는 멕시코이나 히스패닉계통의 저임 노동력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고용보험 의무화 문제가 대두되어 산지수집상⁴⁵⁾을 이용하여 생산된 제품을 출하하는 개별농사가

44) 생산자, 수집상, 산지집하장, 저장업자, 심지어 도매상의 기능까지 수직 통합된 조직체로서 위생적이고 간편하다는 장점 때문에 최근 가공품의 수요증가에 따라 가공업무까지 하게 되었음.

증가 추세에 있음.

- 산지집하장에서 도매시장내로 거래는 반출상과 브로커 등에 의하여 농산물이 거래되고 있음. 브로커는 거래되는 농산물에 대한 소유권은 가지지 않은 채 일정한 중개수수료를 받고, 농산물을 거래를 대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반출상 등은 소유권을 가진 채 농산물을 거래하여 일정부분의 마진을 획득하고 있음. 이때 대규모 도매상들은 직접 산지집하장에서 농산물을 생산자 또는 산지수집상과 거래하여 소매상에게 분산하는 형태도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이는 1990년대 이후 도매시장내 유통주체간에 있어 인수&합병의 결과로 기존 사업영역을 보다 확대하여, 소매영업과 가공업, 산지집하업무를 담당할 뿐만 아니라, 직접 대형 음식 체인을 운영하는 등 기존의 영역을 넘어서는 사업확장의 결과라 할 수 있음.
- 또한, 도매상들은 이러한 사업뿐만 아니라 도매시장내의 도매가격⁴⁶⁾, 유통량 등의 정보를 생산자 또는 산지수집상에게 제공함으로써 인하여 생산량을 조절하고 도매시장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가격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6) 거래방식

- 도매상과의 거래방식은 매취판매(Buy & Sale)와 위탁판매(Price After Sale, Open Price) 2가지 방식이 있음. 매취판매는 출하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된 가격으로 도매상이 구입한 후 적절한 마진을 붙여 소매

45) 산지수집상(Packer)의 예로서 Salinas, California 지역에 위치한 D' Arrigo Brother Co.의 경우, 브로콜리를 생산, 수집, 초장, 가공하여 뉴욕 등 미국전역은 물론 동남아에 수출까지 하고 있음. 이를 위해 냉장, 냉동시설, 세척, 예냉시설, 가공시설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뉴욕 현즈포인트 도매시장의 Big 5 도매상 중 하나로 꼽힐 정도로 대규모의 도매상도 겸영하고 있음.

46) 도매가격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집되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는 첫째, 도매시장이 일반적으로 조직화가 잘 되어있고, 이로 인하여 기록이 쉬우며, 둘째, 생산자가 수확이후 생산물을 판매할 때 참고자료로 인용이 가능하며, 셋째, 도매가격이 수요와 공급의 상황에 대하여 민감하여 반영함으로써 인하여 도매시장내 도매상이 수요와 공급의 상태를 인지하기 위해서 도매시장의 가격이 많은 국가에서 수집, 기록되고 있음. <http://www.fao.org>.

상 등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평균마진율은 7~8% 수준임. 위탁판매는 도매상이 출하자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아 수의매매에 의해 소매상이나 구매자에게 판매한 후 판매가격에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도매상의 법정수수료율은 7~20%이나 보통 15% 내외임. 또한 경매회사를 통하여 도매상, 도매인, 중개인은 경매를 통하여 물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경우 추가적인 비용을 초래한다고 정하고 있음(PACA 규칙 SEC.46.25. 경매).

- 위탁 또는 공동판매의 목적으로 물품을 수취한 도매상은 물품을 처분하는데 있어서 합리적인 주의와 방법으로 물품을 취급할 것이 요구되어지고 있음. 위탁판매를 하는 도매상은 위탁인과의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그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는데 있어서 경매회사를 포함하여 타인 또는 다른 회사를 고용할 수 없으며,
 - 위탁판매인의 동의가 없는 한 도매상은 그 위탁물품을 시장구역외의 지역에서 판매할 권한을 갖지 않으며, 위탁판매인의 서면동의가 없는 한 평균가격 또는 소매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음. 이때 도매상은 위탁 물품의 판매, 수량손실, 재포장비용, 하역, 가공, 항공, 채선료 또는 경매비용 등 관련비용을 판매대금에서 제하고 지급하는 대금지급방법을 취하고 있음.
- 도매상은 위탁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그의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개인이나 회사와 위탁 또는 공동계산 물품을 구매하거나 판매할 수 없음. 다만, 잔품을 처리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도매상이나 공동계산동업자가 부당하게 지체하지 아니하고 구매하는 경우는, 구매량 및 구매가격을 회계장부에 기장하여 구매할 수 있음. 여기서 “잔품”이라 함은 출하물품이 팔리고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의 잔여량을 의미함. 위탁물품을 도매상이 구매하는 경우에는 그 도매상은 도매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음.

7) 대금결제

- 도매시장의 도매상과 출하자와의 **대금정산**은 도매상 책임하의 개별정산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대체로 판매 후 20~30일 이내에 정산함. 소매점과는 신용거래로 하며 대금정산은 대략 1주일 이내임(PACA 규칙 SEC.46.2 정의). 이렇듯 정산하는 방법을 즉시지불이라 하며, 이는 법에서 명시한 지불기간내 출하품목에 대한 계산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함.
- 위탁판매품을 수취한 물품에 대하여 **즉시지급의무**를 지는데, 지급의무는 다음과 같음. ①순익의 지불, 또는 공동계산으로 수취한 농산물에 대한 순익의 비율분담은 각 출하에 대한 최종판매일 이후 10일 이내, 또는 목적지에 물품이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먼저 도래한 것), 출하인, 출하인의 대리인, 또는 하주에 의한 지불은 수취한 계산일 이후 10일 이내, ②구매가격, 중개, 및 구매중개인에 대한 기타 비용의 지불은 중개인의 송장을 구매인이 접수한 날 이후 10일 이내, ③농산물 구매 또는 판매와 관련하여 기타 비용 및 중개수입의 지불은 중개인의 송장을 본인이 접수한 날 이후 10일 이내, ④구매인이 구매한 농산물에 대한 지불은 농산물을 접수한 날 이후 10일 이내, ⑤출하인, 출하인의 대리인, 또는 하역시장대리인 또는 중개인에 의한 하주에 대한 지불은 대리인 또는 중개인이 구매자 또는 수취인으로부터 지불받은 날 이후 5일 이내,
 - 그리고 ⑥위탁판매품 거래와 관련한 수송에서 얻은 순익의 본인에 대한 지불 또는 공동계산거래와 관련한 수송에서 얻은 순익의 공동계산 동업자에 대한 지불은 영수 이후 10일 이내, ⑦출하인의 대리인 또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농산물의 개발 루트를 분배하는 하주에 의한 지불은 본인으로부터 판매용 물품의 수령 후 30일 이내에 또는 대리인이 물품에 대한 지불을 접수한 날 이후 5일 이내(먼저 도래한 것), ⑧출하인의 대리인 또는 하주가 전체 농작물 또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복합의 루트를 수확, 포장, 또는 분배할 때, 최초 출하계산은 판매용 물품 수령 이후 30일 이내 또는 대리인이 물품지불을 수령한 날

이후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먼저 도래한 것). 이후의 출하계산은 최초 출하 계산일로부터 10일 이내 또는 대리인이 물품지불을 수령한 날 이후 5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계절용 최종계산은 대리인이 그 본인으로부터 계절용으로 최종선적을 수취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⑨이 규정에서 명시한 것 이외의 기간으로 계약하였을 경우, 선적의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일 때 공급자 및 판매자에게 지불함.

8) 거래내역의 기록

- 유통주체들은 모든 거래내역에 관한 기록의무를 지는데, 회계, 기록 및 장부를 2년 간 유지하여야 하며, 그 위반에 대하여는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 그 위반자의 면허를 정지함. 주식회사의 경우, 그러한 기록은 주식정관, 주식거래와 발행주식의 기록, 주식총액 및 수수주식보유자 및 임원의 선거 및 사임을 나타내는 회의록, 기타 관련사항. 동업자의 경우, 동업형태를 나타내는 동업 계약서 사본, 일반, 특별 및 제한적 동업자를 포함하는 모든 동업자들의 이름 및 주소, 각 개별 동업지분 및 기타 동업관련 기록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유통주체들이 보존해야 할 서류로는, 적하서류, 전환주식, 항공요금 등 기타 서류, 차량 선적목록, 통행료 영수증, 판매인가 및 비망록, 서신 및 전신 통화영수증, 검사증명서, 구매견적서, 물품 수취기록, 판매표, 고객 판매영수증사본, 판매 회계기록, 운송시 발생한 손실 및 피해관련 서류, 재포장 관련기록, 중량감소 및 폐기량, 매일의 재고목록, 모든 거래수수료의 통합기록, 타인계산으로 행해진 운송과 관련된 수신 또는 여신한 승낙서, 매일의 현금영수증, 입증할 수 있는 구입 및 판매 기록 명세서, 운송, 가공, 인도와 관련된 관련서류, 물품의 판매량에 대한 기록 등은 2년 간 보존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음.
- 송장이란 산지에서부터 출하된 농산물이 소비지에 이르기까지의 거래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서류로서 1장의 정본과 3장의 사본으로 구성되

어 있고 고유 일련번호가 찍혀 있으며, 매도인과 매수인의 인적사항·품목·등급·중량·단가·가격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송장작성은 생산자가 도매상에게 출하할 때뿐만 아니라 도매상이 구매자 또는 소매상에게 판매할 때에도 작성하여 2부는 보관하고 2부는 교부하여야 함. 또한, 송장은 도매상별 거래물량에 대한 수수료 부과자료, 세무자료 및 도매상의 신용평가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허위기재 사실이 적발되면 시 당국으로부터 업무정지 등의 제재가 가해짐.

9) 품질위생검사 및 기타사항

- 농산물검사제는 부패하기 쉬운 농산물거래에 있어서 분쟁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거래를 신속히 하기 위한 제도로써 하자가 있다고 여겨지는 출하품에 대하여 도매상이 검사를 요구하고 검사결과서를 출하자에게 통보하며, 대금정산시 일반적으로 검사서를 함께 동봉함. 검사관은 자격증을 가진 공무원으로서 농무성소속 검사관과 시 보건국소속 검사관으로 구분되며, 농무성소속 검사관은 농산물의 상태와 등급에 관한 검사를 하며, 보건국소속 검사관은 위생에 관한 검사를 담당함 (PACA SEC.14.11 부패성 있는 농산품의 검사).
- 신용평가서는 미국 전역의 생산자, 운송업자, 중개상, 도매상의 소유구조, 연락처, 상호, 물량처리능력, 주요 취급품목, 신용정도, 도의적 책임도, 대금정산의 신속도 등을 기록한 안내서로서 연 2회 발행됨. 신용조사는 본인이 자진 제출한 신고서를 객관적 검증과정과 평가를 거쳐 확정되며, 이에 따른 소정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함. 신용평가서에는 Blue Book과 Red Book이 있고, 사람에 따라 선호도가 다소 다르며, 전화, 서면 등으로도 신용안내서의 내용을 제공하고 있음.
- 농산물 유통과 관련하여 유통조성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농업관측과 유통정보기능의 확대가 대표적인 유통조성 중점사항임.
 - 농업관측 사업은 1922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연방정부가 44개 중에

- 통계보도국을 설치, 운영하여 작물 150종, 축산물 50종에 대하여 연간 5~6번 정도 발표를 하고 있으며, 주요 조사사항으로는 농가수·생산량·생산예측·국내수요·농산물 무역동향·농가소득 등임.
- 1917년부터 농무성이 유통정보의 수집·분산기능을 담당, 전국적으로 200여 개의 유통정보 사무소를 설치 운영하여 하루에 약 1,000여종의 유통정보를 제공하며, 주요 내용은 지역별·품목별 시장가격, 공급량, 수요량, 제고량 등임.
 - 부패성 있는 농산품법 프로그램을 검토와 향후 운영에 대하여 농무성 장관 및 의회의 검토를 권고하기 위하여 농무성 장관은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 구체적으로는 첫째, 다양한 관리 및 야채 산업간 프로그램의 효율성과 형평한 처리를 보장하기 위한 검토를 위해, 둘째, 모든 과일 및 야채산업간의 상호이해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셋째, 부패성있는 농산품법 프로그램에 관하여 장관에게 조언하기 위해, 그리고 넷째, 농업에 관한 하원위원회, 농업, 영양 및 산림에 관한 상원위원회 등에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활동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PACA SEC.20.14 자문위원회).

2. 미국의 도매시장 관련법 주요내용

- 1) 부패하기 쉬운 농산물관리법(Perishable Agricultural Commodities Act : PACA) 의 취지와 목적
 - PACA의 제정취지는 청과물유통은 부패하기 쉬운 상품의 특성을 가지므로, 거래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거래에 따른 쌍방의 책임을 명시함으로써 계약상의 분쟁이 유발될 경우 매매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상품이 신속히 거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부패성농산물법에 의해 일정한 금액이상을 취급하는 모든 유통참가자에게 농무성의 허가와 동시에 회계장부의 기록과 공정한 거

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불공정거래시 제도적으로 규제하도록 구성되어 있음.

- 부패성농산물법의 목적은 청과물거래에 있어 불공정 또는 기만적인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자를 처벌함으로써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연방정부 농무성 농업유통국에서 관장하고 있음.

2) PACA의 주요내용

- 소매상이나 판매자를 대신하여 신선농산물이나 냉동식품을 중개하는 모든 유통참가자(또는 회사)는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유통참가자란 신선한 또는 냉동청과물을 취급하는 반출상, 도매상, 일정규모이상 청과물을 취급하는 소매상, 트럭운송업자, 경우에 따라서는 가공업자를 포함하며, 만약 허가증 없이 영업을 한 자에 대해서는 벌금이 과해짐(PACA SEC.3.4 면허).
- PACA는 거래자로 하여금 계약을 준수하도록 함. 판매자는 송장 등에 명시된 것과 같은 양과 질의 상품을 보내야 하며, 구매자는 계약에 명시된 상품을 수탁해야 하고, 또한 신속히 대금을 지불하여야 함. 모든 면허상인들이 일정한 회계기록을 유지하도록 요구되어 짐(PACA SEC.9. 회계, 기록 및 장부).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의 됴으로써 공정한 유통질서의 유지를 꾀하고 있음.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행위는 첫째, 구매하거나 위탁판매하기로 계약한 농산물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행위, 둘째, 계약조건에 상응한 농산물대금을 신속하게 지불하지 않는 행위, 셋째, 타인으로부터 판매하기 위해 수탁한 농산물을 정당한 이유없이 폐기, 방기 또는 파손하는 행위, 넷째, 위탁 또는 공동계산으로 수송된 농산물에 대한 정확한 계산을 하지 않거나 대금전체를 신속하게 지불하지 않는 행위, 다섯째, 청과물의 등급, 품질, 양, 중량, 상태, 원산지를 조작하거나 속이는 행위 등을 말함. 이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벌금부과, 면허정지, 면허취소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면허정지 기간 동안 그 회사는 유통사업을 할 수 없음(PACA

SEC.2.3. 불공정행위).

- 징계를 요하는 일반사항으로는 첫째, 구매한 농산물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불하는 경우, 둘째, 위탁상이나 생산자의 판매대리인이 계산을 정확히 하지 않거나 출하자나 생산자에게 정산대금을 신속히 지불하지 않는 경우, 셋째, 출하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중개상이 판매된 농산물의 송장이나 정산한 판매대금을 출하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 넷째, 주(州)간 거래에서 악의적으로 가짜 상표를 부착하거나 속이는 경우, 다섯째, 고발이 있을 경우 조사와 검사를 위한 기록제시를 거부할 경우, 여섯째, 농무성으로부터 경고를 받고도 고용이 금지된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 등임.
- 이 법은 농산물을 구매한 회사가 파산하거나 폐업하게 될 경우 출자가 판매대금을 회수 할 수 있는 신탁제도를 두고 있음. 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법거래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전국 주요도시에 위치한 5개소의 사무소에 서면으로 보상청구를 할 수 있음.

3. 미국 도매시장제도의 특징

- 미국 도매시장의 종류는 도매기능만을 수행하는 터미널시장, 도매와 소매행위를 함께 수행하는 지역시장, 그리고 도매, 출하, 소매를 동시에 수행하는 농민시장이 있으며, 터미널시장과 지역시장은 민간과 주정부에서 운영하며 농민시장은 주로 주정부에서 운영하고 농민조합이 운영하는 형태도 있음. 도매시장의 건설에 필요한 자본은 민간, 주정부, 연방정부, 시정부, 군정부 등 여러 가지 합작형태로 되어있음.
- 도매시장의 관리는 대부분 소유자가 극히 소수의 인원으로 시설만을 관리하며 나머지는 도매상들이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도매상의 거래형태는 매취판매와 위탁판매 2가지 방식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도매상의 판매능력 및 신용도가 높을수록 위탁판매방식에 의한 거래비중이 높고, 도매상의 판매능력과 신용도가 낮을 수록 매취판매 방식에 의한 거래비중이 높은 편임.
- 미국의 도매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원격지 거래자간 거래로 통명거래를 하고 있으며, 통명거래가 가능한 것은 산지의 상품규격화, 저온유통체계화, 전국권 시장정보체계 및 통신망의 확립 이외에도 신용거래가 제도적으로 확립되어 있기 때문이며, 신용거래가 확립되는 데에는 사회적 규범과 상도의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큰 역할을 하지만, 농산물 검사제도, 송장제도, 신용평가서의 발행 등 제도적 장치가 신용거래를 촉진시키고 있음.
- 거래내역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매시장관련법인 “PACA”의 제정을 통해, 일정한 금액 이상 취급하는 모든 유통참가자에 대해 농무성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회계장부를 엄격하게 기록하도록 하고, 거래에 있어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 만약 면허가 취소되면 그 관련자가 일정한 기간 청과물 거래영업을 할 수 없도록 엄격히 관리하며, 그리고 농산물을 구매한 회사가 파산하거나 폐업하게 될 경우 출하자가 판매대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신탁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들 통해 도매시장의 관리와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고 있음.
- 허가절차는 농무성장관에게 수수료를 첨부하여 면허를 신청하며, 신청 후 30일 이내에 면허장을 발급하며, 징수한 수수료는 기금의 재원으로 사용되며, 면허기간은 면허의 정지, 취소 또는 법에 의해 자동적으로 정지될 때까지 임. 허가 신청서는 상호, 소재지, 주소, 지점이나 부속시설 또는 부속사무실이나 가맹점의 이름, 장소 및 개수, 승계한 회사의 이름 및 승계한 회사의 이전 불법행위 및 책임의 소재, 업무형태(예컨

대, 도매, 소매, 운송, 가공, 도매상, 중개인 등, 신선, 냉동 또는 염장 과일 및 야채, 열매 등), 소유형태(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경우 그 설립 또는 조직된 연월일자 및 해당 주의 이름, 회사의 이름, 주사무소의 주소, 유한회사는 회사정관의 사본) 등을 기재하여야 함. 보증금은 10,0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장관리자가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형태 및 금액으로 정하여 현금 또는 보증수표로 함.

- 허가의 취소는 시장관리자가 상호명을 승인하지 않은 상호명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동업 사업인 경우 파산인 동업자의 허가가 있을 경우, 법원의 유죄선고를 받은 경우 및 유죄를 받은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 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의 오류, 회계, 기록 및 장부를 유지하지 않는 경우임. 반면, 허가의 정지는 거래내역에 관한 기록 또는 거래물품에 대한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보증금의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 허가유효기간의 30일 이전에 허가갱신 신청이 없는 경우임.
-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는 부당한 방법으로 거래물품의 양을 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나 무게를 달거나 계산하는 것과 관련하여 사기의 수단을 사용하는 행위, 매매나 인도하기로 한 계약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없이 계약조건에 따른 배달을 거절 또는 불이행하는 행위, 위탁상이 접수한 물품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폐기, 투기매매 또는 소실하는 행위, 물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그릇되거나 현혹시키는 설명을 하는 행위, 거래물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 숙성정도, 상태, 중량, 포장, 크기, 양, 질, 품위, 종류, 특성, 증서 또는 단어, 행동, 마크, 형판, 라벨, 진술 또는 증서에 의해 허위표시 행위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위반사실을 공개하고 90일 이내의 기간동안 위반자의 면허를 정지하며, 중대위반인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으며, 허가의 정지 또는 취소 대신에 2000달러 이내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4. 미국 도매시장의 운영현황

1) 뉴욕 헌츠포인트 터미널 마켓(NewYork Hunts Point Terminal Market)

- 뉴욕 헌츠포인트 도매시장의 일반현황
 - 미국의 대표적인 도매시장 중 하나의 뉴욕 헌츠포인트도매시장은 1790년 개설된 이후 그 기능과 역할의 증대로 개장 이후 맨하탄 남부에서 브롱스 10474번지로 이전하여 개장하였음.
 - 헌츠포인트는 지명으로 1970년대에는 가난, 마약, 범죄 등으로 낙후된 지역이었으나, 1980년대에 와서 뉴욕시 공동개발계획이 수립되면서 인근에 산업단지가 들어서고 1994년에는 뉴욕주경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하였으며, 헌츠포인트 도매시장이 들어서면서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지역에 소비되는 육류의 약 40%, 관련식품의 약 80%를 공급하는 거대 시장으로 발전하였음.
 - 배후상권은 2,200백만 뉴욕시민과 보스턴에서 필라델피아, 서부의 시카고까지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이 지역 농산물 유통량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음(1999년 기준). 연간거래규모는 물량기준으로 약 160만 톤, 금액으로는 20억 달러(2조 6천억 원)의 거래를 보이며, 세계에서 가장 큰 도매시장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임.
 - 2005년에 헌츠포인트시장의 남쪽 끝에 총 450,000 입방피터의 시설을 설치하여 신(新)폴톤수산물시장을 개장할 예정으로 50여 개의 수산회사가 입주하여 1,000개의 일자리 창출과 연간 10억불의 소득증가가 예상되고 있음.
 - 뉴욕 Hunts Point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시 정부이며, 시설을 투자하고 있음. 총면적이 60에이커이고 냉장 및 냉동시설이 70만 입방피트이고 10만 입방피트의 시설을 추가로 건설중이며, 농무성의 관리 및 감독을 받는 47개의 도매법인이 입주해 있음.

- 시장의 건물 및 시설의 유지 관리는 시가 담당하고 있으며, 시장의 상업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오물 처리, 임대료 징수 등도 담당하고 있음.
- 뉴욕 헨츠포인트 도매시장의 거래체계
 - 거래체계를 살펴보면, 미국내 생산물의 96.3%는 산지 집하장을 경유하게 되는데, 산지 집하장의 운영자 대부분은 산지수집상(Packer) 또는 일부 협동조합이 하며, 산지수집상은 파종부터 수확, 수집, 가공, 판매과정에 이르기까지 생산자와의 협약하에 산지의 종합유통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이때, 협약된 생산자가 다수이지만 재배품목, 품종과 수확 및 등급화 과정이 동일하고 동일 브랜드를 사용하여 판매를 하고 있음.
 - 산지규모가 대형화되어 있어 생산자가 직접 출하를 담당하는 부분도 있으나, 대부분 산지수집상에 의하여 출하가 되고 있음. 이러한 이유는 산지수집상이 인수&합병을 통하여 대규모화되고 전국적인 체인을 구축함으로써 인하여 농산물 거래에 있어서 유통단계를 줄이고 이에 따른 비용을 감소를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격측면에서 1차 가격 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인하여 도매상의 역할을 대신하며,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임.
 - 매매방법에 있어서 헨츠포인트 시장은 약 60% 정도는 위탁판매를, 나머지 40% 정도는 매수판매를 실시하고 있음. 이러한 위탁판매의 비율이 높은 것은 시장내 도매상이 2~3대 걸쳐 가업을 잇고 있으며, 이러한 가운데 산지와와의 유대와 신뢰관계가 굳건히 구축되었기 때문임.
 - 도매시장내 농산물 유통은 각종 법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음. 규제 내용은 시장력 집중 방지, 담합 행위 및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식품 위생 기준 준수 등이며, 이러한 관련법은 PACA법, 농산물유통법 등이 있으며, 농산물마케팅서비스 등의 규정 또한 적용되고 있는 상황임.
 - PACA법에 의하여, 연간 일정금액 이상을 취급하는 상인들은 영업장

소와는 상관없이 모두 면허를 받아야 하며, 무면허자에 대한 통제 및 면허자의 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벌금, 영업정지, 면허취소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음. 이는 우리나라와 같이 공영도매시장에 한해 각종의무를 부과하고, 유사시장은 방치하는 현실과는 다른 체제임.

- 농산물 거래와 관련하여 세제부분에서 농산물 유통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없으며, 모든 소비품에 부가되는 자치주(지방자치단체)의 판매세도 면세되고 있으며, 소득세의 면세 범위도 넓게 적용함으로써 세제상의 우대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영업실적보고는 세무당국과의 관계일 뿐 시장관리주체와의 관계는 아니며, 거래금액에 비례하는 시장사용료가 아닌 시설면적에 따른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음.
 - 거래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는 앞에서 살펴본 거래관계 제도인 송장제(Invoice), 신용평가제(Blue Book), 농산물 검사제(Inspector) 등이 있음.
- 뉴욕 헨츠포인트 도매시장의 관리·운영체계
 - 뉴욕 헨츠포인트 도매시장은 개설된 이후 1986년까지 시에서 직접 관리하여 오다가, 도매상 조합으로 관리권을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음. 도매상 조합이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컴퓨터 시스템에 의한 재고관리로 가격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드러나고 있음.
 - 도매시장의 운영자인 도매상 조합의 주요 수입원은 임대료, 시장 입장료(Entry Fee), 교통 및 주차위반자로부터의 장내범칙금(Violation Fee), 거래수수료(Unloading Fee) 등이 있음.
 - 도매시장내 운영주체는 도매상으로서 모두 법인의 형태를 가지며, 규모는 1~17개의 Unit 점포를 사용하는 등의 영업능력에서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음. 도매업자는 대략 55개 업자가 영업중이며, 상주인원은 약 5,000명이 있고, 소매상은 약 4,000명이 영업활동을 하고 있음.

2) 뉴욕 풀톤 수산물도매시장(New York Fulton Fish Market)

■ 풀톤 수산물도매시장의 일반현황

- 풀톤 수산물 도매시장은 뉴욕시 사업부의 관할하에 있고 남쪽으로는 소핑가와 접해있고 가까운 거리에 월스트리트가와 인접해 있는데, 2005년에는 약 300,000입방피터의 시설을 설치하여 총 30에이커의 면적으로 확장하여 헌즈포인트 도매시장으로 이전할 예정임.

- 시설에 관한 일반현황을 살펴보면, 부지는 약 2만~2만5천평 정도이며, 4개의 빌딩으로 구성되어 있음. 수산시장관리사무소(the New Fulton Fish Market Manager)는 건물의 개보수, 냉동/냉장/난방/환기 시설의 유지 및 관리, 소방관리, 엘리베이터, 내외부의 보안관리, 컴퓨터 등 전자시스템의 관리, 도로의 개보수, 상하·차시설 및 장비의 수리, 쓰레기의 처리, 위생관리, 기타 시설 및 물품의 공급 등에 대한 관리를 맡고 있음.

■ 풀톤 수산물도매시장의 거래체계

- 도매시장내에서 영업중인 도매상은 약 60여명으로 모두 개별 면허를 가지고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약 5,000여 개의 소매상과 거래관계를 가지고 있음. 가자미 품목의 경우 산지 경매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 도매상을 통한 위탁판매를 실시하고 있는데, 물품수탁을 받기 위해서는 도매상의 신용도가 높아야 수탁을 많이 받을 수 있음.

- 미국각지나 캐나다에서 온 트럭이나 케네디 공항을 통하여 운송된 수산물을 판매하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3:30에 개장하여 9시까지 경매, 포장, 냉동/냉장처리가 끝남.

-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의 실례로서, 국가해양대기청(NOAA)는 뉴잉글랜드 저서어류보호에 관한 법률의 위반으로 1996년부터 1997년간 23개 어선으로부터 불법포획물을 매수한 풀톤수산시장의 소매상인에게 172

건의 부당행위를 적발하고 Joseph H. Carter도매법인, 회계인 및 관련자에게 1,720,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동 회사의 대리상에게 5년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음.

제4절 주요국 도매시장의 제도적 특징 비교

1. 도매시장의 개설분야

- 일본, 프랑스 및 미국 중 우리나라와 유사한 시장거래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국가로는 일본으로서 산지 및 소비지 시장을 대상으로 도매법인 체제하의 상장경매 제도를 사용하고 있음.
 - 일본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장거래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수산물 생산지가 넓게 분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량도 상대적으로 많고, 이로 인하여 소비도 프랑스나 미국에 비하여 많아 오래전부터 수산물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임. 또한 수산물 소비패턴에 있어서도 활어, 대중선어, 패류, 해조류 등 다양한 수산물을 소비하고 있어 대량소비에 부응하기 위하여 도매법인 체계의 시장거래시스템이 정착되었음.
 - 반면, 프랑스와 미국의 경우 도매상제도(시장도매인)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와 일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수산물 소비가 적고, 소비형태에 있어서, 주로 식용에 이용하는 수산물 종류가 냉장·냉동 어 위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양한 수산물에 대해 대량소비가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수산물 유통의 거래방법에서 근본적인 차이점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상황임.
- 각 국별 시장개설부문을 살펴보면, 도매시장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중앙 및 지방도매시장 등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첫째, 개설자와 운영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우리나라와 일본은 개설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또는 전문 관리공사를 통하여 도매시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미국과 프랑스의 경우, 중요한 위치에 개설

된 도매시장의 경우 개설자는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도매시장을 건설하여 개설하고 있으나, 운영은 도매상 조합 또는 자치단체가 만든 관리공사에 위탁을 하고 있음. 프랑스 란지스 시장은 개설은 중앙정부가 하나, 운영은 파리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으며, 미국의 뉴욕헌트포인트 시장의 경우, 개설은 시정부가 하였으나, 도매시장의 운영은 도매상 조합(Coop.)가 시정부에 위탁을 받아 도매시장을 운영하는 것이 큰 특징임.

- 둘째, 시장에 대한 투자주체별로 정부에 의한 투자와 민간에 의한 투자로 구분될 수 있음. 투자주체별로 세분화하면 중앙정부, 지방(주)정부, 그리고 민간 등으로 구분됨. 일본과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정부에 의하여 도매시장이 개설되어 왔으나, 최근 민간도매시장의 개설을 유도하고자 하고 있음. 반면, 미국의 경우, 도매시장이 정부, 주정부, 시정부, 민간단체 등 개설주체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도매시장내 세금 감면 등을 통하여 도매시장을 활성화하고자 시도하고 있음.

<표 5-1> 국가별 시장개설부문별 도매시장 비교

국가	도매시장수	개설자	투자주체
한국	○공영도매시장 : 18개 ○일반법정도매시장 : 32개 ※유사도매시장 존치	○지방정부	○국고보조에 의한 지방정부 -국고보조 70%
일본	○중앙도매시장 : 87개 ○지방도매시장 : 1,500개	○지방정부	○국고보조에 의한 지방정부 -국고보조 25~33%
프랑스	○국영시장 : 17개 ※산지 생산자 전문시장 29개소	○중앙정부 (지방정부에 위임)	○중앙정부
미국	○총 44개 -지방정부 23개(주정부 19개, 시정부 4개) -협동조합 : 2개 -개인사업 : 11개 -기타 8개	○지방정부	○정부, 민간

주 :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세계의 농수산물 도매시장 현장을 가다, 1999와 본 보고서 제5장의 내용을 비교하여 재작성한 것임.

2. 도매시장의 관리 및 운영분야

- 각 국별 도매시장의 관리 및 운영측면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관리주체별로 나누어 볼 수 있음.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 도매시장의 관리주체는 지방정부 또는 도매시장을 전담하는 관리공사(공무원신분)가 시장을 관리하고 있으나, 프랑스는 국영공사가 정부의 위임을 받아 시장을 관리하며, 미국의 경우는 도매상조합 또는 시설주가 시장의 관리를 맡고 있음.
- 거래운영주체별로 살펴보면, 우리나라와 일본은 경매제도를 바탕으로 하여 상품의 수집 및 집하는 도매시장법인이, 분산기능은 중도매인이 담당하고 있음. 우리나라가 이러한 경매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일본의 수산물 유통 시스템이 우리나라와 유사하여, 관련법의 정비과정에서 벤치마킹의 하였기 때문임.
 - 반면, 프랑스와 미국의 경우, 도매상 체제를 바탕으로 상품을 거래하고 있음. 프랑스는 농수산물의 유통주체를 도매상, 위탁상, 도매위탁상, 중개상 그리고 생산자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도매시장내 거래는 주로 도매상 또는 위탁상이 담당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농산물 거래에 있어 산지수집상의 기능이 대단히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산지수집상은 대규모 생산물을 한곳으로 집하여 1차 가격을 결정하는 역할과 동시에 도매시장내 도매상과의 거래뿐만 아니라 직접 판매하거나 수출을 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또한 도매시장내 도매상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어, 경영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농수산물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
- 거래방법별로 살펴보면, 우리나라와 일본은 출하자로부터 상품을 수탁 받아 입찰경매를 원칙으로 하는 판매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프랑스와

미국의 경우, 도매상거래체계의 특징인 상대매매 및 수탁매매가 주요 거래방법인 것으로 나타났음.

<표 5-2> 국가별 관리, 운영별 도매시장 비교

국가	관리주체	운영주체	거래방법	판매수수료	시장사용료	도·소매 분리
한국	○지방정부 또는 지방 공사	○집하 : 도매시장 법인 ○분산 : 중도매인	○수탁받아 입찰경매 판매 원칙	청과 7% 수산 6% 축산 3%	○거래금액 0.5% (면적은 상대치)	병존
일본	○지방정부	○집하:도매업자 ○분산:중도업자	○수탁받아 경매, 상대매매 판매원칙	채소 8.5% 과실 7% 수산 5.5% 축산 3.5%	○거래금액 0.25% (면적할당 : 월 428엔/m ²)	분리
프랑스	○국영공사	○도매상 ○위탁상 ○도매위탁상 ○중개상 ○생산자	○상대매매및 수탁판매	마진율 8~15% 위탁판매수수료 4~5%	임대료	○출입자 등록통제 -실제 소매 존재
미국	○도매상조합 또는 시설주	○도매상 ○위탁상	○상대매매 및 수탁판매	마진율 자율	임대료	○출하자통제 -소매 금지 안함

- 도매와 소비의 분리여부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의 경우, 도매와 소매가 병존하고 있는 시장내 상황을 보여주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 도매와 소매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어, 도매시장내 소매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특징임. 프랑스와 미국의 경우, 시장내 진입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으나, 실제 소매상은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3. 도매시장의 물류분야

- 물류구조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 경매장과 중도매인 점포간의 긴 동선으로 연결되어 반입된 상품에 대한 상장경매를 실시 후 중도매인인 상품을 인도받아 분산하는 물류체계를 가지고 있음.

- 반면, 프랑스의 경우 도매상 점포만이 상품을 직반입·반출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국은 도매상 점포 양쪽으로 Deck(감판)이 설치되어 물류 흐름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구성되어 있음.

<표 5-3> 국가별 물류체계별 도매시장 비교

국가	물류구조	하역기계화	하역수행 및 부담주체
한국	○경매장과 중도매인 점포간 긴 동선으로 연결 (Hall Type)	○인력 및 손수레 의존 -파레트 미사용 -Deck 미설치	○하역노조 ○비용부담 -출하단계 : 출하주 -이송 및 상차단계 : 중도매인
일본	○상동	○Deck 미설치 -파레트 사용 보편화 -기계화 상당수준	○별도의 하역노조 없음 (수산은 예외) ○비용부담 -출하단계 : 출하자 책임 하에 도매업자 서비스 -이송 및 상차단계 : 중도업자
프랑스	○도매상 점포 직반입·반출 -바깥쪽	○거의 100% 기계화	○공사에서 허가한 하역업체 ○비용부담 : 도매상
미국	○도매상 점포 양쪽으로 Deck 설치(Garage Type)	○거의 100% 기계화	○도매상

- 하역시스템을 살펴보면, 프랑스와 미국이 100% 가까운 기계 하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기계화 수준이 프랑스, 미국, 일본에 비하여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임. 특히, 일본의 경우, 파레트를 사용하여 제품의 규격화를 가져오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파레트화는 일정수준에 이르렀으나, 산지와 소비지간의 서로 다른 규격으로 인하여 비용의 증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하역의 수행 및 비용부담의 주체여부의 경우, 프랑스와 미국은 도매상이 하역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항운노조가 전문적인 하역을 수행하는 가운데, 출하품목에 대한 비용부담은 출하자가, 이송 및

상차에 대한 부담은 중도매인이 부담하고 있음. 일본의 경우, 특별한 하역노조는 존재하지 않으며, 출하부담은 도매법인이, 이송 및 상차에 대한 부담은 중도매인이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임.

- 이상에서 검토한 주요국(일본, 프랑스, 미국)의 도매시장에 대한 제도적 특징을 요약하면, 첫째, 도매시장의 개설과 운영측면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은 행정당국 또는 관리공사를 통하여 도매시장은 운영하고 있으나, 프랑스, 스페인, 미국 등은 도매상 조합 또는 도매시장을 관리하기 위하여 정부와 민간이 함께 전문업체를 조직하고 있는데, 주로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임. 둘째, 거래방법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 경매제도를 바탕으로 하여 수산물을 거래하고 있으나, 프랑스와 미국 등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도매상 또는 시장도매인 방법을 거래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음. 즉, 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아닌 도매시장을 이루고 있는 유통주체에 대한 규제 중심으로 하고 있어, 도매시장이 아닌 곳에서 거래행위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유통주체에 대한 규제를 실시함으로써 불법행위에 대한 적발과 그에 상응하는 규제조치를 취하고 있음. 이는 유사도매시장의 거래행위에 속수무책인 우리나라와는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임.
- 이렇듯, 외국의 도매시장 제도 및 관련법의 특징으로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음. 첫째, 도매시장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민간부분을 도입, 시장경제의 원리에 충실하고자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둘째, 정부의 역할은 초기 투자의 주체로서의 역할과 지도·감독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한다는 점, 그리고 도매시장에 관련한 법이 장소적 개념이 아닌 유통주체에 대한 법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수산물이 국민 식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도매시장이 그동안 공익적 측면이 강조되어 왔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위축되어 가는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과감한 민간부분의 도입

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민간부분이 담당하기에 리스크 부담이 큰 시설투자 등 초기투자에 대한 지원책은 지속적으로 유지하되, 정부의 개입을 최소한으로 하는 방향으로 도매시장 정책을 전환하는 것도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판단됨.

- 또한, 거래방법에 있어서 일본과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도매상 또는 시장도매인 방법을 거래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음. 즉, 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아닌 도매시장을 이루고 있는 유통주체에 대한 규제 중심으로 하고 있어, 도매시장이 아닌 곳에서 거래행위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유통주체에 대한 규제를 실시함으로써 불법행위에 대한 적발과 그에 상응하는 규제조치를 취하고 있음.
 - 이는 냉동냉장위주의 소비형태의 차이와 정부의 인위적 정책으로 시장이 개설된 우리나라와 달리 오랜 시간동안 자연스럽게 시장이 형성된 시장개설과정상의 차이로 인한 측면이 강할 뿐만 아니라,
 - 지형적으로 넓은 위치에 산재해 있고, 각 도매시장마다 다른 특징을 가진 도매시장을 하나의 거래방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데 있어 무리가 있다는 점 등이 우리나라와는 다른 형태의 거래방법을 가지게 되는 요인이 되었음.
 - 따라서, 생산지별 특징과 어종별 유통경로가 다르고, 지역별 도매시장이 가지는 여건과 환경이 다른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도매시장별 거래제도를 선택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시점으로 판단됨.
 - 즉, 최근 강서농산물도매시장의 경우, 기존의 상장경매의 거래방법을 취하지 않고, 도매상 제도를 적용한 것을 예로 들어, 새로운 시장 개설 또는 기존 도매시장의 형태를 전환할 때, 도매상 제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도매상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현재 농안법에서 규정한 시장도매인 제도의 사문화를 방지할 수 있으며, 새로운 거래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시장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선택될 수 있을 것임.

제6장 수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편방안

제1절 수산물 유통의 과제

제2절 수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편방안

제1절 수산물 유통의 과제

- 소비지 도매시장의 농수산물 유통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농안법은 기본적으로 수산물보다는 농산물 위주의 거래제도 및 기금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수산부문에 적용하는데는 태생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음.
 - 농산물과 수산물의 생산, 유통, 소비에 관한 거의 모든 특성이 다른 농산물과 수산물을 하나의 법으로 유통에 관한 법을 적용한다는데 농안법의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음.
 - 즉, 산지시장과 소비지시장의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는 수산물에 비하여 농산물은 산지시장과 소비지가 인접한 상태임. 그러나 도매시장은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을 특성을 감안한 지역에 농산물과 수산물, 두 부류를 취급하는 도매시장이 개설되어 있는 상황임. 따라서 지역별로 다른 생산형태를 보이는 수산물 특성상, 산지시장에 대한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은채 정부의 인위적인 정책으로 개설된 도매시장은 수산물 유통의 측면에서는 개설입지상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
- 산지 시장의 경우, 농안법의 제도권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산물 생산 및 유통에 있어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산지위판장의 법적 지위 부여 문제와 함께, 수산물 거래활성화를 위한 산지도매시장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소비지도매시장의 경우, 거래제도와 관련하여 중도매인의 일부 수집행위와 정산문제 등 관행적인 상거래가 존재하고 있으며, 도매법의 소극적 영업행위로 인한 도매시장의 위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 그리고 산지시장과 소비지시장을 거치는 동안 하나의 수산물이 두 번

에 걸쳐 경매되는 이중 경매가 발생하여, 유통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현행, 농안법이 규정하는 도매시장 거래제도는 수탁판매의 원칙, 경매 원칙, 거래제한의 원칙, 수수료의 원칙 등 네가지이며, 거래방법은 상장 경매 또는 입찰방법의 매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적·계절적 생산의 특성과 산지와 소비지 시장에서 각각 가격이 결정되는 이중의 경매구조, 대외 유통환경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직된 거래방법 등이 문제점으로 요약될 수 있음.
 - 이러한 수산물의 특성 등에 기인하여 불공정 담합(유통관행)으로 기록상장·형식경매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관행으로 시장별·품목별 거래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직된 거래제도 운용으로 당초의 제도 도입의 목적달성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음.
- 거래방법 이외에도 정보화, 규격화 등 유통기반의 선진화가 수산물 유통구조개혁의 관건인데, 인식부족, 시설 및 자금지원의 미비로 물류표준화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수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공정한 거래형성을 위하여 거래품목의 규격표준화, 표준송품장의 사용 등 규격화사업이 필요함. 또한, 기업의 경영성과를 높이기 위한 신규수요창출 및 비용절감으로 경영 효율성 제고 등의 노력 부족도 거래제도와는 다른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음.
 - 또한, 21세기 정보화 및 소비자시대에 발맞추어 부각하고 있는 IT 기반을 토대로 한 전자정보의 체계 구축의 미흡과 안전한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위생관리제도의 부재 또한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IT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하여 인터넷을 통한 구매 등으로 수산물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고 있으나, 관련 법률인 농안법에는 직접적인 규정이 없고, 다만 전자상거래법에서 거래규정을 준용한다하더라도,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영세 어업인들에게 거래기록유지, 정보보고 등 과중한 의무를 지우고 있어서 수산물에

대한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현재의 농안법에는 위생관리제도에 관한 규정이 없고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에서 도매시장에 반입, 유통되는 농수산물에 대해서 잔류농약검사를 행하고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도매시장내의 출하금지, 영업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는 소극적인 차원으로 수산물유통의 위생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소비지도매시장에서 기존의 법적용에 있어 획일적이며 일관적인 적용으로 유통주체를 통제하는 방향으로 도매시장의 거래제도를 유지한다면, 도매시장의 침체는 계속 지속될 것이므로, 향후 도매시장의 역할무용론으로 대두될 가능성마저 있는 것이 사실임.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바람직한 비전을 구상하고 무엇을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를 규정하는 것이 중요함. 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법제도 개선에 대한 과제해결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첫째, 도매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주요 품목은 농산물과 수산물인데 반하여 현 농안법의 운영은 농림부가 독자적으로 법의 개정과 새로운 조항의 신설을 맡고 있음. 그러나 농산물과 수산물의 유통과정상의 특징과 생산여건도 다르므로 하나의 법률에 두 가지의 상품거래에 대한 모든 내용을 수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또한 수산물의 유통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가 독립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산물 유통에 관하여는 농안법을 적용받음으로써 수산물 유통을 전문적인 다루는 법률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수산물 유통 정책상 사용되어야 할 사업기금 또한 농안기금 하나에 묶여있어 적시에 필요한 곳에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수산물 유통의 현실과 법 적용상의 괴리를 축소하고, 수산물 유통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독자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하여 농안법의 분리 또는 수산부문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가 필요함.

- 둘째, 도매시장의 역할과 기능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법제도가 개편되어야 할 것임. 소비지도매시장은 신업체 및 유사시장의 등장 등으로 기존의 도매기능이 분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원감소로 인한 어획량 감소와 이로 인한 국내 수산물 판매물량의 감소 등 수산물 유통의 전반적인 침체가 지속화되고 있음.
 - 기존 도매시장은 그동안 가격형성의 기준과 수산물 집산의 교통 요지에 대량 품목의 구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등의 장점을 내세워 구매자들을 소비지도매시장으로 유인하는 요인을 제공하였으나, 정보화의 발달, 개인 교통수단의 증가 및 기존 도매시장의 낙후 등으로 인하여 경쟁력이 약화되어가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도매시장의 유통주체들은 소극적 영업의 탈피와 기존 상관행을 탈피하고 새로운 유통환경에 적응해야 하며, 도매시장의 관리감독의 주체인 관련 부처는 도매시장의 거래제도의 개선과 유통주체의 영업 확대 방안의 마련을 통하여 도매시장이 본연의 제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할 것임.

- 셋째, 수산물 유통의 큰 축인 산지시장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도매시장의 법제도가 개편되어야 할 것임. 현 농안법에서는 수산물 산지시장에 대한 고려가 없으므로, 향후 개편방안을 수립할 시에는 산지위판시설에 대한 법 지위의 부여와 함께, 산지위판장 및 산지도매시장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즉, 산지위판시설의 생산 기능 측면과 유통기능 측면을 고려하고, 산지위판장별 역할과 기능을 구분하여 대형화 및 거점화를 실현할 수 있는 산지위판장을 산지도매시장화 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임.
 - 정부는 산지시장에 대한 산지도매시장화 방안에 대하여 지난 1998년 “유통기획단”과 2000년 연구개발사업⁴⁷⁾을 통하여 많은 논의를 진행하여 왔으나, 산지위판장에 대한 법개정까지는 이르지 못하였음. 이러한

47) 자세한 내용은 홍성걸, 주문배 외, “수산물 유통개혁을 위한 실천방안 연구”, 해양수산부, 1999와 강종호 외, “수산물 산지도매시장(위판장) 10개년 정비계획”, 해양수산부, 2000을 참조하길 바람.

- 원인으로는 농안법과 관련하여 관련부처인 농림부와의 협의 부족과 이해당사자간의 조정작업을 충분히 하지 못한 데에 기인하고 있음.
- 산지시장의 1차 가격결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게 하고, 수산물의 유통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지위판시설에 대한 법적 지위 부여와 함께, 산지위판시설의 법 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인 수협과의 협의를 통하여 산지시장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도록 법제도가 개편되어야 할 것임.
- 넷째, 끊임없이 변화하는 수요자의 정확한 요구를 반영하고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유통정보를 구체적이며 시의적절하게 제공하기 위한 법제도의 개편도 이루어져야 할 것임. 정보수요자가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자 함에 있어서 간단한 절차와 이해하기 쉽게 가공, 해석하여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자동응답장치, 컴퓨터 통신, 인터넷, 비디오텍스, FAX 등의 인력, 장치 및 설비를 추가적으로 구축하며,
 - 소비자의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신제품의 출시, 판매계획, 상품보증 등에 대한 정보에서부터 생산자(단체), 산지유통센터, 가공업체 등간에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공급망 관리(Supply Chain Management)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이 필요한 실정임.
 - 다섯째, 소비자의 식품 소비에 대한 안전성 측면이 부각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제도가 개편되어야 할 것임.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산물 위생 관리에 관한 법체제는 식품위생법과 수산식품위생과 관계있는 법률과 하위법령으로 크게 나누어질 수 있는데, 직접적으로 수산물의 안전성에 관계를 맺고 있는 법률로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품 가운데 해양수산물로 권한이 위탁되어 있는 식품은 수입 수산물 중 원어와 단순 절단·가열·숙성·건조 또는 염장한 수산 동식물일 경우만 그 권한이 위임되

어 있고, 나머지는 보건복지부의 소관으로 권한이 분리되어 있어, 관리체계가 이원화 및 안전성 문제의 발생시 권한관계가 분명하지 않아 효율적인 행정집행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 또한, 국내소비용 수산물의 경우는 식품위생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어 수산물의 특성을 고려하기보다는 전체식품과 동일하게 관리되고 있어서 수산물 유통에 있어서 위생관리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유통단계별 위생지침을 제시되어야 할 것임. 또한 도매시장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하여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위생검사를 행하고, 위생기준에 부적합한 수산물에 대한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임.
- 여섯째, 전국에 걸쳐 있는 유사도매시장 및 수산물을 취급하는 재래시장에 대하여는 우리나라 고유의 식문화적인 가치를 존중하여 단기적으로는 비위생적 시설의 개보수 및 정비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되, 장기적으로는 제도권으로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수산물 유통에서 산지시장의 계통판매가 연근해 생산량의 70% 가량을 차지하는 반면 소비지도매시장의 경유율이 15%에 미치지 못한 현 상황에서 소비지 시장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유사도매시장 및 재래시장을 자연스럽게 편입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유인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문제는 유사도매시장 및 재래시장들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것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 점임. 그 동안 제도권이라는 의미는 규제와 간섭을 의미하는 경향이 많았으므로, 현재 자유로운 판매거래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제도권화 편입방향에 반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임. 따라서 유사도매시장 및 재래시장에 대한 정비방침은 장기간의 기간을 설정하여야 하며, 제도권내의 소비지도매시장에 대한 각종 지원과 인센티브를 통하여 유사시장이 제도권내로 자연스럽게 유입이 가능하도록 제도의 개편과 함께, 유사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정비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기존 소매형태의 시장이 도매시장의 역할을 대체함으로 인하여, 간편한 소비문화를 추구하는 소비자에 대한 공감을 얻고 있어 소매형태의 할인점, 슈퍼마켓 등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음. 새로운 소매점은 산지와 직거래를 확대시키고, 독자적인 유통망과 물류센터의 설립을 추진하여 기존 수산물 유통시스템의 대안으로서 자리잡고 있음.
- 이러한 신입태의 등장에 대응하여 각 도매시장이 스스로 생존에 필요한 기능과 역할을 특화하고, 다른 도매시장이나 다른 기업과의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이며 종합적인 도매시장의 역할을 향상시켜 나가는 것이야말로 현실적이면서 구체적인 전략일 것임. 어떠한 시장이 이길 수 있는 시장이며, 그 시장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를 거시적인 디자인으로서 구상하는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도매시장 유통주체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므로, 세부적인 목표의 설정과 현 수산물 유통 시스템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다른 시장과의 차별화 전략을 통한 경쟁력의 구축 등과 함께 실천방안을 구체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함.

제2절 수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편방안

1. 수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 수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기본방향은 단기적으로는 거래제도의 합법성 확보 및 유통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물류표준화 및 정보화 기반을 통합적으로 구축하며, 산지위판장의 제도권화 및 대형 산지위판장의 산지도매시장화를 통하여 산지유통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임. 장기적으로는 안전한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사회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고효율·저비용 체제의 수산물 유통시스템 구축을 추진해야 할 것임.
-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정성 및 정보의 투명성 확보가 우선 확보되어야 함. 그동안 도매시장은 수산물의 유통체계를 이루면서 거래의 공정성이나 정보의 투명성 확보에 일정한 공헌을 해온 것은 사실임. 경매제도는 거래의 공정성이나 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거래 시스템으로서 자리잡고 유지되어 왔음. 그러나, 투명성을 위한 소비지도매시장의 경매제도 또한 경매를 실시하기 이전 단계의 유통과정상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인하여 경매에 대한 객관성 또는 투명성에 대한 의의가 제기될 뿐만 아니라, 경매 이후의 정산과정상의 일부 문제점은 투명한 거래를 위한 경매제 도입을 희석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음. 이를 가지고 경매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보완을 주장하는 유통주체들 또한 있는 것이 사실임. 경매제도는 도매상 체제보다 공정성과 투명성에 있어 상대적으로 검증된 제도임. 따라서 도매시장의 소프트웨어의 성격인 제도의 단점이라기 보다는 그것을 운영하는 유통주체의 마인드 변화가 우선되어야 할 것임.

- 구체적으로는 거래품목에 대한 획일적인 상장경매보다는 도매시장내 유입 수산물에 대하여 상장의 기본원칙은 지키되 산지에서 1차 경매된 품목에 한하여, 이중경매를 방지하고 도매시장내 거래물량의 증가와 시장활성화를 위한 정가·수의매매방법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임. 또한, 현재 중도매인에게 한하는 계절성 품목과 경매를 하기에 다소 어려운 소량품목에 한하여 상장예외품목의 확대를 통한 도매시장거래품목의 증가와 유통주체의 영업범위확대를 통하여 경영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도 시행해야 할 것임. 기존 도매시장 시스템의 고수보다는 일정량 이하의 거래량을 나타내거나, 경영상태가 불안정한 지방도매시장의 경우, 기존 도매시장 시설을 다른 용도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도매시장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고려할 수 있음.
- 이와 더불어 수산물 도매시장을 수산물 단일 품목만의 거래·판매하는 현재의 기능을 유지하기보다는 소비자의 소비심리를 반영하여 문화생활의 공간, 다양한 쇼핑을 할 수 있는 종합시장으로 변환할 수 있도록 소비지 도매시장의 거래형태 및 구조를 변모시켜야 할 것임. 구체적으로는 표준송품장의 사용과 정산체계의 투명화를 위해 상인 개개인에 대한 ID카드의 발급을 통한 관리가 시도될 수 있음. 현재의 표준송품장은 소비지도매시장의 도매법인에 따라 기재내용은 유사하나 표준송품장의 크기와 기입순서 등에서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이러한 문제는 각 시장개설자 및 도매법인의 합의를 통하여 단기간에 개선이 가능한 사항일 것임. 도매시장 유통주체에 대한 ID카드 발급은 그동안 대금정산에서 관행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정산과정의 지연 등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⁴⁸⁾ 장기적으로는 도매시장별 관리가 아닌 시장유통주체별 관리를 통하여, 향후 도매시

48) 미국의 도매시장은 유통주체인 도매상, 위탁상, 중개인 등에 대한 관리를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도매시장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를 하고 있음. 즉, 유통주체의 불공정행위, 면허 및 회계, 기록(정산절차 포함)을 강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면허정지, 면허취소, 벌금,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도매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음(PACA 규칙 SEC.46.2 정의).

장 유통시스템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고려해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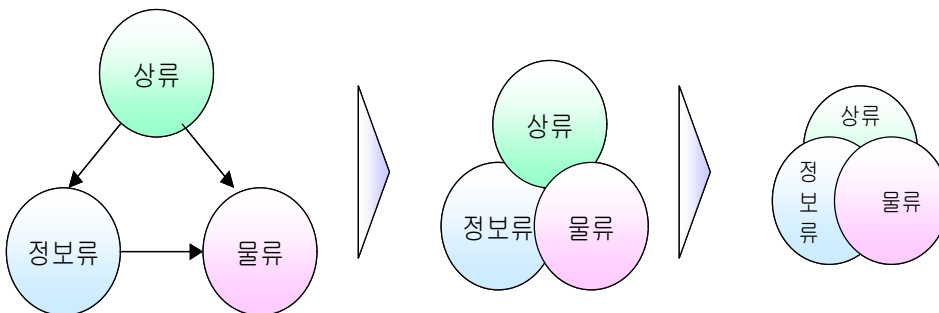
- 산지위판장, 공판장 등의 산지시설에 대하여 일정한 물량취급능력과 소비력을 갖춘 입지조건 및 상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지위판장에 대한 산지도매시장으로 전환을 추진해야 할 것임.⁴⁹⁾ 이를 통하여 “산지에서 식탁까지”의 유기적인 수산물 유통시스템 구축을 마련해야 할 수 있음. 또한 중소형 산지 위판장에 대하여는 어업인들의 생산시설인 동시에 문화여가의 공간으로 전화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대형산지 위판장에 대한 도매시장화 방안만을 고려하여 새로운 수산물 유통시스템을 설계한다면, 전국에 산재해 있는 소규모 어업인 및 관련 종사자들의 심한 반발과 소외감 분출을 예상할 수 있으며, 또한 일부 지역에 대한 지원만을 고려할 경우 법적 형평성의 원칙에서도 자유롭지 못해 새로운 수산물 유통시스템을 구성한다는 것 자체에 큰 문제가 발생할 것임. 따라서 생산의 필수 시설이자 어업인들의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휴식의 공간으로 탈바꿈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는 수산물 유통에 대한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안정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임. 기존 농안법체계가 농산물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어, 독자적인 수산물유통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이에 새로운 법에서 수산물 유통장기계획을 명문화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관련 예산 등 포괄적인 내용을 규정해야 할 것임. 즉, 정보화에 대비한 수산물 유통의 정보화 및 전자상거래 시스템의 도입, 표준문서제도의 확립, 그리고 현 도매시장을 둘러싼 열악한 환경

49) 기존 연구로서 강종호(2000)의 연구에 의하면, 산지위판장을 도매시장 혹은 공판장화할 위한 결정 요인으로서, 첫째, 과거 3년간의 위판량 실적, 둘째, 인근지역의 소비량, 셋째, 도로 및 입지여건 등의 인프라, 넷째, 위판장의 성격,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존 위판장 시설 수준 등 5가지 요인을 가지고 산지 유통인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산지도매시장의 후보지로 경남 6개소, 강원 4개소, 전남 3개소 등 전국 24개 위판장을 대상후보지로 환적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최대취급 가능량(UQ)의 분류에 따라 각 산지도매시장의 예상 유입물량은 최저 5만 톤에서 최대 10만 톤인 것으로 나타났음.

개선 및 정비작업, 그리고 유통시스템 개선 등 장기계획과 연차실행계획을 작성하여 구속력을 가진 이행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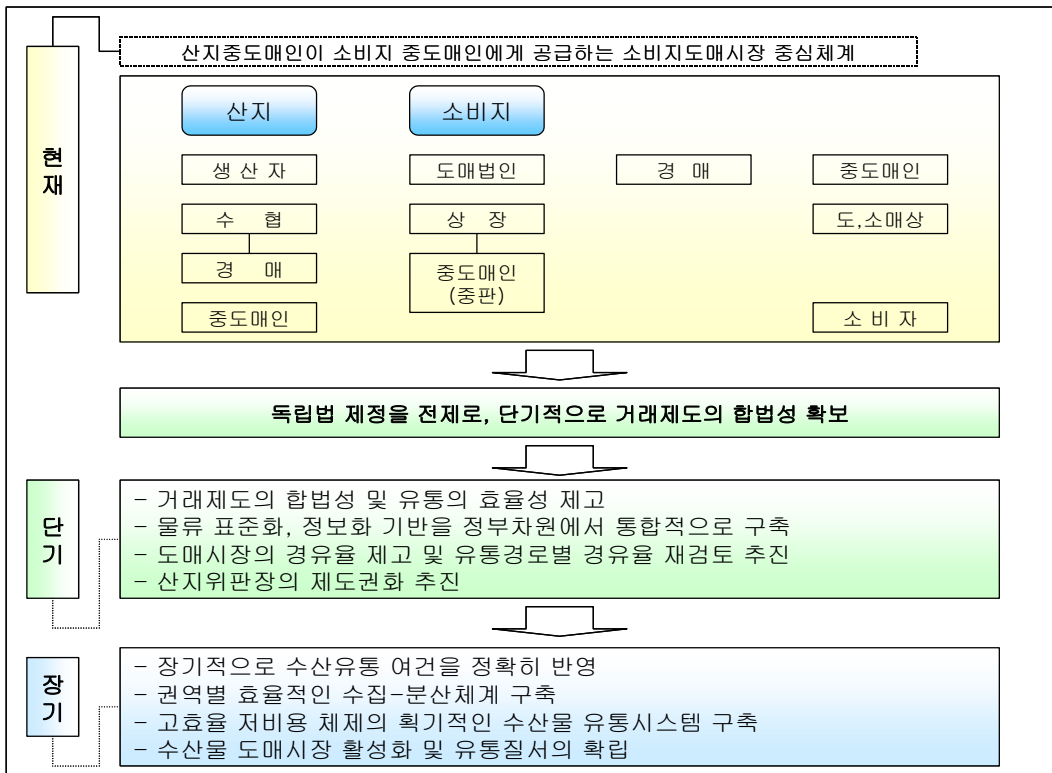
- 또한, 그동안 수산물 유통에 있어 상관행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유통시스템에 물류의 개념을 도입, 물류혁신을 위한 실험의 장으로 거듭나야 할 것임. 그동안 도매시장의 거래는 상류 위주의 이루어졌으나 빠른 정보화와 함께 물류 혁신의 요구 또한 증가하는 것이 사실임. 유통의 구성은 상류, 정보류, 물류 등으로 구성되지만, 시기별로 그 비중이 다르게 취급되어 왔음. 1980년대까지 유통은 상류의 시기로서 공급위주의 유통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수요의 양적인 포화와 기술진보 등을 배경으로 상류에서 정보류의 흐름으로 유통 흐름이 변화되어 왔고, 이로 인하여 도매시장의 과거 판매행위 또는 영업방법은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변화되어지기를 요구받고 있음(<그림 6-1> 참조).
- 구체적으로는 규격화를 촉진하고, Cold-chain 배송차량의 확대 등을 통하여 안전한 수산물의 유기적인 물류 시스템의 구축과 함께 비용의 감소를 이룩해야 할 것임. 이러한 방안은 궁극적으로 도매시장 유통주체의 경영비용을 상쇄시켜줄 뿐만 아니라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음.

<그림 6-1> 수산물 물류혁신의 방향



- 이상을 바탕으로, 산지와 소비지, 수산물 유통시장을 중심으로 한 유통 주체간의 과제를 설정하고, 수산물 유통거래관계속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설정한 후, 법제도 개선방안을 통하여 수산물 유통의 질서와 도매시장 활성화 방안을 추구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안전한 수산식품의 공급을 위한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임(<그림 6-2> 참조).

<그림 6-2> 수산물유통법구조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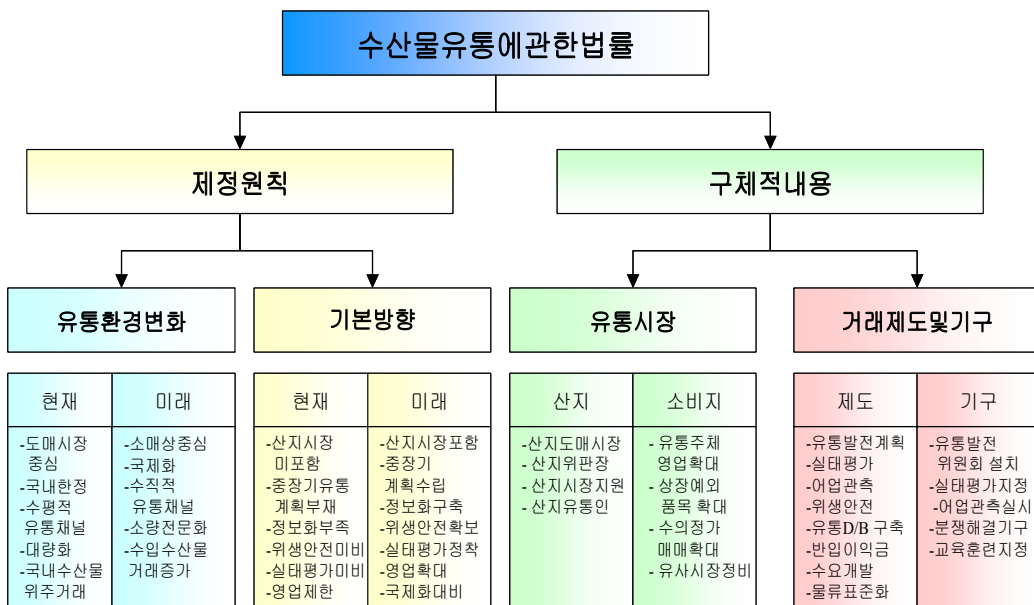


2. 수산물 유통제도의 개편방향

1) 수산물유통에관한법률(안) 제정방향

- 수산물유통에관한법률(안)의 제정원칙은 기존 농안법이 가지는 농산물 위주의 법체계상의 문제점에서 벗어나, 수산물 유통이 가지는 특성을 고려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독립적인 수산물 유통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음. 기존의 소비지수산물도매시장만을 대상으로 하였던 농안법과 달리 산지시장을 포함하여 수산물의 도매시장 경유율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도매시장 경유율 하락의 원인중 하나인 소매체제 및 유사시장에 대한 정비방침을 수립하여 규제보다는 자율성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자 하였음(<그림 6-3> 참조).

<그림 6-3> 수산물유통에관한법률의 제정원칙



- 단기적으로는 거래제도의 합법성 확보 및 유통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물류표준화 및 대형 위판장의 산지도매시장화를 통하여 산지유통기능

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안전한 수산물 유통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고효율·저비용 체제의 수산물 유통시스템 구축을 추진해야 할 것임. 이러한 목표의 달성 수단으로서 이와 같은 기본방향을 전제로, 수산물 유통구조의 개편방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함.

- 변화하는 환경여건에 부응하는 수산물 유통구조의 개편
 - 거래제도의 합법성 및 유통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재 유통경로구조상 산지시장과 소비지도매시장이 유기적인 구축이 불가능하였던 법제도적 문제를 해결하고, 비용절감과 수산물 거래량의 증가를 통한 수산물도매시장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서 수산유통발전계획을 수립과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구축하여 수산물 유통질서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을 확정하고, 산지도매시장화 방안을 도입하여 이 중경매문제의 해소하고, 산지시장과 소비지시장의 유통경로를 법적으로 체계화하고자 하였음.
 - 수산물유통에관한법률(안)은 유통을 둘러싼 여건변화를 최대한 수용하고자 하였음. 즉, 세계시장의 개방화, 자유화에 대응하여 우리 수산물 시장이 향후 나아가야 할 국제협력 방안을 세웠으며, 수산물 공급구조의 변화와 수입수산물수입 급증에 대한 효과적인 방안을 수립하고자 하였음. 또한, 가공수산물을 중심으로 소비자 구매형태에 발맞추어 도매시장의 거래품목을 다양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소비형태의 변화에도 대응하고자 하였음.
 - 수산물 유통정책은 도매시장 자율성과 경쟁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방향 전환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즉, 수산물도매시장의 거래제도에 있어서 유통주체들의 자율성을 부여하되 거래내역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거래제도의 공정성 제고하며, 수산물유통사업에 민간유통업체 참여를 확대,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유통의 효율성 제고하는 방향으로 도매시장간 거래허용과 영업범위의 확대방안도 추진하고자 하였음.

- 이를 위해 표준정산서의 사용, 전자상거래제도의 도입, 거래기장의 의무화 등으로 거래내역의 투명성 확보와 공정한 거래질서를 정착하기 위하여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음.
- 도매시장평가제도를 시장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및 자금지원 등의 차등화 방안을 마련하고, 유통자금을 종합자금 지원방식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도매시장에 대한 컨설팅과 평가를 강화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도모하는 체제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자 하였음. 또한, 시장실태조사제도를 도입, 공정한 평가기관에게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함으로써 유통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적시적인 대응조치를 강구하고자 하였음.
- 소비자를 지향하는 수산물 유통체계의 구축
 - 수산물 수요분석, 홍보, 광고 등을 통해 소비자의 선호를 도출하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 지향적인 정책으로 유통정책을 전환하며, 산지의 생산자조직의 육성하며, 소비지에는 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건설하는 등 생산지 중심의 정책에서 소비지중심의 물류체계를 개선하고자 하였음. 뿐만 아니라 수산물의 위생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매시장내 위생안전검사를 담당하는 기구의 설치방안을 마련하였음.
-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거래와 물류효율화에 중점
 - 기존 도매시장에 대한 정책을 물류센터, 공영도매시장의 건설 등 대규모 시설 투자중심에서 시설운영의 효율화, 등급 규격화 및 제품의 브랜드화, 그리고 유통정보화 등 시설관리 및 운영중심으로 전환하며, 물류합리화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도록 현대화된 전산정보처리를 활용한 계산 및 조정을 통해 합리적인 수송체계를 구축하여 비용절감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생산에서 소매까지 유기적인 거래와 물류, 그리고 정산(精算)을 조정할 수 있는 물류관리시스템 구축하도록 유도하였음.

- 정보화, 전자상거래 등 현대적 유통거래기법의 도입
 - 수산물 생산자에게 생산에 관한 관측정보 뿐만 아니라, 소비자 선호의 변화 및 해외시장 동향 등 수산물의 수급과 관련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량의 정보를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망을 구축하도록 하고자 하였음. 또한 소비자가 전자상거래로 값싸고 안전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직거래 시스템을 확대하여 유통단계를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였음.
 - 유통정보화 및 전자상거래 제도의 시행을 위한 자금 및 시설은 국가적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하며,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 제도의 도입하여 정보화를 지원하고, 출하시점분석시스템, 최적 수·배송시스템, 집·출하정보시스템 등 인터넷을 통한 물류정보체계의 구축, 수산물 도매시장 통합홈페이지⁵⁰⁾ 등 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명시하였음.

- 수산물의 위생안전의 확보를 통한 소비자의 수산물에 대한 신뢰 확보
 - 국민의 식품안전 및 위생에 대한 요구에 부응, 수산물의 유통단계에 있어서 안전 및 위생 확보를 강화하기 위해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의 관리를 도매시장의 운영 및 관리의 중점사항으로 강조하며, 수산물 위생안전의 관리기준을 마련, 일반소비자의 위생안전에 대한 요구도 충족시키도록 노력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위생수준에 맞지 않는 수산물은 경고, 반송, 리콜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 생산자 및 유통인들의 위생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며, 생산, 출하, 유통단계에서 위생안전이 확보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였음.

50)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관한 통합 홈페이지는 농림부 산하기관인 농수산물정보센터에 위임하여 관리하는 통합홈페이지(<http://market.affis.net/>)가 있음.

2) 수산물유통에관한법률(안)의 구조와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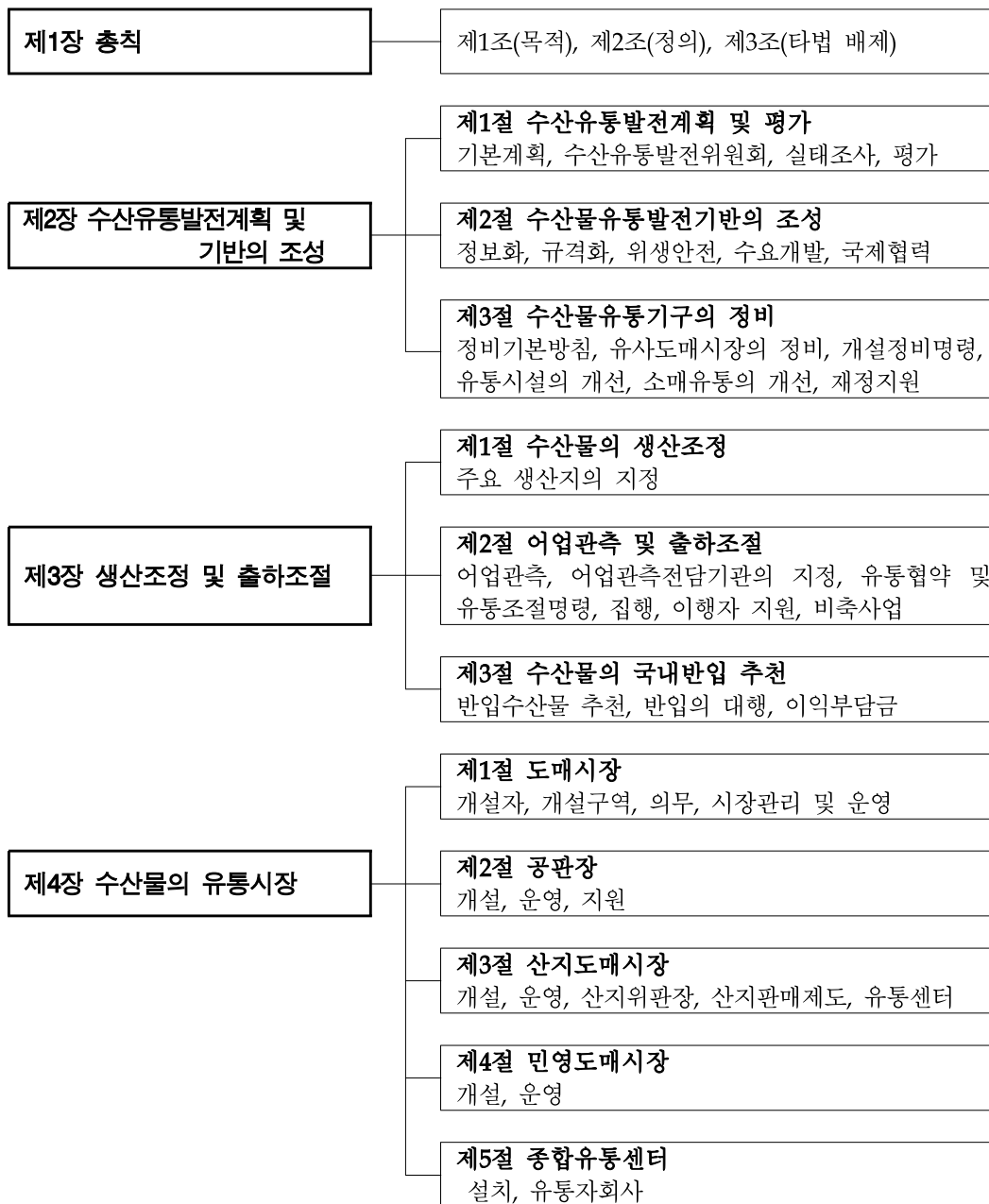
■ 수산물유통법안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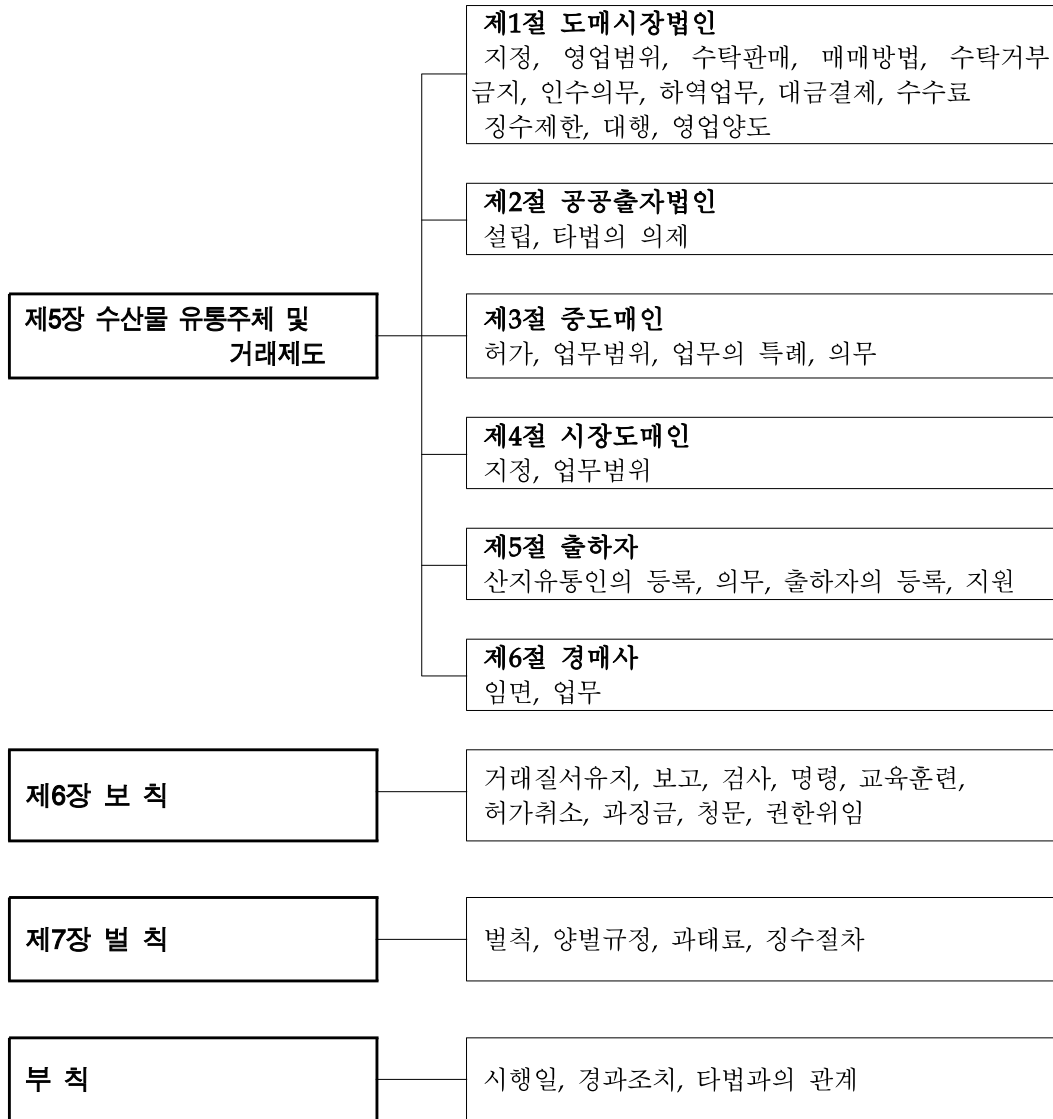
- 수산물유통에관한법률(안)은 총칙을 비롯한 모두 7개의 장과 부칙으로 구성되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총칙은 목적, 용어의 정의 및 타법의 배제에 관한 것이며, 제2장은 수산물유통발전계획 및 기반의 구성에 관한 것으로, 총 3개의 절로 구성되는데 제1절은 수산물유통발전계획에 관한 것이며, 제2절은 수산물유통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수산물 유통의 정보화·규격화·위생안전·수산물의 수요개발·국제협력 등 수산물유통발전기반의 구성에 관한 것이고, 제3절은 정비기본방침, 유사도매시장의 정비, 개설정비명령, 유통시설의 개선, 소매유통의 개선, 재정지원 등 수산물유통기구의 정비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3장은 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정에 관한 것으로 모두 3개의 절로 구성되는데, 제1절은 수산물의 생산조정, 제2절은 어업관측 및 출하조절, 제3절은 국내 반입수산물의 추천 및 이익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내용임.
 - 제4장은 수산물유통시장에 관한 것으로 모두 5개의 절로 구성되는데, 제1절은 도매시장, 제2절은 공판장, 제3절은 산지도매시장, 제4절은 민영도매시장, 제5절은 유통종합센터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5장은 수산물유통주체 및 거래제도에 관한 것으로 모두 6개의 절로 구성되는데, 제1절은 도매시장법인, 제2절은 공공출자법인, 제3절은 중도매인, 제4절은 시장도매인, 제5절은 출하자, 제6절은 경매사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6장은 보칙으로 거래질서의 유지, 보고 및 검사제도, 시정조치 및 명령, 교육훈련, 허가의 정지 및 취소, 과징금의 부과, 행정제재에 대한 이의절차로서의 청문제도, 하부기관으로서의 권한위임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제7장은 벌칙으로 일정한 위반행위를 중한 경우와 경한 경우로 나뉘

어 징역 및 벌금을 차별적으로 부과하며, 개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소 속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 있음.

- 부칙은 시행일, 경과조치, 타법과의 관계에 관한 것을 규정하고 있음.

<표 6-1> 수산유통법의 구조





■ 수산물유통에 관한 법률(안)의 신설내용

(1) 수산물유통발전기본계획

< 법 제4조 내지 제6조, 시행규칙 제4조 >

-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유통의 발전을 위하여 시·도지사, 시장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산물유통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함.
- 유통환경의 대외적 변화에 부응하고 수산물유통체계를 선진화하기 위하여 수산물유통발전계획을 단기 및 중장기로 구분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 수산물유통발전기본계획은 일정한 기간(5년 정도)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유통질서를 점검하고 그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법규정에 반영하며, 이를 통하여 수산물유통의 규격화, 정보화, 위생안전, 자금 및 시설지원, 정기적 실태조사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두고 있음.
- 수산물 유통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기적인 점검과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수산물 유통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였음. 주요내용으로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유통의 발전을 위하여 시·도지사, 시장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산물유통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수산물유통발전기본계획에는 수산물유통발전을 위한 기본정책방향, 수산물유통발전을 위한 5년마다의 기본계획, 수산물유통발전을 위한 연차실행계획, 실태조사계획, 시장조사 및 평가계획, 유통정보화 시책, 규격화의 촉진을 위한 사업계획, 위생안전 확보를 위한 시책, 수산물의 소비촉진 및 수요개발 사업계획, 국제협력 사업계획, 수산물유통기구의 정비계획 및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의 구체적인 내용임.

(2) 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

< 법 제7조,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 >

-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유통기본계획, 실태조사, 시장평가, 위생안전, 어업관측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산유통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음
 1. 해양수산부 차관보, 수산정책국장, 수산물유통관련 과장
 2.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지역별 및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도매시장법인의 임원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3. 농수산물유통공사, 가락 및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 임원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4. 수산물유통관련단체 및 소비자관련단체의 임원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5. 수산관련연구기관 및 대학에 재직하는 수산유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해양수산부 장관이 위촉하는 자

- 최근, 수산물유통시장을 둘러싼 대외적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도매시장의 시설은 노후화로 인하여 현실의 수산물 유통거래시스템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임. 이러한 이유는 수산물 유통관련 정책입안 및 집행에 있어서 현실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과 함께 현실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그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에 기인하고 있음. 따라서, 수산물유통계획수립 및 정책집행에 있어서 적시성과 전문성, 그리고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산유통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유통정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이며 체계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수산유통발전위원회는 수산유통기본계획, 실태조사, 시장평가, 위생안전 및 어업관측에 관한 내용을 심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함으로써 수산물 유통정책의 수립 및 그 집행에 관한 적시성,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음.

- 수산유통발전위원회의 구성은 관련공무원, 연구기관, 생산자 및 소비자

등 수산물 유통과 관련된 당사자들을 망라하되, 해당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 경험 및 식견을 갖춘 자들로 구성함으로써 보다 장기적인 수산유통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으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민주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여 수산유통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였음.

- 이러한 수산유통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의 민주성, 공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여, 정책실패 위험의 감소로 사회비용 절감, 적시적인 정책수립 및 집행을 통한 생산자 및 소비자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3) 전자상거래의 도입

< 법 제56조 >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외의 장소에서 수산물의 판매업무를 하지 못함. 다만, 전자상거래 등 전자매체를 이용한 거래행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함

- 전자상거래란, 종이문서를 사용하지 않고 전자문서교환(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 전자우편(E-Mail; Electronic Mail), 전자게시판(E-Board; Electronic Board), 자금이체 등과 같은 정보기술(IT; Information Technology)을 이용한 상거래를 말하는데, 수산물 유통분야에서의 전자상거래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음. 첫째, 수산물의 거래방법이 실물거래 위주에서 견본거래, 전자상거래, 텔레마케팅 등 다양한 거래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둘째, 인터넷 이용자의 급증과 표준규격화 진전, 산지유통시설의 확충, 소비성향 및 구매패턴 다양화 등으로 수산물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셋째, 수산물 유통에 있어 실시간 경제원리가 적용되고 있으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성을 극복하는 무한경쟁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규모의 경제의 실현과 네트워크 경제화의 중시, 유통활동의 아웃소싱 등 상품공급 측면에서 다품종 소량생산 위주와 글로벌 소싱이 증가되고 있음. 넷째, 슈퍼마켓, 백화점, 할인점

등과 같은 대형 소매업체들이 독자적인 산지조달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직거래를 추진함에 따라 기존 오프라인 거래개선 및 비용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 대두되고 있으며, 다섯째, 도매시장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현재, IT기술을 활용한 신속한 정보제공 등 온라인거래 추진환경이 성숙되어 있다는 점과 여섯째, 원격거래에 따른 물류비용의 절감과 시장의 경영체질 강화를 위해 수·배송정보를 포함하여 생산에서 소매까지의 일체의 거래, 물류 및 정산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일관된 물류관리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표 6-2> 전자상거래와 전통적 거래방식의 비교

구 분	전자상거래	전통적 거래방식
유통채널	기업 → 인터넷 → 소비자	기업 → 도매상 → 소매상 → 소비자
거래지역	전세계가 판매대상, 지역	일부지역에 한정
거래시간	24시간 영업	제한된 영업시간
판매방법	네트워크상의 가상공간	시장, 상점 등 판매공간 필요
정보획득	온라인으로 수시 획득	시장조사, 영업사원이 획득
마 케 팅	상호작용적 마케팅	일방적 마케팅
고객대응	고객요구를 신속히 해결	고객불만에 대응 지연
소요자본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	토지, 건물 등 고액의 자금소요

- 최근 전자상거래 및 온라인거래 확산으로 산지에서 최소 4~5단계의 중간상인의 손을 거치던 기존의 거래방식이 점차 전환되고 있으나,⁵¹⁾

51) 농림부 산하 한국농림수산물정보센터(egohyang.com), 경매사이트 옥션(auction.co.kr), nepfish.net, 농수산TV, 홈쇼핑, ryujin.pe.kr, 학사농장(62farm.co.kr), 에덴양봉원(honeyfarm.net), 선한 농부마을(im2u.co.kr), 와이팍(yfarm.co.kr), 무화과 삼호농협(samhoh.com) 등이 대표적인 것임. 2002년의 경우에 농림부가 개최한 농산물 전자상거래 경진대회에서 최우수농가로 칠곡

이에 관련된 정비가 부족하여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 수산물과 관련된 법률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02. 3. 30, 법률 제6688호)”은 통신판매의 일종으로 전자상거래의 경우에 농축산물 등 1차 식품은 법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⁵²⁾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002. 3. 30, 법률 제6687호)은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주로 분쟁발생시 생산업자에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 상황임.⁵³⁾
- 이러한 전자상거래법은 영세 농어업인들과 기업형 전자상거래업체에게 동일한 법적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영세 농어업인들의 사무처리 능력부족과 초기 비교적 높은 투자비용이 투입되는 등의 문제점을 양산하여, 수산물 전자상거래의 위축이 예상되고 있음. 반면, 수산물의 거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농안법에서는 전자상거래에 관한 직접규정은 없고, 오히려 도매시장법인이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농수산물의 판매업무를 하지 못하게 규정함으로써(농안법 제32조), 이를 형식적으로 좁게 해설

토종홍화씨(honghwa.co.kr), 안동시 길안면(안동88사슴방목장 8843.co.kr), 생매실, 매실가공품 칠곡군 기산면 송광설중매, 상황버섯(청량농원, aam.co.kr), 참외 성주 도흥참외(dohung.co.kr) 등이 선정된 바 있음. 농민신문(2002년 6월 19일).

5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02.3.30 법률 제6688호) 제3조(적용제외)

③이 법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재화등의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2002.7.24 대통령령 제17685호) 제4조 (소비자의 범위) 법 제2조 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소비생활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재화 등을 농업(축산업을 포함한다) 및 어업활동을 위하여 구입한 자로서 축산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육규모 이상의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외의 자 및 수산업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원양어업자외의 자

53)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2. 7. 24, 대통령령 제17684호) 제2조 (소비자의 범위) ①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소비생활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재화등을 농업(축산업을 포함한다) 및 어업활동을 위하여 구입한 자로서 축산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육규모 이상의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외의 자 및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원양어업자외의 자

하는 경우에 전자상거래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음.

- 따라서, 수산유통의 전자상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수산물의 전자상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고 관련사업을 위하여 자금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대한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수산물 유통의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제도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임. 첫째, 출하자 시스템, 도매법인 시스템, 중도매인 시스템, 소매업자 시스템 및 물류정보관리시스템을 포함해야 하며, 둘째, 출하자 시스템은 출하 및 판매 예정정보, 수주정보확인, 출하확정, 정산 및 송금정보, 청구 및 조회 정보 등으로 구성되어야 함. 셋째, 도매법인 시스템은 입하예정정보의 조회, 발주정보, 입하확정정보, 집하 완료정보 및 청구정보의 확인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넷째, 중도매인 시스템은 입하예정 및 확정정보 조회 및 공개로 이루어져야 함. 다섯째, 소매업자 시스템은 매참인이나 매출인이 도매법인·중도매인으로부터 구입한 상품에 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여섯째, 물류정보관리시스템은 시장내 물류의 원활화를 위해 트럭기사에 의한 도착시각입력, 집하장에 의한 트럭 도착시각의 조회 및 도착지시, 도매법인에 의한 트럭 도착시각과 착하상황(着荷狀況)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수산유통의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유통단계를 줄여 유통비용을 감소시켜, 생산자의 수익을 향상시켜 이를 통해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저렴하고 안정된 수산물 공급망의 구축이 가능하며, 수급과 관련된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여 생산자 및 소비자의 편익증대와 해외수출의 활로가 개척될 수 있으며, 수산자원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기반이 구축되어 수산자원의 관리, 보존 및 이용과의 조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유통전반에 있어서 전자상거래는 향후 그 비중이 계속적으로 증대하고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추세를 이루고 있는 상황하에서, 수산물 유통의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적용대상과 사업의 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4) 위생안전

< 제12조(위생안전의 확보) >

- 도매시장, 공판장, 민영도매시장 및 산지위판장, 기타 유통 및 가공시설에 있어서 수산물유통의 위생안전 확보를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시장개설자,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시장도매인 및 기타 유통관계자에 대해 위생점검 등 위생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하거나 위생안전사업을 위한 자금 및 시설을 지원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시장위생점검기관을 지정

- 수산물 거래를 규정하는 농안법에는 위생관리제도에 관한 규정이 없고,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시행규칙(제68조) 등 지자체의 자치법규에 위생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시장내 반입, 유통되는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식품위생상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잔류농약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잔류농약검사에서 “양성반응”으로 판정된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이 규정한 식품위생 검사기관에 정밀검사를 의뢰하며, 위생검사 및 조치결과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자에 대하여 도매시장내의 출하금지, 영업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는 소극적인 차원에서 위생안전을 다루고 있는 상황임.⁵⁴⁾
- 식품위생법은 식품의 위생관리에 기본법으로 유해식품의 판매금지, 회수 및 시정명령, 허가취소 등의 제도를 갖추고 있으나, 도매시장에서 연중 거래되는 많은 물량의 농산물 및 수산물에 대한 위생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⁵⁵⁾ 수산물의 위생안전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 산

54) 예를 들면, 서울시 농수산물공사의 경우에 농약안전성검사를 실시하여 6개 청과 도매시장 법인취급하는 22개 품목에 대하여 반입금지 처분(농민신문, 2004년 2월 27일).

55) 식품위생법(2003.9.29 법률 제06986호)

제4조 (위해식품등의 판매등 금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식품 등은 판매하거나 판매

하의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이 1차적인 책임기관이며, 동기관은 수산물의 품질향상과 수산물을 섭취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수산물에 잔류된

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지 못한다.

1. 찌었거나 상하였거나 설익은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2.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3. 병원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그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의 혼입 또는 첨가 기타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5. 제22조 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것
6.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 평가의 대상에 해당하는 농·축·수산물 등으로서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성 평가결과 식용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7.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제31조의2 (식품등의 자진회수)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 등을 제조·가공·소분 또는 수입한 영업자는 당해 식품 등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유통중인 당해 식품 등을 회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5조 (시정명령)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영업을 하는 자와 기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영업을 관할하는 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그 시정명령이 이행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6조 (폐기처분 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업을 하는 자가 제4조 내지 제6조,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식품 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식품위생상의 위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용도·처리방법등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2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가공·조리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나 이에 사용한 기구 또는 용기·포장등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할 수 있다.

제58조 (허가의 취소 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의 폐쇄(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중금속, 패류독소 등 유해물질의 허용기준을 정하고 식품위생법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잔류허용기준을 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나, 검사의 종류에 따라 국내소비용, 정부비축용, 수출용, 수입용 및 국내이식용 수산물검사로 이루어져 있어, 수산물유통에 관한 위생안전관리가 누락되어 있는 상황임.

- 수산물 유통과정상 위생안전의 문제점은, 유통과정의 부주의, 유통시간의 지연, 유통시설의 미비 등으로 식중독균이나 비브리오균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음. 도매시장의 경우, 위생안전을 위한 지도, 도매시장으로 출하되는 수산물에 대한 시료검사, 샘플검사 등의 위생안전을 위한 관리체제가 미비한 실정임.
- 일부 도매시장(노량진시장)에서 리콜제도(규격봉투로 판매 후 3일내)를 시행하고 있으나 전국적인 리콜제도가 아직 정착되고 않고 있으며, 판매한 수산물을 섭취하고 질병이 발생한 경우 등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제도가 미흡함. 따라서 위생안전에 대한 법규정의 도입은 유통과정에 있는 수산물에 대한 위생검사 및 관리체제를 완비하여 국민의 건강 및 안전을 도모하고, 리콜 및 반품, 피해보상제도를 도입하여 수산물 위해요소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데 있음. 이러한 위생안전에 대한 규정을 통하여, 향후 품목별 유통경로추적(Traceability), 원산지표시 및 품질인증제도가 정착되어 일반국민이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수산물에 이미지 고취와 함께 궁극적으로 생산자, 유통인 및 소비자의 이익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이를 위하여 수산물 유통의 위생안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데 있어, 위생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고, 위생안전에 필요한 사업을 위한 자금 및 시설을 지원하며, 수산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수산물에 잔류된 중금속, 패류독소, 식중독균, 항생물질 등의 유해물질을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 및 식품위생법에 따라 잔류허용기준을 넘는지를 조사하도록 규정함. 조사대상은 도매시장으로 출하된 수산물과 수산물유통을 위하여

사용 또는 이용하는 용수, 시설 및 자재 등을 대상으로 하며, 조사기관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 검사기능을 부여하는 것으로 함.⁵⁶⁾

- 위생점검의 결과, 유해물질이 허용기준을 넘는 때에는 출하자에게 서면으로 기준초과사실을 통지하고, 용수, 시설, 자재 등의 개량명령과 이용, 사용의 금지, 수산물의 출하연기, 용도전환, 폐기명령과 처리방법을 지정하고, 출하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과학적 원인규명이 되지 않더라도 소비자의 불만이 제기되는 경우 판매된 수산물의 리콜, 실비보상, 환불조치 실시, 제조물책임(P/L)보험가입을 의무화하여 소비자 피해구제대책 수립 등 리콜제도, 소비자보상 및 구제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임.

(5) 수산물의 수요개발

< 법 제13조, 시행규칙 제14조 >

-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소비촉진 및 수요개발을 위한 사업을 지원함
- 수산물 소비촉진 및 홍보, 건강기능성 식품의 개발, 기타 수산식품 수요개발 등 수산물의 수요개발사업을 지원함

- 본 보고서 제3장 우리나라의 수산물유통현황과 구조의 <표 3-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도시인구 1인당 수산물 소비지출의 변화 원

56) 잔류농약검사제도(가락시장의 경우)

1. 잔류농약 허용기준
사람이 매일 일생동안 농산물을 먹더라도 그 농산물에 잔류하는 농약으로 인해 건강상의 위해를 받지 않는 기준을 말함
2. 검사 대상
검사 가능한 농약 성분은 클로르피리포스 등 30여종(살충제), 클로로타로닐 등 10여종(살균제)
3. 검사기준
부적합 : 저해율 50%이상인 양성품에 대해 정밀검사 결과 잔류농약 기준치 이상일 경우 내리는 판정
음성 : 저해율 50% 미만일 경우 내리는 판정
4. 무상검사
도매시장에 출하하기전, 밭 전체에서 20여 잎 정도를 골고루 채취하여 출하지의 성명, 출하지역, 연락처 및 살포 농약의 종류와 최종 살포시기를 명기하여 관리공사 안전성검사반이나 경매시간 전 공사직원이 경매장에서 시료 채취시 의뢰.

인으로는 수산물이 건강식, 고급화된 음식이라는 인식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최근 들어 핵가족의 심화, 5일 근무제의 확산, 독신자들 및 노령인구의 증가 등으로 식품소비패턴이 변화되고 있고, 이에 발맞춰 수산물의 소비형태도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음. 그러나, 아직까지 수산물의 유통상의 문제로 인하여 수산물은 지지분하고 비위생적인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며, 이는 특히 젊은 소비자계층의 수산물에 대한 기피현상을 유발하고 있음.

- 따라서, 수산물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수산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건강, 장수식품으로서의 수산물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여 수산물의 소비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수산물 유통정책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적극적인 수산물에 대한 홍보사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으로는 그동안 수산물의 소비촉진에만 그쳤던 홍보사업을 우리 수산물의 안전하고, 깨끗하며, 그리고 국민 건강에 이로운 식품이라는 이미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지원사업도 보다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6) 수산물의 국내반입 추천

< 법 제32조~제34조, 시행규칙 제27조~제29조 >

- 수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한 국내반입수산물의 추천, 추천대상품목
- 국내반입의 대행, 대행기관의 지정
- 국내반입수산물에 대한 이익부담금의 징수, 및 징수기준

< 문제점 >

- 관세법으로 무관세를 인정한 국내반입수산물에 대하여 타법에서 일정한 이익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재검토
- 원양어업자의 입장에서 원양수산물의 국내반입에 대한 이익부담금을 징수하더라도 그 용도는 설립추진인 가칭 “해외어업협력재단”의 기금이나 원양어업에 대한 기금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국내반입수산물에 대하여 이익부담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현실적으로 원양어업인들의 반발 예상

- 해외합작사업에 의해 무관세로 국내에 반입하는 수산물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의 추천을 받도록 하여 반입량, 가격 등에 대한 관리와 수입수산물에 대한 이익금 부과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인 방안으로, 국내반입수산물의 추천대상품목 및 추천절차, 추천업무의 대행, 국내가격과 반입가격간의 차액의 범위 안에서 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되, 수입수산물에 대하여 부과한 이익금은 어업인지원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의 납입하여 수산물 유통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재원으로 이용하고자 함.
- 구체적 방법으로는 해외합작사업에 의해 무관세로 국내에 반입하는 수산물에 대해 일정한 이익금을 부과하여 수산발전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며(이익부담금은 연간 감면액 427억 원의 10%인 42.7억 원으로 예상), 어업인의 경영개선 및 소득증대뿐만 아니라, 수산물 유통업에 기금을 사용함으로써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함.
- 그러나, 이러한 반입수산물에 대한 이익부과금은 몇가지 측면에서 고려할 점이 있는데, 첫째, 관세법으로 무관세를 인정한 국내반입수산물에 대하여 타법에서 일정한 이익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둘째, 원양어업자의 입장에서 원양수산물의 국내반입에 대한 이익부담금을 징수라더라도 그 용도는 설립추진인 가칭 “해외어업협력재단”의 기금이나 원양어업에 대한 기금으로 한정하여 부과금의 목적에 부합해야 하는 점과 함께, 셋째, 국내 반입수산물에 대하여 이익부담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현실적으로 원양어업인들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타 산업과의 형성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를 고려해야 할 것임.

<표 6-3> 해외합작 국내반입수산물의 현황

(2003년 말 현재)

구 분	내 용
반입내용	명태(146,000톤), 연육(2,888톤), 홍어(1,526톤), 냉동오징어(326톤), 기타(4,719톤) 등
총반입량 및 금액	총 155,455톤, 1,463억원(1억 2,100달러)
총감면액*	427억원(3,560만달러)

주 : 명태(30%), 연육(105), 홍어(30%), 오징어(30%)에 대한 관세감면비율에 수입단가를 곱한 금액임.

자료 : 한국원양어업협회, 내부자료(2003년).

(7) 산지시장의 도매시장화

< 법 제45조~제50조, 시행규칙 제36조~제37조 >

- 산지도매시장의 개설, 개설승인절차
 - 산지도매시장의 운영 및 거래방법
 - 산지위판장의 설치, 운영 및 거래방법의 준용, 중도매인에 대한 준용
 - 개설자의 업무규정에서 운영 및 거래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본 보고서 제3장의 산지시장의 시설현황(<표 3-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234개소의 산지위판장이 연근해 어업생산의 거점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통시설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산지위판장의 계통출하비율의 편차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일부 특정지역에 대한 집중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전체 위판장의 약 10% 정도는 산지시장에서 도매시장 성격에 가장 가까운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대형할인점이나 백화점 등이 산지위판장의 중도매인과 직거래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등 유통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산지위판장이 지역의 거점 도매시장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수산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등에는 산지위판장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음.⁵⁷⁾

- 산지시장이 수산물유통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지만 조직과 서비스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산지시장은 생산 및 공급 구조의 변화, 생산의 규모화 및 단지화, 산지 유통기능의 종합화, 산지 표준규격화와 물류표준화의 진전 등을 통하여, 이를 규모화하는 방향으로 산지위판시설에 대한 법적 지위부여를 해결해야 하며,
- 산지위판장은 연근해 어획 수산물의 약 71% 정도가 거래되고 있는

57) 산지도매시장화와 관련한 위판장의 관련법 규정은 다음과 같음.

- 어항법상에는 위판장이 기본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 어항시설의 기본시설로 수산물위판장을 규정(법 제2조)
 - 귀속대상외의 어항시설로 수산물위판장을 규정(법 제17조)
 - 해양수산부 직제(대통령령)의 업무분장에 규정
 - 수산정책국장의 업무분장으로 위판장을 규정(제16조 제2항 제12호)
- 농안법
 - 산지의 경우는 산지유통인에 관한 것과 산지집하장에 관한 것만을 규정하고, 수협위판장과 그 중매인에 관한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농안법 제2조)
 - 산지판매제도에 관한 규정에서 산지경매제를 실시하는 등 산지위판장의 업무에 관하여 간접적으로 규정(법 제49조 제1항)
 - 강제상장제는 구수산자원보호령이 근거법이 될 수 있었으나, 수협위판장에서의 강제상장제가 폐지된 현시점에서는 수산물유통 산지시장의 상장제도는 그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되었음
 - 따라서, 수산물 산지시장의 상장제도는 농안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농안법상의 거래제도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제60조)
 - (구)수산자원보호령에 의해 양륙 및 판매장소가 수협 위판장으로 제한되어 수협이 산지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에서 일정한 조합의 행위에 대해서는 동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나, 수협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는 않고 간접적으로 어업인의 조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수협이 동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제60조)
 - 그러나, 이는 유통관련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구수산자원보호령의 규정에 의해 부수적으로 발생한 반사이익이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제60조)에 의해 그 독점적 지위에 대한 법적근거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60조 (일정한 조합의 행위)

이 법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조합(조합의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공정거래행위 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가격을 인상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규모의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할 것
2. 임의로 설립되고, 조합원이 임의로 가입 또는 탈퇴할 수 있을 것
3. 각 조합원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질 것
4. 조합원에 대하여 이익배분을 행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가 정관에 정하여져 있을 것

중요한 생산시설이자 유통시설이므로, 산지시장에서 가공처리하여 소비지로 직접 출하함으로써 유통비용의 절감과 선도 높은 가공원료의 안정적인 확보, 산지시장의 유통경로를 단축하고 다각화하기 위하여 지역별, 규모별로 거점시장을 육성하여 기존 대형 산지위판장을 도매시장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대형 산지위판장을 도매시장화함으로써 산지도매시장에서 1차 경매된 수산물에 대하여 소비지도매시장에서 경매를 줄이고 정가·수의매매를 확대함으로써 유통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산지위판장의 출하물량을 소비지 도매시장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연계시켜 소비지도매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반면, 손익분기점 이하인 부실 산지위판장의 경우, 필요시 집하장, 바다로마트, 유통센터 등을 단계별로 타유통시설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산지시장의 유통경로를 단축하고 다각화하기 위하여 지역별, 규모별로 거점시장을 육성하여 기존의 위판장을 도매시장화함으로써, 다양한 유통경로를 창출하여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산지위판장 시설의 현대화, 가공·소포장·하역기계화 등 산지에서부터 표준화, 규격화를 지원하여 고부가가치의 창출 및 유통비용 절감을 이루고자 함. 산지위판장을 규모별 및 거점별로 그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은 <표 6-4>과 같음.
- 또한 산지위판시설에 대한 법적 지위의 부여와 함께 산지위판시설에 대한 현대화를 통하여 작업의 기계화, 자동화를 지원하여 인건비 절감, 작업능률과 공간이용의 효율화 도모함. 또한, 선도유지, 위생안전의 확보를 위한 저온유통체계(Cold Chain system)를 구비하고 수송장비의 규격과 포장단위 치수, 운반하역장비, 팔레트, 창고보관시설의 규격화, 표준화 추진하며, 산지유통전문조직의 활성화, 자율성과 주도권을 보장, 품목별 수급안정과 가격안정정책을 연계,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산지시장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임.

<표 6-4> 산지위판장의 기능 활성화 방안

농안법	수산유통법(안)
산지위판장의 도매시장화	○ 소비지에 가깝고 소규모 위판장이 밀집, 물량이 연중으로 집중되는 지역으로, 일정기준을 설정 (예, 통영·인천·여수·포항 등)
산지위판장의 공판장화	○ 인구수나 거래물량을 기준으로 일정기준을 설정하여 소규모 위판장의 통폐합을 통해 규모화 추진 (예, 동해·속초·삼천포·후포·강진·군산 등)
산지위판장의 집하장화	○ 인구수나 거래물량이 매우 적어서 계속 유지가 어려운 곳을 통폐합하여 집하장으로 활용 - 생산물의 수집·선별·처리·포장하는 기능

(8) 거래내역의 투명성 확보

< 법 제58조 제2항, 제69조 제2항, 제72조 제3항 >

- 도매시장법인은 경매, 일찰, 정가 또는 수의매매한 거래장부를 작성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매월 말까지 이를 보고하여야 함
-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위 거래장부를 매회계년도말을 기준으로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
- 거래장부의 보고 및 유지의무를 중도매인 및 시장도매인에도 준용함

- 도매법인, 중도매인 및 시장도매인 등 유통주체들의 거래량, 거래금액 및 거래가격을 공개하고 이를 정확하게 보고하는 것은 탈세의 방지 및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에 있어서 선결과제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매년 불법거래행위나 탈세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은 거래내역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유통업의 조직화와 전문화 등을 통하여 거래규모의 대형화 추세와 소비자 유통업체와의 직거래가 확대되는 가운데 출하자와 공급자, 도매시장운영 주체의 거래내역이 보다 투명하게 확보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임.

- 대부분의 도매시장에서 중도매인과 정산조합은 거래가격이나 유통정보를 공시 또는 분산하지 않고 있으며, 개설자(가락시장, 부산엄궁, 부산반여)가 일부 품목에 대하여 거래실적 및 가격 등을 공개·전파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음. 중도매인은 사업의 영세성과 거래가격 및 거래물량 등에 대하여 영업기밀을 이유로 외부에 거래내역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거래의 투명성에 있어 자유롭지 못한 상황임. 도매시장의 거래내역에 대하여 현재, 관리사무소(공사)에서는 일부 품목의 거래에 대하여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의 미미한 공개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임. 예를 들어 가락동 도매시장의 경우, 거래내역은 비상장거래 허가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장부기장 소홀 및 비치 누락으로 공개가 누락되고 있으며, 영업실적 보고 지연, 물량신고 누락 등 대부분 거래내역에 대하여 비공개성과 관련된 이유로 거래내역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미국의 Blue Book, Red Book 등과 같은 유통업체 평가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의 여건에 적합한 방법을 선정할 수 있는데,⁵⁸⁾ 이를 통하여 거래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출하자와 소비자, 그리고

58) 미국의 유통종사자 신용평가제도

- 2개의 전문 신용평가기관의 유통사업자(회원)들에 대한 금융신용도, 대금결제, 도덕성까지 심층조사를 실시하며, 조사결과를 기호화하여 거래편람인 BLUE BOOK, RED BOOK에 수록·공표하여 거래자들의 참고자료로 활용
- BLUE BOOK의 발행기관은 PRODUCE REPORT CO.이며, 이 기관의 주요 사업은 농산물 취급 유통사업자(회원)에 대한 신용평가, 수급대행 서비스, 회원의 거래분쟁에 대한 중재 등
 - 평가기관의 회원 자격조건 : 연간간 회비를 지불하고 거래편람 대여료를 납부한 유통사업자로서 거래경험조사에 의한 도덕적 책임도의 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인 자, 그리고 다른 회원과의 거래 분쟁 발생 시 당사자간 화해가 곤란한 경우 신용평가회사에 의한 중재에 동의한 자
 - 회원대상 : 청과물 취급 유통사업자와 운송사업자(생산자, 중개인, 위탁상, 도소매상, 포장가공업자, 저장업자, 식품서비스업자, 수출입업자, 운송업자 등)
- 미국 BLUE BOOK의 평가체계
 - 신용평가항목에는 크게 일반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일반신용평가항목과 특수사업자(요주의, 제휴업자 등)에게 적용되는 추가신용평가항목으로 구분
 - 일반신용평가항목에는 사업체의 구조, 취급량, 취급상품, 도덕적 책임도, 금융신용도, 대금결제 신속도 등 6개 항목이 포함
 - 추가신용평가항목에는 법적 지위 및 조직의 개편정도, 지불이행도, 관련사업자와의 관

도매시장 유통주체간 거래에서 공개성, 공정성,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유통주체들의 거래내역을 투명화 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임.

■ 수산유통법(안)의 개정내용

(1) 실태조사

< 법 제8조(실태조사) 및 시행규칙 제7조 및 제8조 >

-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유통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매시장별 거래품목,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상장 및 상장예외 품목의 거래현황, 거래질서 위반행위 및 개선사항 등, 위생점검실태, 품목별 유통경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실태조사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데, 실태조사기관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으로 하며 실태조사결과를 수산유통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연도 2월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실태조사제도는 산지 및 소비지도매시장의 거래행위 및 방법의 구조적 문제점 및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하며, 거래품목·거래물량·거래가격의 현황 등을 객관적인 조사기관이 상시적으로 조사함으로써, 도매시장 종사자들이 자발적인 노력으로 도매시장의 운영개선을 유도하

계, 거래경험정도, 허가취소여부 및 경영상태 등 5개 항목이 포함

- 평가기준

- 사업체의 구조 : 평가대상사업자의 영업형태 구성의 상대적 중요도에 따라 분류기호의 약지로 표시
- 취급량 : 연간 취급물량을 트럭단위(20톤/대)로 표시
- 취급상품 : 취급상품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에 따라 상품기호 표시
- 도덕적 책임도 : 평가대상사업자의 성실성, 능력, 지불능력 등 도덕성에 대해 평가기관의 정기적인 거래경험조사를 통해 평가
- 금융신용도 : 평가대상사업자의 재무제표인 연말결산보고서에 의거 유동자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평가
- 지불신속도 : 평가대상사업자의 외상판매대금의 지불평균 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

고, 공정거래 정착과 도매시장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있음.

- 조사과정에서 얻어진 정보를 토대로 도매시장 운영개선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며, 이때 실태조사기관으로 수산관련 연구소 및 대학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조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할 것임. 구체적으로는 유통단계별 거래품목, 물량, 거래방법 등에 대한 객관적인 실태자료를 수집, 분석함으로써 적시에 적절한 수산유통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수산유통정책의 효율성 제고와 거래현황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파악함으로써 물류비용의 절감, 생산자의 가격 선택폭의 확대, 소비자의 요구도 만족 등 사회편익을 도모하고자 함.

(2) 시장평가제도의 개선

< 법 제9조, 시행규칙 제9조 >

- 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 공판장 또는 산지위판장의 운영·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중앙평가를 실시함
- 평가결과에 따라 사용면적의 조정·차등지원, 시장의 운영, 관리 및 거래제도의 개선,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시장평가는 다음의 절차에 의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연도의 평가대상·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을 정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시장의 개설자 등에게 통보
 - 시장의 개설자는 자체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수협중앙회는 자체 평가결과를 보고
 - 평가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중앙평가를 위한 실태조사자료 제출
 -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체평가 및 실태조사자료를 종합, 중앙평가를 실시

- 도매시장의 평가는 유통주체들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참여하에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전문연구기관이 정확한 평가를 하도록 하기 위해 평가절차 및 방법에 있어서 객관성, 과학성 및 민주성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그러나 현재는 정기적인 시장평가, 업무 및 행정

감사 등의 절차가 중복되어 시장관리 보다는 평가준비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임.

- 도매시장에 대한 평가내용에는 경매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의 제고, 물류체계 개선의 노력, 물량집하·분산활동의 강화 노력, 재무 건전성 확보, 도매시장법인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확대, 시장환경 및 시설물 관리, 평가결과의 피드백 강화 등의 계량 및 비계량 지표를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평가기준 및 절차에 있어서 실효성이 낮을 수 있으며, 평가결과의 공정성 및 적정성에 있어서 문제점이 노출될 수 있음.
- 따라서, 평가실시기관을 기존의 행정기관이나 시장개설자에서 유통관련 전문연구기관으로 변경함으로써 평가절차 및 과정의 공정성, 효율성 및 과학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음.

(3) 수산물의 유통정보화

< 법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 >

-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유통 효율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수산물 유통정보화와 관련한 사업을 지원하고, 유통정보화 촉진시책을 수립, 시행
- 유통정보화사업의 내용은, 유통정보관리시스템의 활성화·유통표준코드의 보급·유통표준전자문서의 보급·전자결제시스템의 구축 및 보급·전자상거래의 활성화·물류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보급 등임

- 유통정보화는 상품 흐름의 방향과 속도를 규정하고 원활하게 하는 요소로서 수산물 생산을 출발점으로 하여 소비에 이르는 수산물 유통정보를 매개로 하여 수집, 저장, 가공, 제공하는 모든 정보체계를 말함. 디지털시대가 도래하면서 21세기에 유통혁명을 주도하는 요인은 마케팅의 정보혁명으로서, 이러한 마케팅 정보를 포함하는 수산물 유통정보는 수산물의 유통과정에 참여하는 생산자, 소비자, 유통업자(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시장도매인) 등의 능동적인 유통과정 참여자들에게 보다 정확, 신속하고 유리한 거래조건의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생산, 제

공되는 의사결정자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

- 수산유통분야의 정보화 현황을 보면, 해양수산부, 수협중앙회, 도매시장 관리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이 주축으로 수산물 유통정보의 적시제공을 통하여 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 원활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참가자들의 거래의사결정에 대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유통정보시스템을 설치, 운용하고 있음.⁵⁹⁾ 이러한 유통정보시스템은 수산물 유통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수산물의 유통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고, 수산물 유통정보화 사업을 위한 자금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 앞으로 수산유통분야의 정보화를 위한 개편방안은 다음과 같음. 첫째, 출하시점분석시스템, 최적 수·배송시스템, 집·출하정보시스템 등의 물류정보, 도매시장 통합홈페이지, 도매시장관리, 지도체계, 도매시장 평가 등 도매시장 정책, 실시간 경락정보, 경락가격 동향 등을 포함하는 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임. 둘째, 수산물 정보시스템의 기본구조는 통합수산정보센터, 산지정보, 소비지정보, 정보수요자 등의 4개 그룹으로 이루어지는데, 통합수산정보센터는 어업정보와 수산물시장 정보가 입력되어 정리, 가공, 보존되어 필요에 따라 정보수요자에게 제공되어지는 방향으로 구성이 되어야 하며, 산지유통정보는 전국의 주요어항과 주요 위판장에서 다루어지는 양륙량, 위판량, 그리고 위판가격에 관한 정보를 기본요소로 구성되어 정보수요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소비지 유통정보는 전국의 주요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어종별, 품목별 입하량과 가격정보를 중심으로 각 대소비지의 수산물 소비동향, 재고정보, 수출정보 등으로 구성되어 정보수요자에게 제공되어야 함.
- 수산물의 생산, 유통, 소비에 대한 정확한 물량 및 흐름의 파악, 유통체계의 선진화 추구, 수산물유통의 표준화, 등급화 촉진, 수산물 관련 제품의 시장상품화로 생산자의 소득향상 등을 기대할 수 있음.

59) 예를 들면, 농산물 출하지원(chulha.net), ABS 농어민방송, 농산물가격정보사이트(kamis.co.kr), 서울시농수산물공사의 VOC시스템운용 등이 있음.

(4) 수산물의 규격화 촉진

< 법 제11조, 시행령 제5조, 시행규칙 제11조 >

- 수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공정한 거래형성을 위해 거래품목의 규격을 정함
- 유통주체에 대하여 표준송품장의 사용 등 필요사항을 명할 수 있음
- 표준송품장에는, 표준송품장의 발행일자 및 출하자명, 수령자, 출하자의 주소 및 연락처, 출하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출하물품내역(원산지·품목·품종·거래단위 및 단가·등급별수량), 품질인증번호, 운송내역(운송비·차량번호·운전자명), 판매대금 송금처(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 등을 기재

- 본 보고서 제3장의 <표 3-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매시장내 반입물량의 규격화 정도를 알 수 있는 파렛트 출하비율을 보면, 공영도매시장내 총 거래량의 약 3% 가량만이 파렛트 형식으로 규격 출하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전체 수산물 중 매우 미미한 수산물만이 규격화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음. 수산물 유통구조개혁을 위해서는 하드웨어적 유통시설 확충과 더불어 소프트웨어적인 물류기반의 조성이 필요한데, 정보화, 규격화 등 유통기반의 선진화가 수산물 유통구조개혁의 관건이라 할 수 있음.
- 수산물의 일부 품목에 대해 표준출하규격 등을 고시하였으나 물류표준화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는 물류표준화의 이행에 따른 인센티브가 거의 없고, 도매시장에 규격출하품을 출하하여도 비용만 추가된다는 의식이 팽배해 규격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음. 또한, 농안기금으로 매년 약 200억 원을 생산자 및 가공업자에게 지원하고 있으나, 규격출하품이 아닌 단순히 표준거래단위 적용품목 구매자금으로 사용되는 등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고, 현재 사용중인 파렛트는 대부분이 목재이거나 도매시장별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표준규격(1,100×1,100)이 아니어서 일관수송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

으며, 차량수송시 각 사업장간 서로 다른 단위로 운반되고 있어, 사업장간 물류유통시에도 파렛트화 작업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⁶⁰⁾

- 현행, 규격화 촉진에 대한 농안법의 내용은 수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공정한 거래형성을 위하여 거래품목의 규격을 일정하게 정하며, 우선경매의 실시, 표준송품장의 사용 등 규격화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거래품목의 규격화사업을 위한 자금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향후 수산유통분야의 규격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규격화 내용이 개편해야 할 것임. 첫째, 표준송품장 및 판매원표를 통일화하고, 규격출하품에 대해서는 판매에 가장 적합한 장소에 하차시키며, 가장 유리한 시간대에 경매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등의 우대조치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둘째, 물류표준화 장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는 생산자에게 품목별 규격표준화로 규격포장 및 용기로 출하하도록 유도하며, 산지수협에게는 하역기계화에 필요한 표준파렛트, 파렛트적재에 적합한 광폭차량, 지게차 등 하역장비 확보하도록 하며, 소비지도매시장에서는 하역기계화가 가능하도록 반입구에서부터 경매장까지 지게차 작업 및 통행에 필요한 공간확보와 DECK시설, 냉동·냉장시설 등 물류시설 구비, 파렛트 회수관리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또한, 표준송품장, 판매원표 등 농산물 거래서식을 표준화하여 유통정보화 기반을 구축하고, 표준송품장 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농산물 거래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며, 규격화의 촉진을 위하여 표준송품장의 사용여부 및 적정성여부 등을 점검하고 표준규격품의 출하를 유도함으로써 물류비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규격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60) 농산물 표준규격포장 촉진사업비로 2001년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농산물 포장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15kg 골판지를 기준으로 제작단가의 30%정도를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시농수산물공사는 가락시장운영협의회를 통하여 규격출하사업을 실시, 무, 배추, 마늘 등 8개 품목에 대하여 포장비의 70%를 지원하고 있음. 농민신문, 2002년 3월 15일. 또한, 완전규격출하품은 1개 파렛트당 1만원을 지원하는데 농림부가 50%, 서울시 농수산물공사가 50%를 부담하고 있음. 한국농어민신문(2003년 1월 20일).

(5) 어업관측 및 출하조절

< 법 제21조~제31조, 영 제8조~제18조, 시행규칙 제18조~제26조 >

- 수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주요 수산물의 생산지역이나 생산수면을 지정.
- 기상정보, 생산면적, 어황, 재고물량, 소비동향, 해외시장정보 등 어업관측
- 수산물수요자와 생산자간에 계약생산, 계약출하의 장려
- 자조금의 적립지원 및 조성방법, 보조금의 지급, 자조금의 관리·운영
- 가격예산, 가격예시대상품목
- 과일생산시의 생산자 보호, 과일 생산된 수산물의 수매 및 처분
- 유통협약 및 유통조절명령, 유통명령의 대상품목, 요청자, 수산유통조정위원회
- 유통명령의 집행, 이행자에 대한 지원
- 수급조절을 위한 비축사업, 비축사업의 위탁, 자금의 집행·관리
- 과일생산시의 사업손실처리, 비축사업의 비용처리

- 어업관측제도란 가격의 등락폭이 큰 주요품목에 대한 기상정보·생산면적·어황·재고물량·소비동향·해외시장정보 등을 조사하여 수급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⁶¹⁾ 즉, 어업관측 및 출하조절의 목적은 수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생산 및 출하를 촉진 또는 조절하고 동시에 해외시장의 수급동향과 수입수산물의 반입동향을 예측하며, 수산물의 가격안정을 유지하여 어업인 소득 및 소비자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국민일반의 경제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음.
- 본 법에서는 어업관측제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익성, 신뢰성 및 객관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기관에 관측업무를 위임하여 유통협약 및 유통조절명령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 이행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61) 예를 들면, 제주 감귤협의회는 감귤 생산자,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포함), 유통인(산지유통인 포함)으로 구성되어, 산지폐기(매년 10-12월, 생산예상량의 10), 유통금지(100과 미만 감귤, 300과 초과 감귤, 부패과, 미숙과, 병충해과), 위반시 300만원-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자율적인 조치로 감귤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다만, 이 경우에도 출하규제물량에 대해 감귤의 생산비(1kg당 350원) 보전대책, 감귤농가에 대한 유통명령제 시행 동의절차 및 사후 지도관리, 감독방안 등이 문제가 되고 있음. 농민신문(2003년 10월 27일).

(6) 도매시장법인의 영업범위 확대

< 법 제56조, 시행규칙 제41조 >

-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외의 장소에서 수산물의 판매업무를 하지 못하나, 전자상거래 등 전자매체를 이용한 거래행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함
- 도매시장법인은 수산물의 판매업무외의 사업을 경영하지 못하나,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물의 포장·가공·저장·운송·수출입 등의 사업은 경영할 수 있음
- 도매시장법인이 경영할 수 있는 사업은, 생산지에서의 포장·선별·보관 등 출하관련사업·신선도유지를 위한 저장업·수산물의 재포장 또는 단순 가공사업·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등임
- 도매시장법인이 경영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경영사업의 목적·내용·자금 운용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개시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다른 경영주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때에는 공동사업추진약관 등의 서류를 갖추어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 현행 농안법에서 도매시장법인의 영업을 도매시장내에서만 가능하도록 장소적 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며, 판매업무외의 사업을 경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도매시장법인의 업무를 위탁판매의 업무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유통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타업체와의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이라는 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반면, 농안법상 농산물 출하와 관련된 저장, 포장, 가공에 대한 겸업사업을 허용하고 있으나 참여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상황임.
- 이에 도매시장법인의 영업장소를 도매시장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도 전자상거래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종합유통센터·대형소매점의 확대 등 도매시장과의 경합관계에 있는 유통업체들의 등장으로 도매시장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도매시장법인의 영업을 활성화되도록 겸업사업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함. 또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며, 도매시장법인의 겸업사업의 범위를 현대적 기준에 맞추어 확대함으로써, 수익창출을 통한 경영의 합리화 달성, 소비자의 요구를 충

족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개정되어야 함.

(7) 산지경매물품의 정가·수의경매

< 법 제58조 , 시행규칙 제43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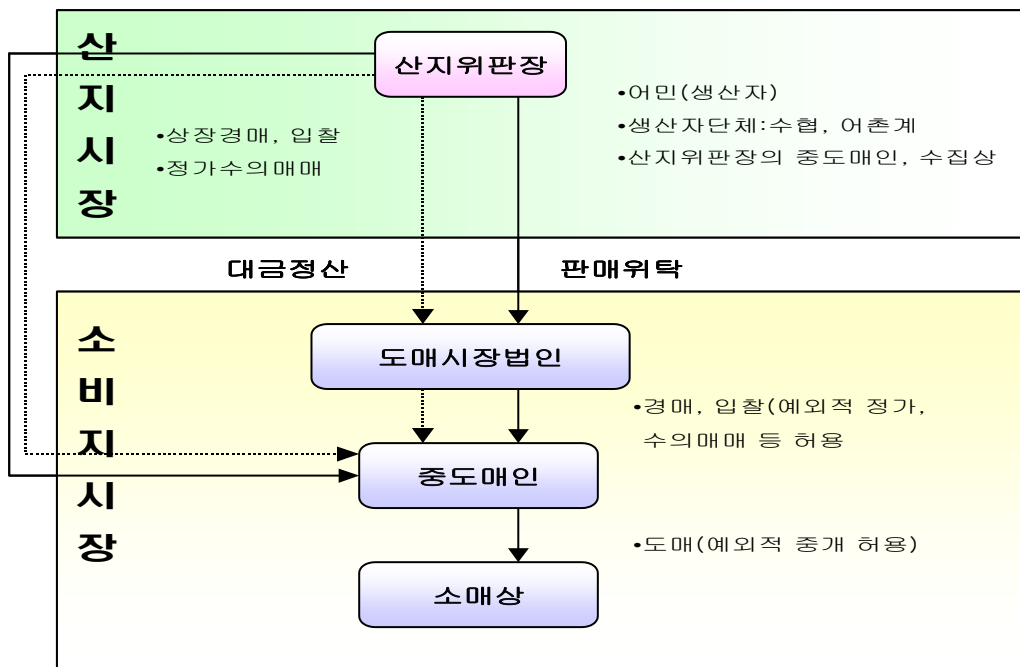
-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서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매매함
- 다른 도매시장, 공판장 및 산지위판장에서 가격이 결정되어 바로 입하된 수산물을 상장하여 매매하는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가 또는 수의매매를 할 수 있음
- 도매시장법인이 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한 경우에는, 매수하여 도매한 물품의 품목·수량·원산지·매수가격·판매가격 및 출하자, 매수하여 도매한 사유를 기재한 보고서를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본 보고서 제3장의 <표 3-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비지도매시장에서 주요거래방법으로는 상장경매의 방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고, 상장거래에 있어서는 수탁판매가 98%, 비상장거래에 있어서는 매수판매가 수탁판매 보다 약 4배 정도가 더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도매시장의 거래방법 중 특징적인 것은 출하거래선이 생산자 개인으로 전체의 약 63%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임. 이는 중도매인이 생산지에 출하상인을 실질적으로는 본인 스스로 하면서도, 농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집행위의 금지를 회피하려는 목적하에 차명으로 출하상인을 두고 출하하는 것이라 판단되고 있음.
- 본래 상장제도의 법개념은 유통관련법이나 기타의 법에서 명확하게 정하고 있는 법령상의 용어가 아니라, 과거 수산자원보호령에 의거하여 수산물은 산지에서 양륙장소가 제한과(수협 위판장) 판매장소의 제한이 생기면서 부수적으로 나타나게 제도로서, 이를 강제 상장제라고 통칭하고 있음.⁶²⁾

62) ○ (구)수산자원보호령 제19조(1999. 9. 30, 완전삭제)
 -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유통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업의 어획물은 수산청장이 지정하는 항구에 이를 양륙하여야 한다(제1항)
 -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항구에 어획물을 양륙하여야 할 어

- 수산물 유통의 특성상 생산자의 소비지 도매시장의 직접 출하가 어렵고, 산지위판장에서 1차 경매가 이루어진 후 소유권이 산지중도매인·화주·도매업자 등에게 이관되는 유통경로를 가지고 있음(그림 6-4> 참조). 그러나 소비지 도매시장의 물량유치 수집기능을 담당해야만 하는 법인들은 농안법상 위탁판매 거래원칙을 이유로 물량유치에 소극적이고, 산지중도매인들은 도매법인 상장시 가격 불안정을 이유로 소비지의 중도매인들에게 위탁판매하는 실정으로, 산지중도매인과 소비지중도매인 간의 거래관계에서 과거 위탁상의 독점 또는 공정한 가격결정을 방해하는 등의 폐해가 재연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그림 6-4> 수산물 산지 및 소비지시장의 거래



업의 종류를 정하거나 어업별 어획물의 양륙항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제2항)

- (구)수산자원보호령 제21조(1999. 9. 30, 완전삭제)
 -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산자원의 보호나 수산물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획물과 그 제품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양륙지역의 판매장소에서 이를 매매 또는 교환하여야 한다(제1항)
 - 해양수산부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획물과 그 제품을 고시하여야 한다(제2항)

- 도매시장내 거래방법은 도매법인이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매매하는 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특별한 경우에는 경매나 입찰이 아닌 정가매매나 수의매매방법으로 거래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⁶³⁾
 - 여기서, 특별한 경우란 시장법인이 직접 매수한 품목, 중도매인이나 매매참가인 외에 판매하는 경우, 천재지변, 비경매·입찰품목, 경매 후 입하품목, 선취매매품목, 타 시장에서 경매가 이루어진 확인된 품목 등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하고 있음.
 - 경매 또는 입찰 방법은 전자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거수 수지식, 기록식, 서면입찰식 등의 방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매시장법인은 당일 판매 잔여물량의 경우, 다른 사람에게 판매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문제는 도매시장내에서 거래방법 지정에 따라, 도매시장 유통주체(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출하자)간의 갈등 증폭하고 있는데, 도매시장법인은 경매제도의 확고한 정착에 대하여 주장하고 있으며, 반면, 일부 중도매인은 산지 출하자와 연계하여 상장예외품목의 지정 확대와 정가·수의매매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음. 출하자의 경우는 주산지별·출하자

63) 농안법상 거래제도의 근거규정

- 법 제32조(매매방법)
 -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매매함
- 법 제33조(경매 또는 입찰방법)
 -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 상장한 농수산물을 위탁한 순위에 따라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최고가격 제시자에게 판매하여야 함
- 법 제37조(시장도매인의 영업)
 -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할 수 있음.
- 시행령 제27조(상장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의 거래허가)
 - 법 제3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매인이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지 아니한 농수산물을 거래할 수 있는 경우
 - 반입물량이 소량인 경우, 취급 중도매인이 소수인 경우, 상장거래에 의한 거래가 곤란한 경우
- 시행령 제 28조(매매방법의 예외)
 - 법 제 3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이 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의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를 할 수 있는 경우

별로 선호방법 상이하여 유통주체들 간에도 합의가 되지 않고 다양한 견해가 표출되고 있는 상황임.

- 도매시장에 따라 출하자는 표준송품장 미사용, 중도매인이 표준송품장 대리 작성 시 물량조작 가능성이 있고, 반입신고소 운영에도 불구하고 표준송품장의 출하자 자진신고제도로 인하여 물량파악의 어려움과 중도매인의 차명출하형태로 거래가 발생할 수 있어, 수수료의 초과징수, 정산서 미발급, 대금결제의 지연, 가격결정의 비공개(수의매매)로 인한 불공정거래, 가격담합에 의한 저가형성, 장외거래, 품목장악에 의한 독과점 형성 등 많은 문제점 등이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이를 개선하여 공정한 거래질서의 형성 및 가격결정의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개정안의 목적임.

(8) 시장도매인제도의 재검토

< 법 제71조 및 제72조 , 시행규칙 제55조 및 제56조 >

-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3년 이상 10년의 범위내에서 지정함
- 시장도매인의 자격요건
 - 임원중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없을 것
 - 임원중 당해 도매시장안에서 시장도매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하는 자가 없을 것
 - 임원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없을 것
 - 임원중 시장도매인의 지정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자가 없을 것
- 지정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제출
 - 정관, 법인등기부 등본 및 주주명부, 임원의 이력서
 - 신청당시의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
 -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3년간의 사업계획서
 -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사업자금

- 시장도매인은 수산물도매시장 또는 민영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을 하는 법인으로, 지방도매시장은 농안법상 2000년 6월 1일부터 도입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중앙도매시장은 거래체계 및 시설의 정비 상황과 지방도매시장의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2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도입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음(농안법 부칙 제1조 제3호).

<표 6-5> 도매시장 운용주체들의 기능 비교

구 분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도매상)	비 고
영업장소	○도매시장	○도매시장	○동일한 시장내 경매제 (도매시장법인)와 도매상 병행가능
상품수집	○출하자로부터 위탁	○매수, 위탁 가능	
판매방법	○경매 또는 입찰판매원칙 예외로 정가·수의매매	○도매나 중개 가능	○도매시장법인은 국가시행자격 시험에 합격한 경매사를 통해 판매
판매대상	○허가받은 중도매인이나 매매참가인(최고가 제시 자)에게 판매 ○예외로 제3자 판매	○자유롭게 판매 ○동일시장내 도매시장법 인, 중도매인에도 예외 로 판매 허용	
대금결제	○출하자에게 대금을 즉시 직접 결제	○별도 정산창구를 통해 결제	

- 시장도매인제도의 문제점은 사회적으로 정착되어 온 도매시장 구조와 기능변화로 유통과정상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상장경매제가 정착되는 가운데, 또 다른 거래제도인 시장도매인제도로 인하여 도매시장거래가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임. 또한, 상장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도 병행은 공개경매제도가 위축되고 비공개 도매상거래가 확산되어 거래혼

란이 야기되어 출하자의 출하처 선택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고, 상장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를 병행할 경우 농산물가격을 비공개,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시장도매인들의 경매 교란에 따라 경매가 파행 운영되어 경매제도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음.

- 따라서, 향후의 유통정책이 현실적인 제약조건을 극복하고 도매시장이 산지와 소비지 모두의 요구를 충실히 이행한다는 측면에서 거래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당분간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흥정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시장도매인제도의 도입은 현실적으로 시기상조라고 볼 수 있음. 이러한 점에서 소비지 니즈(Need)의 충족이라는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현재의 경매제도를 유지하는 바탕위에 예약상대거래 또는 선취거래 등의 도입을 통해 분산거래 및 산지에 대한 유통정책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정책방향이 설정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장기적으로 시장도매인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도매시장의 유통주체들간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보하고, 시장도매인제의 도입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개별자산관리·비공개거래·정산과정에서의 비용절감으로 사회적 비용의 감소, 거래의 공정성·투명성 및 대금정산의 안전성 등의 제도를 마련하여야 할 것임.

3) 수산물유통에관한법률(안)의 입법추진 방안과 전략

■ 입법형태

(1) 농안법과는 별도의 독립된 수산유통법을 제정하는 방안

- 수산업은 국내 생산량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물성 단백질의 약 4할을 공급하는 공급원으로써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수산물 수급구조 뿐만 아니라 생산과 유통구조 및 소비자의 소비형태는 과거(농안법 제정 당시)에 비해 현저하게 변화하였음. 또한 수산물 유통을 관장하는 주무 행정기관도 농림수산부에서 해양수산부로 바뀌었음.

- 농수산물 유통을 둘러싼 이러한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산물 유통 관련법(농안법)도 수차에 걸쳐 개정이 추진되어 왔으나, 수산물 유통은 고유의 특성을 감안한 유통체제의 본질 문제를 해결치 못한 체 법과 현실과의 괴리를 그대로 떠안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농산물 중심으로 제정된 산지유통 규정으로 말미암아 수산물 산지 유통(위판장)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어 산지유통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 현행 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사업의 법적 근거가 되고 있는 농안법은 농산물 시장의 거래제도 및 농안기금을 중심으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산물 및 수산물을 대상으로 하는 유통만이 가지는 고유한 성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빠르고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내외부의 충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따라서 현행의 농안법 체제로서는 수산물을 둘러싼 다양하고 복잡한 생산-유통-소비체제를 반영하는 데는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음.
- 또한, 특히 농안기금 중 수산부문을 농림부로부터 이관하려고 할 경우에 법적 근거가 없어 새로운 법률의 제정 및 기존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임.
- 수산부문 가격안정기금은 해양수산부 발족 이후 농림부로부터 수산부문사업의 대부분을 이관하여 농안법 제44조에 의한 정부가격안정사업 및 민간가격안정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농안법에 있어서 농안기금의 운용주체는 농림부이고 해양수산부는 농수산물유통공사와 산림청과 같은 사업지원 기관격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농안사업에서 해양수산부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확정하거나 탄력적으로 운용할 권한이 없고, 사업실시기관과 사업운용기관 사이에 존재하여 사업확정전 사업타당성의 검토를 하는 기능에 그치고 있음. 따라서 농안기금 중 수산부문에 대한 기금의 분리와 분리된 기금에 대하여는 수산발전기금으로의 통합이 바람직한 의견으로 제시되고 있음.

- 수산물 유통을 관장하고 있는 해양수산부는 우리 국민이 선호하는 안전하고 고품질의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의무뿐만 아니라 풍요로운 식생활을 보장할 책무를 지고 있으나, 현행의 농안법 체제로서는 소비자인 국민을 위하여 수산물에 대한 생산지와 소비지의 투명한 유통과정, 가공처리·표시의 합리화, 정확한 시장정보의 제공과 위생·안전에 대한 신뢰성 등을 제공하기 곤란한 실정이며, 기존의 제도와 틀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급변하는 대내외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실체적 개편방안을 강구하지 않고서는 수산유통행정의 이념을 달성하기 곤란할 것임.
- 따라서, 궁극적으로 수산물 유통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새로운 국내외 여건변화 및 미래에 예측되는 변화를 수용하여 국제기준에 조화롭고, 수산물 가격 및 수급안정을 도모하며, 수산물 위생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산물만의 독립적인 유통법 제정을 포함하여 농안법에 대한 개편이 절실한 시점임.
- 유통발전계획, 유통정보화 및 전자상거래, 위생안전의 확보, 유통시장, 유통주체, 거래질서의 확립, 유통발전기반의 조성 등 수산유통분야의 기본법으로 입법을 추진하며,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선행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임. 첫째, 농안기금을 수발기금으로 이전하는 방안과 둘째, 수산물 유통법에 시장제도의외에 기금부분을 포함할 것인 여부, 그리고 셋째, 산지도매시장을 인정하는 경우에 산지위판장 및 산지중매인의 문제 등임.
- 수산물 유통에 관한 독립법 제정의 장점은 수산물만을 특성을 반영한 독립법 제정으로 인한 수산물 유통산업에 대한 독자성 확보 및 소비자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음. 수산물 시장은 농산물 시장과 달리 산지위판장과 소비지도매시장과의 유기적인 연결이 중요한데 독립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산지와 소비지도매시장간의 법률적용과 시스템의 일

관성을 유지할 수 있음. 또한, 수산물유통의 독립성 확보, 산지시장과 소비지시장의 일관성 확보 등 기존의 요구수준을 반영, 수산물 유통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유통성, 적시성 및 자율성 확보, 수산물가격기금의 근거가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음.

- 반면, 이 방안의 단점은 유통과 관련된 유사한 내용이 중복되어 유사 법률이 2개 동시에 존재, 수산물 도매시장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대부분이므로 단일시장내 2개 법이 적용되는 1물 2법 체제로 인하여 혼란이 증가할 우려가 큼.
- 따라서, 수산유통분야의 기본법으로 추진하는 방안은 매우 이상적인 방안이기는 하나, 수산물 유통법을 별도로 독립하여 제정하는 이유 및 설득논리를 확고하게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며, 농안법을 개정하는 방안은 농림부와 협의만 된다면 비교적 현실적인 추진방안이 될 수 있으나, 농안법의 전체구조를 깨뜨리면서 수산유통분야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예상됨.

(2) 기존 농안법을 개정하면서 수산유통의 특성을 반영하는 방안

- 농안법을 개정하는 경우에도 농안법의 각 조문에서 수산유통분야를 별도로 규정하는 방안과 농안법에서 수산유통분야를 별도의 장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음. 기존 농안법은 농수산물의 수급조절, 도매시장제도 외에도 농안기금의 운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농산물과 수산물을 함께 취급함으로써 수산물의 선도유지 등 농산물과는 다른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므로, 수산유통의 환경변화와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농안법 체계를 개편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기존 농안법을 개정하여 수산물 유통고도화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임. 첫째, 산지위판장에 대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유통시설 및 체제개선의 일환

으로 산지에서부터 규격·포장화 하여 일관수송 직거래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둘째, 수산물 유통 특성을 반영한 수산물 부류별 시장 거래제도 개선 및 여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가락시장 등 소비지 도매시장의 효율성 제고 및 저비용·거래투명화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소비지 도매시장 거래체제의 현재보다 다양화하도록 하며, 재래 및 유사시장에 대한 정비를 통하여 제도권 유입을 유도해야 할 것임. 셋째, 수산물 물류 표준화 및 상품 표준 규격화를 통한 저비용, 고품질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Cold Chain 시스템 구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수산물 유통정보 통합서비스망을 구축과 수산물 품질 제고 및 안전성 확보체계 구축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며, 넷째, 농안기금 중 수산부문에 대한 분리와 이를 수산발전기금과의 통합을 통하여 안정적인 기금 운영을 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이 방안의 장점은 농수산물은 같은 1차 산업생산물로 다른 점도 많으나 비슷한 점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유통특성을 감안할 수 있어 현실적이며, 또한 이러한 유사성으로 인하여 법 개정이 쉽고, 소비지도매시장은 몇몇 도매시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농산물 시장이 같이 병존함으로 인하여 특례조항을 설정하여 운영할 경우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데 있음.
- 그러나, 이 방안의 단점은 그 동안 12차례의 농안법 개정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수산물의 특성을 감안한 농안법 개정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미흡한 개정이 될 가능성이 크며, 기존 농안법을 개정하는데 있어서도 수산유통의 고유성 및 독자성에 관한 논리를 준비하고 계발하며, 농안법 개정과 관련된 부처인 농림부와 협의 및 합의 필요하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음.

(3) 수산유통의 특성을 반영한 해양수산부령을 개정하는 방안

- 산지도매시장, 위생안전관리, 전자상거래, 거래제도의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령을 제정하는 방안으로, 기존의 농안법을

개정하는 것은 농림부와 협의 및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과 합의도출의 실패시 수산물유통 관련법제의 제정이나 개정이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발생함으로,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기존의 농림부와 해양수산부와의 공동부령을 개정하여 해양수산부의 단독부령 형태로 입법추진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는 방안임. 이 방법의 장점으로서는 법제정 또는 조문의 개정보다는 절차상의 준비과정이 줄어드는 간편한 법개정 절차를 들 수 있으나, 이 역시 수산물유통의 고유성 및 독자성에 관한 논리 준비 및 개발, 농림부와 협의 및 합의가 필요한 것이 단점임.

- 농림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 또는 공동시행규칙의 형태로 농안법을 개정할 때에는 독립적인 법 제정보다는 제한적인 요인이 훨씬더 많을 것을 판단됨. 따라서 수산물 유통만을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는데 있어 가능한 한 최대한 반영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구체적으로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산물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성해야 하며, 이러한 방안으로는 수산물 도매시장 및 공판장, 산지 위판장에 대한 위생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임. 수산물은 부패하기 쉬운 특성을 가지고 있어, 유통단계에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로 최종 소비자에게 구매될 수 있음. 그동안 수산물에 대한 이미지는 냄새가 심하고, 거래장소가 불결하다는 등의 나쁜 이미지가 소비자에게 각인되어 있으므로, 소비자의 심리를 안심시키고, 보다 안전한 수산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각 도매시장에 품질위생검사실을 설치하여 모니터링과 검사 기능을 확보해야 할 것임.
- 또한, 소비자가 선호하는 품목에 대한 조사와 다양한 수산가공식품의 개발을 통하여 원재료 형태의 한정된 소비형태를 확대시킬 수 있는 수요개발 사업도 꾸준히 전개하여,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편익 증가가 도매시장 유통주체의 경영에 도움을 주며, 수산물 유통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져야 할 것임.
- 이 방안은 농림부와 협의만 된다면 현실적인 차선책으로 추진방안이

될 수 있으나, 농안법의 전체구조를 깨뜨리면서 수산유통분야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며, 농안법 체계와의 상충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6-6> 수산유통의 특성을 반영한 입법형태

구분	입법형태	장단점
제1안	○ 독립된 수산유통법 제정방안	○ 수산유통정책의 적시성, 적기성 확보 ○ 수산유통의 정보화, 규격화 촉진 ○ 유통기본계획, 전자상거래, 위생안전 등 새로운 수산유통분야 도입 ○ 수산유통법의 제정 및 설득논리 계발 ○ 농안기금의 수산분야를 수발기금으로 편입하는 방안 강구
제2안	○ 기존 농안법의 개정방안	○ 수산유통 특성을 반영한 농안법개정 ○ 농안법 조문 자체를 개정하는 방안과 농안법안에서 수산분야를 별도로 규정하는 방안으로 구분 ○ 산지도매시장, 위생안전, 전자상거래, 거래제도의 개선 등을 반영 ○ 수산유통분야를 별도로 규정하는 이유 및 설득논리 계발 필요
제3안	○ 해양수산부령의 제정방안	○ 농안법을 그대로 두되, 수산유통 특성을 반영한 해양수산부령 제정 ○ 농안법 및 농림부령과의 충돌문제 ○ 수산유통분야를 별도로 규정하는 이유 및 설득논리 계발 필요

■ 추진방법

(1) 입법을 위한 의견수렴 및 여론조성

- 농안법이 가지는 문제점을 기반으로 수산부문에 있어서 새로운 (가칭) 수산물유통에 관한 법률의 신설은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 우선 새로운 법안을 신설하고자 할 때에는 법안의 신설근거가 명확해야 하는

데, 현재 하나의 소비지도매시장에서 농산물과 수산물이 함께 거래되는 상황에서, 도매시장의 장소적 분리는 그대로 둔 채, 서로 다른 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모순된 모습으로 비추어질 수 있음. 따라서, 새로운 수산물 유통법을 신설할 때는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기존법과의 상충(trade-off)관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또한 각 유통주체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법안과정에서 유통주체별, 지역별 의견수렴 및 전문가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하여 쟁점별 의견수렴하고, 법안초안 작성후 국회의원, 입법전문위원, 의원보좌관, 법제처 등 입법관계자 토론회 및 설명회를 통하여 입법의 필요성 홍보 및 여론조성이 필요함.

(2) 농림부와의 협의 및 합의도출

- 새로운 법은 앞에서 살펴본 수산물 유통의 과제와 같이, 소비지도매시장과 산지시장 전 단계를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유통거래를 위한 법이 되어야 할 것임. 그러나 산지시장의 도매시장 및 산지위판장 규정문제는 기존 농안법에서는 위판장 기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므로, 새로운 (가칭)수산물유통에관한법률에서 설립기준을 마련할 때는 농림부 및 수산업협동조합 등 관련기관의 협조가 우선적으로 필요함.
- 따라서, 해양수산부와 농림부 관계자, 해양수산부와 수협관계자와의 토론을 통하여 사전 합의도출 필요하며, 관계공무원들의 정례적인 협의회 추진 필요함.

(3) 기존법과의 중복성 및 충돌가능성에 대한 검토

- 소비지도매시장에 있어서 새로운 수산물유통법의 도입에 중요한 내용인 수산물유통발전계획의 수립에는 구체적인 발전계획과 실천방안을 수립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행정적인 내용과 예산문제 또한 조문이나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등에 명기해야 할 것임. 그리고 수산물 위생안전, 표준화·규격화 및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관련 내용도 현실적이며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도매시장내 유통주체에 대하여는 현행 농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유의 업무보다 자율성과 업무영역에 대한 규정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기존 농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통주체들의 업무영역에 대한 내용을 고려하여 새로이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경매사의 신분문제 또한 농산물 도매시장의 경매사 신분전환과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함.

- 수산물 유통에 있어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법은 이와 같은 거래제도 및 법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법체계 정비를 통하여 향후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식품공급의 기반으로서의 역할과 소비자 편익을 최대한 보장하고, 자유로운 유통질서가 확립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참고문헌

I. 국내문헌

1. 단행본

- 강종호, 주문배 외, 수산물 산지도매시장(위판장) 10개년 정비계획, 해양수산부, 2000.
- 강종호 외, 수산물 유통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해양수산부, 2002.
- 김동환 외, 유통경로 다원화 추세하의 도매시장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2002.
- 김정택 외, 소비자 지향적인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해양수산부, 2003.
- 서울시농수산물관리공사, 세계의 농수산물 도매시장 현장을 가다, 1999.
- 서울시농수산물관리공사, 해외 도매시장 유통현황, 1999.
- 서재영, 수산물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송정현 외, 감천항공영수산물도매시장 효율적인 운영관리방안, 해양수산부, 2003.
- 안광호·조재운, 유통관리원론, 학현사, 2003.
- 오세조·박진용, 시장지향적 유통관리, 박영사, 2003.
- 장영수, 수산물유통론, 부경대학교, 1997.
- 주문배 공역, 일본 도매시장의 현재 그리고 미래, 전국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1999.
- 주문배 외, 수입수산물 유통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997.
- 주문배 외, 수산물 중장기 수급전망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997.

- 주문배 외, 수산물 수출확대 및 수입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해양수산부, 1998.
- 주문배 외, 소비자 지향적인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해양수산부, 2003.
- 주문배 외,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장단기 위생관리방안, 해양수산부, 2003.
- 홍성걸, 주문배 외, 수산물 유통개혁을 위한 실천방안 연구, 해양수산부, 1999.

2. 논문

- 강태경, 한국의 유통물류정책과 개선방안, 경영경제(계명대학교) 제24집, 1991.
- 김동환 · 전창곤 외, 소비지시장의 변화와 도매시장 기능 강화 방안, 식품유통연구 제13권 제1호, 1996.
- 김청열, 수산물 도매유통 시장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논문집 제23집, 1998.
- 마문식,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영어조합법인의 역할, 월간 해양수산(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제177호, 1999.
- 문상원,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논문집 제33집, 2002.
- 성배영,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관리운영개선, 농촌경제(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14권 제2호, 1991.
- 성배영, 주요 선진국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체계, 농촌경제(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10권 제3호, 1987.
- 신현종 · 최경규,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효과와 과제, 산경연구(영남대학교) 제8집, 2000.
- 이관수 · 심재천, 농산물 도매시장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산경논집(동의대학교) 제17집, 1996.
- 이관수 · 황진욱, 환경친화적 수산물 유통체제의 구축, 산경논집(동의대학교)

- 교) 제17집, 1996.
- 주문배, 수산물 산지유통의 정보화 실태와 고도화 방안, 해양정책연구(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제14권 제1호, 1999.
- 주문배, 수산물 산지실명제의 의의 및 효율적 도입방안”, 「수산계」 통권70호, 1999. 5/6.
- 주문배, 일본 중앙도매시장의 위기와 새로운 전개”, 「해양수산동향」 제926호, 1999. 3.
- 주문배, 일본에 있어서 수산물 산지직거래에 관한 연구, 「해양정책연구」 통권14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998. 12.
- 주문배, 수산물 유통에 있어서 산지직거래의 의의와 과제, 한국수산경영학회, 1998. 11.
- 주문배, 일본 중앙도매시장의 고도정보화 동향”, 「해양수산정보」, KMI, 1998. 4.
- 주문배, 일본수산가공업의 과제와 어업자 행동양식”, 「수산계」 통권66호, 1998. 1/2.
- 주문배, 수산가공부문의 환경변화와 일본의 대응”, 「해양수산정보」 제877호, 1997. 12.
- 전창곤, 유럽 청과물 유통체계 분석, 농촌경제(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20권 제3호, 1997년 가을호.
- 허길행 외, 21세기에 대응한 농수산물 유통개선대책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7.
- 허길행,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운영체계에 관한 고찰, 농촌경제(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18권 제2호, 1995년 여름호.
- 허길행·김진석, 수산물 산지거래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농촌경제(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9권 제1호, 1986.
- 허길행·문팔용, 농수산물 산지직거래의 체계적 확대전략연구, 농촌경제연구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28집, 1988.

3. 자 료

- 농림부, 홈페이지 자료(<http://www.maf.go.kr>.)
- 농수산물유통공사, 홈페이지 자료(<http://afmc.co.kr>.)
-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http://market.affis.net>.)
-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홈페이지 자료(<http://garak.co.kr>.)
- 수협중앙회, 수산물계통관매고통계연보, 각 년도.
- 이계임 외, 식품수급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각 년도.
- 수협중앙회, 2002 수산물 위(공)관장 현황, 2003.
- 통계청, 2001 농어업 총조사; 통계청 홈페이지(www.nso.go.kr).
-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홈페이지 자료(<http://kawa.or.kr>.)
- 해양수산부, 2003년도 수산업 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3.
- 해양수산부, 어업기본통계조사, 각 년도.
- 해양수산부,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수산정책국 업무자료), 2002.
- 해양수산부, 수산물수출입통계연보, 각 년도.
- 해양수산부, 수산행정기본자료, 2002.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자료(<http://www.momaf.go.kr>.)

II. 외국문헌

1. Books

- Carol S. Kramer and Julie A. Caswell, Food Quality: Safety, Nutrition, and Labeling, Food Marketing Policy Center Research Report No.20, 2003.J. Michael Harris, Phil R. Kaufman, Steve W. Martinez(coordinator), and Charlene Price, The U.S. Food Marketing System 2002: Competition, Coordination, and Technological Innovations Into the 21st Century, Electronic

Agricultural Economic Report No.811, June 2002. *in ers.usda.gov.*

Christopher L. Delgado etc., Fish to 2020: Supply and Demand in Changing Global Markets,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Washington, D.C., U.S.A), 2003.

NOAA(U.S Department of Commerce, National Marine Fisheries Service), The Saltonstall-Kennedy Grant Program: Fisheries Research and Development, August 1, 1999.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U.S.D.A), National Directory of Farmers Market and Direct Marketing Associations 2001, April 2001, (<http://www.usda.gov>.)

堀田忠夫, 『産地生産流通論』, 大月堂, 1995.

三國英實 編著, 『現代流通論①今日の食品流通』, 大月書店, 1995

保田芳昭 編著, 現代流通論2-日本と歐美の流通政策, 大月書店, 1995.

食品需給研究センター, 都賣業者等經營體質強化について(中間報告書), 1998.

日本農業市場學會編集, 現代都賣市場論, 築波書房, 1999.

東京都中央都賣市場, 第7次東京都都賣市場整備計劃 基礎調査報告書, 2000.

都賣市場法編輯委員會, 都賣市場關係法令通知集, 大成出版社, 2000.

高橋正8郎 監修, フードシステム學の理論と體系, 農林統計協會, 2002.

大月書店, 『日本と歐美の流通政策』, 株式會社 大月書店, 1995.

2. Articles

Jennifer-Claire V. Klotz, How to Direct-Market Farm Products on the Internet,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U.S.D.A) Agriculture Marketing Service, Dec. 2002(<http://www.usda.gov>).

Julie A. Caswell, The Policy Environment for Food Safety and Nutrition: Regulating Quality and Quality Signaling, Food

Marketing Policy Issue Paper No.5, Jan. 1994.

3. Materials

City Market of Los Angeles(<http://www.citymarketla.com>.)

Fulton Fish Market(<http://www.fultonfish.com>.)

Hunts Point Coopertive Market(<http://www.huntspointcoopmkt.com>.)

Office National Interprofessionnel Des Produits de la mer et de
L'auacuture(<http://www.ofimer.fr>)

부 록

Ⅰ. (가칭)수산물유통에관한법률(안)

Ⅱ. 수산물 유통관련 통계 및 자료

1. (가칭)수산물유통에관한법률(안)

II. 수산물 유통관련 자료

1. 국내 도매시장 관련 통계자료

〈표 1-1〉 도매시장 종사자 및 거래실적

(단위: 명, 톤, 억원)

구 분	도매 법인수	종 사 자			거 래 실 적					
		도 매 법 인 임직원	중 도 매 인	매매참 가인	2001			2002		
					물량	금액	비율 (%)	물량	금액	비율 (%)
계	116	3,178	8,220	736	6,379,260	66,618	100	6,410,541	69,965	100
청과	84	1,943	6,679	422	5,675,716	46,029	89.0	5,763,629	51,072	89.9
수산	23	489	1,201	104	395,686	9,931	6.2	360,021	9,767	5.6
축산	7	717	197	87	244,064	9,085	3.8	228,039	7,783	3.6
양곡	1	8	108	123	63,232	1,533	1.0	58,212	1,300	0.9
약용	1	21	35	-	562	40	-	640	43	-

자료 : 농림부, 2002년도 농수산물도매시장통계연보, 2003.

〈표 1-2〉 도매시장별 거래실적

(단위: 톤, 억원)

구 분	2001			2002			
	물 량	금 액	비율(%)	물 량	금 액	비율(%)	
도매시장합계	6,379,260	66,618	100.0	6,410,541	66,965	100.0	
수산	수산부류소계	395,686	9,931	100.0	360,021	9,767	100.0
	공영도매시장	273,911	6,767	69.2	246,531	6,502	68.5
	일반법정도매시장	121,775	3,164	30.8	113,490	3,265	31.5

〈표 1-3〉 도매시장 종사자 현황

(단위: 명)

구 분	전체임직원	경매사 ¹⁾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산지유통인
계	489	125	1,201	104	2,481
공 영 도 매 시 장	336	94	988	77	1,581
일반법정 도매시장	153	31	213	27	900
민 영 도 매 시 장	-	-	-	-	-

주 : 경매사는 도매시장법인 소속직원중 자격증 보유자 수를 말함.

〈표 1-4〉 연도별·부류별 도매시장 개설추이

(단위 : 개소)

시 장 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계		47	48	51	49	49	48	51	49
공영도매시장		13	14	17	18	21	23	29	30
일반법정도매시장	소 계	34	34	34	31	28	23	19	16
	청과	19	19	19	18	15	9	6	5
	수산물	5	5	5	3	3	3	3	3
	축산	8	8	8	8	8	9	8	6
	양곡 약용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민영도매시장		-	-	-	-	-	2	3	3

〈표 1-5〉 전국 농수산물도매시장 현황(2002년기준)

(단위: 개소, m²)

구 분	공 영 도매시장		일반법정도매 시장(수산)		소재지	개장일	규모		비 고
	개수	법인수	개수	법인수			부 지	건 물	
계	12	20	3	3	-	-	-	-	-
서울	서울가락	1	3(1)		송파구 가락동 600	' 85.6.19	542,920	261,787	
	노량진			1	1	동작구	' 83.4.27	18,836	21,593
대구	대구북부	1	2		북구 매천동 527-3	' 88.10.7	151,654	96,338	
대전	대전오정	1	2		대덕구 오정동 705	' 87.11.2	74,022	26,018	
울산	울산	1	3(1)		남구 삼산동 904-10	' 90.3.20	41,011	25,108	
경기	수원		2(1)		권선구 권선동 1229	' 93.2.27	56,926	21,221	
	구리		2(1)		인창동 127	' 97.6.9	186,575	74,357	
	안양		-		동안구 평촌동 934-1	' 97.9.6	84,939	65,392	
	안산		1		이동 528	' 97.11.4	42,499	27,447	
충북	청주		1		흥덕구 봉명동 2210	' 88.11.10	34,380	20,066	
	충주		1		목행동 426-4	' 95.11.15	45,756	13,776	
전북	전주		2(1)		덕진구 송천동 492-36	' 93.10.29	59,578	26,754	
	익산		1		목천동 916-4	' 98.1.5	105,782	22,638	
경북	포항			1		' 68.9.1	2,205	1,865	
	경주			1		' 63.10.18	1,578	1,896	

주 : 1) 공영시장의 경우, 서울 강서, 광주 제2 도매시장은 건설중임.

2) ()는 도매시장공판장 개수임.

〈표 1-6〉 시장종류별, 부류별 거래규모 추이

(단위: 개소, 억원)

연도	거래규모	계	20억원 미만	20~ 50	50~ 100	100~ 300	300~ 500	500~ 1,000	1,000~ 2,000	2,000억원 이상	평 균 거래규모
1997	계	107	4	11	13	27	20	19	6	7	556
	공 영	71	2	3	8	18	17	14	3	6	
	일 반	36	2	8	5	9	3	5	3	1	
	청 과	68	-	7	7	18	17	13	1	5	548
	수 산	26	4	3	6	8	1	1	2	1	353
1998	계	106	2	10	16	25	18	25	3	7	539
	공 영	74	-	3	12	16	18	16	3	6	
	일 반	32	2	7	4	9	-	9	-	1	
	청 과	69	2	5	7	17	18	14	1	5	544
	수 산	25	-	4	9	7	-	2	2	1	358
1999	계	107	1	11	17	25	19	20	7	7	564
	공 영	79	-	6	11	18	18	15	5	6	
	일 반	28	1	5	6	7	1	5	2	1	
	청 과	71	1	6	7	19	17	13	3	5	554
	수 산	25	-	4	10	5	1	2	2	1	355
2000	계	108	2	9	17	28	18	20	7	7	553
	공 영	83	2	4	13	20	18	15	5	6	
	일 반	23	-	4	4	7	-	5	2	1	
	청 과	72	2	4	6	22	18	12	3	5	554
	수 산	24	-	4	11	3	-	3	2	1	379
2001	계	117	1	9	19	27	28	20	6	7	535
	공 영	95	1	6	15	20	28	14	5	6	
	일 반	19	-	3	4	4	-	6	1	1	
	청 과	83	1	3	9	23	28	11	3	5	513
	수 산	23	-	5	10	2	-	3	2	1	404
2002	계	116	2	7	21	24	25	23	7	7	568
	공 영	97	2	4	16	19	25	19	6	6	
	일 반	16	-	3	4	3	-	4	1	1	
	청 과	84	2	1	10	21	25	16	4	5	568
	수 산	23	-	5	11	1	-	3	2	1	396

〈표 1-7〉 시장별, 부류별 거래선별 거래물량 추이(2002년기준)

(단위: 천톤, %)

구 분		계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비 중		비 중		비 중
전체 공영도 매시장	공영도매시장	5,973	100.0	5,798	97.1	175	2.9
	일반법정도매시장	408	100.0	337	82.6	71	17.4
	민영도매시장	30	100.0	29	96.4	1	3.6
	계	6,411	100.0	6,164	96.1	247	3.9
부류별	청 과	5,764	100.0	5,599	97.1	165	2.9
	수 산	360	100.0	352	97.8	8	2.2
	축 산	228	100.0	198	86.7	30	13.3
	양 곡	58	100.0	14	24.4	44	75.6
	약 용	1	100.0	1	100.0	-	0.0
	계	6,411	100.0	6,164	96.1	247	3.9

〈표 1-8〉 시장종류별·부류별 중도매인·매매참가인 연도별 추이

(단위: 명)

구 분		중 도 매 인			매 매 참 가 인		
		2001(A)	2002(B)	증감(B-A)	2001(A)	2002(B)	증감(B-A)
계		17,034	16,297	△371	1,646	1,349	△161
시장별	공영도매시장	7,786	7,521	△265	440	465	25
	일반법정도매시장	742	638	△104	429	243	△186
	민영도매시장	63	61	△2	28	28	-
부류별	청 과	6,987	6,679	△308	593	422	△171
	수 산	1,199	1,201	2	91	104	13
	축 산	257	197	△60	65	87	22

〈표 1-9〉 거래금액 규모별 중도매인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1억원 미만	1~3 억원	3~5 억원	5~10 억원	10~20 억원	20~30 억원	30억원 이상
계	계	8,220	1,156	2,121	1,548	1,604	1,113	404	274
	공영도매시장	7,521	1,031	1,993	1,471	1,450	1,013	351	212
	일반법정도매시장	638	107	114	71	143	91	51	61
	민영도매시장	61	18	14	6	11	9	2	1
수 산	계	1,201	246	375	142	164	148	80	46
	공영도매시장	988	219	361	125	117	96	54	16
	일반법정도매시장	213	27	14	17	47	52	26	30

〈표 1-10〉 부류별·법인별 수수료 현황

(단위: %, 백만원)

시도	법 인 명	수수료율					수수료 금액				
		위 탁 수수료	출하장려금			판 매 장려금	시 장 사용료	위 탁 수수료	출 하 장려금	판 매 장려금	시 장 사용료
			일반 출하	계통 출하	우수 출하						
서울	강동수산	3.0~4.0	-	-	-	0.45	0.5	5,723	-	863	770
	서울건해산물	3.0	-	-	-	0.30	0.5	3,997	-	399	684
	수협가락(공)	3.0	-	-	-	0.45	0.5	1,980	-	278	353
	노량진수산	3.8	-	-	-	0.35	3.3	11,968	-	1,099	10,349
대구	대구수산	3.0~5.0	-	-	-	0.3	0.5	509	-	19	56
	대구종합수산	4.0	-	-	-	0.3~0.6	0.5	253	-	-	54
대전	대전수산	3.0~5.0	-	-	-	1.0	0.5	429	-	69	48
	한밭건해산물	4.7	-	-	-	-	0.5	120	-	-	13
울산	울산중앙수산	4.0	-	-	-	0.27	0.5	386	-	27	51
	울산건해산물	2.0~6.0	0.5~2.0	-	-	0.5	0.5	322	39	29	29
	울산수협(공)	5.0	-	-	-	0.1	0.5	282	-	5	25
경기	수원수산	3.5	-	-	-	-	0.5	150	-	-	23
	남부수협(공)	4.5	-	-	-	0.2	0.5	264	-	8	28
	강북수산	4.5	-	-	0.1	0.4	0.5	2,560	6	47	316
	수협구리(공)	4.5	-	-	-	0.4	0.5	2,872	-	169	311
	안산수산	5.0	-	-	-	-	0.5	359	-	-	37
충북	청주수산	2.5~5.5	-	-	-	-	0.5	413	-	-	46
	충주수산	6.0	-	-	-	-	0.5	107	-	-	12
전북	전주수산	5.0	-	-	-	-	0.5	256	-	-	28
	수협전주(공)	4.0	-	-	-	-	0.5	132	-	-	30
	이리수산	6.0	-	-	-	-	0.5	159	-	-	10
경북	포항수산	5.0	-	-	-	-	0.5	399	-	-	39
	경주수산	5.0	-	-	-	-	0.5	165	-	-	15

〈표 1-11〉 시장별 하역인력 및 하역비 현황

(단위: 명, 백만원)

시 장	계		노동조합		용역		법인직원		자체하역반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서울가락	256	3,311	256	3,311	-	-	-	-	-	-
대구북부	3	16	-	-	-	-	-	-	3	16
대전오정	11	42	9	32	-	-	1	-	1	10
울산	8	78	-	-	-	-	4	12	4	66
수원	13	92	8	58	-	-	-	-	5	34
구리	63	859	-	-	45	465	18	394	-	-
안양	-	-	-	-	-	-	-	-	-	-
안산	5	31	-	-	-	-	-	-	5	31
청주	4	69	-	-	-	-	4	69	-	-
충주	3	12	-	-	-	-	3	12	-	-
전주	5	50	-	-	-	-	3	30	2	20
익산	2	26	-	-	-	-	2	26	-	-
계	373	4,586	273	3,401	45	465	35	543	20	177

〈표 1-12〉 시장별 하역비 부담현황

(단위: 백만원)

시 장	2001			2002		
	출하자	법인	계	출하자	법인	계
서울가락	3,480	-	3,480	3,311	-	3,311
대구북부	19	-	19	16	-	16
대전오정	48	-	48	42	-	42
울산	50	35	85	58	20	78
수원	194	-	194	92	-	92
구리	18	901	919	-	859	859
안양	-	-	-	-	-	-
안산	25	7	32	28	3	31
청주	44	13	57	49	20	69
충주	-	13	13	-	12	12
전주	60	-	60	50	-	50
익산	-	23	23	-	26	26
계	3,938	992	4,930	3,646	940	4,586

주: 공영도매시장의 수취임.

〈표 1-13〉 시장별 파렛트 출하현황

(단위: 톤, 백만원)

시 장	파렛트 출하실적				파렛트당 하역비(원)	
	국내산		수입산		국내산	수입산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서울가락	-	-	-	-	-	-
대구북부	-	-	-	-	-	-
대전오정	-	-	-	-	-	-
울 산	-	-	-	-	-	-
수 원	-	-	-	-	-	-
구 리	5,611	8,839	5,544	11,575	7,600	7,100
안 양	-	-	-	-	-	-
안 산	-	-	-	-	-	-
청 주	-	-	-	-	-	-
충 주	42	79	474	756	-	-
전 주	963	16	635	14	-	-
익 산	-	-	-	-	-	-
계	6,616	8,934	6,653	12,345	-	-

〈표 1-14〉 연도별 도매시장 거래실적

(단위: 천톤, 억원)

구 분		1991		1992		1993		1994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계	공 영	2,829	17,130	3,323	20,303	3,594	24,172	3,938	34,020
	일반법정	1,072	16,017	1,090	15,280	1,047	16,130	1,069	17,135
	총 계	3,901	33,147	4,413	35,583	4,641	40,302	5,007	51,155
청과	공 영	2,544	10,227	3,007	12,855	3,261	16,265	3,597	24,814
	일반법정	487	2,758	522	2,634	493	2,464	495	2,458
	소 계	3,031	12,985	3,529	15,489	3,754	18,729	4,092	27,272
수산	공 영	197	3,382	229	3,742	245	4,344	238	4,775
	일반법정	179	2,242	191	2,622	174	2,785	159	2,994
	소 계	376	5,624	420	6,364	419	7,129	397	7,769
구 분		1995		1996		1997		1998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계	공 영	2,829	35,354	4,541	40,904	3,594	5,047	45,809	5,013
	일반법정	1,072	15,954	933	16,573	1,047	685	14,435	592
	총 계	3,901	51,308	5,474	57,477	4,641	5,732	60,244	5,605
청과	공 영	2,544	26,187	4,188	31,315	3,261	4,646	36,001	4,607
	일반법정	487	2,260	427	2,379	493	235	1,958	184
	소 계	3,031	28,447	4,615	33,694	3,754	4,881	37,959	4,791
수산	공 영	239	4,940	245	4,930	301	5,740	314	6,081
	일반법정	146	3,114	156	3,250	146	3,079	133	2,925
	소 계	385	8,054	401	8,180	447	8,819	447	9,006
구 분		1999		2000		2001		2002	
		물량	금액	금액	물량	금액	금액	물량	금액
계	공 영	2,829	50,130	5,645	50,657	5,905	55,613	5,973	60,796
	일반법정	1,072	12,875	467	10,722	442	10,646	408	8,808
	총 계	3,901	63,005	18	170	32	359	30	361
청과	공 영	2,544	39,729	5,273	40,489	5,549	44,917	5,642	69,965
	일반법정	487	1,470	133	1,031	94	753	92	184
	소 계	3,031	41,199	5,424	41,690	5,675	46,029	5,764	51,072
수산	공 영	285	6,003	285	6,134	274	6,767	247	6,502
	일반법정	122	2,942	124	2,885	122	3,164	113	3,265
	소 계	407	8,945	409	9,019	396	9,931	360	9,767

〈표 1-15〉 연도별 일반법정도매시장 거래실적

(단위: 천톤, 억원)

연도	청과		수산		축산		양곡		약용		합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1990	620	2,194	190	2,001	211	7,313	237	2,860	1	51	1,259	14,419
1991	487	2,758	179	2,242	237	8,718	168	2,239	1	60	1,072	16,017
1992	522	2,634	191	2,622	234	7,789	142	2,177	1	58	1,090	15,280
1993	493	2,464	174	2,785	246	8,529	133	2,309	1	43	1,047	16,130
1994	495	2,458	159	2,994	239	9,066	175	2,574	1	43	1,069	17,135
1995	456	2,260	146	3,114	224	7,787	139	2,754	1	39	966	15,954
1996	427	2,379	156	3,250	216	8,206	133	2,693	1	45	933	16,573
1997	235	1,958	146	3,079	207	7,180	96	2,169	1	49	685	14,435
1998	184	1,593	133	2,925	189	6,080	85	1,899	1	36	592	12,533
1999	176	1,470	122	2,942	180	6,491	80	1,928	1	44	559	12,875
2000	133	1,031	124	2,885	164	5,512	45	1,254	1	40	467	10,722
2001	94	753	122	3,164	162	5,156	63	1,533	1	40	442	10,646
2002	92	792	113	3,265	144	3,408	58	1,300	1	43	408	8,808

〈표 1-16〉 연도별 민영도매시장 거래실적

(단위: 톤, 백만원)

연도	청과		수산		축산		합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2000	18,369	17,025	-	-	-	-	18,369	17,025
2001	32,541	35,918	-	-	-	-	32,541	35,918
2002	29,542	36,109	-	-	-	-	29,542	36,109

〈표 1-17〉 공영도매시장 연도별 거래실적

(단위: 톤)

구 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계		197,076	228,967	245,193	238,046	239,267	244,989
도매시장법인		161,733	181,347	188,952	186,377	189,131	190,880
공 판 장		35,343	47,620	56,241	51,669	50,136	53,887
비 상 장		-	-	-	-	-	722
서울가락 (' 85.6.19)	강동수산	103,112	110,122	110,922	113,373	113,306	112,269
	서울건해	34,821	41,469	38,789	33,547	38,611	30,881
	수협가락(공)	32,086	44,083	41,239	40,236	40,707	41,082
	비 상 장	-	-	-	-	-	722
	소 계	170,019	195,674	190,950	187,156	192,624	184,954
대구북부 (' 88.10.7)	대구수산	663	994	1,274	1,109	919	3,327
	대구종합수산	-	-	-	-	-	143
	소 계	663	994	1,274	1,109	919	3,470
대전오정 (' 87.11.2)	대전수산	13,426	17,207	16,808	14,327	13,144	13,216
	한밭건해산물	-	-	139	468	556	621
	소 계	13,426	17,207	16,947	14,795	13,700	13,837
울 산 (' 90.3.20)	울산중앙수산	6,395	7,046	9,267	8,859	8,083	8,037
	울산건해산물	716	933	714	652	482	5,961
	울산수협(공)	3,257	3,537	3,358	2,635	2,873	3,083
	소 계	10,368	11,516	13,339	12,146	11,438	17,081
수 원 (' 93.2.27)	수원수산	-	-	5,751	7,850	5,576	6,339
	남부수협수원(공)	-	-	2,898	3,460	4,882	6,117
	소 계	-	-	8,649	11,310	10,458	12,456
구 리 (' 97.6.9)	수협구리(공)	-	-	-	-	-	-
	강북수산	-	-	-	-	-	-
	소 계	-	-	-	-	-	-
안 양 (' 97.9.6)	동안수산	-	-	-	-	-	-
안 산 (' 97.11.25)	남부수협안산(공)	-	-	-	-	-	-
	안산수산	-	-	-	-	-	-
	소 계	-	-	-	-	-	-
청 주 (' 88.11.10)	청주수산	2,600	3,576	3,770	3,872	5,308	6,453
충 주 (' 95.11.15)	충주수산	-	-	-	-	1,179	1,337
전 주 (' 93.10.29)	전주수산	-	-	1,518	2,320	1,967	2,296
	수협전주(공)	-	-	8,746	5,338	1,674	3,105
	소 계	-	-	10,264	7,658	3,641	5,401
익 산 (' 98.1.7)	이리수산	-	-	-	-	-	-

주 : 법인(공) : 20개소(법인 15, 공판장 5)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편방안

(단위: 톤)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계		301,186	313,998	284,720	285,231	273,911	246,531
도매시장법인		216,265	216,592	198,776	190,520	173,208	156,995
공 판 장		83,936	96,775	84,942	85,778	77,249	65,744
비 상 장		985	631	1,002	8,933	23,454	23,792
서울가락 (' 85.6.19)	강동수산	109,815	98,481	87,645	85,556	79,441	70,110
	서울건해	30,922	27,528	27,938	26,013	25,072	23,662
	수협가락(공)	41,792	36,849	31,702	35,269	31,833	24,121
	비 상 장	985	631	1,002	1,653	9,686	9,151
	소 계	183,514	163,489	148,287	148,491	146,032	127,044
대구북부 (' 88.10.7)	대구수산	7,567	6,107	6,048	6,495	5,219	5,996
	대구종합수산	4,067	4,433	3,933	4,375	3,865	3,290
	소 계	11,634	10,540	9,981	10,870	9,084	9,286
대전오정 (' 87.11.2)	대전수산	12,195	11,087	8,116	6,923	6,190	5,394
	한밭건해산물	763	511	555	539	470	411
	소 계	12,958	11,598	8,671	7,462	6,660	5,805
울 산 (' 90.3.20)	울산중앙수산	9,202	6,599	5,767	5,574	4,079	3,522
	울산건해산물	855	1,031	996	920	752	833
	울산수협(공)	2,591	2,786	3,621	2,481	1,996	2,393
	소 계	12,648	10,416	10,384	8,975	6,827	6,748
수 원 (' 93.2.27)	수원수산	5,305	6,786	7,688	4,097	2,950	1,767
	남부수협수원(공)	5,513	5,544	5,457	4,483	4,097	3,314
	소 계	10,818	12,330	13,145	8,580	7,047	5,081
구 리 (' 97.6.9)	수협구리(공)	30,874	43,844	38,424	38,267	36,526	34,219
	강북수산	18,186	26,144	25,860	32,746	32,820	29,855
	소 계	49,060	69,988	64,284	71,013	69,346	64,074
안 양 (' 97.9.6)	동안수산	6,978	12,712	11,604	5,705	-	-
	비 상 장	-	-	-	7,280	13,724	14,609
	소 계	6,978	12,712	11,604	12,985	13,724	14,609
안 산 (' 97.11.25)	남부수협안산(공)	240	3,458	2,440	1,604	-	-
	안산수산	367	5,156	4,117	3,083	4,047	3,812
	비 상 장	-	-	-	-	44	32
	소 계	607	8,614	6,557	4,687	4,091	3,844
청 주 (' 88.11.10)	청주수산	5,524	4,371	3,685	3,703	3,908	4,349
충 주 (' 95.11.15)	충주수산	2,138	1,694	1,416	1,347	1,467	1,104
전 주 (' 93.10.29)	전주수산	2,381	2,887	2,316	2,120	1,884	1,898
	수협전주(공)	2,926	4,294	3,298	3,674	2,797	1,697
	소 계	5,307	7,181	5,614	5,794	4,681	3,595
익 산 (' 98.1.7)	이리수산	-	1,065	1,092	1,324	1,044	992

〈표 1-18〉 일반법정도매시장 연도별 거래실적

(단위: 톤)

도매시장	법인명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법인:3	계	179,354	190,619	173,737	159,475	146,217	155,825	146,059	132,654	121,691	123,705	121,775	113,490
	도매시장법인	179,354	190,619	173,737	159,475	146,217	155,825	146,059	132,654	121,691	123,705	121,775	113,490
노량진 수산도매시장	노량진 수산	162,237	173,126	156,256	142,353	132,491	142,397	140,266	127,673	116,698	118,732	116,949	108,381
포항수산도매시장	포항 수산	2,310	2,962	4,236	4,530	4,556	4,517	3,925	3,623	3,505	3,565	3,520	3,996
경주수산도매시장	경주 수산	2,886	2,784	2,421	2,287	2,088	2,308	1,583	1,358	1,488	1,408	1,306	1,113
광주수산도매시장	광주 수산	8,577	8,460	8,946	8,719	6,437	5,988	-	-	-	-	-	-
충주수산도매시장	충주 수산	1,025	1,136	1,045	858	-	-	-	-	-	-	-	-
전주수산도매시장	전주 수산	1,302	1,362	-	-	-	-	-	-	-	-	-	-
이리수산도매시장	이리 수산	1,017	789	833	728	645	615	285	-	-	-	-	-

〈표 1-19〉 부류별 전국 위(공)판장 개설현황

(단위: 개소)

구분	계	활어	활어 선어	활어 패류	선어	선어 젓갈	선어 패류	패류	젓갈	해조	건어	전부류
합계	179	36	33	7	39	2	7	17	2	14	14	11
연안	172	36	33	7	36	2	3	17	2	14	14	8
내륙지	7				3		1					3
중앙회	소계	6			3		1					2
	연안	1			1							
조합	내륙지	5			2		1					2
	소계	173	36	33	7	36	2	3	17	2	14	9
	연안	171	36	33	7	35	2	3	17	2	14	8
	내륙지	2			1							1

주 : 전부류는 3가지 이상의 부류를 취급.

자료 : 수협중앙회, 2002수산물 위(공)판장 현황, 2003.

〈표 1-20〉 지역별 위(공)판장 개설현황

(단위: 개소)

구분	합계	연안			내륙지	2001년	증감
		소계	중앙회	조합			
합계	186	179	1	178	7	200	-14
서울	2	-	-	-	2	2	0
부산	11	11	-	11	-	11	0
대구	1	-	-	-	1	1	0
인천	8	8	1	7	-	7	1
광주	-	-	-	-	-	-	0
대전	-	-	-	-	-	-	0
경기	3	1	-	1	2	3	0
강원	26	26	-	26	-	25	1
충북	-	-	-	-	-	-	-
충남	14	14	-	14	-	17	-3
전북	10	9	-	9	1	10	0
전남	43	43	-	43	-	52	-9
경북	19	19	-	19	-	19	0
경남	41	40	-	40	1	43	-2
제주	8	8	-	8	-	10	-2

주 : 기타(물량장, 멧목, 선상등) 위판장은 포함 안됨.

〈표 1-21〉 수협 계통판매량 현황

(단위: 천M/T)

연도	총생산량	연근해생 산량(A)	계통판매량						계통비율 (B/A),%	
			소계(B)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해조류	기타수 산동물	80.9	
1981	2,811.9	2,229.4	1,731.5	1,110.6	34.7	366.4	206.2	13.5	77.7	
1986	3,660.0	2,673.0	1,954.3	1,280.4	54.9	397.4	270.7	11.7	73.1	
1991	2,983.0	2,079.4	1,476.4	850.0	52.8	356.8	205.4	11.4	71.0	
1992	3,289.0	2,231.0	1,533.4	812.6	59.8	401.1	251.6	8.3	68.7	
1993	3,335.0	2,564.1	1,700.5	897.9	56.7	485.5	251.4	9.0	66.3	
1994	3,476.6	2,558.5	1,622.6	914.2	69.7	368.9	260.7	9.1	63.4	
1995	3,348.2	2,421.7	1,565.0	893.7	57.3	402.4	197.2	14.4	64.6	
1996	3,244.3	2,498.6	1,711.7	1,040.9	56.5	455.7	140.0	18.6	68.5	
1997	3,243.7	2,382.5	1,489.1	820.5	49.1	453.8	142.9	19.8	62.5	
1998	2,835.0	2,085.5	1,370.3	861.4	44.5	397.9	49.8	16.7	65.7	
1999	2,910.6	2,101.4	1,482.3	810.9	46.6	457.6	145.7	21.5	70.5	
2000	2,514.2	1,842.4	1,368.4	701.6	42.3	466.4	139.9	18.2	74.3	
2001	2,665.1	1,907.9	1,447.7	818.5	40.8	423.8	156.2	8.3	75.9	

주 : 연체동물은 패류를 포함

자료 : 수협중앙회(<http://infofishent.suhyup.co.kr>), 통계청.

〈표 1-22〉 수협중앙회 위(공)판 현황현황

(단위: 명, %, 톤, 백만원)

공판장별	위판장 규모(평)				중도매인 수	매참인 수	경매사수			주요취급부류	위판수수료율				2002년 공판 실적		2003년 계획	
	대지	총건평	경매장				자격증보유자	미보유자	선어		활어	패류	기타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유개	무개														
합계	21,365	25,109	5,405	0	314	30	29	0					93,585	219,735	110,969	232,300		
소계	12,508	20,017	3,538	0	285	24	27	0					85,629	202,196	101,269	211,600		
내 륙 지	외발산	9,179	13,038	630		105		6	전부류	3.0	2.5	3.0	3.5	18,610	43,832	21,364	47,000	
	가락		920	600		51	6	7	선어패류	3.0	3.0	3.0	3.0	24,124	66,958	28,159	69,500	
	구리		2,415	1,082		63	6	8	전부류	4.5	4.5	4.5	4.5	34,219	67,941	40,675	67,500	
	전주		1,284	382		20	4	3	선어	4.0	4.0	4.0	4.0	1,764	6,579	3,460	8,100	
	대구	3,329	2,360	844		46		3	선어	5.0		3.0	3.0	6,912	16,886	7,611	19,500	
	연안	8,857	5,092	1,867		29	6	2	선어	3.6	3.6	3.6	3.6	7,956	17,539	9,700	20,700	

〈표 1-23〉 지역 조합별 위(공)판 현황현황

(단위: 명, %, 톤, 백만원)

지역별	조합	위판장 수	위판장 규모(평)				중도매인 수	매참인 수	경매사수			2002년 공판실적		2003년 계획	
			대지	총건평	경매장				자격증보유자	미보유자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유개	무개									
합계		73	180	132,311	56,622	43,029	11,566	2,843	30	115	163	790,518	1,871,684	880,172	1,866,592
경인	조합	5	9	6,577	4,977	2,098	856	143	24	10	5	22,514	146,121	25,375	137,448
강원	조합	9	26	15,059	5,004	5,566	4,290	128		-	32	63,470	162,926	89,080	162,000
충청	조합	7	14	3,656	2,195	2,085	60	154	6	7	9	21,862	64,723	41,685	85,947
전북	조합	3	9	7,435	3,270	2,625	20	149	6	8	4	29,697	62,302	27,016	61,010
전남	조합	17	43	42,712	16,705	9,982	3,405	770		24	52	205,117	369,489	240,368	398,560
경북	조합	8	19	19,037	5,678	6,205	1,493	316	4	12	13	112,449	208,816	120,345	200,950
경남	조합	15	41	27,920	13,615	9,882	0	704		39	30	187,629	435,811	180,522	438,741
부산	조합	3	11	3,680	1,774	1,598	1,442	283	6	13	2	110,942	161,011	114,156	152,800
제주	조합	6	8	6,235	3,404	2,988	0	196	6	2	16	36,838	260,485	41,625	229,136

2. 일본 도매시장 관련 통계자료

〈표 II-1〉 일본 도매시장의 종류와 자격요건

구 분	요 건	개설자의 인가 등
중 앙 도매시장	도도부현, 인구20만인 이상의 시 또는 이들이 소속된 일부 사무조합혹은 광역연합조합이 농림수산성 장관의 인가를 얻어 개설한 도매시장(법 제2조 제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설자 : 지방공공단체 (농림수산성장관의 인가) ◦ 도매업자 : 주식회사 등 (농림수산성 장관의 허가) ◦ 중매업자 : 주식회사, 개인 등 (개설자 허가) ◦ 관련사업자 : 주식회사, 개인 등 (개설자 허가) ◦ 매매참가자 : 주식회사, 개인 등 (개설자 승인)
지 방 도매시장	중앙도매시장 이외의 도매시장으로서 도매장의 면적이 일정 규모(정령규모 : 청과시장 330㎡, 수산 200㎡(산지시장은 330㎡) 이상의 것으로 하고 도도부현 지사의 인가를 얻어 개설된 시장(법 제2조 제4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설자 : 지방공공단체, 주식회사, 농협, 어협 등 (도도부현 지사의 허가) ◦ 도매업자 : 개설자의 경우와 동일 (도도부현 지사의 허가) ◦ 중매업자 : 주식회사, 개인 등 (일반적으로 개설자의 승인, 지사에의 제출) ◦ 매매참가자 : (중매업자의 경우와 동일)
기타의 시 장	중앙 및 지방도매시장 이외의 도매시장	도매시장법에 규정은 없음, 다만 조례에 필요한 규제를 하는 것이 가능

〈표 II-2〉 일본도매시장의 수, 취급금액, 시장관계자 수

구 분	시 장 수	취급금액 (억엔)	도매업자수	중매업자수	매매참가자수
중앙도매시장	86(56도시)	51,164	243	5,622	45,621
청과	71(55도시)	21,565	102	2,168	23,673
수산물	53(46도시)	25,869	92	3,215	9,048
식육	10(10도시)	1,841	10	99	1,911
화훼	24(19도시)	1,556	31	105	10,983
기타	9(6도시)	333	10	35	6
지방도매시장	1,390(공설157)	42,371	1,619	2,468	171,350

주 : 1) 중앙도매시장의 종합도매시장은 57, 청과단독시장은 15, 수산물단독시장은 5개소임

2) 화훼시장은 도매업자 중 2개사가 청과물의 도매업자를 겸영하고 있음.

자료 : 日本農林水産省 綜合食料局 流通課.

〈표 II-3〉 일본도매시장의 수산물 거래실적추이

(단위: 천톤, 억엔)

연 도	생 선		냉 동		가 공		합 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1989	1,738	13,703	1,155	10,034	1,228	9,272	4,137	33,131
1990	2,659	13,992	1,105	10,290	1,185	9,710	3,949	34,106
1991	1,705	14,403	1,066	9,804	1,178	9,865	3,971	34,206
1992	1,728	14,257	1,004	9,272	1,118	9,458	3,866	33,100
1993	1,661	13,692	1,016	8,605	1,104	9,058	3,799	31,477
1994	1,647	13,302	972	8,506	1,067	9,470	3,706	30,415
1995	1,657	13,329	967	8,211	1,056	8,382	3,698	30,046
1996	1,662	13,463	924	8,512	1,056	8,419	3,660	30,519
1997	1,689	13,459	847	8,170	1,114	8,816	3,665	30,566
1998	1,651	12,895	846	7,789	1,089	8,485	3,602	29,292
1999	1,658	12,800	851	7,575	1,064	8,244	3,587	28,711
2000	1,615	12,171	845	7,115	1,037	7,788	3,513	27,177
2001	1,572	11,556	847	6,772	1,002	7,445	3,438	25,869

〈표 II-4〉 일본 도매시장 개설도시, 시장수, 취급규모 현황

(단위 : 개소, 억엔)

번호	개설도시명	개설시장수							취급규모			
		계	청과수산화물	청과수산물	청과화물	청과	수산물	식육	청과	수산물	식육	화물
1	삿보르	1		1					580	1,462		
2	宝蘭	1		1					52	85		
3	시쿠로	1			1				84			7
4	函館	1				1			150			
5	아오모리(青森)	1	1						137	566		15
6	八戸	1			1				186			18
7	모리오카(盛岡)	1		1					222	218		
8	센다이(仙台)	2	1					1	528	932	153	115
9	아키타(秋田)	1	1						184	243		24
10	야마가타(山形)	1		1					141	111		
11	후쿠시마(福島)	1		1					220	115		
12	이와키	1	1						169	227		11
13	宇都宮	1		1					381	314		
14	사이타마	1						1			103	
15	도쿄(東京都)	11 (3분장)	1	1	4	3 (2분장)	1	1 (1분장)	5,354	6,035	765	939
16	지바(千葉)	1		1					214	301		
17	후나바시(船橋)	1		1					135	298		
18	요코하마	3	1	1				1	956	1,181	161	33
19	川崎	2	2						252	582		43
20	藤澤	1				1			73			
21	甲府	1		1					145	155		
22	靜清	1		1					295	332		
23	浜松	1		1					305	379		
24	新瀉	1				1			233			
25	도야마(富山)	1	1						159	147		15
26	金澤	1		1					233	728		
27	후쿠이(福井)	1	1						118	212		13
28	나고야(名古屋)	3		2				1	1,501	1,855	75	
29	기후(岐阜)	1		1					547	232		
30	미에현	1		1					155	64		

부 록-II. 수산물 유통관련 통계 및 자료

번호	개 설 도시명	개 설 시 장 수							취 급 규 모			
		계	청과 수산 화훼	청과 수산	청과 화훼	청과	수산	식육	청과	수산	식육	화훼
31	게이도(京都)	2		1				1	686	494	61	
32	오사카(大阪府)	1		1					499	680		
33	오사카(大阪市)	3		2				1	1,718	2,513	251	
34	神戸	3	1	1				1	475	783	111	53
35	尾崎	1		1					97	96		
36	姫路	1		1					139	383		
37	和歌山	1		1					139	237		
38	나라현(奈良縣)	1		1					317	230		
39	오카야마(岡山)	1	1						257	377		72
40	쿠레(呉)	1		1					62	44		
41	히로시마(廣島)	3	1			1		1	468	420	53	80
42	宇部	1				1			139			
43	下關	1				1			64			
44	徳島	1		1					187	338		
45	다카마츠(高松)	1	1						159	249		26
46	마츠야마(松山)	2			1		1		221	146		26
47	코치(高知)	1		1					171	226		
48	키타큐슈(北海島)	1		1				1	333	369		
49	후쿠오카(福岡)	5				3	1		512	867	108	
50	나가사키(長崎)	1				1			164			
51	사세보(佐世保)	2			1		1		73	99		11
52	久留未	1		1					101	107		
53	오이타(大分)	1		1					158	113		
54	미야자키(宮崎)	1	1						287	100		25
55	가고시마(鹿嶋島)	2				1	1		285	221		
56	오키나와	1			1				148			30
합 계		86	15	33	9	14	5	10	21,565	25,869	1,841	1,556

주 : 개설시장수는 2003년 3월 현재, 취급규모는 2001년 기준

〈표 II-5〉 일본 중앙도매시장 도매업자 및 취급규모 현황

(단위: 명, 억엔)

연 도	도매업자 현황						취급규모 현황		
	청 과		수산물		합 계		청 과	수산물	합 계
	시장수	업자수	시장수	업자수	시장수	업자수			
1989	72	117	54	97	88	263	25,579	33,131	63,902
1990	72	117	54	96	88	263	28,472	34,106	67,770
1991	72	116	54	96	88	262	29,597	34,206	68,890
1992	72	114	54	96	88	262	26,721	33,100	64,561
1993	72	114	54	96	88	262	28,234	31,477	64,397
1994	72	114	54	96	88	263	27,574	30,415	62,624
1995	72	113	54	96	88	263	26,249	30,046	61,090
1996	72	112	54	95	87	261	26,085	30,519	61,579
1997	72	112	53	97	87	263	25,567	30,566	60,669
1998	72	112	53	96	87	260	27,143	29,292	60,784
1999	72	109	53	96	87	256	24,115	28,711	56,983
2000	72	108	53	95	87	252	23,240	27,177	54,518
2001	71	106	53	93	86	249	21,565	25,869	51,164

〈표 II-6〉 일본 중앙도매시장의 취급규모별 도매업자수 현황(2001년기준)

구 분	취급규모별 업자수						1업자당 거래금액(억엔)		
	50억엔 미 만	50~100 억엔미만	100~500 억엔미만	500~1,000 억엔미만	1,000억엔 이상	계	평 균	최 고	최 저
청 과	3	36	59	7	1	106	203	1,475	37
수산물	6	23	50	9	5	93	278	1,836	15
식 육	-	3	6	1	-	10	184	765	53
화 훼	10억엔미만	10~30	30~50	50~100	100억이상	계	50	264	4
	2	17	3	6	3	31			

주 : 2001년도 실적이 있는 업자를 대상으로 하였음.

자료 : 日本 農林水産省 綜合食料局 流通課.

〈표 II-7〉 일본 중앙도매시장 수산물의 집하선별 취급현황

(단위: 백만엔, %)

연 도	취 급 합계금액	집 하 선 별 비 율									
		생산자 개 인	생산자 임의 단체	농협계 통출하 단체	산지 출하 업자	상 사	수산 회사	타시장 도매업 자	타시장 중매업 자	기 타	계
1991	3,340,784	6.9	1.1	6.4	43.3	5.0	10.2	3.7	1.4	22.1	100.0
1992	3,234,913	6.9	1.0	6.4	43.3	5.0	9.4	3.5	1.4	23.0	100.0
1993	3,075,037	7.0	1.1	6.2	44.0	5.0	8.8	3.6	1.3	23.0	100.0
1994	3,031,172	6.9	1.3	6.5	42.6	5.4	9.4	3.8	1.2	23.0	100.0
1995	2,915,507	6.8	1.2	5.9	43.7	5.3	9.1	3.7	1.1	23.2	100.0
1996	2,987,063	7.1	1.2	5.8	43.4	5.5	9.3	3.6	1.1	23.1	100.0
1997	2,973,882	8.0	1.2	5.8	42.9	5.4	8.9	3.7	1.1	23.0	100.0
1998	2,850,719	8.1	1.1	5.8	42.6	5.8	8.6	3.6	1.1	23.4	100.0
1999	2,788,647	8.1	1.1	6.2	42.0	5.8	8.5	3.7	1.1	23.5	100.0
2000	2,636,899	8.3	1.1	6.2	41.8	5.6	8.5	3.8	1.1	23.6	100.0
2001	2,491,780	8.5	1.1	6.0	41.5	5.6	8.6	3.9	1.1	23.8	100.0

〈표 II-8〉 일본 중앙도매시장 중매업자 현황추이

(단위: 명)

연 도	청 과	수산물	식 육	화 훼	기 타	합 계
1991	2,524	3,736	96	65	49	6,470
1992	2,516	3,694	104	66	49	6,429
1993	2,489	3,666	105	76	48	6,384
1994	2,467	3,617	107	76	49	6,316
1995	2,440	3,558	110	93	48	6,249
1996	2,396	3,501	110	93	45	6,145
1997	2,355	3,455	108	101	44	6,063
1998	2,309	3,398	107	100	42	5,956
1999	2,262	3,344	105	99	40	5,850
2000	2,213	3,267	104	100	35	5,719
2001	2,168	3,215	99	105	35	5,622

주 : 각년도말 현재의 업자수임(허가기준)

〈표 II-9〉 일본 중앙도매시장의 중매업자 취급현황(2001년 조사치)

(단위: %)

구분 부별	구입처별 취급상황			판매처별 취급상황					
	도매 업자	도매업 자이외	계	소계	개설구역내		소계	개설구역외	
					일 반 소매점	대규모 소매점		일 반 소매점	대규모 소매점
청과부	87.6	12.4	100.0	75.9	25.7	37.9	24.1	3.0	10.9
수산물	87.3	12.7	100.0	76.9	25.6	31.8	23.1	3.5	9.1
식육부	87.9	12.1	100.0	57.0	6.1	24.7	43.0	0.6	7.9
화훼부	92.0	8.0	100.0	69.2	51.7	8.6	30.8	15.4	4.5

주 : 대규모소매점에는 슈퍼마켓, 백화점이외에 생협, 단체급식, 도매업자 등이 포함.

〈표 II-10〉 일본 중앙도매시장의 중매업자의 대금회수
현황(평균회수일수기준)

(단위: 일)

구분	부 문	청 과		수 산		식 육		화 훼	
		2000	2001	2000	2001	2000	2001	2000	2001
일 반 소매점		14.77	15.76	18.80	18.74	29.80	28.64	26.85	23.37
대규모 소매점		22.85	22.79	30.43	30.74	35.30	34.39	29.31	29.45

자료 : 전국 중앙도매시장 협회 조사

〈표 II-11〉 일본 중앙도매시장 매수규모별 매매참가자수(2001년 기준)

구 분	매매참가자수		매 수 규 모 별 업 자 수					1업자당 매수금액 (만엔)		
	총 수	1시장 당평균	300만엔 미만	300 ~ 1,000	1,000 ~ 3,000	3,000 ~ 1억	1억 엔이상	평균	최고	최저
청 과	23,858	336	12,612	4,642	3,536	1,916	1,152	2,210	687,984	0
			52.9	19.5	14.8	8.0	4.8			
수 산 물	9,186	173	5,038	1,480	1,160	801	707	4,097	1,202,771	0
			54.8	16.1	12.6	8.7	7.7			
식 육	1,911	191	1,098	190	201	190	232	6,378	793,853	0
			57.5	9.9	10.5	9.9	12.1			
화 훼	10,988	458	5,850	2,465	1,877	653	153	1,003	168,560	0
			53.2	22.4	17.1	5.9	1.4			

주 : 1) 업자수에는 연도중에 매매참가권을 취득 또는 반납한 업자 포함

2) 규모별 매수규모별 업자수의 아랫칸의 숫자는 구성비(%)이며, 반올림으로 합계가 100이 안되는 경우도 있음.

〈표 II-12〉 일본 중앙도매시장 업태별 매매참가자수

부 류		점포의 위치별 비율(%)		업 종 별 비 율(%)						
		개 설 구역내	개 설 구역외	일 반 소매점	수퍼마켓업자	생협, 소비 자조합등	급식, 외식 납품업자	가 공 업 자	지방시정등 도매업자	기 타
청 과	1999	70.9	29.1	82.9	6.0	0.7	3.5	2.0	0.8	4.1
	1994	71.5	28.5	86.6	6.1	0.8	2.2	1.7	1.0	1.6
수 산	1999	72.4	27.6	73.8	6.3	0.8	5.4	4.5	3.9	5.3
	1994	70.1	29.9	78.0	6.4	0.6	2.8	5.8	1.8	4.6
식 육	1999	59.6	40.4	65.8	1.6	0.7	0.8	7.8	17.8	5.5
	1994	63.8	36.2	66.8	4.3	0.6	7.8	6.5	6.9	12.1
화 훼	1999	56.8	43.2	91.8	2.2	0.1	1.8	0.2	0.5	3.5
	1994	49.8	50.2	97.5	0.7	0.1	-	-	0.5	1.1

자료 : 식품수급연구센터 조사('99년 3월 및 '94년 3월 조사)

〈표 II-13〉 일본 지방도매시장 영업수지내역(2001년기준)

(단위: 억엔, %)

구 분	청 과	수 산	식 육	화 훼
취 급 액	21,565 (23,240)	25,869 (27,177)	1,841 (2,339)	1,556 (1,392)
사업수익	7.13(7.16)	4.72(4.67)	3.33(3.58)	10.38(9.41)
위탁수수료	5.73(5.82)	1.53(1.56)	2.64(3.19)	9.10(8.14)
매취수익	1.08(1.05)	2.64(2.54)	0.21(0.21)	0.16(0.12)
겸업수익	0.32(0.29)	0.55(0.57)	0.48(0.18)	1.12(1.16)
영업경비	7.04(6.91)	4.50(4.49)	4.33(4.06)	9.61(8.82)
시장사용료	0.51(0.49)	0.33(0.32)	0.37(0.43)	0.67(0.57)
출하장려금	0.80(0.81)	0.08(0.09)	0.66(0.78)	0.10(0.09)
완납장려금	0.94(0.95)	0.24(0.24)	0.15(0.19)	0.21(0.21)
인 건 비	3.10(3.00)	2.19(2.17)	1.82(1.75)	5.15(4.89)
집하판매비	0.47(0.46)	0.48(0.48)	0.09(0.09)	0.64(0.58)
영업수익	0.10(0.25)	0.22(0.19)	▲0.09(▲0.48)	0.77(0.59)

주 : 1) ()내는 전년도(2000년도)임.

2) 취급액은 겸업을 포함함

3) 인건비는 "임원 급여수당", "종업원 급여수당", "복리후생비", "퇴직급여금", "퇴직급여 충당금 전입"의 합계임

4) 집하판매비는 "여비·교통비", "통신비", "운반비", "회의비", "교제비"의 합계임

5)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표 II-14〉 일본 중앙도매시장 도매업자의 수익성 비교(2001년기준)

(단위: 백만엔, %)

구 분	전도매업자	음식료품 도매업자	중앙도매시장 청과	중앙도매시장 수산물
종업원 1인당 연간매상고	63	78	224	349
매 상 고 총 이 익 율	21.4	17.7	7.13	4.72
매상고 경상 이익율	0.6	0.4	0.21	0.33

주 : 1) 종업원 1인당 연간 매상고는 가중평균에 의한

2) 全都賣業, 음식료품 도매업의 수치에 관하여는 '99년도 데이터임

〈표 II-15〉 일본 중앙도매시장 중매업자의 경영현황

(단위: 억엔, %)

연 도	총매상고	조이익율	인건비율	영업경비율	영업이익율
1991	9.93	10.5	5.8	4.0	0.8
1992	10.30	11.0	6.0	4.1	0.9
1993	10.20	11.2	6.3	4.2	0.6
1994	8.69	11.9	6.8	4.4	-0.2
1995	8.30	12.0	7.2	4.6	0.2
1996	8.55	12.2	6.9	4.7	0.6
1997	8.57	11.1	6.7	4.4	-0.1
1998	8.34	10.7	6.7	4.6	-0.7
1999	10.14	12.6	8.6	3.8	0.2
2000	8.15	11.4	6.9	4.8	-0.2
2001	7.78	12.0	6.9	4.8	0.3

주 : 영업경비율은 인건비를 제외한 기타 영업비의 비율.

자료 : 日本 全國中央都賣市場協會 調査

〈표 II-16〉 일본 지방도매시장 현황

(단위: 개소, 억엔, 명)

구 분	시장수 (2001. 3현재)	취급금액 (2000년도)	도매업자수 (2001. 2)	중매업자수 (2001. 4)	매매참가자수 (2001. 4)
지방도매시장	1,390 (公設 157) (소비지 1,047)	42,371억엔 (그중 소비지 33,331)	1,619 (그중 소비지 1,269)	2,468	171,350
청과	695	15,835	777		
수산물(소비지)	331	10,916	374		
수산물(산지)	343	9,040	350		
식육	33	2,453	29		
화훼	184	3,392	190		
기타		735			

주 : 1) 지방도매시장의 종합시장은 172(그중 123은 청과 및 수산물시장), 단독시장은 청과물 550, 수산물(소비지)182, 수산물(산지 343), 식육 25, 화훼 142임

2) 도매업자는 허가건수이며, 그중 2부류이상 취급하는 업자가 93, 청과물만 취급하는 업자가 684, 수산물만 취급하는 업자가 300(소비지) 및 350(산지), 식육 단독 25, 화훼 단독 167개소임

자료 : 日本農林水産省 綜合食料局 流通課.

〈표 II-17〉 일본 지방도매시장 취급실적 추이

(단위: 천톤, 억엔)

연 도	신 선		냉 동		가 공		수 산 계		식 육 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1991	945	6,448	463	3,622	569	4,308	1,977	14,378	261	2,679
1992	902	6,474	430	3,482	575	4,213	1,907	14,169	309	2,678
1993	813	6,253	432	3,274	575	4,097	1,820	13,624	319	2,789
1994	873	6,193	445	3,190	561	3,868	1,879	13,251	320	2,735
1995	849	6,035	432	3,137	541	3,802	1,822	12,974	292	2,729
1996	842	5,953	395	3,094	562	3,705	1,799	12,752	269	2,395
1997	845	5,868	416	2,933	525	3,610	1,786	12,411	297	2,455
1998	795	5,643	394	2,902	516	3,563	1,705	12,108	342	2,592
1999	768	5,505	397	2,743	507	3,438	1,671	11,686	354	2,751
2000	726	5,140	379	2,559	478	3,218	1,583	10,916	326	2,453

자료 : 농림수산성 종합 식료국유통과.

〈표 II-18〉 일본 지방도매시장 거래형태별 추이

(단위: %)

구 분	청 과	수 산		수 산	식 육	화 췌
		채 소	과 일			
1991	66.6	70.2	61.2	30.2	68.2	95.6
1992	63.4	66.5	59.0	29.2	59.1	95.4
1993	62.9	65.6	57.8	28.5	54.6	95.6
1994	59.2	61.9	54.8	27.3	42.6	95.3
1995	55.9	58.9	51.1	26.3	54.6	94.3
1996	53.6	56.6	50.6	25.5	55.4	91.6
1997	52.2	54.6	47.8	24.3	52.9	90.9
1998	52.0	54.7	47.2	24.9	48.2	89.1
1999	50.5	53.1	46.1	24.4	44.8	87.6
2000	47.9	50.8	43.0	22.1	38.6	85.6

주 : 경매·입찰의 경우, 금액기준임.

〈표 II-19〉 일본 지방도매시장 위탁집하 비율추이(금액기준임)

(단위: %)

구 분	청 과	수 산		수 산	식 육	화 췌
		채 소	과 일			
1991	72.4	76.1	66.9	30.6	72.2	96.1
1992	71.5	75.5	65.6	32.4	66.1	96.4
1993	70.9	74.4	64.5	31.3	58.6	95.2
1994	71.1	74.3	66.1	30.4	58.5	96.3
1995	70.1	73.5	63.3	29.2	59.5	96.3
1996	69.6	72.9	64.6	28.7	58.2	95.2
1997	70.0	73.3	64.0	29.2	60.8	93.6
1998	69.9	73.0	64.1	28.4	58.8	94.0
1999	68.8	72.2	62.9	28.1	56.1	95.0
2000	68.3	71.2	63.5	26.1	47.5	94.9

〈표 II-20〉 일본 지방도매시장 도매업자 현황 추이

(단위: 개소, 명)

연 도	청과부		수산(소비지)		수산(산지)		식육부		화훼부		합 계	
	시장수	업자수	시장수	업자수	시장수	업자수	시장수	업자수	시장수	업자수	시장수	업자수
1991	821	925	379	445	340	360	37	36	223	224	1,596	1,877
1992	812	914	376	431	342	362	37	36	221	224	1,586	1,857
1993	804	906	377	429	342	363	36	33	214	214	1,571	1,836
1994	792	895	363	420	343	363	39	39	200	193	1,547	1,812
1995	781	878	360	420	346	386	39	35	198	200	1,521	1,790
1996	769	860	357	409	348	367	39	35	190	193	1,500	1,762
1997	759	853	352	402	348	368	38	33	189	194	1,484	1,745
1998	747	840	348	401	346	363	37	32	190	195	1,465	1,720
1999	735	822	343	404	346	353	36	31	187	196	1,447	1,683
2000	718	800	339	386	345	349	34	30	187	191	1,427	1,655
2001	695	777	331	374	343	350	33	29	184	190	1,390	1,619

〈표 II-21〉 일본 지방도매시장 취급규모별 도매업자 추이

(단위: 명)

연 도	합계	1억엔미만	1~5억엔	5~10억엔	10~20억엔	20~50억엔	50억엔이상
1991	1,857	108	429	336	341	370	273
1992	1,836	122	439	324	323	365	263
1993	1,812	118	431	310	328	362	263
1994	1,790	130	423	302	331	356	248
1995	1,762	139	436	279	310	357	241
1996	1,745	113	417	300	323	348	244
1997	1,720	116	421	287	312	331	253
1998	1,683	196	379	260	296	310	242
1999	1,655	208	379	265	280	288	235
2000	1,619	209	384	250	275	285	216

자료 : 日本農林水産省 綜合食料局 流通課 調査資料.

〈표 II-22〉 일본 전문소매업의 신선식품 판매액 현황

(단위: 백만엔)

항 목	연 도					
	1982	1985	1988	1991	1994	1997
채소판매액	2,116,678	2,224,713	2,504,926	3000,027	2,927,772	2,825,093
채소·과일소매업	802,746	779,724	844,891	976,718	873,990	769,453
비 율(%)	38	35	34	33	30	27
과일판매액	1,189,661	1,355,762	1,405,692	1,564,876	1,543,502	1,410,306
채소·과일소매업	642,602	652,720	667,168	721,614	639,222	520,386
비 중(%)	54	48	47	46	41	37
선어판매액	2,69,4827	2,940,198	3,198,806	3,589,373	3,616,093	3,453,640
선어소매업	1,344,571	1,328,983	1,358,472	1,441,087	1,396,045	1,217,527
비 중(%)	50	45	42	40	39	35
식육판매액	2,285,074	2,438,156	2,596,939	2,904,242	2,818,938	2,672,586
식육소매업	1,100,964	1,039,255	1,013,995	1,040,551	924,491	752,350
비 중(%)	48	43	39	36	33	28

주 : 각 품목의 판매액에는 백화점에 의한 판매액은 계상되지 않음

자료 : 日本通商産業省 「商業統計表」(品目篇)

〈표 II-23〉 일본 소비자의 식료품 전문소매업의 신선식품 판매액 현황

(단위: %)

구입처 종류		채 소	과 일	선 어	정 육	부 식	냉동식품
일반소매점(전문점)		16.3	16.3	14.2	12.2	4.4	0.7
일반소매점(종합점)		4.3	5.0	2.4	1.4	2.5	1.2
수퍼 마켓	종합수퍼	19.5	21.0	22.1	22.6	24.0	31.2
	식품수퍼	39.1	38.6	40.2	37.6	32.9	41.6
	편 의 점	0.0	0.0	0.0	0.1	1.1	0.0
	소 계	58.6	59.6	62.3	60.3	58.0	72.8
생 협	11.6	11.6	14.0	19.0	7.9	16.9	
농 협	2.8	1.5	0.4	0.8	0.4	0.6	
백 화 점	0.9	1.0	2.7	3.7	8.0	0.7	
소 매 시 장	2.7	2.8	2.8	1.4	0.7	0.3	
기 타 (무응답 포함)		3.0	2.4	1.3	1.3	18.3	6.9

주 : 일반소매점(전문점) : 채소점(八百店), 생선점(魚屋) 등의 전통적인 점포

일반소매점(종합점) : 각종 식료품을 취급하고 있는 모든 전통적인 점포

종합수퍼 : 셀프서비스 중심의 대형체인점으로 의, 식, 주 전반에 관한 상품을 구성한 점포

식품수퍼 : 식료품을 주력으로 하는 셀프서비스 체인점포

편 의 점 : 밤늦게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 셀프서비스 방식의 근대적 체인점포

소매시장 : 동일건물을 구역을 나누어 각종의 식료품점이 출점하고 있는 점포, 시장이라고도 부르고 있음

자료 : 농림수산성 「식료품 소비 모니터 조사」(2000년 8월)

〈표 II-24〉 일본 할인점의 수산신선식품의 구입선별 구성 현황(1999년기준)

(단위: %)

구분	합계	중앙도매시장		지방 도매 시장	시장외 도매상	산지 출하 업자	어협, 어련	대 규모 수산회사	수입 상사	직수입	기타
		도매 업자	중매업 자								
생선품	100.0	11.2	36.4	28.5	6.8	6.5	2.5	6.2	0.9	0.1	1.0
냉동품	100.0	7.5	22.5	12.8	18.5	3.3	1.1	24.4	5.8	1.4	2.7
塩干가공품	100.0	6.8	30.8	14.0	18.9	8.7	1.9	16.6	1.1	0.4	2.2

주 : 1) 「-」는 실적이 없는 것이며, 「0.0」은 단위에 미달하는 것임

2) 반올림의 관계로 합계가 100이 안되는 경우도 있음.

자료 : (사)식품수급연구센터, 「도매시장 실태조사 보고서」(2000. 12)

〈표 II-25〉 일본 외식산업 시장규모 추이

(단위: 10억엔, %)

연 도	급식주체		요식주체		합 계
	시장규모	전년대비	시장규모	전년대비	
1991	20,512	3.9	6,920	7.1	27,432
1992	20,936	2.1	7,007	1.3	27,943
1993	21,017	0.4	6,965	▲0.6	27,982
1994	21,173	0.7	6,754	▲3.0	27,927
1995	21,436	1.2	6,661	▲1.4	28,097
1996	21,859	2.0	6,792	2.0	28,650
1997	22,264	1.9	6,811	0.3	29,074
1998	21,871	▲1.8	6,625	▲2.7	28,496
1999	21,231	▲2.9	6,140	▲7.3	27,371
2000	21,185	▲0.2	5,992	▲2.4	27,177
2001	21,035	▲1.3	5,877	▲2.3	26,912

자료 : (재)외식산업 종합조사연구센터 추계

〈표 II-26〉 일본 외식산업중 수산물 구입선별 구성비(1999년기준)

(단위: %)

구분	합계	중앙도매시장		지방도매시장	납품업자, 일반소매점	산지출하업자	어협, 어련	대규모수산회사	輸入商社	직수입	기타
		도매업자	중매업자								
신선품	100.0	17.0	38.6	5.4	24.0	2.7	0.9	10.9	0.5	-	-
냉동품	100.0	8.5	10.2	1.2	21.4	1.3	2.6	33.6	17.0	4.2	0.0
염간가공품	100.0	23.7	7.9	6.6	45.5	0.8	-	15.1	0.1	-	0.3

자료 : 일본 (사)식품수급연구센터, 「도매시장 실태조사 보고서」, 2000.

〈표 II-27〉 일본 도매시장 취급금액 추이

(단위: 개소)

연도	중앙도매시장	지방도매시장			
		소계	公設	제3섹터	民設
1991	88	1,596	154	28	1,414
1992	88	1,586	154	31	1,401
1993	88	1,571	154	33	1,384
1994	88	1,547	155	32	1,360
1995	88	1,521	155	34	1,332
1996	87	1,500	157	37	1,306
1997	87	1,484	156	37	1,291
1998	87	1,465	156	38	1,271
1999	87	1,447	158	38	1,251
2000	87	1,427	157	38	1,232
2001	86	1,390	157	38	1,195

〈표 II-28〉 일본 도매시장 취급금액 추이

(단위: 억엔)

연 도	중앙도매시장			지방도매시장		
	소 계	청 과	수산물	소 계	청 과	수산물
1991	68,890	29,597	34,206	56,968	21,331	14,378
1992	64,561	26,721	33,100	53,425	19,186	14,169
1993	64,397	28,234	31,477	54,645	20,128	13,624
1994	62,624	27,574	30,415	51,714	19,853	13,251
1995	61,090	26,249	30,046	51,032	18,866	12,974
1996	61,579	26,085	30,519	47,873	18,441	12,752
1997	60,669	25,567	30,566	47,327	17,633	12,411
1998	60,784	27,143	29,292	48,059	18,798	12,108
1999	56,983	24,115	28,711	44,858	16,736	11,686
2000	54,518	23,240	27,177	42,371	15,835	10,916

〈표 II-29〉 일본 도매시장 경유율 추이

(단위: %)

연 도	청 과			수산물	식 육			화 체
	소 계	채 소	과 일		소 계	우육	돈육	
1991	80.6	82.9	76.2	76.7	19.6	34.1	12.3	86.6
1992	79.6	85.5	69.6	75.6	17.9	28.8	11.7	83.1
1993	80.0	84.8	72.0	70.2	16.3	22.7	12.1	85.8
1994	74.7	82.7	62.8	70.2	16.0	22.5	11.5	85.1
1995	74.2	80.8	63.4	67.6	15.5	21.5	11.1	81.9
1996	74.8	82.6	61.7	69.4	14.9	21.5	10.6	84.1
1997	74.7	83.0	61.6	71.0	15.1	20.4	11.2	85.5
1998	74.8	82.8	61.7	71.6	15.5	20.3	12.1	85.6
1999	71.4	80.3	57.2	68.6	16.7	22.5	12.8	83.7
2000	70.9	79.2	57.6	66.2	17.1	23.3	12.6	79.1

자료 : 日本農林水産省, 「食料需給表」 등에 의해 추계.

III. 일본 쓰키치 도매시장의 전환과 토요스 신시장의 구상

- 일본의 동경도 중앙도매시장은 기존의 쓰키치(築地) 도매시장의 이전을 중심으로 하는 토요스(豊洲) 신시장 기본구상을 결정하였음. 이 토요스 신시장 건설을 위해 동경도는 2003년 7월부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검토에 들어갔으며 2004년 6월에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임.
- 이러한 이웃 일본의 움직임은 수년 전부터 논의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이전 또는 합리화 문제에도 좋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여기서는 토요스(豊洲) 중앙도매시장의 기본구상과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이들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1. 쓰키치(築地) 시장의 과제와 신시장 건설의 필요성

- 쓰키치 시장은 청과물과 수산물을 합쳐서 연간 100만 톤, 금액으로 6천억 엔을 취급하는 일본 최대의 중앙도매시장인데, 이 시장은 1,200만 명의 동경 도민에게 신선식품을 제공하는 시장으로서 기능뿐만 아니라 총 취급량 4할 정도를 3,300만 명의 수도권에 공급하는 광역유통거점, 집산거점으로서 수산유통의 핵으로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 그러나 1935년, 600만 명의 동경도민에게 신선식품을 공급할 목적으로 개장된 쓰키치 시장은 당시와는 전혀 다른 환경에 둘러싸여 있으며 다음과 같은 다양한 과제를 안고 있음.
 - 첫째, 현재의 시장 소재지에서는 유통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물류시스템의 재구축, 위생관리의 강화, 구매자가 요구하는 가공, 배송 등의 부

- 가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새로운 기능을 도입할 여지가 없음.
- 둘째, 부지가 협소하여 수송수단의 변화에 의하여 증대한 물류량에 대응할 수 없으며, 시장내외에서 위법주차 및 주변도로의 체증 등을 유발하고 있음.
 - 셋째, 재정비 공사로는 시장기능이 장기에 걸쳐 저하하여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현재의 부지에서의 정비는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점등의 과제를 안고 있음.
- 이상과 같은 과제에 대한 해결을 통하여 쓰키치 시장을 100년 이후의 시대에도 수도권의 신선 식품유통의 중핵을 담당하는 시장으로 재생시키기 위해서는 정보화, 물류의 효율화, 위생·환경대책의 강화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더욱이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식문화·식정보를 발신할 수 있는 기능과 외식, 간식의 증가 등 식생활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가공·배송 등의 부가가치 기능의 보완이 요청되고 있음.
 - 과제 실현을 위해서 동경도는 2000년 12월 「제7차동경도도매시장정비계획」에서 쓰키치 시장을 토요스로 이전기로 결정하였는데, 이유는 신시장의 건설에 불가결한 대규모 용지의 확보가 가능하며, 소비지인 기존 시가지의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양호한 교통조건과 기존의 상권에 가까워 기능면 및 경영면에서 쓰키치 시장과의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등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최적지라는 점에 주안하였음.

2. 토요스(豊洲) 신시장 건설의 의의

- 토요스 신시장은 수도권 3,300만 명의 먹거리를 제공하는 기간시장으로서 급변하는 유통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설설치뿐만 아니라 위생관리 등 안전대책의 강화, 지역 환경부하의 경감, 소비자

에게 개방된 시장 건설 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시장의 개장은 2012년에서 2016년으로 예정하고 있음.

- 이 기본구상은 신시장의 건설 의의를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는데, 하나는 식품유통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이며, 다른 하나는 기존의 중앙도매시장의 한계를 들고 있음. 이러한 한계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그 동안 신선 식품유통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왔던 도매시장은 식품 유통환경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취급물량의 감소, 시장간 격차 확대 등에 직면하는 등 중대한 전환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며, 둘째, 세계 식품시장의 개방화와 정보기술의 진보 등 사회경제상황의 변화는 신선 식품유통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 셋째, 신선 식품의 생산, 유통, 소매, 소비자의 소비형태 변화 등 도매시장을 둘러싼 환경도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시장 건설이 요청되었다는 것임.
- 따라서 도매시장도 이상과 같은 사회의 급격한 여건 변화에서 동떨어져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었음. 향후 도매시장은 거래규제며 시장업자의 허가제도, 생산자 중시라는 지금까지 도매시장을 지탱하여 왔던 구조를 개선하여 철저한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소비자의 발상을 중시하는 새로운 구조로의 탄생하여야 한다는 것임. 더욱이 적정한 수익자 부담을 토대로 한 계획적·효율적인 시설정비 및 다양한 정비수법의 도입 등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3. 토요스(豊洲) 신시장의 기본구상

- 토요스 신시장의 기본구상(concept)은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음. 첫째, 소비와 유통의 변화에 적절한 대응이며, 둘째, 지역의 발전과 환경에 대한 배려이며, 셋째, 동경도민과 소비자에 개방된 시장건설임.

1) 소비와 유통의 변화에 적절한 대응

- 기간시장으로서의 역할 강화 및 유통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설정비, 안전·위생대책의 강화 등 소비자 및 시장 이용자의 기대에 대응하는 시장건설을 추진함.

- ①동경도민의 식탁, 수도권 3,300만 명의 기간시장

도매시장에서는 유통경로의 다원화, 시장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대규모 집산시장과 대규모 집산시장에 집하를 의존하는 시장에 대한 기능분화가 진행되고 있음. 쓰키치 시장에 집중하는 수도권의 방대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시장은 도민의 식탁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수도권 일원에 위치하고 있는 다른 도매시장에 공급을 담당하는 기간시장으로 건설함.

- ②출하자, 구매자의 기대에 대응하는 시장

출하자는 시장내 물류비용의 삭감 및 소비자의 요청에 관한 정보제공을 시장에 요구하고 있음. 식품전문점, 체인점, 할인점 등으로 다양한 업태로 구성되는 구매자들은 시장에 거래 및 물류시스템의 재구축을 요구하고 있음. 이 때문에 신시장은 상품 구색 갖추기의 충실, 정보발신기능의 강화,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물류서비스의 제공 등을 수행하며 출하자 및 구매자의 기대에 반응하는 시장으로 건설함.

- ③식품의 안전과 안심, 건강과 풍요로움을 제공하는 시장

식품의 위생관리 및 안전성 확보는 시장이 달성하여야 할 기본적 사명임. 신시장은 식품의 안전성 및 표시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에 반응하기 위해, 온도대별 상품관리 및 위생관리, 품질표시등의 정비를 수행하고 동경도민의 건강과 풍요로움을 제공함.

- ④정보화 및 세계화 등 장래의 유통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시장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인터넷등을 이용한 새로운 사업모델이 출현하고 있음. 또한 수입자유화 및 규제완화 등에 따라 신선 식품유통의 국제화가 진전되면서 해외의 대형유통업체의 일본진출도 증가하고 있음. 정보화 및 세계화의 진전은 장래의 신선 식품유통을 크게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신시장은 장래의 여건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장으로 건설함.

2) 지역의 발전과 환경에 대한 배려

○ 시장활동에 수반하는 환경에 대한 부하(負荷)를 감소시키고 지역의 경관과 조화되도록 시장을 건설함.

- ①차량에 의한 배기가스 및 소음 억제

동경도민의 건강과 동경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동경도는 디젤차량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음. 시장활동에 수반되는 대기오염 등의 부하를 감소시키는 것은 시장의 주요과제임. 신시장에서는 모델시프트(modalshift)⁶⁴ 및 공동배송의 추진에 의한 교통 발생량의 억제, 충분한 주차장 확보에 의한 노상주차의 금지, 원활한 차량유도 등을 실현하여 배기가스, 소음을 억제함.

- ②에너지 절약형 및 리사이클 추진으로 환경부하 감소

한정된 자원을 유효하게 활용하고 지구온난화등 환경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자원절약형, 에너지 절약형의 시장을 건설이 요구됨. 신시장에서는 식품 쓰레기 및 포장용기등의 발생 억제, 감량화, 자원의 재활용화를 추진하는 등 최신의 생(省)에너지 기술을 도입하여 환경부하의 감소를 도모함.

- ③지역의 경관과 조화로운 자연속의 시장

종래의 시장은 신선식품의 유통거점으로서의 효율성을 중시한 나머지 지역의 도시경관에 대한 배려가 불충분하였음. 신시장은 토요스 지구가 가진 아름다운 경관 및 조망권을 배려하여 녹음이 짙은 시장으로 건설하여 지역의 도시개발에 기여함.

64) 모델시프트란 화물 수송에 있어서 현재 주류인 자동차 수송의 형태를 다른 대량 일괄형 수송 기관에 대치한다는 것임. 이는 1997년 교토회의에서 지구온난화대책으로서 CO₂(이산화탄소)를 1990년에 대비하여 2010년 전후에 6% 정도 삭감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에 대한 이행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채택된 것임. 다시 말하면, modal shift란 트럭에 의한 간선 화물 수송을 「지구에 부드럽고 대량 수송이 가능한 해운 또는 철도수송으로 전환」 하는 것을 말함.

3) 동경도민과 소비자에게 개방된 시장건설

- 구매자, 생산자, 출하자, 유통업자에게 있어서 매력있는 시장으로 건설함과 동시에 동경도민 및 지역주민, 소비자에게 개방된 시장을 건설하기 위해 천객만래(千客萬來) 지역을 설정하여 시장의 멋을 창출함.
- ①시장관계자가 내외 시장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모이는 장소
신시장이 기간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신선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발신하는 시스템을 설치할 필요가 있음. 신시장은 소매업, 외식업자에게 소매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여 신상품 및 내외 시장정보를 요구하는 시장관계자에게 전파하는 시장으로 건설함.
- ②소비자가 다양한 식자재 및 새로운 요리에 접할 수 있는 장소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확보 및 건강에 좋은 일본형 식생활의 계승에 시장이 일익을 담당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 신시장은 소비자가 다양한 식자재 및 새로운 요리와 만날 수 있는 개방된 시장으로 건설함.

4. 토요스(豊洲) 신시장의 기본방향

1) 토요스 신시장 예정지의 개요

- 신시장의 예정지는 3개의 큰 도로(고속도로, 간선도로, 보조도로)에 접해 있으며, 시장 시설용지는 37.5ha이고, 방파제와 녹지를 포함한 면적은 약 44ha이다. 공공교통기관으로서의 전철역이 정비되어 시장과 직접 연결되고 있음.

2) 토요스 신시장의 취급규모

- ①수도권 신선식품의 수요전망

수도권 인구는 2015년경부터 점차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도심

으로의 회귀 등으로 감소 폭은 매우 미미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한편, 식품의 소비는 외식, 간식으로의 이행이 진행되겠지만, 사람들의 신선식품 선호는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음. 이 때문에 수도권의 신선식품의 수요는 앞으로 30년 정도는 현재의 수준(수산물 약 100만 톤, 야채류 약 600만 톤)이 계속될 것으로 예측됨.

- ②쓰키치 시장의 취급량

쓰키치 시장의 취급량은 거품경제 붕괴 후 계속적으로 감소하였는데 1996년부터 감소추세는 멈추었음. 그 이후, 시장의 취급물량은 수산물 1일 2,300톤, 청과물 하루 1,500톤으로 안정적인 추세를 보여주고 있음. 이것은 소비가 실수요 수준으로 안정되었음을 시사하며, 상품 구색이 잘 갖추어진 우수한 기간시장으로 구매자의 회귀가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판단됨.

- ③토요스 시장의 목표취급량

신시장의 취급량은 이하와 같은 시장의 취급량을 증감시키는 유통상의 요인을 고려하여 현재의 취급량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함. 다만, 시장의 취급량 수준은 시장의 경쟁조건의 변화에 따라 앞으로 더욱 변화할 가능성도 있음. 시장규모 산정의 기초가 되는 물류량에 대해서는 중도매업자의 직접거래 및 타시장 전송용의 집산품 등을 고려하여 설정함. 시장의 취급량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서 시장 자체의 물류기능 고도화 노력, 물류비용삭감 노력, 편리성이 높은 경쟁력 있는 시장의 실현 등을 들 수 있으며, 반대로 취급량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서 시장의 유통의 확대, 그리고 시장이 기반으로 하는 중소소매점·음식점 등을 주축으로 하는 도매시장 구매자의 감소를 들 수 있음.

3) 토요스 신시장의 구역설정 및 부문구성의 관점

- ①시장내 구역설정

시장내 구역설정은 유통구역, 경관구역, 천객만래구역(쇼핑센터, 만남의 광장, 신요리교육장 등 다목적구역)으로 구성하며, 유통구역은 적정온

도로 관리된 도매장 및 중도매장에서 거래와 물류를 완결시켜, 주차장에서 상·하역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등 물류 효율화와 위생·환경대책에 충실을 기울이고, 경관구역에서는 시장주변의 수변(水邊)에 대해 호안(護岸) 녹지와 시장의 시설 및 건물의 옥상녹지가 일체가 되어 양호한 경관이 형성되도록 경관에 배려한 건물 디자인을 채용하도록 함. 완만한 경사의 호안 및 택지내 녹지는 친수공간으로서 도민과 지역주민이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고 산책할 수 있는 쾌적한 공간으로 정비함. 천객만래구역은 「토요스지구개발정비계획개정안」에 따라 시장에 어울리는 음식 및 상품판매, 사무실 등의 상업, 업무기능으로 구성하는 구역을 배치하여 시장과 주변 시가지역이 일체로 된 변화가를 형성함.

- ②유통구역의 부문구성

시장 건설의 기본이 되는 부문 구성은 종래의 수산부류, 청과부류, 관련 업종별 구성의 적정성 및 가공, 배송부문, 활기를 창출하는 부문 등 시장기능 고도화를 위한 새로운 부문의 설치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이하의 각안 등을 기본으로 기본계획 수립시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함.

〈표 1〉 유통구역의 부문별 배치안

구분 배치안	배치 관점	5번가	6번가	7번가
A 안	취급품목별 구성 ·취급품목에 따른 시장	청과부	수산물부	
B 안	One stop shopping 기능중시 ·중도매 점포부문을 1개소에 집중	청과 도매부문	수산 도매부문	수산·청과 중도매부문
C 안	배송·보관기능의 분리 ·시장 본체부문에서 전·배송, 보관 등의 기능을 분리	배송·보관 부문	청과부 (도·중도매)	수산물부 (도·중도매)
D 안	B·C 절충안 ·시장의 본체부문과 전·배송, 보관 등의 기능을 분리하고, 본체부문에 서는 수산·청과의 중도매 점포를 집중	배송·보관 부문	수산·청과 중도매부문	수산·청과 도매부문

5. 식품유통의 환경변화에 대응한 신시장 건설

1) 물류시스템의 효율화

- 식품위생의 확보, 품질관리의 향상, 물류의 속도제고와 비용절감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시킨 새로운 물류시스템을 구축함.
 - 첫째, 도매 및 중도매장은 바람과 비, 분진, 먼지, 일사광선 등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그 외연에 플랫폼형식 등의 반출입 통로를 설치하여 건물내에서 물류가 완결되는 저온냉장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실현함.
 - 둘째, 산지에서 물품을 반입하고, 구매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은 반출입 통로에서 수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
 - 셋째, 자동반송기 및 분류기기 등을 활용한 물류의 기계화에 대해서는 비용 대비 효과를 측정하여 도입의 범위 및 방식을 결정함.
 - 넷째, 집산기능의 확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른 시장, 다른 지역의 물품으로 혼재되어 있는 것의 분류, 배송을 위한 시설에 대해 검토하여 정비함.
 - 다섯째, 장내물류를 담당하는 업자는 기존의 사업영역을 개선하고, 사업의 공동화(共同化), 일원화를 위해 검토한다. 도매장에서 물품의 수취, 반출통로의 배달 등, 중도매업자의 장내반송에 대해서도 공동화 및 장내 물류업자에게 위탁방식의 도입 등에 대해 검토함.
 - 여섯째, 장내반송차량은 원칙적으로 사용범위를 건물 내에 한정하고, 차량대수는 최소한으로 정하고 무공해차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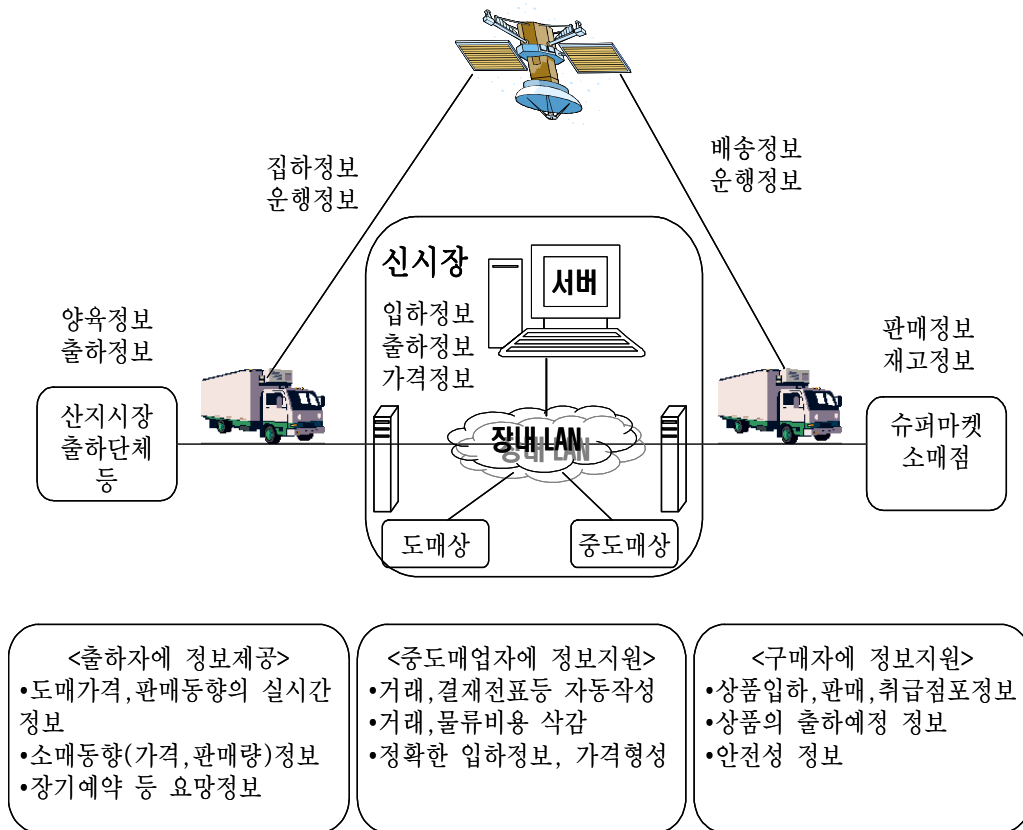
2) 정보인프라의 정비

- 거래 및 물류의 효율화, 시장운영 비용의 삭감, 시장업자의 마케팅 강화, 동경도민 및 소비자에 대한 식품의 안전성과 식문화에 관한 정보발신 등 시장기능의 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보인프라를 정비함.

- 첫째, 거래기능, 물류기능, 결제기능 등의 고도화에 불가결한 다음과 같은 분야에 대해 시장업자를 중심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함.
 - 입하예정수량, 입하량, 매매가격 등의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시장업자가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이력추적시스템(Traceability System) 등의 도입.

- 둘째, 시장업자에 의한 공동 네트워크의 구축이며 민간의 전기통신사업자 등 아웃소싱 방안 등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에서 결정함.

<그림 1> 정보화의 이미지



3) 낮은 다리 설치

- 모델시프트(modalshift)의 추진에 의한 트럭수송의 억제와 집하의 광역화 등, 장래의 수송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6번가에 시장용 낮은 다리를 설치함.

4) 위생대책의 충실

- 위생대책을 위해 위생 및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시설구조를 구축하며, 중도매업장과 반출입 통로는 외부로부터 비바람과 분진, 먼지, 직사일광 등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함. 그리고 취급품목별로 최적의 온도대에서 유통이 이루어지도록 도매 및 중도매장, 반출입 통로 등에 대해 품목별 표준온도에 따른 온도관리를 함.
- 도매 및 중도매장, 반출입 통로 등 건물내에서 사용하는 장내 반송차량은 무공해차량으로 사용하며, 건물간 물품 반송은 향후 계획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도매 및 중도매장, 가공장 등은 위생기준에 따른 구조, 규모, 시설로 계획을 수립하며, 또한 취급품목과 업종, 업체별의 품질관리 및 상품의 취급규칙에 대해서는 시장업자와 협의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결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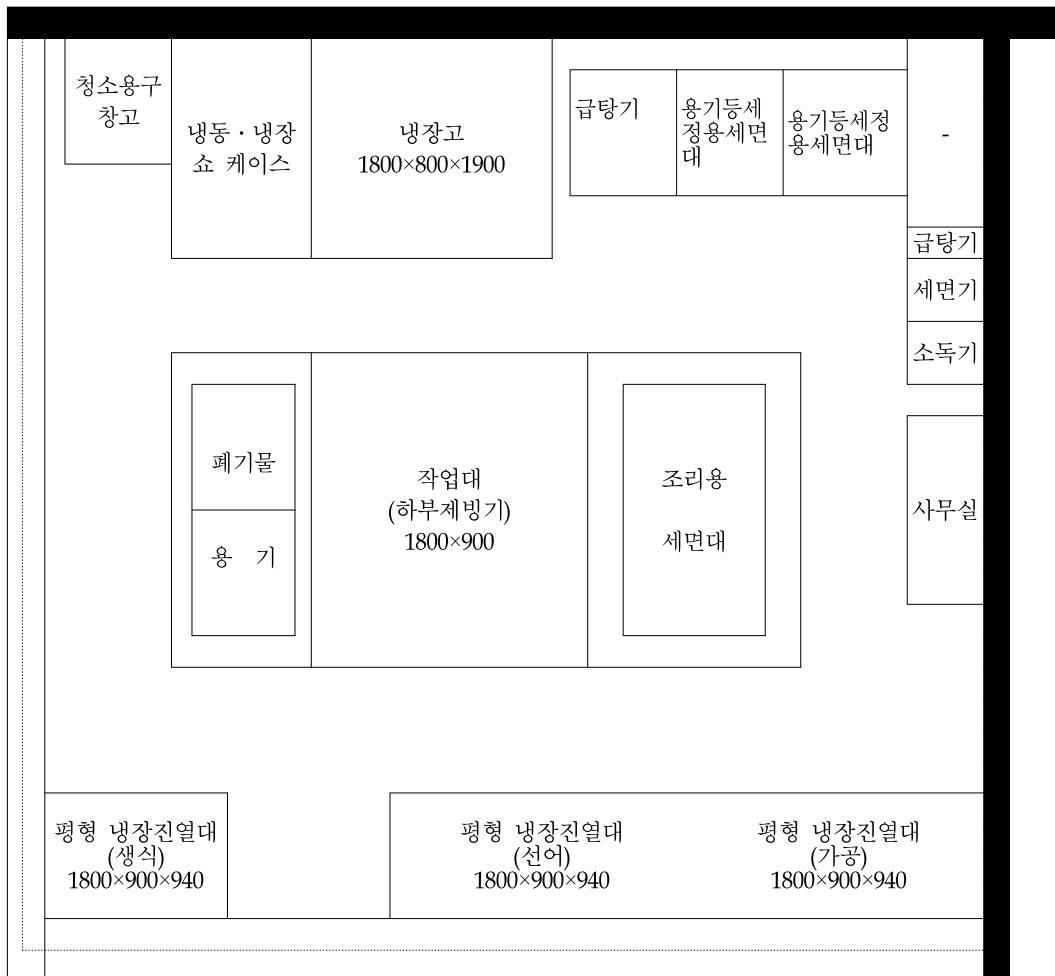
5) 도매업자 및 중도매업자 등의 바람직한 방향

- 도매·중도매업자의 활성화 대책으로 충실한 상품 구색 갖추기에 더하여 정보력 강화, 물류비용의 삭감 등이 필요하며 다음의 항목에 대해 향후 계획수립을 결정함. 첫째, 물류업무의 24시간화, 휴일배송 등 출하자, 구매자의 다양한 니즈(needs)에 응답하기 위한 도매업자 및 중도매업자의 영업체제를 정비문제, 둘째, 물류의 스피드화와 비용삭감을 추진하기 위한 아웃소싱의 대책을 강구, 셋째, 구매자의 편리성 향상을 위한 IC 카드 등을 활용한 시장내 무현금 시스템을 도입, 넷째, 중소매점 및 음식점의 개업 및 매력있는 점포 개설 등의 지원책을 강구방안,

다섯째, 청과 및 수산 중도매장의 연계 등을 향후 계획에서 결정 등임.

- 신시장에서 가공기능의 연계문제는 구매자의 구입형태가 소재에서 가공, 조제된 식자재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중도매업자의 가공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음. 첫째, 중도매업자의 점포 내 가공, 공동가공을 위한 공간을 확보, 둘째, 중도매업자 이외의 가공업자에 대해서는 신시장에서 원료를 조달하는 경우에는 시장시설의 사용을 인정하는 방안 등임.

〈그림 2〉 수산 중도매점포의 이미지



- 도매장 및 중도매장의 총면적은 현 시장에서의 사용면적과 농림수산물성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을 고려하여, 매장내 통로의 광폭등 기간시장으로서의 거래, 물류의 특성을 고려하여 산정하며, 위생기준에 적합한 도매장 및 중도매장의 정비문제는 외부로부터의 비바람, 분진, 직사 일광 등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로 하여 취급품목별로 최적의 온도관리를 수행할 수 있게 설계함. 또한, 위생기준에 근거한 필요한 중도매점포의 면적에 대해서는 향후 검토하여 결정하기로 하였음.

6) 정비수법의 다양화

- 정비수법의 다양화 방안으로 민간 활용형 토지이용시스템의 도입을 시도하였음. 이하의 시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민간 활용형 토지이용시스템을 활용하여 정비를 추진하며, 용지의 임대기간, 임대료, 건축상의 제한 등의 조건에 대해서는 개별의 시설별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냉장고, 보관시설
 - 가공장, 배송센터
 - 통근차량용입체 주차장 등
- 천객만래(千客萬來)구역에 대해서는 다양한 민간 활용 수법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7) 시설이용형태의 다양화와 사용료

- 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이하의 항목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에서 다음을 결정함. 첫째, 도매장 및 반출입 통로의 시간대별 사용방법, 둘째, 통근차량 주차장등 일반개방시설의 사용방법, 셋째, 신시장에 대응한 사용료 체계는 사용료 부담의 수준을 계산하여 결정함.

8) 환경을 배려한 신시장 건설

- 배기가스·폐기물 대책을 철저한 환경부하가 적은 시장, 열대화 현상, 지구온난화 대책에 기여하는 에너지 절약형의 시장을 건설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 또한 쾌적한 도시공간 및 친밀감 있는 도시건설 등 지역의 매력을 향상시키는 경관에 우월한 시장으로 건설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음.

9) 천객만래(千客萬來)의 신시장 건설

- 천객만래구역에 다음과 같은 기능을 배치하여 시장다운 구역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음. 첫째, 구매자, 생산자, 출하자, 유통업자로 불리는 시장을 건설하기 위해 크고 작은 소매점과 음식점 설치, 둘째, 매력 있는 점포 설치를 지원하는 시스템 및 견본매장 설치, 셋째, 신상품에 대한 정보제공 시스템 설치, 넷째, 소비자 니즈 및 내외 시장정보를 입수하기 위한 안테나 스푼 및 이벤트장 설치, 다섯째, 시장 주변의 업무시설 및 상업시설과 연계시켜, 동경도민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및 방문객에게 개방된 시장을 건설하기 위해, 관련업자의 점포, 요리교실, 시장자료관 등 견학자, 소비자를 위한 시설, 시장업자의 사무소 등을 이 구역에 집중 배치 등임.

6. 토요스(豊洲) 신시장 기본구상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 쓰키치(築地) 시장은 1935년 당시 600만 명의 동경도민만을 대상으로 신선식품을 제공할 목적으로 건설되었으나, 현재의 쓰키치 시장은 동경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소비자 3,300만 명에게 신선식품을 제공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쓰키치 시장은 당시와는 전혀 다른 환경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앞으로 100년 이후에도 수도권의 신선 식품유통의 중핵을 담당하는 시장으로 재생시키기 위해 2000년 12월 쓰키치 시장을 토요스로 이전기로 결정하였으며, 2003년 5월에 신시장의 기본구상을 발표하였음. 이에 따라 동년 7월부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검토에 들어

갔으며, 2004년 6월에 기본계획을 책정할 예정임.

- 토요스 신시장은 약 20년간의 장기 플랜하에 새로운 시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매시장을 둘러싼 새로운 여건변화를 수용하여, 소비와 유통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지역의 발전과 환경에 배려하며, 지역주민과 소비자에게 열린 시장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농수산물 도매시장인 가락동 도매시장을 둘러싼 여건변화도 수산물 유통의 중핵인 도매시장에게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고 있음. 거래물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연근해산 수산물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고, 직거래, 인터넷 거래 등 유통경로의 다양화에 따라 도매시장의 점유율이 감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값싼 수입수산물의 급증과 양식수산물의 유통점유율 증가에 따라 기존의 산지 위판장 — 소비지 도매시장 점유라는 수산물 유통의 기본 등식은 약화되었음. 더욱이 가락동 시장은 주변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끼고 있는 입지유형으로 교통혼잡, 악취유발의 주범으로 민원(民怨)의 대상으로 되기도 함.
-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도매시장의 기능저하를 억제하고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히 제도개선 또는 시설 현대화, 시장이전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이에 앞에서 살펴본 100년 앞을 내다보는 일본의 토요스 시장의 구상을 음미해볼 필요가 있음. 소비형태의 다양화, 유통정보화의 촉진 등 시대의 흐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미래지향적인 디자인(design)을 하지 않는 한 도매시장의 기능상실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임.
- 쓰키치 수산물 도매시장의 몸부림은 비슷한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나라의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시사하는 바가 큼. 무엇보다도 가락동 시장을 둘러싼 우리나라의 소비자와 지역사회도 많은 변화를 거듭하였으며 다양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수산물 소비자도 일본의 소비자에 열등하지 않은 신선식품 애호가로서 식생활 문제에 대해 가격과 동시에 안전, 맛, 신선도 등으로 구성되는 품질에 따라 유통채널의 우열을 평가하게 될 것임. 또한 인접 아파트 주민은 혐오시설로서 도매시장이 아니라 다양한 기능을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도매시장으로서 역할을 강요할 것임.
- 따라서 우리나라의 수산물 유통의 메카인 가락동 도매시장도 철저한 경쟁원리를 바탕으로 시장 관계자들과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가꾸어 나가는 지역사회 공생형 시장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며, 생산자-소비자의 접점, 생선 요리교실, 식문화 박물관 및 유통정보센터로서 과학기술의 이용을 체험하는 초등학생의 견학지, 소비자와 유통인의 신뢰형성의 장(locus)으로서 기능하는 새로운 만남의 시장이어야 되어야 할 것임.

〈표 2〉 토요스 신시장의 건설 예정 스케줄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 2016
사업내용						
기본계획	_____					
기본설계		_____	_____			
실시설계				_____	_____	
건설공사					_____	_____
개 장						2012 ~ 2016 _____

주 의

1. 이 보고서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의하여 수행된 연구결과이며, 보고서 및 부록으로 수록된 법률(안)은 연구진의 개인적 견해로 해양수산부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2. 따라서 이 보고서 및 법률(안)을 대외적으로 인용·발표할 때에는 연구진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하며, 내용의 일부를 전제하여 인용할 때에는 제한적인 전제조건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